

제4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제4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발 간 사

오늘날 우리는 저축, 대출, 투자, 결제 및 송금 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과 밀접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과 함께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상품이 등장하는 한편 뉴스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금융 관련 콘텐츠를 손쉽게 접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도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듯이 금융도 잘못 이용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익숙한 표현이 되었으며, FOMO(Fear of Missing Out: 타인의 투자 성공에 뒤처지지 않으려 성급히 투자하는 심리)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금융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불법 고금리 대출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려면 금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전하게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 시기는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의 기초지식과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2015년 12월 처음 발간하였으며, 어느덧 4번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차 개정판에서는 최근 금리상승 기조로 전환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였으며, 대학생이 금융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용어 설명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의 대중화를 고려하여 행동금융을 통한 투자심리 이해, 금융 관련 세금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금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재무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재무적 선택이 가능한 상태인 금융 웰빙(Financial Well－being)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대학생 여러분을 금융 웰빙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개정판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필진과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금융감독원 원장 이 복 현

머리 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 많은 문제들이 금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 어떻게 투자하여 돈을 불릴 것인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은퇴 후의 삶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 다양한 금융관련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은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시기에는 금융역량을 갖추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0대의 금융역량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우리나라 성인 평균 점수(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저축과 미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금융태도에서 48.9점을 기록하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20대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체계적인 정규 금융교육 과정을 통해 대학생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동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에 교재와 함께 금융교육 교수, 교육용 자료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다수 대학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의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에 최초로 발간되었으며, 2017년 12월 제2판과 2021년 2월 제3판을 거쳐 최근의 금융환경과 금융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제4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금리 상승 기조로 전환된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통계자료 · 그림 · 표 등을 최신화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각 장의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주요 개념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금융용어를 '핵심 용어 정리'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공부한 금융이론과 금융제도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읽기' 코너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심리, 금융관련 세금제도, 창업관련 금융제도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과 수익률, 소비 · 저축 의사결정 모형, 간단한 금융상품 가치평가 모형 등 금융 기초이론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교수자가 강의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강의 여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본문이 아닌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저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자들의 부족함에도 본 개정 작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담당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 새롭게 개정된 만큼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본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저 자 일 동

차 례 Contents

제 1 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1 경제의 순환과 금융 ····· 5

1.2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 8

1.3 금융의 기능 ····· 9

1.4 주요 금융지표 ····· 12

1 금리(이자율) • 12
2 환율 • 18
3 주가 • 22

제 2 장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2.1 금융상품 ····· 35

2.2 금융시장 ····· 38

1 금융시장 • 38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38
3 금융시장의 종류 • 41

2.3 금융회사 ····· 43

1 금융회사의 종류 • 43
2 은행 • 44
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47
4 보험회사 • 48
5 금융투자회사 • 49
6 기타 금융회사 • 50

2.4 금융유관기관 ····· 52

1 금융감독원 • 52
2 한국은행 • 54
3 예금보험공사 • 55
4 한국거래소 • 56
5 신용회복위원회 • 57
6 서민금융진흥원 • 58
7 금융업권별 협회 등 • 58

제 3 장 저축의 이해

3.1 소득과 지출 ····· 65

1 소득 • 65
2 지출 • 68
3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 • 70
4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상품구매 단계별 전략 • 71

3.2 저축과 돈의 가치 ····· 74

1 저축 • 74
2 단리와 복리 • 76
3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 • 80
4 저축과 세금 • 82

3.3 저축상품 ····· 84

1 저축상품의 개요 • 84
2 저축상품의 종류 • 85
3 저축상품 활용 시 고려사항 • 91

3.4 예금자보호제도 ····· 95

1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 • 95
2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 96

제 4 장 금융투자의 이해

4.1 투자의 기초 ····· 105

1 투자의 개념 • 105
2 투자 수익률 • 107
3 투자의 리스크(risk) • 110

4.2 금융투자상품 ····· 116

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116
2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 • 117

4.3 주식 투자 ····· 121

1 주식의 개념 • 121
2 주식의 발행과 유통 • 124
3 주식 거래 방법 • 127

4.4 채권 투자 ····· 131

1 채권의 개념 • 131
2 채권의 분류 • 134
3 특수한 형태의 채권 • 136

4.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139
1 재무제표 • 140
2 감사보고서 • 144
4.6 증권분석 ····· 146
1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 • 146
2 기업정보 • 149
3 재무비율 분석 • 152
4 주가배수 평가 • 156

제 5 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5.1 펀드 ····· 165
1 펀드의 개념 • 165
2 펀드의 유형 • 168
3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 177
5.2 파생상품 ····· 179
1 선물계약 • 180
2 옵션계약 • 185
3 스왑계약 • 189
5.3 구조화 상품 ····· 190
1 구조화 상품의 개념과 특징 • 190
2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 191
3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 • 195
5.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 197
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 197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 201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 203

제 6 장 신용관리

6.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 211
1 신용의 개념 • 211
2 신용관리의 중요성 • 211
6.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 213
1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 213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 214
3 개인신용평가 • 216

6.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 219
1 신용관리방법 • 219
2 연체정보 등록 및 해제 • 222
3 채무조정제도 • 223
4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 226
6.4 신용카드 활용법 ····· 228
1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 • 228
2 신용카드의 종류 • 229
3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 230
4 신용카드 해외 사용 • 235
5 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 • 236

제 7 장 부채관리

7.1 부채의 개념과 영향 ····· 243
1 부채의 이해 • 243
2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45
3 과다부채의 결과 • 247
7.2 대출의 활용 ····· 249
1 대출 시 고려사항 • 249
2 대출금리 결정 방식 • 251
3 대출상환방식 • 253
4 대출기관의 종류 • 257
5 대출상품의 종류 • 258
6 대학생 · 청년과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 260
7.3 부채관리 ····· 263
1 부채현황 파악 • 263
2 부채상환을 위한 전략 • 264
3 부채관리의 기본원칙 • 265
7.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 266

제 8 장 리스크관리와 보험

8.1 리스크의 이해 ····· 275
1 보험대상 리스크의 개념 • 275
2 보험대상 리스크의 요건 • 276
3 보험대상 리스크의 종류 • 277
4 보험대상 리스크의 측정 • 279

8.2 리스크의 관리 ····· 281
1 리스크관리 방법 • 281
2 리스크관리 절차 • 283
8.3 보험의 이해 ····· 284
1 보험의 기본 원리 • 284
2 보험의 기능 • 286
8.4 보험의 주요 요소 ····· 287
1 보험료의 구성 • 287
2 해지환급금 • 288
3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 289
4 보험금 • 290
5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 291
8.5 보험의 종류 ····· 293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293
2 사회보험의 종류 • 294
3 민영보험의 종류 • 297
4 생명보험 • 298
5 손해보험 • 301
6 제3보험 • 304
8.6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 311
1 보험가입 채널 • 311
2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314

제 9 장 노후와 연금

9.1 초고령사회 ····· 325
1 인구구조의 고령화 • 325
2 수명의 개념 • 327
9.2 노후의 주요 위험 ····· 331
1 건강위험 • 331
2 경제적 위험 • 332
9.3 노후준비와 연금 ····· 334
1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 • 334
2 주요 연금제도 • 336
9.4 은퇴 연금설계 ····· 345
1 연금설계의 단계 • 345
2 연금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 347

제10장 재무설계의 기초

10.1 재무설계의 의의 ····· 355
1 재무설계의 개념 • 355
2 재무설계의 필요성 • 355
10.2 재무설계의 과정 ····· 358
1 1단계: 재무상태 분석 • 358
2 2단계: 재무목표 설정 • 361
3 3단계: 행동계획 수립과 실행 • 363
4 4단계: 정기적 검토와 수정 • 365
10.3 20대의 재무설계 ····· 366
1 20대의 재무목표 • 366
2 20대의 재무관리 전략 • 370

제11장 금융소비자보호

11.1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 381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 381
2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 383
3 국가와 금융회사의 역할 • 383
11.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384
1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 384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 389
11.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 394
1 금융교육 • 394
2 금융정보의 제공 • 397
11.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399
1 개인정보 보호 • 399
2 금융사기 피해예방 • 404

제12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12.1 핀테크의 개념 ····· 419

1 핀테크의 개념 • 419
2 핀테크의 성장배경 • 421

12.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 425

1 인공지능 • 425
2 블록체인 • 426
3 클라우드 • 429
4 빅데이터 • 430

12.3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 431

1 인터넷전문은행 • 432
2 간편결제 · 송금 • 434
3 자금조달 및 대출 • 435
4 웰스테크 • 438
5 인슈어테크 • 439

12.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 441

1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 • 442
2 핀테크 발전에 따른 위험요소 • 444

제13장 부록: 금융관련 기초 이론과 주요 이슈

13.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 ····· 451

1 경제성장의 경험 • 451
2 경제성장에 대한 금융의 역할 • 452
3 금융혁신의 역사 • 454
4 금융의 명암 • 456

13.2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과 수익률 ····· 462

1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 462
2 기대수익률과 위험 • 464
3 포트폴리오 이론 • 468

13.3 소비 · 저축의 시점 간 의사결정 ····· 472

1 소비와 저축 사이의 선택 문제 • 472
2 시점 간 선택 모형 • 472

13.4 주식 · 채권 가치평가 모형 ····· 478
1 주식가치 평가모형 • 478
2 채권가치 평가모형 • 484

13.5 선물 · 옵션 가치평가 모형 ····· 488
1 선물 가치평가 모형 • 488
2 옵션 가치평가 모형과 옵션 거래전략 • 491

13.6 신뢰 · 정보 · 신용과 금융의 관계 ····· 499
1 본인-대리인 관계와 정보비대칭, 그리고 대리인 문제 • 499
2 신뢰, 정보, 신용과 금융의 관계 • 501

13.7 신용할당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 504
1 신용할당 • 504
2 신용할당의 발생 원인 • 505

13.8 간단한 보험수리 모형 ····· 507
1 보험과 보험수리 • 507
2 보험료 구성과 보험료 결정요인 • 507
3 수지상등의 원칙과 보험료 산출 • 508

13.9 생애주기가설과 노후 대비 ····· 512
1 생애주기가설 • 512
2 생애주기가설과 노후 대비 • 513

13.10 금융 관련 세금 ····· 516
1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 516
2 금융 관련 세금의 종류 • 517
3 금융소득과 절세 • 519

13.11 행동금융학과 투자심리 ····· 522
1 행동금융학이란? • 522
2 행동금융학 주요 개념 • 523

13.12 창업 관련 금융제도 ····· 529
1 창업 관련 금융제도의 필요성 • 529
2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 금융제도 • 530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구분 ····· 44
표 2-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 49

표 3-1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현황 ····· 70
표 3-2 이자율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 ····· 80
표 3-3 이자율에 따라 5억원을 20년간 매월 찾아 쓸 수 있는 금액 ····· 80
표 3-4 MMDA, MMF, CMA 비교 ····· 86
표 3-5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 이율(2023년 기준) ····· 88
표 3-6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2023년 기준) ····· 89
표 3-7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 96

표 4-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 130
표 4-2 주식과 채권의 비교 ····· 132
표 4-3 특수한 형태의 채권의 비교 ····· 138
표 4-4 감사인의 감사의견 ····· 145

표 5-1 펀드의 유형 ····· 169
표 5-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 170
표 5-3 펀드 클래스의 유형 ····· 172
표 5-4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상품의 비교 ····· 175
표 5-5 ELW와 주가지수옵션의 비교 ····· 189
표 5-6 ELS의 유형과 손익구조(예시) ····· 193
표 5-7 불공정 거래의 유형 ····· 202

표 6-1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 213
표 6-2 개인신용정보 관리 ····· 215
표 6-3 채무조정제도 종류 ····· 225

표 7-1 부채 유형별 보유가구 비율 및 보유액 중앙값 ····· 244
표 7-2 대출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금리 유형 ····· 251
표 7-3 대출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 총액의 차이(매월 납부시) ····· 256

표 7-4 대출현황 파악 서식 263

표 8-1 리스크 속성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법 282
표 8-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주요 차이점 294
표 8-3 보험업별 보험종목 구분 298
표 8-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내용 303
표 8-5 보험업종별 특성 비교 304
표 8-6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비교 306
표 8-7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307
표 8-8 암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 309
표 8-9 갱신형보험상품과 비갱신형보험상품의 비교 310

표 9-1 성별 중위 기대수명 추계 328
표 9-2 국가별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330
표 9-3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35
표 9-4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337
표 9-5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340
표 9-6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342
표 9-7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연금설계(예시) 346

표 10-1 수입지출표의 예시(20○○.1월~20○○.12월 기준) 359
표 10-2 자산부채상태표의 예시(20○○년 12월 31일 기준) 361
표 10-3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362

표 11-1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 386
표 11-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6대 판매원칙)의 주요 내용 388
표 11-3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접수현황 (접수일 기준) 391
표 11-4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395

표 12-1 유형별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437

표 13-1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 관계에 따른 채권가치 487
표 13-2 풋-콜 패리티의 원리 494
표 13-3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520
표 13-4 주요 창업 관련 금융제도(2023년 기준) 534

그림 차례

그림 1-1 국민경제의 순환 ····· 6
그림 1-2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차이 ····· 9
그림 1-3 시장금리 결정 ····· 13
그림 1-4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 ····· 16
그림 1-5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추이 ····· 17
그림 1-6 주요국 통화와 표시기호 ····· 19
그림 1-7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변동 ····· 24
그림 1-8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 ····· 28

그림 2-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36
그림 2-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39
그림 2-3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 55
그림 2-4 예금보험의 운영구조 ····· 56

그림 3-1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 70
그림 3-2 저축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연이자율 4%로 저축) ····· 78
그림 3-3 이자율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30년 저축) ····· 78
그림 3-4 양도성예금증서 견본 ····· 87
그림 3-5 청년도약계좌 홍보자료(2023년) ····· 90
그림 3-6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 92

그림 4-1 분산투자와 투자위험 ····· 112
그림 4-2 금융투자상품의 세부 분류 ····· 116
그림 4-3 표준투자권유준칙 상의 프로세스 ····· 119
그림 4-4 주식 견본 ····· 122
그림 4-5 채권 견본 ····· 133
그림 4-6 재무상태표 양식 ····· 141
그림 4-7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 142

그림 5-1 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 166
그림 5-2 선물의 손익구조 ····· 182
그림 5-3 콜옵션의 손익구조 ····· 187
그림 5-4 풋옵션의 손익구조 ····· 187
그림 5-5 원금보장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 ····· 192
그림 5-6 주식투자의 손익구조,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 ····· 193

그림 6-1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 218
그림 6-2 채무조정프로그램 ····· 223

그림 7-1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현금흐름 예시(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5년 만기) ····· 254
그림 7-2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현금흐름 예시(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5년 만기) ····· 254
그림 7-3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현금흐름 예시(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5년 만기) ····· 255

그림 8-1 2022년 10대 사망원인 및 추이 ····· 277
그림 8-2 리스크관리 절차 ····· 284
그림 8-3 런던 로이즈 언더라이팅 룸(Lloyd's of London, Underwriting Room) ····· 286
그림 8-4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자 ····· 290
그림 8-5 변액보험상품의 보험료 흐름 ····· 301
그림 8-6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 ····· 311

그림 9-1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계 및 관련 통계 ····· 326
그림 9-2 인구피라미드 변화 ····· 326
그림 9-3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 328
그림 9-4 성별 중위 기대수명 추계(2020~2070년) ····· 329
그림 9-5 우리나라 고령층의 주요 사망원인 및 진료비 ····· 331
그림 9-6 우리나라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법과 소득 및 소비 만족도 ····· 333
그림 9-7 3층 연금체계 ····· 336
그림 9-8 퇴직연금제도 ····· 339
그림 9-9 기초연금 안내자료 ····· 343
그림 9-10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 344

그림 10-1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흐름 ····· 356
그림 10-2 재무설계의 과정 ····· 358
그림 10-3 생애주기별 주요 이벤트와 소득 – 지출 추이(예시) ····· 362
그림 10-4 연도별 평균 대학 등록금 추이 ····· 367

그림 11-1 금융분쟁조정 절차 ····· 392
그림 11-2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건수 ····· 403

그림 12-1 산업혁명의 단계적 특징 ····· 422
그림 12-2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 429
그림 12-3 주요 핀테크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 432
그림 12-4 P2P 대출의 구조 ····· 436
그림 12-5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적용분야 ····· 440

그림 13-1 세계 총 GDP 추이 ····· 451
그림 13-2 경제성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야경 ····· 451
그림 13-3 저축률, 기술 및 효율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 453
그림 13-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연방준비은행 ····· 456
그림 13-5 금융중개 자산 및 금융산업 소득의 GDP 대비 비율 추이 ····· 461
그림 13-6 1926-2011 미국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간 관계 ····· 467
그림 13-7 예산제약선 ····· 473
그림 13-8 무차별곡선 ····· 474
그림 13-9 저축과 소비의 최적 의사결정 ····· 475
그림 13-10 소득 증가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영향 ····· 476
그림 13-11 이자율 상승으로 저축이 증가하는 경우 ····· 477
그림 13-12 이자율 상승으로 저축이 감소하는 경우 ····· 477
그림 13-13 백워데이션과 콘탱고 ····· 490
그림 13-14 풋-콜 패리티 ····· 494
그림 13-15 방어적 풋 ····· 496
그림 13-16 보호적 콜 ····· 497
그림 13-17 스트래들 ····· 497
그림 13-18 자금시장의 수요 · 공급과 신용할당 ····· 504

그림 13-19 소비 평활화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 …… 513
그림 13-20 부와 소비의 생애주기 프로파일 …… 515
그림 13-2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 516
그림 13-22 전망이론의 소비자 효용…… 525

제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1 경제의 순환과 금융

1.2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1.3 금융의 기능

1.4 주요 금융지표

학습개요

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하는지 살펴보고,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목표

- 실물경제와 금융의 연관성을 통해 금융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한다.
-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금융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한국경제 위기인가: 美연준이 최대 뇌관, 가계빚 · 부동산도 위태

(전략)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물가가 더 뛰면서 금융 위기의 불씨가 실물경제로 옮겨붙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가계부채, 충분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외 금융 충격의 파고는 더 높아지고 한국 경제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과거 1990년대 이후 대표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RS,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는 ▲ 1기 1996년 6월~2000년 5월 ▲ 2기 2004년 6월~2006년 6월 ▲ 3기 2015년 12월~2018년 12월 세 차례 있었다. 1기와는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가 겹치고, 2기 직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이보다 앞서 1980년대 초에도 고유가로 치솟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올린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후 1982년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외채 위기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파 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국내 물가 등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오른다. 하지만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 결국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 확대와 통화 절하를 막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결국 소비 위축 등으로 실물 경제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돈줄을 강하게 죄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심지어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기준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서자 다른 나라도 아닌 자국 내부에서 가장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의 환부가 터졌다. (중략)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 중심의 금융 불균형(쏠림) 현상, 충분하지 않은 외환보유액 등은 그 자체가 금융 또는 경제 위기를 촉발한다기보다는, 연준의 긴축 등으로 비롯된 대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 '취약성'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후략)

[출처: 연합뉴스, 2022. 10. 2.]

-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금융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핵심 용어 정리

금융

자금을 융통하는 것.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주체와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를 이어주어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것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여신

신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예: 대출)

수신

신용을 받는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예: 예금)

이자율(금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원금에 대한 기간당 이자의 비율

환율

국가별 통화의 교환 비율

주식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행하는 증권

채권

정부,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조건을 정하여 발행하는 증권

주가지수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1.1 경제의 순환과 금융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경제주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한다.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물질적 형태를 가진 상품을 말하며, 서비스는 교육, 문화, 관광 등과 같이 물질적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말한다. 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통신 등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다시 그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는 이러한 생산·분배·지출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경제의 순환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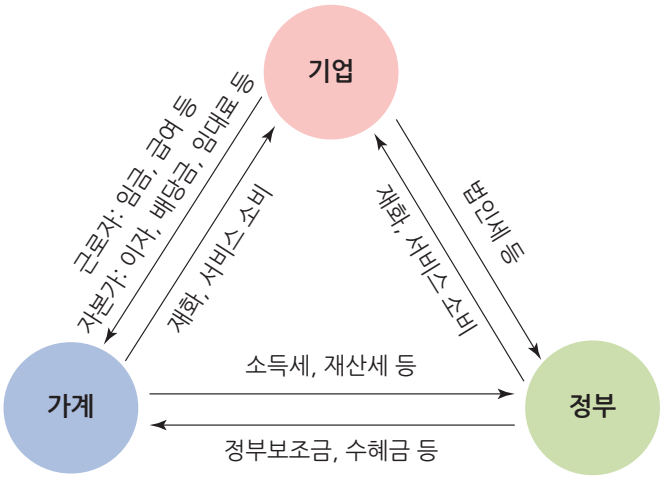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 설비투자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결국 이러한 활동이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특히 장기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의해 주도되므로 기업의 역할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이 중요하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사용한다.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1]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급여 등의 형태로 분배하고,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에게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형태로 분배하며, 법인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하기도 한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급여를 받은 가계는 소득세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정부에 낸다. 각종 세금의 형태로 정부에 이전된 자금 중 일부는 정부보조금, 수혜금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가기도 한다. 이렇게 경제 내에서 생산된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 상호간에 순환된다.

---

1 분배(distribution)란 생산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에게 생산의 결과물을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예: 소득분배). 참고로, 배분(allocation)이란 자원, 자산 등을 필요한 곳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예: 자원배분, 자산배분).

그림 1-1 | **국민경제의 순환**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한다. 가계는 임금, 배당, 이자 등 소득을 이용하여 자동차, 가구, 주택 등 내구재와 음식, 의복 등 비내구재에 대해 지출한다. 또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하여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공공인프라 건설 및 유지에 지출한다.

이렇게 국민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분배로, 분배에서 지출로, 지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며 순환을 하게 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소비 수요가 있어야 하고, 가계와 정부가 상품 등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2]에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서 해외의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선박과 같은 상품들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지만 우

2 개방경제란 외국과의 무역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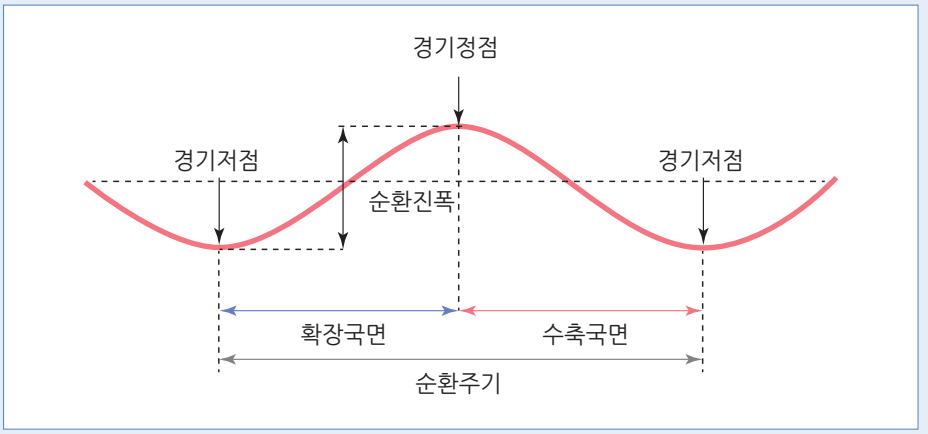
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외국에서 인력이 유입되기도 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을 통해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도 한다.

확대보기

경기순환

경기는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말하는데, 경제상태는 확장과 수축을 거치면서 순환을 하게 되며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확장국면을 지속하다가 정점을 거친 후 수축국면에 들어간 다음 저점에 이르면 한 번의 경기순환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은 1972년부터 경기 저점과 정점을 기록한 월(기준순환일)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1번의 순환을 거쳤고, 지금은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시작한 제12순환기에 있다. 1972년 이래 평균 순환주기는 53개월, 평균 확장국면은 33개월, 평균 수축국면은 20개월이었다. 경기확장은 완만하고 길게 진행되는 반면, 수축국면의 기간은 짧은 경향이 있다. 가장 긴 확장기는 54개월 지속한 제11순환기였으며, 가장 긴 수축기 역시 2017년 9월의 정점 이후 32개월간 지속된 제11순환기이다. 통계청은 제12순환기의 경기저점으로 2020년 5월을 잠정 설정하였다.



1.2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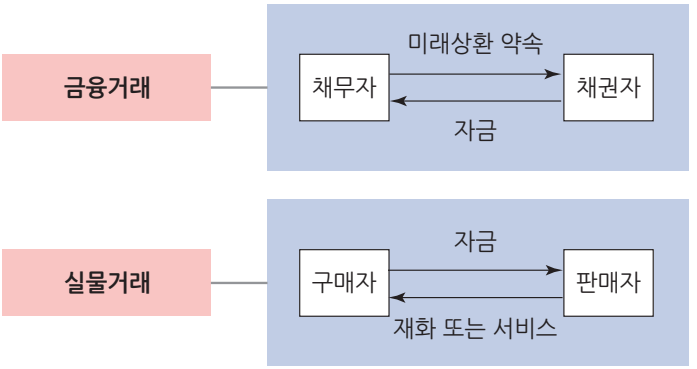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폐의 양이 충분하고 화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도 원활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생산물의 규모도 크지만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해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금융시장도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금융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쓰면 자금을 융통한다는 의미이다. 경제활동은 바로 이 자금의 융통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해야 한다. 기업이 소득을 분배하고 가계와 기업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금융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제가 덜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현금거래만으로도 거래가 완료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금융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문제를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실물거래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자금의 이전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금융거래의 경우 차입자 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미래의 회수를 전제하여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된다. 이때 금융거래가 성사되려면 차입자 또는 투자대상이 채무를 상환하거나 투자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차입자나 투자대상의 능력이나 의지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차입자·투자대상이 금융계약을 하고 난 뒤에 당초 자금공급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돈을 위험하게 운영하거나 경영을 게을리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차입자·투자대상에 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채무상환이나 투자수익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

그림 1-2 |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차이



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1.3 금융의 기능



금융의 기능은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로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3] 첫째,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자금을 빌리길 원하는 사람과 빌려주길 원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 흐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활

3 Green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4th Edition, Academic Press, 2019.

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넷째,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내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한다.

1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먼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하기도 했지만 현대사회의 수많은 거래는 금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도, 자동이체 서비스로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것도 모두 금융을 통한 거래 행위이다. 금융의 도움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거래,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거래, 사용하는 화폐가 서로 다른 거래에 대한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상거래, 가상통화와 같이 수많은 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금융은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 ·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개인이나 가계는 취업 · 실직 · 이직 등으로 소득이 변동할 수 있고 임금상승률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크게 달라져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의 변동성이 더 크다. 이러한 소득의 변동성은 소비나 교육 등의 지출 행위를 크게 제약할 수 있는데, 개인이나 가계는 금융을 통해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지출에 비해 소득이 많을 때에는 저축 등을 이용하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때에는 대출 등을 통해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2 자금 중개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개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저축을 하면 금융회사는 이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에 빌려주고, 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예금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형적인 자금의 중개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금융 중개도 활발하다. 정부나 기업이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이런 채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도 흑자 주체로부터 적자 주체로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자금 중개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돈의 가격(이자율)[4]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 자금의 크기나 만기를 재조정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한다. 따라서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중개 및 배분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의 생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

3 위험관리 수단 제공

금융시장은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경제학에서 위험(risk)은 경제현상이나 결과가 예상이나 기대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이 잘 작동하면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거나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5]을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제 주체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4 투자기회 제공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소액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거나 단기간 저축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장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돈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공급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한다.

---

4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고, 이는 돈을 빌리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가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5 파생상품이란 원유,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다른 상품(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4 주요 금융지표



1 금리(이자율)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유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빌려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자라고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자의 크기는 기간이 길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표시할 때는 보통 1년간의 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간 이자율 5%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년 후 5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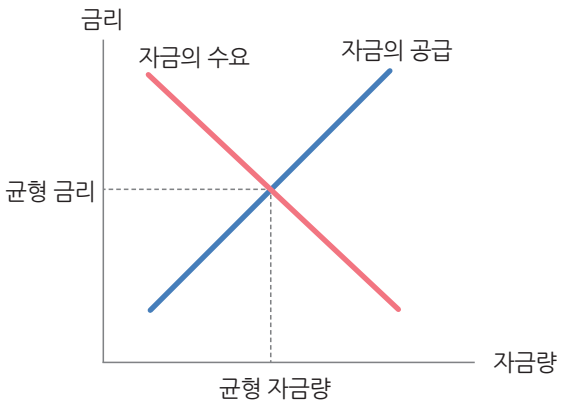
1 시장금리의 결정

❶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금리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6] 자금의 수요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에 영향을 받고 자금의 공급은 가계의 저축행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즉,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하락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자금의 공급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를 주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

6 이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와 구분하여 '시장금리'라고 한다.

그림 1-3 | **시장금리 결정**



② 물가변동률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물가변동률도 포함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7]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공시하는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와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이러한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금리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이다. 실제로 가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명목금리만을 감안하여 예금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연 4%인 상황에서 연간 이자율이 3%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면 실질금리는 대략 −1%가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자금 공급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③ 신용도

신용도는 개별적인 개인이나 기업이 직면하는 금리에 영향을 준다. 개인 또는 기업마

7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물가가 올라가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은 줄어든다. 이를 화폐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한다.

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신용위험이 다르다. 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빌려주는 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며,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를 요구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2 금리의 영향

금리의 변동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물가, 국가 간 자본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데, 이때 얼마나 소비하고 저축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미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는 늘리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된다.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가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는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볼 때 금리는 자금조달의 비용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금리는 물가와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 상품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의 전체적인 물품수요가 감소하여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개방경제하에서 금리는 국가 간 자금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 금리보다 외국 금리가 높을 경우, 국내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외국자금의 유입이 줄어든다. 반대로 국내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 줄어들거나 외국자금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금리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물가 등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키고자 노력한다.

3 금리의 종류

❶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시장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눌 수 있다.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단기금리이다. 단기금리의 예로는 금융회사 간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콜금리, 채권 판매자가 일정 기간 후 채권을 되사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인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ing agreement) 수익률, 무기명 예금증서인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수익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장기금리는 1년 이상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다. 1년 이상의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수익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기금리는 현재와 미래의 단기금리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1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를 반복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단기금리가 앞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장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8]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❷ 금융회사 여신금리와 수신금리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대출 등)[9] 및 수신(예금 등)[10] 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들어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각 금융회사가 시중 자금사정, 고객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여신금리는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나 CD 유통수익률과 같은 준거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의 신용상태, 차입기간, 담보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편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수신금리는 예금의 특성, 규모,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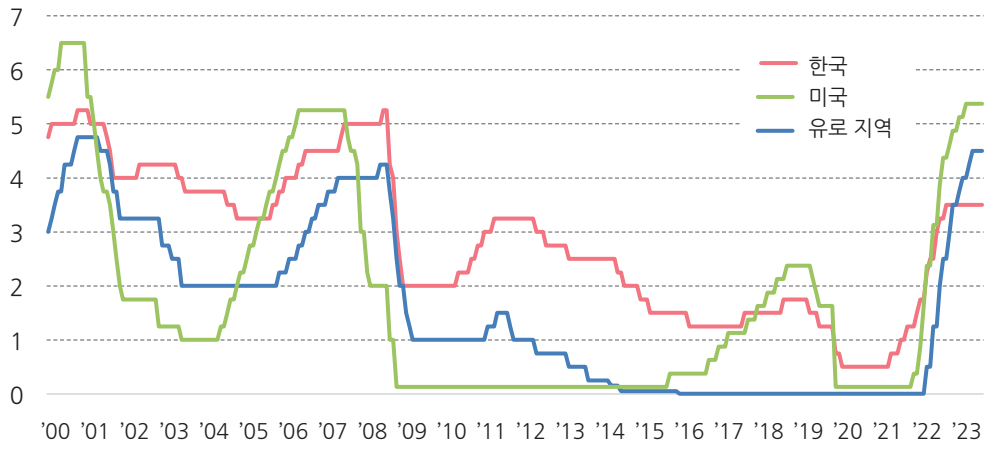
---

8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란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말한다.

9 여신이란 신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의미한다(예: 대출).

10 수신이란 신용을 받는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을 의미한다(예: 예금).

그림 1-4 |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단위: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❸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 경기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과열양상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침체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경제 전반에 다양한 경로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실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준금리 변경은 장단기 시장금리, 수신금리 및 여신금리 등에 영향을 주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등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에 영향을 주어 실물경제와 물가를 변동시킨다.

확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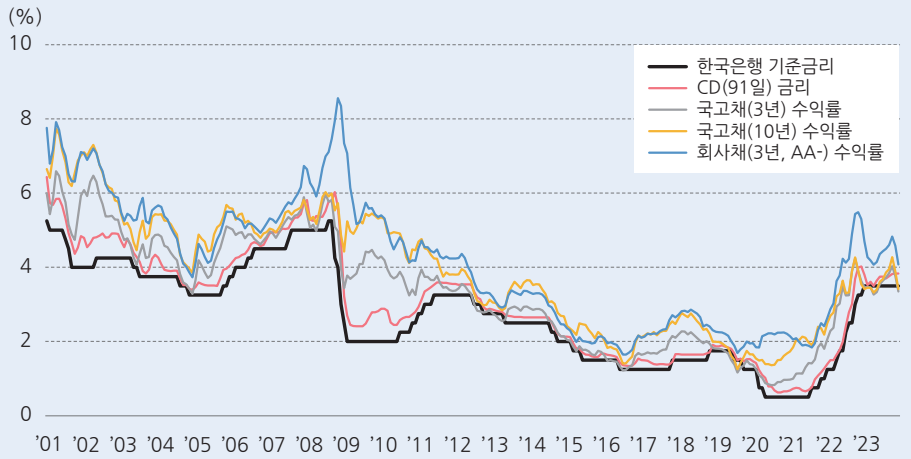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관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이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반면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금리이며, 특정 주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러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결과물이다. 그러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서로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 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 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소비, 투자 등에 영향을 미쳐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은 억제되고 저축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가계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경우 역시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기준금리를 완전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때로는 한국은행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한다.

그림 1-5 |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추이(단위: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확대보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12개의 지역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중 공개시장위원회는 7명의 연준이사회 위원, 뉴욕연준은행 의장 및 투표권이 있는 4개의 지역연준은행 의장으로 구성되는데, 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는 미 연준 기준금리(Fed fund rate) 목표수준을 결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공개시장조작을 명령하여 미 연준 기준금리가 목표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된다. 신흥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외화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신흥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수출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2 환율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석유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결제해야 한다.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격을 환율로 표시하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하면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2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하

그림 1-6 | **주요국 통화와 표시기호**

원(한국): ₩(KRW)



달러(미국): $(USD)



유로(유럽연합): €(EUR)



위안(중국): 元(CNY)



파운드(영국): £(GBP)



엔(일본): ¥(JPY)



고, 유로(euro) 환율이 1,400원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4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외국 돈 한 단위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달러를 환전하는 것, 즉 100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개당 1,200원인 상품을 100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율을 표시할 때는 외국 돈 1단위당 원화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환율은 일반적으로 1,200원/달러, 1달러당 1,200원, 1,400원/유로, 1유로당 1,400원 등으로 표시한다.[11]

1 환율의 결정과 변동

환율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외화의 수요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자본유출, 내국인의 해외투자,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하고, 외화 공급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자본유입, 외국인의 국내투자, 외국인의 국내여행 등에 의해 발

11 국제표준에 따른 환율 표기는 각국 통화를 알파벳 세 글자의 기호로 정하고(예: 한국 원화는 KRW, 미국 달러화는 USD), 기준통화의 기호를 먼저 쓴 후 비교되는 통화의 기호를 나중에 쓰는 방식을 적용한다(예: USD-KRW 또는 USD/KRW). 즉 'USD/KRW 1200'이라고 표기된 것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원화의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또는 '1200원/달러'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한다.

먼저 외화의 수요 측면을 살펴보자. 한국의 수입 증가, 국민들의 외국여행 증가,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외국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가령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환율 변동의 원인을 외화의 공급 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유입되면 외화의 공급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을 '원화 약세'라고 하고 환율 하락을 '원화 강세'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따라서 원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 원화 절하 등은 모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을 말한다.

확대보기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환율정책은 나라마다 그 결정방식이 다른데,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고정환율제도보다 빠르게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변

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 속도를 조정(smoothing oper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환율의 영향

환율 변화는 경제주체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부품 등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기계류 가격도 올라서 투자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때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예를 들면, 투기세력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환율은 크게 변동하게 된다. 이때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을 진정시킨다.

적용하기

환율 변동과 상품의 가격

환율을 이용해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을 계산하여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자. 국산품의 수출 가격은 국내 가격을 환율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환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 환율이 $1=1,200원일 때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6만원인 상품의 수출가격은 $ ① 이다.
  : 수출가격(달러) = 국내가격/환율 ⇒ (₩60,000)/(1,200₩/$) = $ ①
- 환율이 $1=1,200원일 때 국제 시장에서 $100인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 즉 수입가격은 ₩ ② 이다.
  : 수입가격(원) = 국제가격×환율 = $100×(1,200₩/$) = ₩ ②
- 만약 환율이 $1=1,200원에서 $1=1,250원으로 상승하면 $ ① 의 값은 $ ③ 로 바뀌고, ₩ ② 의 값은 ₩ ④ 로 바뀐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생기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 ① 50 ② 120,000 ③ 48 ④ 125,000)

3 주가

1 주식과 주식시장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인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

자[12]를 통해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라 하면 유통시장을 지칭한다. 주식이 유통되는 세계적인 거래소로는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 그리고 한국의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2 주가지수와 경기변동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어떤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index)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주식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놓고 그 시점의 시가총액[13]에 대비해 비교하려는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14] 지수 작성의 목적에 맞추어서 특정 종목군의 주식을 대상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면 특정 종목군의 주식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인지 하락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text{주가지수} = \frac{\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 \times 100$$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15]가 높아지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반대로 불경기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 주가지수는 하락한다. 따라서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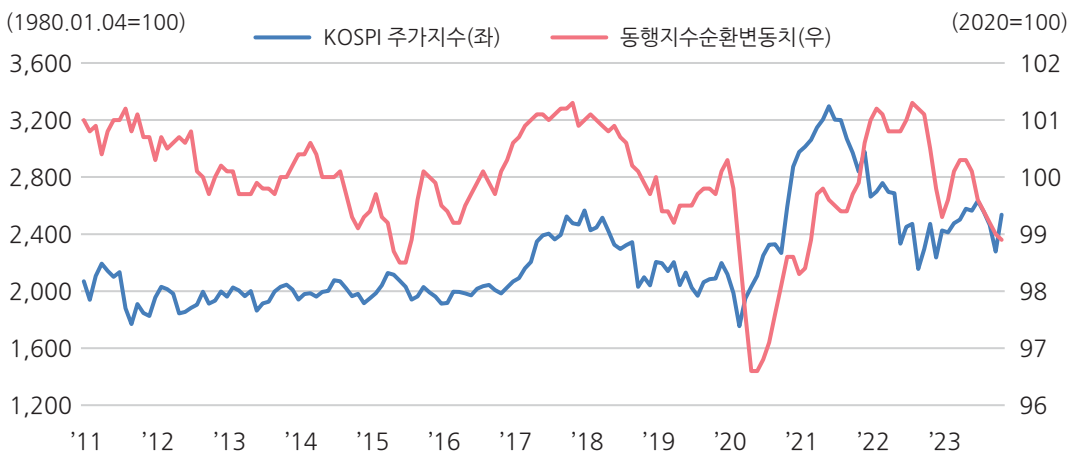
12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대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받아 자금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13 시가총액이란 발행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발행주식 수에 주식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14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원리는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15 신인도란 믿고 인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림 1-7 |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변동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또한 통화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투자도 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주가지수가 하락한다. 이 밖에도 주가지수는 국내의 정치상황이나 사회변동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3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1980년을 기준지수 100으로 했을 때와 비교한 지수이다. 현재 코스피가 2500이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시가총액이 1980년보다 25배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대표성이 있는 주식 200종목을 선정하여 별도로 주가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200(KOSPI 200)이다. 이 지수는 1990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이다. 코스닥지수(KOSDAQ Composite Index)는 코스닥시

확대보기

Bull Market과 Bear Market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호황을 보이는 시장을 Bull Market 또는 강세장이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은 Bear Market 또는 약세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어는 두 동물이 공격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는 반면 곰은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기 때문이라고 한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앞에 있는 황소와 곰 동상

장에 상장된 주식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6년에는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4년에 기준지수를 1,000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있다.

4 주요국의 주가지수

18세기에 출범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는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원래는 미국 기업들의 주식만 거래하였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500지수 등이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경제 전반에 걸친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는 단순가격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이다. 한편 S&P500지수(Standard & Poor's 500 Index)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대형주로 구성되며 미국 주식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미국의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은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전산으로 매매한다. 나스닥지수(NASDAQ Composite Index)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지수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지수(Nikkei Stock Average Index), 홍콩의 항셍지수(Hang Seng Index),[16]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Shanghai Composite Index) 등이 있다.

5 세계주가지수

세계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MSCI와 FTSE지수가 대표적이다. 먼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수, 산업별 지수 등 다양한 지수가 편제되고 있다. 전세계지수(ACWI: All Country World Index), 선진국지수(WI: World Index), 신흥국지수(EMI: Emerging Markets Index) 등이 대표적인데 한국은 신흥국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FTSE지수는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ternational에서 작성·발표한다. 선진지수(Developed Index), 선진신흥지수(Advanced Emerging Index), 신흥지수(Secondary Emerging Index) 및 프런티어지수(Frontier Index)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2009년부터 선진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16 참고로 홍콩H지수(HSCEI: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 50개를 선정하여 집계하는 주가지수이다.

확대보기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들

◈ 거래량과 거래금액

주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가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식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인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중요한 지표이다.

사람들이 사업실적이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수 세력이 크게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 변동성지수

금융시장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시장위험의 원천이 된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이다. 이 지수는 옵션가격결정이론을 토대로 산출된다. 옵션가격을 바탕으로 옵션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초자산가격(주가지수 등)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변동성지수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가지수 상승 시에는 변동성지수가 떨어지고, 반대로 주가지수 하락 시엔 변동성지수가 오른다. 이처럼 변동성지수의 상승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포지수'로 지칭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변동성지수로 미국의 VIX와 유럽의 VSTOXX 등을 들 수 있다. VIX(Volatility Index)는 미국 시카고 선물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S&P500지수 옵션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VSTOXX지수는 유럽의 대표 주가지수인 EuroStoxx의 변동성지수로 EuroStoxx50 지수의 옵션가격으로부터 산출된다.

그림 1-8 |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



[출처: FRED Economic Data, fred.stlouisfed.org]

학습내용 정리

- 경제활동은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한 국가의 경제는 생산 · 분배 · 지출의 과정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생산 · 분배 · 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화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 금융의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자금중개, 위험관리 수단 제공, 투자기회 제공 등이 있다.
- 금리는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가격으로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해지는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하며,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기준금리와 구분하여 부른다. 금리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 과열 시에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나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이면서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반대로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는 국가 간 수익률 차이뿐만 아니라 만기 시의 환율 변동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해외 투자의 경우에 만기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제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데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것이 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는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에는 코스피(KOSPI)가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생산 · 분배 · 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경제는 선순환을 하며 발전할 수 있다.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 금융이 하는 주된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2. 금리 · 주가 · 환율 등의 금융지표를 통해 우리는 실물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금융지표별 움직임에 따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연리 4.0%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물가상승률이 연 3.0%라면 실질금리는 약 _____ 이다.

2. 실제 경제성장률이 _____ 수준을 상회하는 과열양상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3.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_____ 시장이라고 한다.

3 O·X 문항

1. 국민경제의 순환은 생산, 분배, 지출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수출입이나 자본유출입 등의 활동은 세계경제의 순환을 구성한다. ( )

2. 실물거래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자금의 이전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금융거래의 경우 차입자 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미래에 회수할 것을 전제로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된다. ( )

3.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

제2장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2.1 금융상품

2.2 금융시장

2.3 금융회사

2.4 금융유관기관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속성을 살펴본다.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을 개발 · 운용 ·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유관기관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목표

- 주요 금융상품의 기본 속성을 구별할 수 있다.
- 금융시장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금융유관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한다.

생각열기

금감원, 상생 ·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7건 선정

금융감독원이 14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1호 사례로 7건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상생 · 협력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를 격려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수상 회사 대표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17개 상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이 돋보인 7개 상품이 선정됐다.

은행권 최초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준 ○○○○의 '○○희망대출', 코로나19 이자 지원 정부 정책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이 선정됐다.

영유아 보육 가정에 최고 연 6.5% 금리 제공하는 ○○○○의 '부모 급여 우대 적금', 임산부 · 출산 가구 · 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 ○○○○의 '아이키움 적금',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에 기부 시 세액 공제와 답례품 받는 제도) 참여자에 최고 연 4.3%를 제공하는 ○○○○의 '고향 사랑 기부 예 · 적금'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보험권에서는 취약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의 '상생 친구 어린이 보험', 출산 · 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의 '출산 육아 시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이 선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 · 협력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권역에서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상식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3. 6. 14.]

-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는 무엇일까?
- 금융시장에는 어떤 금융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금융회사는 항상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할까?
-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 용어 정리

금융상품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과 관련된 상품으로, 다양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연금 등을 말함

금융시장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로서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곳

직접금융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주식, 채권 등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

간접금융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개입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

발행시장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

안전성

금융상품에 투입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정도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수익성이 낮음)

수익성

금융상품에 자금을 투입하여 높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의 정도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안전성이 낮음)

유동성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투자성

금융상품에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예: 주식은 투자성이 있음, 예금은 투자성이 없음)

2.1 금융상품



일반 시장에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금융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과 관련된 상품으로, 다양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절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살펴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상품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로 제시할 자산이 있느냐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 가입자의 사고 경력이나 나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서는 찾기 어려운 점이다.

1 저축상품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1]을 기준으로 보면 저축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저축은 목적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목돈을 불려나가는 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아주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나 송금이 자유롭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안전성은 리스크가 낮은 것을, 수익성은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을, 유동성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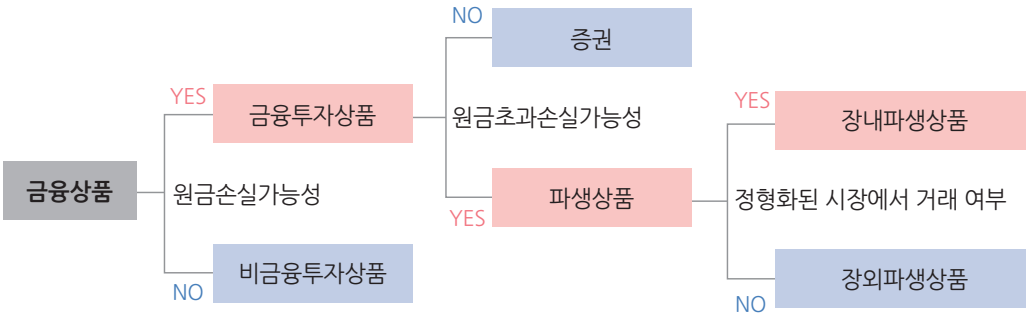
2 대출상품

대출이란 돈이 필요한 가계나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융회사가 이자를 받는다. 대출상품은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과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3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투자에 대한 성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고,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는 파생상품 등이 있다.

그림 2-1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4 보험상품

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상품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있다. 또한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그 외에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 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5 연금상품

연금상품은 저축이나 투자상품처럼 구조면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개인이 금융시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은 세액공제[2]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 비과세[3]하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상품의 공통적인 특성은 유동성이 매우 낮게 설계된다는 점이다. 노후 준비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연금상품의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이다.

2 세액공제란 납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액 중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한다.

3 비과세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2.2 금융시장



1 금융시장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부가 공급자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되며, 거래되는 상품은 쌀 · 콩 · 채소 · 과일과 같은 농산물이다. 금융시장에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이 있다. 금융시장이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로서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자금수요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한다. 특히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한다. 가계도 자동차나 주택 구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득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 역시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이 밖에 외국도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자금의 공급자는 본인들의 수입이나 소득이 지출보다 큰 사람들로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증식시키려고 한다. 이들은 저축뿐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매매차익을 얻고자 한다.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1 직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 등 자금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 공급자가 매수하여 자금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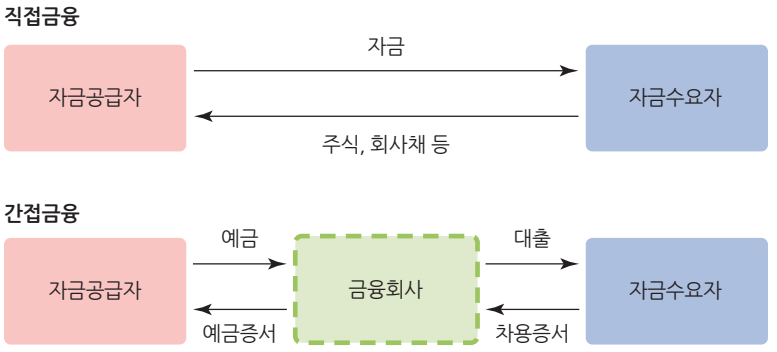
동시키는 방법이다.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사채(채권)는 기업이 일정기간 후(만기)에 정해진 액면금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직접금융은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 그러나 주식의 발행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회사채의 발행은 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발행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정부도 직접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 간접금융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간접금융의 자금거래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단계로 자금 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증서 등을 내어 주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금의 수요단계로 금융회사가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차용증서를 받는 단계이다.

그림 2-2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계약의 성격이 변화된다는 점이다. 직접금융의 경우에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주식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반면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예금자와는 예금계약을 맺고 대출자와는 대출계약을 맺게 된다. 예금과 대출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인 것은 자명하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으며, 부도위험이 높다. 이처럼 간접금융의 과정에서 금융계약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자산변환(qualitative asset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변환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만기의 차이에 따른 금리위험, 유동성의 차이에 따른 유동성 위험 및 부도 위험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된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4]

확대보기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수익은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지불하는 예금이자와 예금으로 받은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받은 대출이자 간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비이자수익은 수수료수익이라고도 하는데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증빙서류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송금수수료, 문자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이자수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은행의 업무 특성상 전통적 업무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은행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과거 저금리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는 이자수익이 줄어들다가 최근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4 참고로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총이자 수익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부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유가증권 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익성지표이다.

3 금융시장의 종류

1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과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란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갚아야 하는 기한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Call),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등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콜시장은 금융회사 상호간에 자금과부족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초단기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콜거래는 최장 90일 이내로 만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거래물량의 대부분을 익일물[5]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양호한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기업어음은 기업 등 발행자가 자기신용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자금공급자에게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권으로서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기업어음과 마찬가지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발행금액 및 기간,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도,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장기금융시장은 자금수요자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발행 또는 유통되는 시장이다. 장기금융시장은 보통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과 만기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5 익일물이란 돈을 빌린 다음 날 갚는 만기가 하루인 금융상품을 말한다.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이 있는데, 만기가 정해진 상품일지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시장가격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시장에서도 인기가 없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식이나 채권은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다. 이와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유통시장은 다시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이 일정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집중되고 가격 및 거래정보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며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장외시장은 특정한 규칙 없이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거래소시장을 운영하여 증권과 파생상품 등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형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에 주식 · 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증권시장 등 3곳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파생상품 등이 모두 거래되고 있다.

장외시장은 주로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와 매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기사읽기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큰 폭 증가 … 2경5000조 달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금융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전년(1경8146조원) 대비 35.3% 증가한 2경454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상품별로는 통화 관련 거래가 1경7030조원으로 69.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1경3776조원)보다는 3254조원(23.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117조원에서 7206조원으로 약 75% 증가했다.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94조원에서 9.8% 늘어난 213조원으로 파악됐다. 신용 관련 장외파생상품은 18조원에서 48조2000으로 167.8%나 폭증했다.

금융권역별 거래규모는 은행(1경8134조원)이 7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증권 5040조원(20.5%), 신탁 1167조원(4.8%)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사 헤지 수요 확대로 이자율스와프(3063조원), 통화선도(2833조원) 거래금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미디어펜, 2023. 6. 15.]

2.3 금융회사



1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의 요구에 맞춰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금융회사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구분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취급기관	우체국보험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기타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기술사업금융사) 등	

2 은행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1 은행의 업무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구분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6] 및 내·외국환이다. 부수업무는 이와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채무보증,

6 어음할인이란 어음을 만기일 전에 남은 이자의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인수, 상호부금,[7] 보호예수[8] 등이 있다. 겸영업무는 다른 업종의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 등이 있다.

2 은행의 종류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전후 복구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확대보기

은행의 기원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공업자로부터 은행이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에는 금이 부

7 상호부금이란 적금과 비슷하게 돈을 납입하여 만기 시 돌려받는 제도이나, 일정 회차 이상 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차이가 있다.

8 보호예수란 유가증권, 예금증서, 귀중품 등을 은행이 맡아 보관하는 일을 말한다.

피와 무게 제약으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간혹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말썽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는데, 이는 금 세공업자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람들이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자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가 자신들의 금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금 세공업자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이 된다.

이처럼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여 대출하는 순간 은행가(banker)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맡아둔 금보다 더 많이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금 세공업자들의 경험에 따라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된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예금통화의 크기가 결정된다. 100만원의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도 된다면 9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현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다시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인 9만원만 남기고 81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81만원을 예금으로 받은 세 번째 은행은 8.1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해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 최초의 100만원 현금 예금이 900만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금통화 창조 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가 된다.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의 통화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A은행	B은행	C은행	합계
화폐발행	100				100
예금		100	90	81.0	1,000
지급준비금		10	9	8.1	100
대출		90	81	72.9	900

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1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은 제한된 자본을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에 주로 공급하였다. 그 결과 서민들은 사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빌려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금융은 부실경영 등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여 전문적 서민 금융회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전문적 서민 금융회사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 총여신(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본점 소재지 기준)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한다.

2 상호금융

직장·지역 단위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어민 협동조합인 지역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상호금융이라고도 한다.

3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은 농어촌 등 민간 금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원리금을 국가가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다.

4 보험회사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담당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분리된 보험으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2 보증보험

보험회사 중에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회사도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보증보험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시스템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조합주택시공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 등을 담당한다.

3 재보험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재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코리안리가 있다.

5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1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

표 2-2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종류	내용	예
투자매매업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 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 · 인수 또는 권유 · 청약 · 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 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 · 인수 또는 권유 · 청약 · 승낙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9]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 ·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9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자금의 관리와 처분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다. 즉, 은행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대출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에 근거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펀드의 투자수익률은 투자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전략,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3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방문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이 서비스에 이름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6 기타 금융회사

1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과 지주회사[10]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회사,

10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이상 은행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비은행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보험지주회사) 등 10개가 있다(2023년 기준).

2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회사 중에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회사(리스[11]),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여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다.

❶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 회사는 대표적인 여신전문 금융회사인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수수료와 이자소득으로 수입을 올린다.

❷ 리스회사

리스회사(시설대여회사)는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한다.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나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를 이용한다.

❸ 할부금융회사

할부금융은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상품구매액을 초과

11 리스란 기계, 설비, 기구 따위를 임대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하는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부금융 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대부업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대부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부업의 투명성 확보와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부업은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양성화되었다.

2.4 금융유관기관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자

리잡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그리고 시스템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12]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보다 넓은 개념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금융회사의 취급 업무를 사후 교정적인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하여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를 통해 금융회사가 업무 현장에서 규제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검사와 병행하여 상시감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조사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각종 업무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 정보력 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12 공시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를 게시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다. 화폐의 발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또한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의 개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평가, 지급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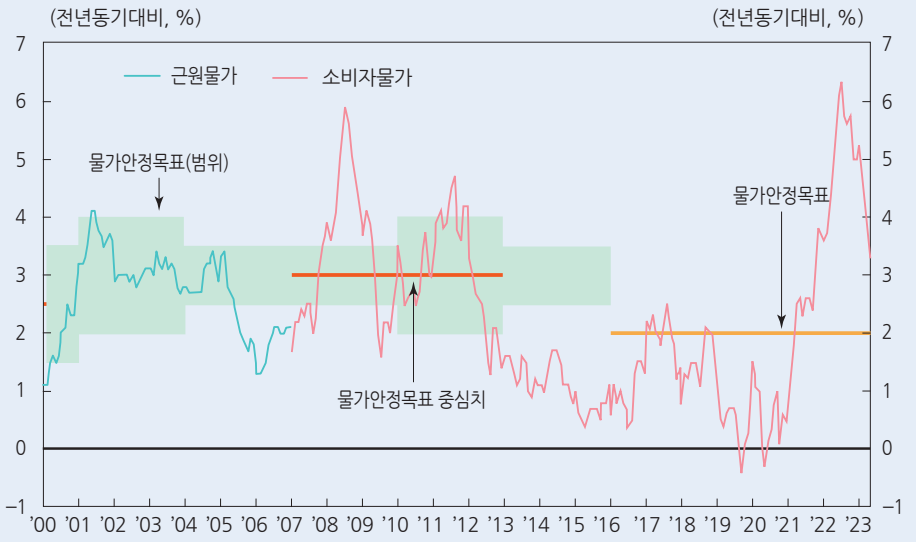
확대보기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그림 2-3 |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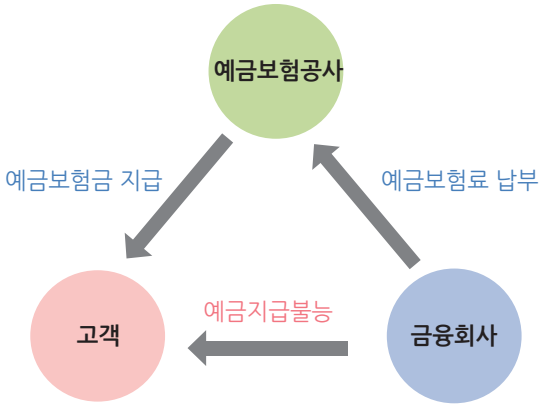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경영분석 등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림 2-4 | 예금보험의 운영구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며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상호금융에 해당되는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각각의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통시장의 중심으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

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 한국거래소의 설립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13]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조직은 경영지원본부, 3개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및 시장감시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하고 회원 및 투자자,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대일 심층 상담으로 채무와 신용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에게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프리워크아웃 제도[14]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법원과의 업무연계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채무재조정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13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시장을 말한다.

14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6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설립되어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고용·복지 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결합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1397 통합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은 휴면예금인데 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7 금융업권별 협회 등

1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은행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2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하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보험업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구,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3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손해보험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한다.

4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비상장주권 등의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6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법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 예탁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는 등 저축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사·연구, 저축은행 간의 업무 협조와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저축은행 보유·매출 어음의 매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학습내용 정리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출상품, 저축상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직접금융은 기업 등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며, 간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산변환이 발생한다.

-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거래되며, 장기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주식 등이 거래된다.

-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 보험회사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다.

-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의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의 업무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모든 업무를, 어떤 금융회사들은 이 중에 일부만 특화하여 영업을 한다.

- 금융회사 중에서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처럼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금융감독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유관기관이 존재하는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업권별 협회 등이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2. 은행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3.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금융상품은 투자한 원금의 _____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2. _____ 은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3.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_____ 과 주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눌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O·X 문항

1.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
2. 거래소시장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에 대한 특별한 규칙 없이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 )
3.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간에 주고 받는 자금 규모, 기간 등 자산변환이 발생한다. ( )

제3장

저축의 이해

3.1 소득과 지출

3.2 저축과 돈의 가치

3.3 저축상품

3.4 예금자보호제도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소득, 지출, 저축 간의 관계와 이자, 인플레이션 및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축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금융상품 중 저축상품의 종류별 특징을 학습하고,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 소득, 지출, 저축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자, 인플레이션, 세금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저축상품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기성세대 코로나에 지갑 닫을 때, 20대 초반 지출 2.8배 급증

대학생 ○○○씨는 지난 5개월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최근 유행한 '○○운동화'를 31만원에 샀다. 발매가 13만9000원에 17만원이 넘는 웃돈을 붙여 산 리셀(되팔기) 상품이지만, 그에게는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지금은 고가의 가방을 사기 위해 비상금을 저축하는 중이다. 그는 "또래의 인플루언서를 보면 달마다 고액의 개인 강습(PT)을 받고, 일주일에도 몇 벌씩 명품 옷을 산다"며 "일반 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때 대부분의 세대가 지출을 줄인 것과는 달리, 20대 초반 세대는 소비·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보다는 가치에 무게를 두는 그들의 소비 성향이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중략)

여기에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대 초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품 등 고액 소비 행태를 다른 세대보다 더 쉽게 접한다. 유튜브에선 '수능 끝난 고3의 1500만원 쇼핑 브이로그(Vlog)', '20살 대학생 1000만원 생일선물 쇼핑 브이로그' 등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국내 평균 소비 수준이 고가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높아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35.3%)과 '자기만족'(24.7%) 등을 꼽았다. 20대 동료가 다수인 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1) 씨는 "10년 전 대학생까지만 해도 향수를 산다면 거리에 있는 올리브영 등에서 사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백화점의 ○○○·○○○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향수를 구매하고 선물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20대의 소비지출이 커진 것은 청년 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서 물가가 급등한 탓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숙박 분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6%를 기록했다. 교통(9.7%), 식료품(5.9%), 의류·신발(3.1%)도 가격이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들의 '체감 고통지수'가 높다면서 "올해(2023) 청년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부문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생활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다. (후략)

[출처: 중앙일보, 2023. 3. 14.]

-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면 저축은 어떻게 될까?
- 가계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핵심 용어 정리

저축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여 자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행위

경상소득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들어오는 소득

경상지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나가는 지출

가처분소득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함

명목소득
물가변동에 따른 구매력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화폐의 액면가치를 그대로 나타내는 소득

실질소득
물가변동을 반영한 소득으로,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함

단리
일정한 시기에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복리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원금과 이자의 합산금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요구불예금
언제든 예금자가 청구하면 금융회사가 바로 내어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성예금
이자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예금의 납입과 인출방법에 대한 특정조건이 부여된 기한부 예금

3.1 소득과 지출



1 소득

1 소득의 정의

소득은 일정기간 가계 내로 들어와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 총량을 의미한다. 가계 내로 유입되는 화폐를 지칭할 때 흔히 소득과 수입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자산 증가 여부에 따라 소득과 수입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계 내에 유입되는 모든 화폐를 의미한다. 즉 수입에는 가계 내 화폐가치 총량은 변화시키지 않고 자산 보유형태만 변경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득보다는 수입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급여나 정부보조금은 가계로 들어와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에 해당되고 수입에도 해당된다.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나 주택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은 자산의 형태만 예금과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바뀔 뿐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수입에 포함되고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득의 유형

소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소득은 소득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소득유입이 규칙적인지 여부,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❶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소득은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이전소

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 프리랜서 작가가 받은 사례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작용한다.

재산소득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 화폐자산 등을 생산자본으로 제공한 대가로 얻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의미한다. 자산 이용에 따른 대가로 얻는 재산소득은 자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소득원이 된다. 이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소득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소득의 원천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역량, 생산요소의 성질, 경기변동 등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계에 유입되는 화폐가치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소득의 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전소득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이전소득에는 공공부문에서 가계로 이전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조급여나 재난지원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적 부문에서 사인 간에 이전되는 상속,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❷ 경상소득과 임시소득

경상소득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입되는 소득이다. 경상소득은 주로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여, 상여금 등을 의미하는데, 주기에 따라 일주일이나 하루 단위도 될 수 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다. 경상소득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출 또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임시소득은 소득의 유입이 규칙적인 주기가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경상소득이라고도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퇴직금, 특별상여금, 경조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임시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소득액도 불확실하므로 지출 또는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임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보다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미래 준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❸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물가수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화폐 액면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을 명목소득이라고 한다. 만일 급여통장에 찍힌 소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면 소득이 50만원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50만원은 명목소득상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명목소득의 증가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즉 같은 기간 물가 변동이 전혀 없다면 명목소득 변동폭만큼 구매력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체제에서는 항상 물가가 변동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명목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해도 실질적인 구매력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소득의 개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나누어 산출[1]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 명목소득이 일정해도 물가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하락하고 물가가 내려가면 구매력이 상승하는데, 실질소득은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에서 120으로 올랐다면 과연 실질소득도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목소득은 3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실질소득은 약 275만원(= 330만원/120×100)으로 오히려 25만원 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질소득 개념을 적용하면 명목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매력 측면에서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❹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은 소득 중에서 소비성 지출을 하거나 저축 또는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과 같이 우리가 임의로 지출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유형의 지출을 가리켜 비소비지출이라고 한다. 얼마를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얼마를 저축이나 투자에 배분할지를 결정하여 지출 및 저축·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득보다

1 수식으로 표현하면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이다.

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지출

1 지출의 정의

우리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데,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경제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소비의 수준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실제로 소비하는 수준에 대해 측정할 때, 시장거래를 통해 얻은 재화나 서비스라면 화폐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효용 중 많은 부분은 가계에서 직접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한 결과물(예: 세탁된 빨래, 청소된 방)이나 화폐가 아닌 형태로 지급이 되는 근로자 편익(예: 휴가여행에서 사용하는 숙박권, 건강검진을 위한 바우처 등) 등으로부터 나오기도 한다. 또한,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경우라면 장기간에 걸쳐 소비가 이루어져서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소비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소비보다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 등에 지불한 화폐금액인 지출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지출의 유형

지출은 가계가 재화나 서비스를 통한 효용을 얻기 위해 가계 외부로 화폐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계 내로 유입되는 화폐를 의미하는 수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인 지출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❶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지출은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가계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소비지출 비목은 국가

별로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은 소비지출을 12대 항목(식료품 · 비주류음료, 주류 · 담배, 의류 · 신발, 주거 · 수도 · 광열,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 문화, 교육, 음식 · 숙박, 기타 상품 · 서비스)으로 분류한다.

앞서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는데, 통계청은 비소비지출을 세금(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❷ 경상지출과 임시지출

지출은 지출주기의 규칙성에 따라 경상지출과 임시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지출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로서 식료품비, 의류비, 통신비 등 일정한 주기로 규칙성 있게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임시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지출을 의미하며,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접대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❸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지출은 지출금액을 정할 때 가계의 의도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에 따라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한다. 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하면 실용적이다.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지출액을 변경하기 어려운 지출을 고정지출이라 하는데, 월세, 세금, 이자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변동지출은 필요에 따라 의도에 맞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식료품비, 교양 · 오락비 등과 같은 지출을 의미하며, 임의지출이라고도 한다. 만약 가계에서 지출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정지출보다는 융통성이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변동지출 항목의 지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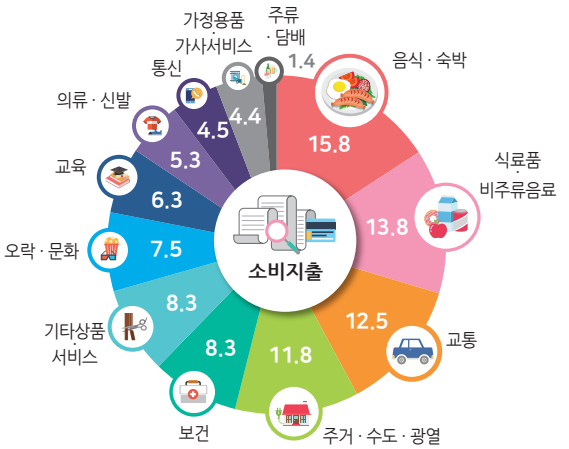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9.3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근로소득이 63.2%, 사업소득이 19.3%, 재산소득이 0.8%, 이전소득이 15.0%를 차지하였다. 지출은 365.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269.1만원, 비소비지출은 96.2만원이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383.1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숙박이었고, 다음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비, 주거·수도·광열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현황

구분	금액(만원)	구성비(%)
소득(A)	479.3	100.0
경상소득	471.3	98.3
근로소득	302.8	(63.2)
사업소득	92.7	(19.3)
재산소득	4.0	(0.8)
이전소득	71.8	(15.0)
비경상소득	8.0	1.7
지출	365.2	100.0
소비지출	269.1	73.7
비소비지출(B)	96.2	26.3
가처분소득(A-B)	383.1	-
가구원 수(명)	2.27	-
가구주 연령(세)	52.5	-

그림 3-1 |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단위: %)



[출처: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8. 24.]

4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상품구매 단계별 전략

우리는 소득 가운데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소비하지 않고 남겨 둔다. 이때 소득에서 소비하지 않은 부분을 저축(saving)이라 하며, 저축행위의 결과물이 장기간 축적되면 자산을 이룰 수 있다. 단기간의 한정된 시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앞으로 전개될 생애주기 전반의 흐름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통해 자원을 잘 관리해야만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있다. 소비는 선택과 사용의 단계를 포함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사용까지 포괄한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보유한 자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합리적 소비는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매단계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1 구매 전 단계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예산(budget)을 작성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상품구매 이전에 욕구(want)와 필요(need)를 구분하여 욕구보다는 필요에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정보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정보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탐색할 때는 인터넷쇼핑몰 간의 상품 가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매 경험을 공유하는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안, 구매비용 및 사용 가능한 자금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소비를 결정해야 한다.

2 구매 단계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는 구매시점, 구매장소, 결제방법을 포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합리적으로 구매시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계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중, 주말에 따라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알아본다.

구매장소는 크게 오프라인 구매와 온라인 구매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매는 주로 백화점, 일반 소매점, 창고형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한 구매이며, 온라인 구매는 인터넷몰, 홈쇼핑, 모바일앱 등을 통한 구매이다.

결제수단으로는 현금을 지불하거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일시불과 할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할부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나 이자부담 발생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에 비해 충동구매나 과소비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구매한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지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구매나 해외직구와 같은 편리한 상거래수단이 증가하면서 구매 단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특성상 구매단계에서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일방적인 광고나 판매조건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배송된 물품이 판매조건과 다르거나 물품대금을 이중청구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교환과 환불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구매 후 단계

상품을 구매한 후 잘 관리하는 것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오래 사용하는 내구재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소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물건을 사용한 후 어떻게 처분하는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확대보기

비합리적 소비

◈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밴드웨건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논문(Bandwagon, Snob,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1950)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유래하였다. 밴드웨건은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운송수단인 포장마차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금광이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서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즉,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모임 등의 소비를 따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소비트렌드나 유행을 좇아가거나,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모방소비도 여기에 해당한다.

◈ 양떼효과(Herd effect)

군중심리에 의한 동조소비를 의미하는 양떼효과(Herd effect)는 밴드웨건 효과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양떼효과는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지기 싫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비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소외되기 싫어 그 행동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 스놉효과 (Snob effect)

스놉효과는 속물효과라고도 하며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려는 소비행동'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특별한 의상이나 한정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진귀한 예술품이나 희귀한 스포츠카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 행동이 포함된다. 사치스럽더라도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가치판단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아니다.

◈ 베블렌효과 (Veblen effect)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렌은 인간의 소비행동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과시소비를 주장하였다. 그는 1899년에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류층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주장하였느데, 베블렌효과는 상류층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몇몇 명품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인간의 과시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저축과 돈의 가치



1 저축

1 저축의 개념

저축은 소득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며,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왜 소득을 다 소비하는 데 쓰지 않고 남겨 둠으로써 저축이라는 행위를 하는가? 저축의 동기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및 교육, 주택 마련, 은퇴 이후 노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의 소득을 다 써 버리지 않고 축적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경우 위험요소가 되는 실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 저축을 하기도 한다. 셋째,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

은 욕구와 관련이 있는 상속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들 수 있다.

2 저축과 투자의 차이

본래 '아껴서 쌓아두다'라는 저축(貯蓄)의 개념 속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자도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얻어 소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얼마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다. 투자 시점에 예상하는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반영된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며 투자결과에 따른 최종 수익률을 실현수익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축의 경우에도 예금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는 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저축과 이자율

우리는 현재소득을 현재시점에서 당장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인내하여 미래시점으로 소비를 지연하는 대가로 이자를 기대한다. 현재의 소비에서 얻는 확실한 효용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미래시점으로 소비를 연기할 때에는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전제로 시장에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정해진다.

이자율은 현재의 효용을 미래로 연기하는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자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2 단리와 복리

저축한 원금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가 계산된다. 이렇게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원리합계 금액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단리(simple interest)와 복리(compound interest)가 있다.

1 단리

단리는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합계를 계산한다. 즉 하나의 단위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지 않아 최초의 원금에서만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는다. 단리의 식은 다음과 같다.

$$A = p \times [1 + (r \times n)]$$

이때 A = 원리합계
p = 원금
r = 단리 이자율(연이율)
n = 저축기간(연단위)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을 연 5%의 단리 이자율로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원리합계는 150만원(=1,000,000×[1+(0.05×10)])이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원리합계는 원금이 많을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2 복리

복리에 의한 원리합계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의 이자가 발생한다. 장기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복리의 위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금과 이자가 매년 모두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되는 복리식은 다음과 같다.

$$A = p \times (1 + r)^n$$

이때 A = 원리합계
p = 원금
r = 복리 이자율(연단위)
n = 저축기간(연단위)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을 연 5%의 이자율로 10년 동안 복리이자를 받는 것을 가정하면 원리합계는 162만 8,895원($=1{,}000{,}000 \times [1+0.05]^{10}$)이 된다. 복리를 적용할 경우에도 단리와 마찬가지로 원금액이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기간이 길수록 원리합계가 늘어난다. 하지만 복리를 적용할 경우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합계가 단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원금과 이자율이 같은 저축이라 하더라도 이자 계산방식에 따라서 원리합계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3 단리와 복리의 효과 비교

다음 〈그림 3-2〉는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원리합계가 10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100만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 단리는 300만원이 되지만 복리는 710만원이 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즉,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면 복리가 단리보다 유리하다.

〈그림 3-3〉은 100만원을 3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일 때, 원리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이자율이 연 4%에서 연 8% 및 연 12%로 되었을 때, 단리의 경우 순이자는 120만원에서 240만원 및 360만원으로 단순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순이자는 224만원에서 약 4배인 906만원, 다시 약 13배인 2,896만원이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단 1%포인트의 이자율 차이도 적지 않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2 | 저축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연이자율 4%로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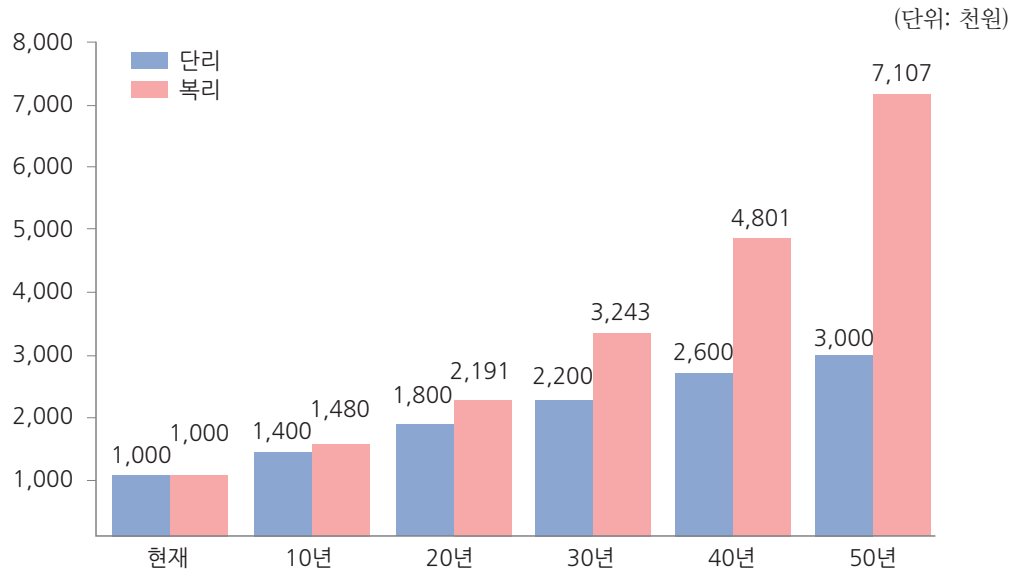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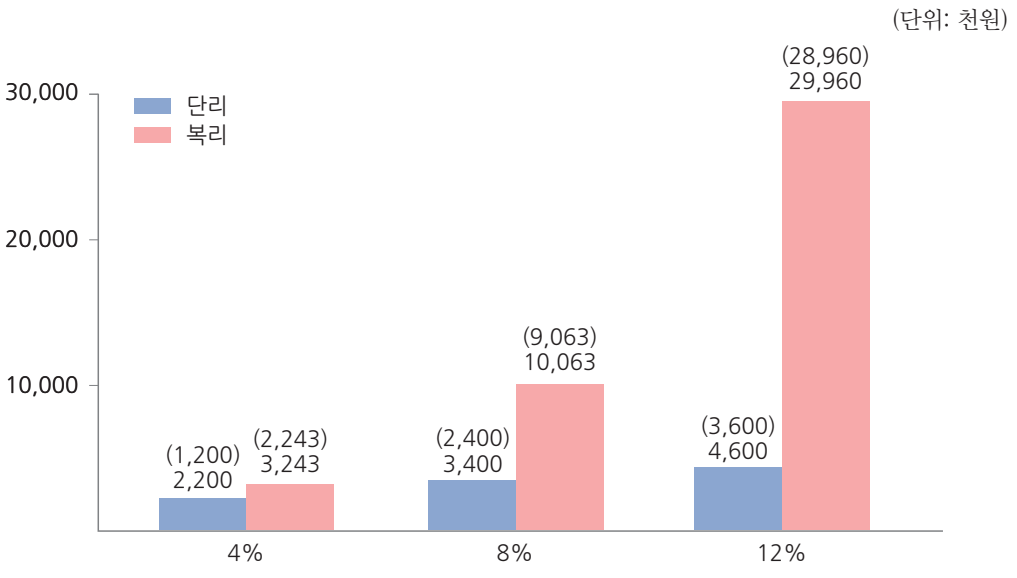


그림 3-3 | 이자율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30년 저축)



( ) 안은 원금을 제외한 순이자

확대보기

72의 법칙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72}{\text{금리}(\%)} = \text{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년)}$$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원금의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답은 14.4년이다. (72/5=14.4)

72의 법칙은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답은 연 7.2%이다. (72/10=7.2)

이처럼 72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자금운용기간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4 금리 변동의 영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액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장기간 저축을 할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30년 후 필요한 노후자금이 5억원이라고 할 때, 복리를 적용하여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경우, 이자율에 따라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자.[2] 〈표 3-2〉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저축액이 1,191,531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거의 절반인 600,775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매월 저축액이 143,063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저축액은 금리가 낮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은 무시하였다.

표 3-2 | 이자율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단위: 원)

이자율	1%	2%	3%	5%	7%	10%	12%
월 저축액	1,191,531	1,014,764	858,020	600,775	409,846	221,191	143,063

이번에는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5억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액씩 찾아서 노후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하고, 복리를 적용할 때 이자율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표 3-3〉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인출액이 2,299,472원, 2%라면 2,529,417원이 되고, 5%인 경우는 3,299,779원씩을 찾아 쓸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표 3-3 | 이자율에 따라 5억원을 20년간 매월 찾아 쓸 수 있는 금액(단위: 원)

이자율	1%	2%	3%	5%	7%	10%	12%
월 인출액	2,299,472	2,529,417	2,772,988	3,299,779	3,876,495	4,825,108	5,505,431

그런데,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물가상승률도 높고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물가상승률도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목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고 노후에 목돈을 찾아 쓸 때 월 인출액도 많을 수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높다면 화폐 단위당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수준이 지속하여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동일한 금액의 화폐로 구매 가능한 상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한 만큼의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져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저축과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와 투자수익도 물가상승분만큼 실질가치가 감소함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표면상의 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금리(예: 저축 이자율 5%)를 말한다.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구매력을 고려한 금리인데, 다음과 같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는 간단한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text{실질금리} = \text{명목금리} - \text{물가상승률}$$

예를 들어,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데, 연 물가상승률이 3%라면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뺀 연 1%에 불과하게 된다. 만일 이 때 연 물가상승률이 5%라면 실질금리는 −1%가 되어 1년 후 원리합계 금액의 구매력이 현재 원금의 구매력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방어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연계되어 결정되거나 물가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상품 등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저축상품을 통해 소비를 현재시점에서 미래시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물가상승률이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월 1일에 100만원인 상품 가격이 12월 31일에는 225만원으로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에 100만원을 연이자율 100%로 저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12월 31일에 원리합계는 200만원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효용을 포기하고 미래시점으로 효용을 얻기를 연기하였음에도 더 적은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즉, 명목금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물가변동과 관련한 경제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디플레이

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물가수준이 지속하여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구매력이 상승하며, 그에 따라 화폐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발행하고 디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도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저축과 세금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세금부담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를 합하여 총 15.4%가 원천징수된다. 단, 이자소득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더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상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세부 사항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므로, 가입자격과 가입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축의 결과로 얻는 이자소득 중에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금을 제외한 후 소득이므로 적용 세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세가 되는 상품을 찾아보고 저축 계획을 세울 때 세금의 영향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확대보기

다양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

① 예탁금: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다(지역 농·축협, 지구별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만이 해당되며, 저축은행은 미해당).

② 생계형저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일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천만원씩 누적한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및 재가입도 가능하다. ISA를 통해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투자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기준)된다.

④ 장기저축성보험: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3]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3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3.3 저축상품



1 저축상품의 개요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이다.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을 비롯하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등이 있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1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예금자가 '요구'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예금자 입장에서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 돈을 불려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보다 자금을 보관하려는 목적이 더 클 때 활용한다. 요구불예금의 특징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몰라 항상 돈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자 입장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낮은 이자를 수용하고 이용한다.

2 저축성예금

저축성예금은 이자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 납입방법과 인출방법에 대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 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므로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성예금에는 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정기적금과 목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서 더 불어나게 하는 정기예금이 있다.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볼 수 있다.

3 저축상품 가입

저축상품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므로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소위 '대포통장'은 불법이며, 이를 빌려주는 측과 빌려서 사용하는 측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상황을 이용하여 통장을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등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솔깃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이다.

2 저축상품의 종류

1 요구불예금

①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일반적으로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보통예금은 예금자가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생활자금과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②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잔액(또는 당좌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이자는 없으며 가입대상은 신용과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구체적인 거래대상 기준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③ MMDA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이면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일시적인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확대보기

MMF와 CMA

MMDA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MMF와 CMA가 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콜(call)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MMF의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투자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이 붙는다는 것이다. 다만, 계좌의 이체와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기능이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표 3-4 | MMDA, MMF, CMA 비교

상품명	취급금융회사	예금자보호	이율	이체 및 결제
MMDA	은행	보호	확정금리	가능
MMF	은행, 증권사	비보호	실적배당	불가능
CMA	종금사, 증권사	종금사만 보호	실적배당	가능

2 저축성예금

1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이다.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만기 이전에 해약할 경우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동성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정기예금 중에는 정해진 금리가 아니라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이자를 주는 상품도 있다. 이는 가입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이다. 가입기간은 3년 이내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 이자지급식 등이 있고, 이자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세금리에 연동된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2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는 저축성예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가 있다. 이를 CD

그림 3-4 | 양도성예금증서 견본



(certificate of deposit)라고 하는데, 최소 발행단위가 1,000만원이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액면 금액보다 할인되어 발행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❸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액적립식 상품과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주택마련 등 특별한 목적으로 특정 집단만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 수 있다.

정기적금 역시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치기간이 길수록 고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 많지만, 만기 이전에 해약하면 약정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

❹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2009년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출시되었다.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개

표 3-5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 이율(2024년 기준)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시부터	연 3.1%	연 3.1%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표 3-6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2023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청약가능 전용 면적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서울 · 부산	300	600	1,000	1,500
그 밖의 광역시	250	400	700	1,000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	300	400	500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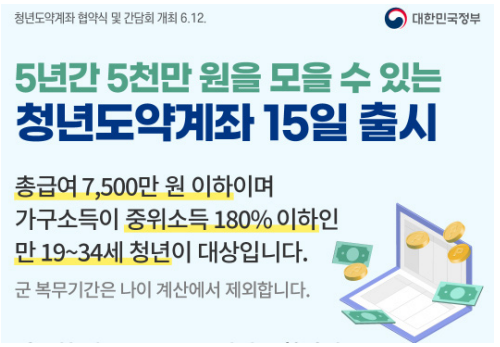
설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소유 ·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하다. 약정이율은 최대 2.8%이며,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이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당해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3 청년층을 위한 저축상품

청년층을 위한 저축상품들은 가입 조건, 적용 이율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가입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소 뉴스 보도나 신문기사 등을 관심있게 지

그림 3-5 | **청년도약계좌 홍보자료(2023년)**



자세한 내용은 11개 은행에서 확인해주세요.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	1588-9999	부산	1588-6200
신한	1577-8000	대구	1566-5050
하나	1588-1111	광주	1588-3388
우리	1588-5000	전북	1588-4477
농협	1661-3000	경남	1600-8585
기업	1588-2588	-	-

※ 2024년부터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

켜보다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저축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입하여 재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토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청년층 대상 저축상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단, 가입하고자 하는 시점에 가입기한, 가입자격, 금리조건, 혜택 부여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새롭게 출시된 더 유리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❶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❷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축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에 은행 이자에 더하여 추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 한다.

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 근로자인 청년세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상품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금액 기준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저축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우 1.5%p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표 3-5〉 참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한다. 가입한 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저축상품 활용 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 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❶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신용을 축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지면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❷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활용하기(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메뉴인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할

그림 3-6 |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수 있다.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을 선택할 때, 수많은 금융상품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군을 찾을 수 있다.

❸ 예 · 적금은 만기에 바로 찾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만기까지만 한정되어 적용되며, 만기일이 지난 후부터는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약정금리가 5%라면 만기까지는 당연히 5%가 적용되지만, 만기 이후부터 0.5%와 같은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한 후에도 예 · 적금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바로 찾아서 더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❹ 알림 서비스 이용하기

은행은 정기 예 · 적금의 금리 변동 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 · 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❺ 수수료 절약하기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창구를 이용하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발생한다.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또한, 대체로 은행별로 급여이체, 각종 요금 정기이체 등을 우대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수수료 절약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은행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❻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신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알린 후 수취인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에는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관련 서비스

①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휴대폰 문자 또는 스마트폰 앱 알림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은행은 월세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한번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③ 무통장 · 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적용하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APP)를 이용해보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은행, 제2금융권 등에 개설된 계좌 및 잔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각종 계좌의 자동이체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3.4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도 파산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도 등으로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일정한 금액(5,0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특정 금융회사 파산으로 집단 예금인출이 쇄도하는 뱅크런(bank run) 현상을 막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예금보호금액을 예금금액 전액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보장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예금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미리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보장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산정되어 하나의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이다.[4]

예를 들면, 이자율이 4%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리금(5,100만원)을 모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원금 4,800만원을 예금한 경우라면 만기 시 원금(4,800만원)과 더불어 이자(약정이자 192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작은 금액)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예금하려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액을 예치하기보다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4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2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앞서 살펴본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3-7〉 참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 가운데에도 펀드나 일부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가 된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기금으로 보호받는 상품도 있다. 지역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각 중앙회가 설치·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표 3-7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 저축은행 ·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출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2023년 기준)]

기사읽기

40년 SVB, 파산까지 36시간 … "스마트폰 뱅크런에 광속몰락"

"세계적 스타트업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40년이 걸렸지만, 붕괴에는 단 36시간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983년 문을 연 실리콘밸리은행, SVB(Silicone Valley Bank)와 모회사 SVB금융그룹의 초고속 파산 과정을 묘사한 문장입니다. 신문은 SVB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몰락한 배경에는 SNS와 스마트폰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빼내기 위해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야 했지만, 이번엔 SNS로 재정 위기 소식을 접한 예금자들이 빛의 속도로 스마트폰의 예금 이체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쇄 전날인 지난주 목요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작년 말 기준 SVB 총 예금의 4분 1에 달하는 420억 달러, 우리 돈 약 55조6천억원 규모의 인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금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닉 속에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에 뛰어드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보험 스타트업 '커버리지 캣'의 설립자 맥스 조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셔틀버스에 올랐을 때 동료 창업자들이 모두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를 포함해 소식을 뒤늦게 접해 계좌 이체에 실패한 창업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략)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 인출이 늘어난 탓에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내다 팔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은행 측의 발표가 미국 내 16번째 대형 은행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 2023. 3. 13.]

학습내용 정리

- 소득, 지출, 저축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소비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행위이다.
- 이자의 계산방법은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리는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저축이 필요한 노후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원리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 대표적인 저축상품인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며, 만기가 되면 예금이나 적금은 바로 찾아야 한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 인플레이션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3. 저축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4.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_____ 의 법칙은 복리를 가정할 때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거나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이다.

2. 저축상품은 예금자가 요구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 _____ 과 예금자가 일정 가입기간을 약정하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_____ 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3 O·X 문항

1.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 )

2.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 )

3.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 )

제4장

금융투자의 이해

4.1 투자의 기초

4.2 금융투자상품

4.3 주식 투자

4.4 채권 투자

4.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4.6 증권분석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risk) 등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방법 및 투자가치 분석방법을 정리해 본다.

학습목표

- 투자의 수익과 리스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레버리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식과 채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재무제표의 개념과 투자가치 분석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고금리 장기화에 주목받는 채권 … 투자 전 유의사항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조6000억원으로 전년(4조5000억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략)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채권 투자 시 유의 사항을 몇 가지 안내했습니다.

먼저 채권 투자도 다른 투자상품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지만 채권 투자는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여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금융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자 전 채권 발행 기관의 파산 위험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채권 투자 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에 투자하기 전 신용평가회사가 정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금융사는 채권 판매 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투자 전 투자설명서 및 신용평가서 등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에 비해 상품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해 수익률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수익률, 만기 등 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투자에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므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한 채권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장외채권에 투자할 경우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유사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따라 장외채권에 투자 후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시사저널e, 2023. 6. 30.]

- 금융투자 시 자산가치 결정요인, 리스크(위험) 요인들은 무엇인가?
- 자산가치의 평가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핵심 용어 정리

투자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행위

투기

요행을 바라고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리스크(위험)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며,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부정적 상황(투자손실)과 긍정적 상황(투자이익)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는 중립적 개념임.(※ 참고로, 보험에서의 '리스크'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함)

기대수익률

투자 행위로 인해 미래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을 말함.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큰 것이 일반적임

실현수익률

자신이 수행한 투자 행위의 결과로 실제 달성한 수익률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금융에서는 두 개 이상의 자산들로 구성된 투자대상의 집합을 말함

레버리지

금융에서 부채를 사용하여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더 큰 투자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것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

상장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거래대상 종목으로 올리는 일

재무제표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성과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한 재무정보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

4.1 투자의 기초



1 투자의 개념

1 투자와 리스크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하여 관리(이를 '운용'이라 부른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2% 전후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며 더욱 낮아져 1%대까지 떨어졌었다. 이러한 저금리는 저축(예금)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투자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종료와 함께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일단락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곳곳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부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2 투자와 투기

투자(investment)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때, 투자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 선택은 투자된 자금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적절히 자금을 공급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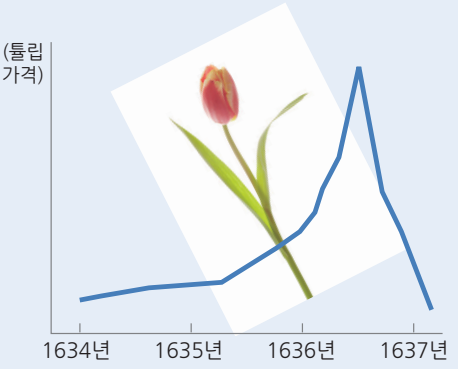
그러나 종종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인 자금 운용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투기(speculation)라고 부르며 건전한 투자와 구별하여 부른다. 투기란 요행을 바라고 (본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투기는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도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 투기는 경제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며, 경제 곳곳에 가격 거품을 형성하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투자자라면 개인의 자산 증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투자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확대보기

투기와 튤립

튤립은 중세 터키의 사원이나 궁정에서 재배되었으며, 꽃 모양이 터번과 비슷하여 '터번 꽃'이라는 의미로 유럽에서는 '튤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튤립이 그냥 아름답고 평범한 꽃은 아니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는데 최상급 꽃은 잎에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렀고, 이어 '총독'과 '제독', '장군' 순으로 이름을 붙였다. 1634년 당시 황제 튤립은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플로린(florin, 당시의 금화)에 거래되었다. 튤립은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튤립 가격은 거침없이 올라갔고, 1635년 'Semper Augustus'라는 희귀종 튤립 한송이가 6,000플로린이라는 최고가에 매매되었다. 이 금액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의 평균 연간 수입 150플로린의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러나 튤립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뜨거운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더 비싼 가격으로 튤립을 구입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튤립은 평범한 식물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내 1637년 2월 3일 튤립시장이 무너졌다. 튤립 거래의 중심지였던 하를렘에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튤립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튤립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

2 투자 수익률

1 수익률

수익률은 개념적으로 크게 사후적 성격의 실현수익률(realized return)과 사전적 성격의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실현수익률은 자신이 수행한 투자 행위의 결과로 실제 달성한 수익률을 의미하며, 기대수익률은 투자 행위로 인해 미래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러한 투자의사결정의 결과로 달성된 실현수익률을 자신의 기대수익률과 비교함으로써 투자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실현 또는 기대)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금액(즉, 투자원금) 대비 보유한 기간 동안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되며, 통상적으로 투자원금과 기간을 고려한 보유기간 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 보유기간 수익률은 먼저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매매차익에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배당, 이자, 거래비용 등)을 합산 또는 차감한다. 그런 다음 이 값을 매입금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환산하여 구한다.

$$\text{수익률} = \frac{\text{매도금액} - \text{매입금액} \pm \text{보유기간 중 현금흐름}}{\text{매입금액}} \times 100$$

예 3개월 전에 10,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0,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300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100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했다면, 3개월 동안의 투자수익률은 얼마인가?

$$\frac{10{,}900-10{,}000+300-100}{10{,}000}\times 100=11\%$$

즉, 3개월간의 투자수익률은 11%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간 수익률을 연 수익률로 바꾸어 연율화(annualization)한다. 연율화 과정에서도 투자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한 복리(compound interest)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1]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11%의 수익률을 연율화할 때, 1년이 3개월의 4배이므로 보통은 11%의 4배인 44%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이는 복리를 무시한(즉, 투자수익의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단리에 의한) 계산 방법이다. 매 3개월마다 11%의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면, 연수익률은 복리 계산법에 의해 $(1+0.11)^4-1=0.5181$, 즉 51.81%가 된다.

확대보기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특정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자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하여 1년 후에 110만원을 받을 경우 현재 100만원의 가치와 1년 후 110만원의 가치는 동일하며, 이자 10만원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해당하고 명목이자율은 10%이다. 즉, 이자율은 미래의 화폐가치를 동일한 가치의 현재의 화폐가치로 전환하거나,

1 이와 달리 투자수익의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원금에 대한 투자수익만을 고려하는 계산법을 단리(simple interest)라고 한다.

현재의 화폐가치를 동일한 가치의 미래의 화폐가치로 전환할 때 사용되며, 할인율 또는 수익률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2 수익률 계산 시 고려할 사항

수익률 계산 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명시적 비용으로서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 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거래수수료나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거래비용에 속한다. 결국 총수익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잔여액이 실질적인 투자수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횟수가 빈번할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 측면에서는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금도 실질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세전(before-tax) 수익률과 세후(after-tax) 수익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종 거래비용 및 세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 외에도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들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의미하는 기회비용은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명시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수집 비용도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이처럼 투자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및 정보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직접투자 대신,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자결정 및 운용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직접 투자에 비해 운용보수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 투자의 리스크(risk)

우리는 실생활에서 리스크(risk)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크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리켜 환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이 기업은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유리해지고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이처럼 리스크는 투자손실 가능성처럼 불리한 상황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volatility)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

가입 시점의 예·적금 금리로 수익률이 확정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된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투자 결과의 변동 폭이 크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클수록 투자자가 높은 변동성을 부담해야 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된다.[2] 이런 투자의 특성을 '고수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이라고 한다. 이처럼 투자는 미래에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인 기대수익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투자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현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리스크가 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해당 투자가 실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안전한 저축 대신에 주식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저축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투자를 선택한 것이지만, 주식투자의 결과로 저축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낮은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며, 그중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투자 시점에서는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인 것이다.

2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에는 높은 리스크가 수반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❶ 리스크 프리미엄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이를 무위험 수익률(risk-free rate of return)[3]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러한 무위험 수익률과 비교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한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으로 결정된다.

기대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 + 리스크 프리미엄

❷ 투자성향과 리스크 선호도

투자자 개개인은 투자목적과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각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리스크 선호도(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성향, 저위험-저수익을 추구하는 보수적 투자성향 등)를 적절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2 투자 리스크의 관리와 분산투자의 개념

투자의 본래적 속성에 리스크가 포함된다고 해서, 손실 위험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투자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분산투자이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모음, 즉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말이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금융에서는 두 개 이상의 자산들로 구성된 투자대상의 집합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금융상품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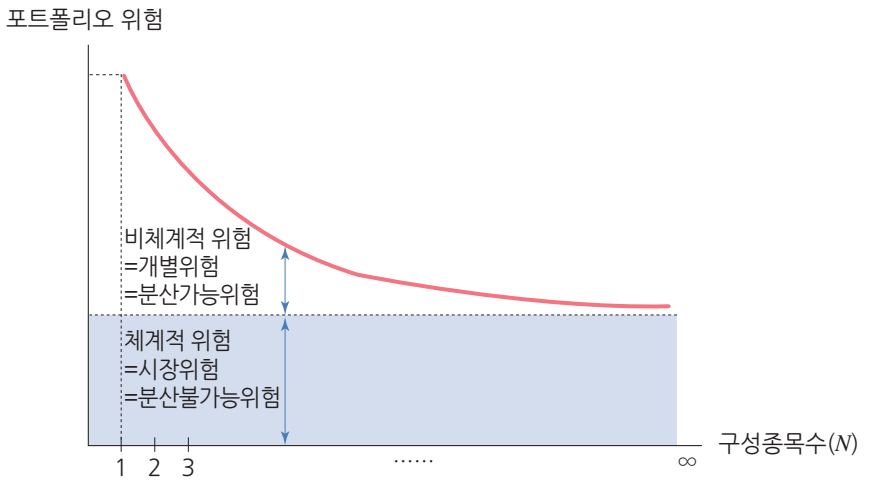
3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행하여 사실상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단기 국채의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로 사용한다.

자산에 돈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각각 있다고 하면 두 가게는 날씨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가게에서 우산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판매한다면 날씨에 따른 총매출액의 변동성 폭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자산별로 보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개별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전체 리스크, 즉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4]

❶ 투자 리스크의 종류

분산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림 4-1〉과 같이 편입자산의 수가 증가하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일정 수준까지는 하락하지만 모든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분산투자에 의하여 제거 가능한 리스크를 분산가능

그림 4-1 | 분산투자와 투자위험



4 분산투자가 단순히 리스크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는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투자가가 동일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분산투자 효과(portfolio effect)라고 부른다.

위험이라고 한다. 분산가능위험은 비체계적위험 또는 개별위험이라고도 하는데, 경영자의 횡령, 산업재해, 근로자의 파업 등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치에만 고유하게 미치는 리스크로, 여러 자산을 분산투자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반면 포트폴리오의 편입자산을 증가시켜 다각화를 통한 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하여도 시장 전반에 기인하는 리스크는 제거할 수 없는데 이를 분산불가능위험이라고 한다. 분산불가능위험은 체계적 위험 또는 시장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세계 경제위기나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모든 자산이나 투자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❷ 분산투자 방법

분산투자는 투자대상자산, 시기, 지역, 통화 등을 통한 분산이 가능하다. 즉, 투자 대상 지역을 여러 나라에 분산하는 등 기대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외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달러화,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에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지만 투자하는 시기를 달리하여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립식 펀드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투자한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인 주식형 펀드 등에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입 평균단가를 낮추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3 레버리지 효과와 투자 리스크

분산투자와 같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있지만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리스크를 오히려 늘리는 전략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레버리지(leverage) 투자이다. 영어로 'leverage'란 지렛대를 의미한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데,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 있어 가격변동률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실현시키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를 자신의 돈(즉, 자기자본)이 아닌 다른 이로부터 빌려서 조달(즉, 부채 혹은 타인자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금 100만원으로 10,000원인 주식을 100주

매입한 뒤 주가가 20% 상승한 12,000원에 매도하였다면, 거래비용은 무시할 경우 자기자본 10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주가변동률과 같은 2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금 100만원 중에서 60%인 60만원은 대출자금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만원만 자기자본이라고 가정하면 투자수익률은 20%의 2.5배인 50%로 크게 높아진다. 발생한 총수익은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투자에 사용한 자기자금은 4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50%=20만원/40만원×100%). 물론 거래비용과 남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한다. 위의 예에서 만일 주가가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출자금 60만원을 보태서 투자한 경우 총투자액 100만원에 대한 손실액은 3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자기자본 4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75%(75%=30만원/40만원×100%)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30%의 2.5배가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의 레버리지는 총투자액 중 부채 비중이 커지면(동일한 의미로, 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5] 다음 공식에 따라 투자의 레버리지를 계산하면 된다.

$$\text{투자 레버리지} = \frac{\text{총 투자액}}{\text{자기자본}}$$

앞의 예시를 공식에 대입해보자. 총 투자액 100만원 중 40%인 40만원만 자기자본으로 사용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2.5배(=100만원/40만원)로서 실제 주가가 20% 상승해도 실제 투자수익률은 2.5배인 50%가 되고 30% 하락해도 투자수익률은 2.5배인 −75%가 된 것이다. 결국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수익률은 가격변동률의 몇 배로 증가하여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레버리지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

5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 현실에서는 레버리지가 부채를 대신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을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4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기업이 부채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한 전략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에서 적절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이 부채를 사용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큰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리스크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건전한 투자를 넘어 사실상 투기라고 볼 여지가 크다.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개인의 투자는 부채 없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부채에는 이자부담이 수반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확대보기

레버리지와 깡통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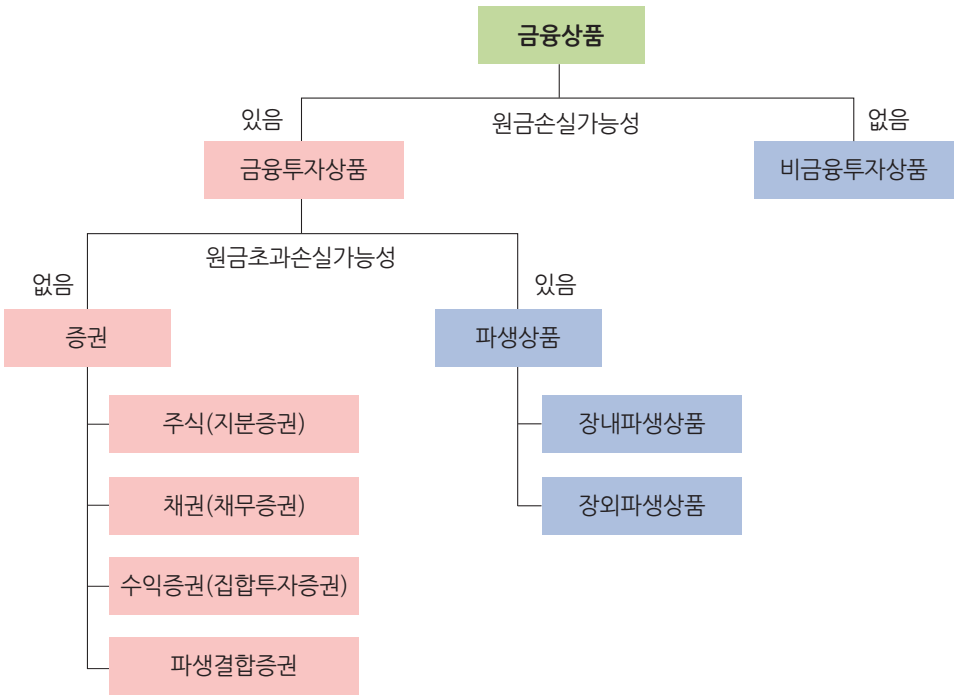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를 이용한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1억원으로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때 투자 레버리지는 5배(=5억원/1억원)가 된다. 만약 집값이 30% 상승하여 6억 5천만원이 되면 자기자본 1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집값의 상승률인 30%의 5배인 150%가 되고,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3억 5천만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손실률인 -30%의 5배인 -15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나 마찬가지인 전셋값 4억보다 집값이 낮아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실제 주택의 가치보다 부채인 전셋값이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4.2 금융투자상품

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과 원금손실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비금융투자상품으로는 예금상품, 대부분의 보험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을 초과하는 추가손실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금초과손실가능성이 없는 증권과 원금초과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

그림 4-2 금융투자상품의 세부 분류



으로 구분된다. 증권은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표적으로 선물(futures), 옵션(option), 선도(forward), 스왑(swap) 등이 있으며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분류는 〈그림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번 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수익증권(펀드)과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

1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투자자란 쉽게 말해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권유준칙을 지키며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상품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해당 상품에 내재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대규모 투자손실을 경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2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인 투자권유준칙을 정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구매자인 투자자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투자자의 방문 목적 파악 및 일반투자자 여부 확인

투자상품의 매입과정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단계별로 확인해보면 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고, 투자를 희망할 경우 일반투자자인지 혹은 전문투자자인지 구분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❷ 투자자 정보 파악

다음은 투자자 정보에 근거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희망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판매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하게 되는데,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부분과 위험선호도를 파악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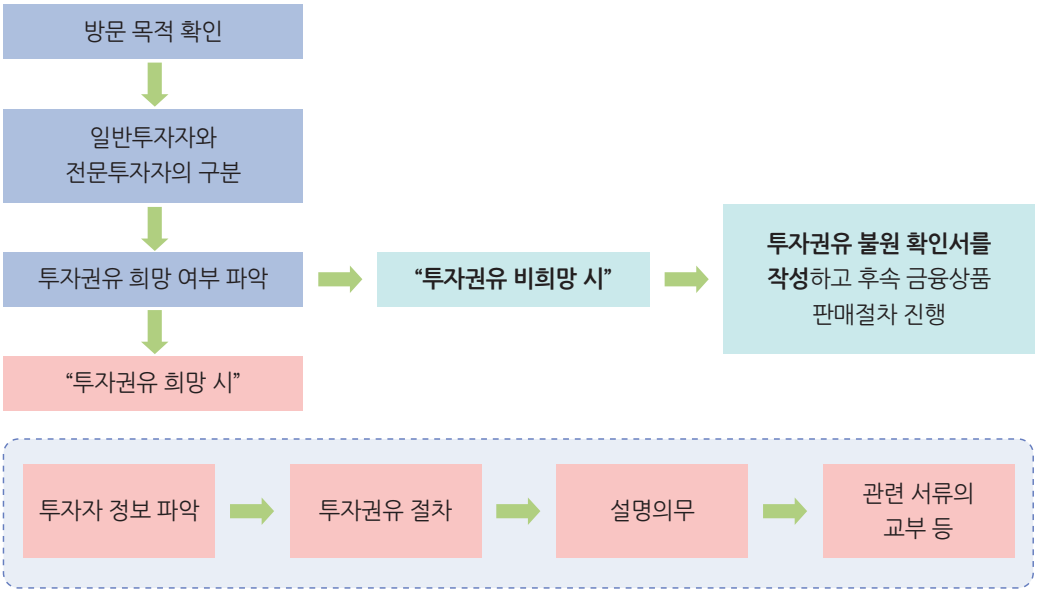
❸ 적합한 투자상품 추천 및 설명 등

다음으로 금융회사는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선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추천한 투자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나 상품소개서 등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❹ 최종 투자 여부 결정

충분한 설명을 들은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을 하고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 투자설명서 등을 전달받게 되는데, 금융회사 직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서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직원의 설명, 그리고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비교하여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 **표준투자권유준칙 상의 프로세스**



❺ 사후관리

마지막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없지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구매 후, 정기적으로 상품의 성과, 현황 및 자신의 상황(자신의 가치관, 재정상황, 가족 등)을 고려하여 구매한 금융투자상품을 계속해서 보유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의 목표(목적)에 알맞은 수단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투자는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매순간 해당 투자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적용하기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아래의 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조사하는 항목의 예시이다. 각 내용에 체크하여 자신은 어떤 투자자로 분류될지 확인해 보자.

문항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이하 ② 20세 ~ 40세 ③ 41세 ~ 50세 ④ 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4점 4점 3점 2점 1점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① 은행 예 · 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점 2점 3점 4점 5점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②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1점 2점 3점 4점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① 1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③ 20% 초과 ~ 30% 이하 ④ 30% 초과 ~ 40% 이하 ⑤ 40% 초과	5점 4점 3점 2점 1점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3점 2점 1점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2점 2점 4점 6점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이라면 (26/32)×100=81.3점과 같이 계산한다. 이러한 점수결과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을 오른쪽 표와 같이 5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100점 환산 점수	투자성향
20점 이하	안정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4.3 주식 투자



1 주식의 개념

1 주식과 주주

주식(stock 또는 share)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므로 주식 소유자는 주주(shareholder)로서 의결권(voting right)을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의결권을 통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도 갖는데, 만약 회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순이익 중 내 몫을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생기며, 혹시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 중 내 몫을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생긴다. 다만, 잔여재산에 대한 주주의 분배청구권은 정부, 근로자, 채권자보다 주주가 뒤에 있다(즉, 후순위)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2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채권자가 주주에게 상환되지 않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림 4-4 | **주식 견본**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3 주주의 권리: 자익권과 공익권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 주주의 자익권에는 앞에서 설명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주주의 공익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자익권과 공익권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common stock)라고 부른다.

4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보통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주식으로 우선주(preferred stock)가 있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도 잔여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보통주 주주보다는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그 대신 우선주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주식투자의 이익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이 있다. 자본이득은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사후적으로 나눠주는 돈으로,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결산을 한 후에 누적된 이익이 충분할 경우(즉, 여유 자금이 많을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확대보기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배당금은 배당기준일(통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12월말)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지급된다. 즉,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사라져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배당기준일 직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배당락(配當落)'이라고 부른다.

6 주식투자의 위험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10월은 주식투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달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투자의 위험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매매체결에 따라 매순간 바뀌므로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및 경기의 침체, 해당 주식이 속한 산업의 위축, 기업의 부실경영,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기업 자체가 도산하여 주식 가치가 사라져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주식 중에는 거래 물량이 적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운 종목도 있으므로 유동성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2 주식의 발행과 유통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발행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이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고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발행기관을 통하

여 주식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1 발행시장

창업 초기의 기업은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에 소수의 특정인(주로 지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거래소(stock exchange)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또는 매출)하게 되는데, 이를 상장(listing)이라고 부른다.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와 같은 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최초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 부른다. 최초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이 때부터 누구나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행은 발행기업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간접발행은 전문성과 판매망을 갖춘 중개기관을 거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초기업공개 시에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다.

2 유통시장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❶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KOSPI 시장)이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listing)되어 거래되는 시장이다.

❷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은 원래는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장시장이라고 하면 통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❸ 코넥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상장 전 단계의 기업들이 상장되는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에 개장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회사의 경우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❹ K-OTC 시장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K-OTC시장은 기존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에 개설되었으며, 통상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확대보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치주와 성장주

주식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이다. 일반적으로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말하는데, 시가총액이란 현재의 주식의 가격과 주식의 수를 곱한 값으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의 기업의 주식을 대형주라고 한다. 대형주는 대기업의 주식인 경우가 많고 거래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반면, 중소형주는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101~300위를 중형주,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업규모가 작고, 경제나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등락 폭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의 기회도 큰 경향이 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도 자주 쓰이는데, 가치주(value stock)란 기업의 매출액, 이익 등으로 평가한 본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다. 성장주(growth stock)는 동종 업종 또는 시장 평균에 비해 성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으로,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다.

3 주식 거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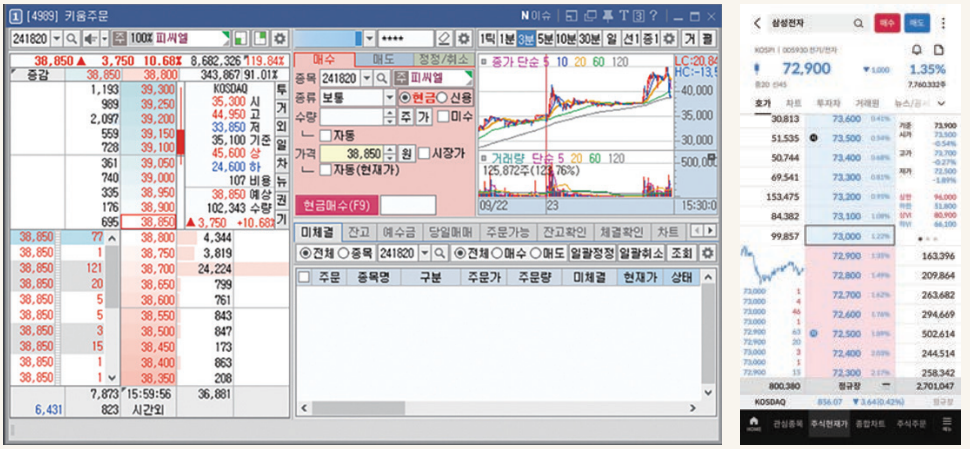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사의 주식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식거래는 자격을 갖춘 한국거래소 회원, 즉 증권회사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주문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달로 인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Home Trading System)가 보편화되었고,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적용하기

온라인 주식거래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에 투자할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그 후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마트폰에서 증권회사의 거래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한다. '주식매수' 메뉴에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하여 매수할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수를 누르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할 경우 '주식매도' 메뉴에서 주문하면 된다.



1 주문방법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limit order)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이 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지정가 주문에 의해 이루어

지고 시장가 주문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이다. 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2천원 미만 1원, 오천원 미만 5원, 2만원 미만 10원, 오만원 미만 50원, 20만원 미만 100원, 오십만원 미만 500원, 오십만원 이상 1,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단기간의 주가 급등락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price limit)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이 허용되어 상한가 및 하한가가 각각 결정된다.[6]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T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T+2일)이다. 예를 들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어 매입의 경우는 개장 시점에 증권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출금되면서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의 경우는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되면서 주식이 출고된다.

확대보기

거래소 주식 매매 체결방법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매매체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 방식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다만, 장 개시 시점의 시초가와 장 마감 시점의 종가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단일가매매제도를 채

6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은 초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 이후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15년에 ±30%로 확대하였다.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장이 개시되기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개장과 함께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폐장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는 매매 없이 주문만 받다가 오후 3시 30분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외거래가 가능한데, 이 시간대에는 일반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 간에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

표 4-1 |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체결방식	시간
장 전 종가매매	08:30~08:40
단일가매매	08:30~09:00, 15:20~15:30
정규시장매매	09:00~15:30
장 후 종가매매	15:30~16:00 (체결은 15:40부터, 10분간 접수)
시간외 단일가매매	16:00~18:00 (10분 단위, 총 12회 체결)

2 주식거래 관련 세금과 수수료

주식거래에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주식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한편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장별로 상이

하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는 2024년에는 주식 양도가액의 0.03%이고, 2025년부터는 세율이 0%가 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도 주식 양도가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는 2024년에는 양도가액의 0.18%이고, 2025년부터는 0.15%로 인하된다. 코넥스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10% 수준이다.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회사별로 온라인 거래 여부, 거래금액 규모 등에 따라 거래대금의 0.015%에서 0.6% 수준에서 부담하게 된다.

4.4 채권 투자



1 채권의 개념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가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한국거래소에 가장 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 시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때 발행된 채권에 표시된 원금을 액면가(par value)라고 하고, 이것이 채무자가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된다.

또한 주식과 달리 채권은 발행기관의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채권은 발행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 4-2 | 주식과 채권의 비교

구분	주식	채권
발행주체	주식회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수익형태	배당금, 주식매매 차익	이자수익, 채권매매 차익
원금보장	원금보장 안됨	발행자의 파산 시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원리금상환 보장
증권소유자 지위	주주	채권자
증권소유자의 경영참가	가능	불가능
투자위험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증권의 존속기간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증권	한정적인 만기가 사전에 특정

주식과 차이가 있다. 만약 약정된 이자와 원금 중 어느 하나라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도(default)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권의 액면가에 대해 약정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을 표면금리(coupon rate)라고 한다. 또한,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term-limited securities)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만기(maturity)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만기까지 매 단위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채권의 발행과 유통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등의 발행자가 처음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발행시장이며,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채권 발행시장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규모가 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펀드 또는 채권ETF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다.

그림 4-5 | **채권 견본**





2 채권투자의 이익

채권투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이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채권의 수익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매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발행 시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의 유통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매매차익을 의미한다. 둘째,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회사, 상장법인 등이 주로 발행한다. 각 발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도 가능성이 낮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채와 공채는 일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셋째,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 도래 전에는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다.

3 채권투자의 위험

채권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 또는 발행기관의 신용도 하락으로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2 채권의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 상환기간, 이자 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1 발행주체별 분류

① **국채**: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다. 국채에는 일반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재정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발행되는 일반국채,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국채, 국가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상채권 등이 있다.

② **지방채**: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③ **특수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금융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이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로 장기 산업자금에 사용된다.

⑤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발행회사가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회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2 상환기간별 분류

① **단기채**: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권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는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중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② **중기채**: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채 및 금융채가 만기 3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③ **장기채**: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채가 만기 5년 또는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3 이자 지급방법별 분류

① **이표채**: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② **할인채**: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표채(zero-coupon bond)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복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④ **물가연동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의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투자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보증유무별 분류

① **보증채**: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보증의 주체가 정부인 정부보증채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보증하는 일반보증채로 나뉜다.

② **무보증채**: 제3자의 보증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보증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무보증채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현재에는 대부분이 무보증채로 발행되고 있다.

확대보기

채권가격의 특성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 만기, 표면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① **채권가격과 시장이자율**: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을 매입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채권가격과 만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일정한 이자율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시세차익을 확대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채권가격과 표면이자율**: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정한 이자율변동에 대해서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유리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면이자율이 0%인 순수할인채의 가격변동폭이 가장 크다.

3 특수한 형태의 채권

자본시장에는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외에도 계약 조건이 다양하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원금을 상환받는 대신(주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사전에 정해진 비율(이를 전환비율이라 함)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전환권)이 부가된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환사채 투자자는 약정된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나,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리금 대신 보통주를 수령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환사채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전환비율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주가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채권 보유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7]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만 추가된 형태이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반사채와 같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며 대신 정해진 인수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보통주를 취득하게 된다.[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에는 몇 주를 얼마에 인수할

---

7 최근에는 전환사채 중에서도 전환비율이 발행기업의 주가 변동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환사채를 리픽싱(refixing) 조건이 부가된 전환사채라고 부른다.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이 있다. 현금납입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투자자는 주식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발행회사에 현금유입이 발생한다. 대용납입형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격으로 신주의 발행가격 전액의 납입을 충당하므로 사실상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 4-3 | 특수한 형태의 채권의 비교

구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목적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조달 등		
권리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신주	발행회사의 신주	발행회사 보유 상장법인 주식 또는 자기주식
권리 행사 시 대금 납입	사채금액과 대체	별도 대금납입(현금납입형) 사채금액과 대체(대용납입형)	사채금액과 대체
사채권	사채권 소멸	사채권 유지(현금납입형) 사채권 소멸(대용납입형)	사채권 소멸
취득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상승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꿀팁

주식 · 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한다.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임직원의 횡령 · 배임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경영진 등의 횡령 · 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유의한다.

50인 미만의 개인, 법인 등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4.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발행기업에 대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등을 나타낸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이 표명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성과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한 재무정보로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의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 각 재무제표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유기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회계전문성을 지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이를 회계감사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9]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파악하고 경영의사결정, 투자의사결정 등에 반영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널리 활용되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난 장부가치(book value)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시장가치(market value)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회계정보는 과거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주가는 미래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에 표시된 값은 시가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작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 즉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은 질적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주로 회계기간 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경제적 자원)과 부채(경제적 의무), 자본(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이처럼 잘못된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회계분식(cosmetic accounting or window dressing) 또는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이라 부른다.

자산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지배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자산은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즉,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에 걸쳐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상환해야 할 빚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된다. 부채 또한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그림 4-6 | 재무상태표 양식

재 무 상 태 표

제 ○ 기 20××년 ○○월 ○○일 현재

○○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유동자산	15,500	유동부채	15,00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00	매입채무	5,000
단기금융상품	3,000	단기차입금	10,000
단기매매증권	2,000	……	
매출채권	2,000	비유동부채	4,000
선급비용	500	사채	2.000
상품	3,000	장기차입금	2,000
제품	2,000	……	
……		부채총계	19,000
비유동자산	21,500		
토지	10,000	자본	
건물	10,000	자본금	10,000
비품	500	자본잉여금	8,000
영업권	1,000	……	
……		자본총계	18,000
자산총계	37,000	부채와 자본총계	37,000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본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값과 같다.

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즉, 회계기간) 동안 기업이 달성한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이루어진 총포괄손익 정보를 제공한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손익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당기손익인데, 수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 수익이 비용보다 작을 경우 당기순손실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같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락)하여 자본이 증가(감소)하는

그림 4-7 |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당기	전기
매출액	×××	×××
매출원가	×××	×××
매출총이익	×××	×××
판매비와관리비	×××	×××
영업이익	×××	×××
영업외수익	×××	×××
영업외비용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법인세 비용	×××	×××
당기순이익	×××	×××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이익	×××	×××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영업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궁극적으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미실현손익에 대한 정보를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당기손익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로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 변동 내역을 기록한 표이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뜻하며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본구성요소 등이 있다.

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은 영업활동, 채무상환,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금의 변동내역은 기업은 물론 채권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즉,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이용자로 하여금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부채 상환 및 배당금 지급 능력과 자금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나타내지 못했던 사항을 각주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회사의 개황,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이나 계정과목의 산출 근거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2 감사보고서

1 감사보고서의 의의

감사보고서란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10] 감사보고서는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핵심감사사항이나 강조사항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주식상장 시 기준가격결정, 인수합병(M&A) 관련 기업평가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2 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라 할 수 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는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등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네 가지가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

10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감사의견 근거, 핵심 감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등의 책임,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등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과 기타사항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내용을 적은 서류가 첨부된다.

표 4-4 | 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사의견	내용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
부적정의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즉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견'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범위 제한으로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또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거나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확대보기

감사의견에 대한 예시

1. 적정의견 예시

– (적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한정의견 예시

– 한정의견 근거: 감사범위 제한 또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근거 서술

–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년 ××월 ××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부적정의견 예시

– 부적정의견 근거: 중요하고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근거 서술

– (부적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 근거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의견거절 예시

– 의견거절 근거: 중요하고 전반적인 감사범위제한에 대한 근거 서술

– (의견거절)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4.6 증권분석



1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

주식 가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이 투자하는 증권이 어떤 특성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최대한 합

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이란 개별증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체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뉜다.

1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기본적 분석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재가치가 추정되면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시장가치가 내재가치에 비해 과소평가(내재가치>시장가치)된 증권은 매입하고 과대평가(내재가치<시장가치)된 증권은 매도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적 분석과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분석을 포함한다.

2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패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증권시장의 시황이 약세시장이나 강세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시장동향을 포착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증권가격 움직임의 양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증권가격의 패턴을 결정짓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이성적 요인뿐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주로 과거 주가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chart)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방법을 이용한다.

확대보기

효율적 시장가설과 증권분석

증권분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 현재의 주가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주가변동과 미래 주가변동이 독립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없고, 공개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주가가 내재가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의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비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잘못 평가된 증권을 식별해내고,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발굴하며, 새로운 투자기법을 개발하는 증권분석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입장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민첩하고 창의적인 증권분석과 효과적인 투자전략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 피터 린치(Peter Lynch)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 템플턴 투자그룹 설립자인 존 템플턴(John Templeton),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퀀텀펀드 회장 등을 들 수 있다.

3 개인투자자의 증권분석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성공적인 증권분석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보수집 및 예리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민첩하게 실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증권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인투자자가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대신, 전문가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투자자가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금융상

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도 기본적인 증권분석 방법을 알고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기업정보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 개별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공시정보, 경영실적정보, 지배구조 및 경영권 등에 대한 기업정보는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증권의 가격은 종종 시장의 수급, 일시적인 유행 등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경영실적 정보

아무리 경쟁력 높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하나는 역시 기업의 영업실적 발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같은 주요한 재무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실제로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회사의 재무분석가(또는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주요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일의 주가는 절대적인 실적의 증감보다는 예상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지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예상[11]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라고 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는 '어닝 쇼크

11 이러한 시장의 예상을 시장 컨센서스(market consensus)라고 부르며, 통상 증권사 재무분석가의 분석보고서상 평균값을 의미한다.

(earnings shock)'라고 하며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2 기업공시 정보

상장기업은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공시한 내용이 중요한 투자정보가 된다. 그러나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원칙에 따라 공시정보의 사전유출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12] 따라서 본인의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개된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남들이 파악·인지하지 못한 정보적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고 이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발표된 공시정보는 비교적 빠르게 증권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후에 공시정보를 활용한 투자는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지배구조 및 경영권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복잡한 지분 관계로 얽혀 대규모기업집단(소위 '재벌')을 형성하고 있거나 계열회사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주주분포와 경영권 소재를 나타내는 지배구조(governance)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뿐 아니라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회사의 실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이 원래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지분법평가손익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회사 지분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

12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holding company)[13]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정보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적대적 M&A 시도로 지분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매수 수요가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분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게 되나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변동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분쟁으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유행성 정보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출현한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비슷한 이슈를 가진 여러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테마주'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성 정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업종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자산 거품(bubble)을 형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버블의 역사가 있어 왔고, 이 때마다 거품은 오래지 않아 꺼지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 대표적으로 2000년도를 전후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주식에 불었던 '닷컴 버블'과 첨단 기술주에 대한 'IT 버블'을 예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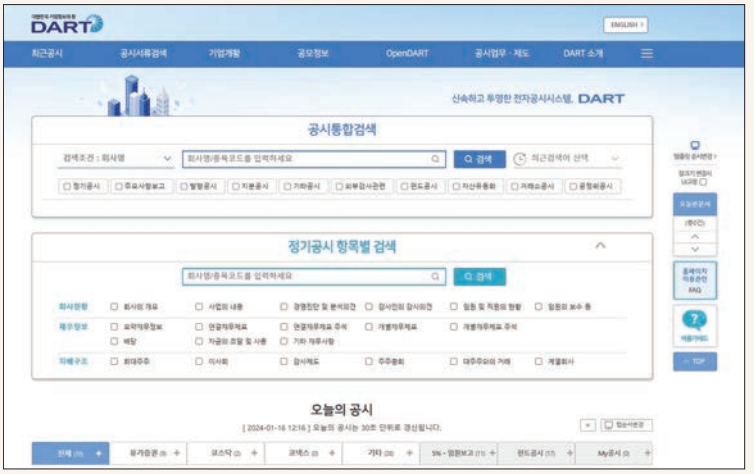
13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러 개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20%(금융지주회사는 50%) 이상씩 보유하여 지배하고 자회사가 다시 관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기업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자회사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은 없다. 이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권 보호가 가능해진다.

적용하기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에 제출하면 투자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이다.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경영실적 등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증권의 공모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DART 홈페이지와 달리 공시서류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요 공시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시정보 개방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opendart.fss.or.kr)도 이용 가능하다. Open DART의 '공시정보 활용마당'에서는 여러 회사의 재무 · 비재무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접 비교하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3 재무비율 분석

재무비율 분석이란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특정 수치로 나타내는 기업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재무비율은 부채지

표, 유동성지표, 활동성지표, 수익성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특정 기업을 다른 기업들(주로 동종 산업 내)과 비교(cross-sectional comparison)하거나, 해당 기업의 재무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inter-temporal comparison)할 수 있다.

재무비율은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마다 회계처리방법이 달라 재무비율의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율분석의 기준이 되는 표준비율(benchmark)의 선정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평균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된 제품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군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재무비율의 해석에는 분석자의 주관과 경험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1 부채지표

부채지표(leverage measures)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자본(자기자본)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부채(타인자본)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14]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자본총계(총자본) 대비 부채총계(총부채)의 비율로 측정한다.[15] 과도하게 많은 부채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식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영업이익으로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자보상비율(이자보상배율)도 실무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이자보상비율이 높으면 이자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 일반적으로 부채와 타인자본, 자본과 자기자본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5 종종 자산총계(총자산) 대비 부채총계로 측정되기도 한다.

$$\text{이자보상비(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2 유동성지표

유동성지표(liquidity measures)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이다.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1년 이내에 현금유출이 예상되는 유동부채 대비 1년내 현금유입이 예상되는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한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항시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당좌비율(quick ratio)로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기도 한다.

$$\text{당좌비율(\%)} = \frac{\text{유동자산} - \text{재고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유동비율 또는 당좌비율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자산 또는 당좌자산이 충분한 것이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을 수익성이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한다.

3 활동성지표

활동성지표(activity measure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주로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총자산회전율이 활용된다. 총자산회전율이 낮다면 매출이 둔화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이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

우에는 총자산회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text{총자산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한편,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재고자산회전율도 활동성지표로 활용된다.

$$\text{재고자산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4 수익성지표

수익성지표(earnings measures)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먼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각각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 측정한 매출액순이익률(ratio of net income to sales)과 매출액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profit to sales)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지분법이익과 같이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영업외 수익과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외 비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측정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더욱 의미있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한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은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 지표의 하

나로 자주 인용된다.

$$\text{총자산이익률(ROA)(\%)}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4 주가배수 평가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즉, 내재가치)와 현재 주가(즉, 시장가치)를 비교하여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낮은 저평가 주식은 매입하고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고평가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언제든 시장에서 알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가이익비율과 주가장부가치비율이 있다.

1 주가이익비율(PER: price earnings ratio)

주가이익비율(PER)은 주식가격을 1주당 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16]으로 나눈 값이며 기업이 벌어들이는 주당순이익에 비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가이익비율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정 기업의 주가이익비율이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의 평균 주가이익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16 주당순이익은 최근 1년(분기별로 이익을 발표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4분기) 동안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낮으면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비교하는 기준으로 동종 산업의 평균 PER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사한 위험을 지닌 주식들의 PER 또는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이 사용되기도 한다.

$$\text{주가이익비율(PE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이익}(EPS)}$$

그러나 PER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주당순이익(EPS)은 해당 기업의 최근 실적을 의미하는 반면, 분자가 되는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값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실적은 좋았으나 향후 기업 전망이 좋지 못하면 PER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최근 실적은 부진하지만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PER이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의 경우는 PER이 낮고, 현재의 수익성은 낮지만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PER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PER이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PER의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 이익 대비 주가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이익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개괄적으로(혹은 참고 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된다.

2 주가장부가치비율(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장부가치비율(PBR)은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를 장부가치(book value)를 보여주는 주당순자산(BPS: book value per share)[17]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괴리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17 주당순자산이란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기업이 장부금액으로 청산된다고 가정하여 구한 값으로서, 기업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에서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과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 사외 유출분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된다.

$$\text{PB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자산}(BPS)} = \frac{\text{주당시장가격}}{\text{주당장부가치}}$$

주당순자산은 기업 청산 시 장부상으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나타내므로 PBR이 낮을수록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주당순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PBR이 1보다 작다면 해당 기업이 지금 장부가치로 청산한다고 가정해도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몫이 현재 주가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회계의 보수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장부상의 순자산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이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순자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PBR은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PBR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의 PBR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PER과 마찬가지로 PBR도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개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내용 정리

- 투자란 미래의 긍정적인 이익을 바라면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기와 구분된다.

- 투자의 리스크(위험)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경우 위험은 높아지며,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위험은 낮아지는데, 이를 '고수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이라고 한다.

- 대표적인 투자 리스크의 관리방법은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투자이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자신의 위험성향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하고 있다.

-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채무불이행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 재무제표란 기업의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등 각종 재무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회계보고서를 말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감사보고서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이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눌 수 있다.

-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뉘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투자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주식투자 및 채권투자의 이익에 대해 서술하시오.

4.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_____ 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_____ 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3. 주식 거래 시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주문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_____ 주문이 있다.

4. _____ 는 채권 보유자에게 발행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다.

3 O·X 문항

1. 주식회사 주주는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면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의 상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 ( )

2.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것이다. ( )

3. 파생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금초과손실 가능성도 있다. ( )

4.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 )

제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5.1 펀드

5.2 파생상품

5.3 구조화 상품

5.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펀드,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등 최근 금융소비자의 투자가 증가되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학습목표

- 다양한 유형의 펀드상품의 특성과 직접투자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의 특성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고 투자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조화 상품의 주요 특성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수수료 싸고 위험 분산 … ETF 출시 21년만에 100조 돌파

올 들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20조원이 몰리며 순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2002년 ETF가 한국 시장에 소개된 지 21년 만이다. ETF는 여러 주식 등을 묶어서 투자하는 펀드의 한 종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의 순자산 총액(지난달 29일)은 100조312억원이었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공모펀드 규모(115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말(52조원)과 비교해 3년 반 만에 두 배, 상품이 처음 나온 2002년(3444억원)보다 290배로 커졌다.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대신 ETF를 통한 직접투자 문화가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수료가 싼 ETF에 꾸준히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ETF가 성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과도한 테마형 ETF 난립, 한두 종목에만 몰빵 투자하는 ETF 등 위험 요인도 있다. (중략)

다만, 테마형 ETF가 난립하면서 좀비처럼 거래가 말라버린 자투리 ETF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자투리 ETF는 순자산 50억원 미만이거나 6개월간 일평균 거래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2019년 20개였던 자투리 ETF는 지난 29일 55개가 돼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ETF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강제 상장폐지시킨다. (중략)

기준 지수 등락에 2배로 수익률이 연동된 레버리지 ETF나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2배 수익률이 나도록 설계된 곱버스 ETF의 경우 예상이 틀릴 경우 원금을 크게 까먹을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2023. 7. 3.]

-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핵심 용어 정리

펀드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

리츠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

선물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하는 계약

콜옵션

장래의 일정시점(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음)

풋옵션

장래의 일정시점(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음)

스왑

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

구조화 상품

예금,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

주가연계증권(ELS)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기 및 만기 상환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가 아닌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의 변동에 연계되어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5.1 펀드

1 펀드의 개념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방식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판단하여 투자를 하고, 또한 본인의 한정된 자금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위험이 높다. 반면, 간접투자는 자산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맡겨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투자하여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는 펀드(fund)가 있다. 펀드(집합투자증권)는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등) 및 실물자산(금, 구리, 선박 등)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긴 투자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투자 의사결정 시 펀드의 운용특성, 투자위험 및 보수·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펀드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1 펀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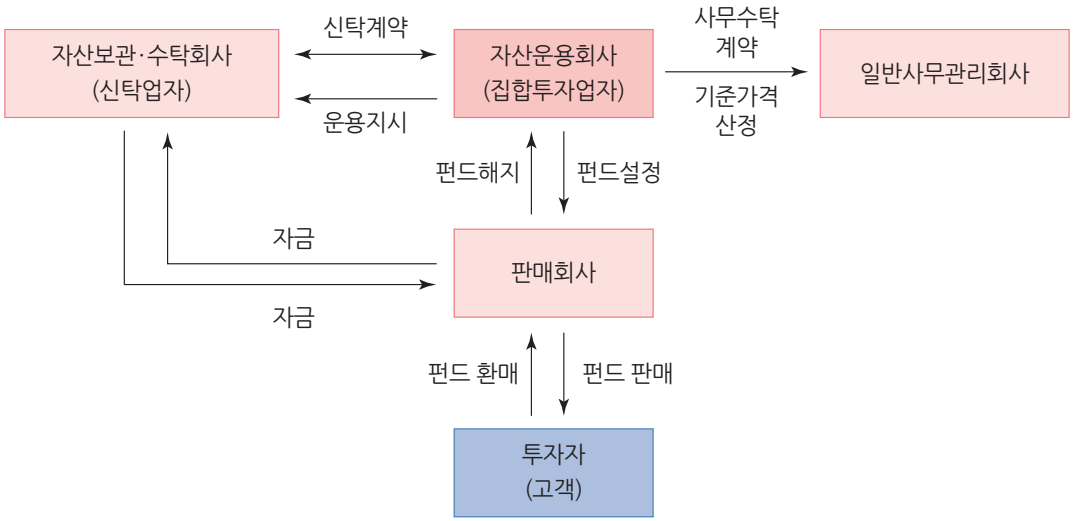
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고 운용한다. 펀드매니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편입자산의 종류와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편입자산 발행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펀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펀드는 법적 형식에 따라 투자신탁(이하 '계약형펀드')과

투자회사(이하 '회사형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대부분 계약형펀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며, 수익증권의 보유자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한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대금, 즉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보관·수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투자자의 펀드투자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와 펀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각각 특화된 업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펀드가 운용되고 관리된다. 〈그림 5-1〉은 계약형펀드의 전체적인 운용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회사형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회사형펀드는 상법상의 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계약형펀드에 비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회사형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그림 5-1 | 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을 모집하여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측면에서 계약형펀드와 실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투자자가 펀드의 주주가 되고 펀드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계약형펀드와 다르다. 회사형펀드에서 투자자(주주)는 회사(회사형펀드)의 운용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분배 받는다. 또한 회사형펀드의 투자자는 주주로서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다. 이 외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펀드 운용구조는 계약형펀드와 유사하다.

한편, 펀드운용 관련 회사 중 펀드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따라서 능력이 우수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골라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2 펀드투자 비용

펀드투자 비용은 펀드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펀드 가입 시 펀드투자 비용이 적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투자 비용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다. 수수료(commission)는 펀드투자자가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이며, 보수(fee)는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순자산의 일정비율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이다.

펀드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을 운용보수라고 하며, 매년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떼어간다. 펀드 판매회사가 판매서비스에 대해 받는 대가에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추천하고 펀드내용을 설명해주는 대가이며, 선취(펀드 매입시 수수료 지불) 또는 후취(펀드 매도시 수수료 지불)로 떼어간다. 판매보수는 투자자의 펀드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비용이며, 운용보수와 마찬가지로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 자산보관·수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사무관리보수가 있다. 신탁보수와 사무관리보수는 운용보수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편이다.

또한, 펀드에 따라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매수수료는 펀드를 너무 빨리 환매할 경우 자산운용전략을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3 펀드투자의 장점

펀드투자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소액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없다. 가령 개인이 5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자산 등에 분산투자하기 어렵지만 그런 개인 여러 명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에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전문가에 비해 정보의 취득이나 분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 경험도 적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반면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므로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을 들 수 있다. 펀드는 대규모로 투자되고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명시적인 비용 외에도 각 개인이 소규모 자금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못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투자기회의 가치, 즉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2 펀드의 유형

1 기본 유형

펀드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만 대표적으로 중도 환매가능 여부, 투자자금의 추가입금 가능 여부, 투자자금의 모집대상, 투자방식 등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환매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펀드와 만기까지 환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폐쇄형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에는 환금성[1]을 보완하

1 환금성이란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펀드와 추가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펀드로 구분된다. 투자자금 모집대상별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형펀드와 소수(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펀드로 분류된다. 투자방식별로는 일시에 거금을 투자하는 거치식펀드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투자하는 적립식펀드, 투자가능 자금이 있을 때마다 임의로 투자하는 임의식펀드로 나눌 수 있다.

표 5-1 | 펀드의 유형

기준	펀드의 유형	
중도환매 가능 여부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언제든 투자회사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폐쇄형펀드	만기 전까지 환매가 불가능하고, 돈으로 바꾸기 위해선 증권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추가입금 가능 여부	단위형펀드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다.
	추가형펀드	수시로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자금모집방법	공모형펀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사모형펀드	49인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투자방식	거치식펀드	한번에 거금을 투자한다.
	적립식펀드	정기적(매월, 매분기 등)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임의식펀드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한다.

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 유형

펀드는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금·구리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실물펀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선박이나 도로 등 특수자원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이 있다. 부동산, 특별자산(도로, 항만,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증권펀드와 구분하여 대체투자펀드라고도 한다.

증권펀드는 주식 및 채권에 어떤 비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펀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펀드로 구분한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이 모두 60% 미만이면 혼합형펀드이다. 주식형펀드는 투자하는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다시 미래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성장주펀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주펀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배당주펀드, 비슷한 산업군끼리 묶은 섹터별로 투자하는 섹터형펀드, 주가지수 등을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인덱스펀드 등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채권형펀드 내에서도 고위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단기의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Fund),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펀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고, 펀드 투자자가 해당 펀드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유형의 분류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표 5-2 |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구분	펀드의 유형	
주식형 (주식에 60% 이상 투자)	성장주펀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가치주펀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가치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펀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섹터형펀드	특정 산업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인덱스펀드	KOSPI200지수와 같은 지표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펀드
채권형 (채권에 60% 이상 투자)	국공채펀드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
	회사채펀드	BBB+ 이상인 우량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하이일드펀드	고위험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MMF펀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수시입출금이 용이한 펀드
혼합형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기타	대체투자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도로, 항만, 항공기, 선박 등)펀드

확대보기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

펀드의 유형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운용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 패시브 펀드,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 액티브 펀드라고 부른다.

패시브 펀드는 시장 전반의 종목을 골고루 보유하여 시장전체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펀드이다. 예를 들어 지수추종펀드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익이 결정되므로 투자비용이 낮다. 단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이므로 시장수익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액티브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직접 투자종목을 골라 운용하는 펀드이다. 따라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펀드매니저에게 높은 운용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실력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장평균 이하의 낮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

3 펀드 클래스의 유형

하나의 펀드에서 운용방식은 같지만 펀드의 비용수준이나 비용부과방식은 펀드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예상투자기간, 가입경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즉 비용부담이 적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명칭의 마지막에 표기하는 알파벳은 이러한 펀드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자가 명칭만으로도 펀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도 표기한다.

먼저 펀드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펀드 가입시점에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수수료선취(A)형,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를 후취하는 수수료후취(B)형, 판매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판매보수만 받는 수수료미징구(C)형, 펀드 가입시점 및 환매시점 모두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수수료선후취(D)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 또는 환매 시 약 1% 내외로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또한, 펀드 판매경로에 따라 온라인(e)형, 오프라인형, 온라인슈퍼(S)형, 직판(J)형으

로 분류한다. 온라인(e)형과 온라인슈퍼(S)형은 오프라인형 펀드에 비해 펀드비용이 약 30~50% 저렴하나 상세한 투자권유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외에 보수체감(CDSC)형, 무권유저비용(G)형, 개인연금(P1)형, 퇴직연금(P2)형 등으로 분류한다.

표 5-3 | 펀드 클래스의 유형

구분	클래스	내용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A)	가입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판매보수가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
	수수료후취(B)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환매 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단기에 환매가능성이 낮은 장기투자에 적합
	수수료미징구(C)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로서 단기투자에 적합
	수수료선후취(D)	판매수수료가 가입 및 환매 시에 모두 부과되는 펀드
판매 경로	온라인(e)	인터넷 전용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하나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오프라인	오프라인 전용펀드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으나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
	온라인슈퍼(S)	한국포스증권에서 판매하는 저비용 펀드
	직판(J)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
기타	보수체감(CDSC)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펀드로 자동 전환하는 펀드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펀드를 매수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다른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펀드
	개인연금(P1)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펀드
	퇴직연금(P2)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펀드로 일반펀드보다 판매보수, 수수료가 저렴
	주택마련(H)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펀드

금융꿀팁

펀드 투자 시 비용절감 노하우

1. 장기투자 시에는 판매보수가 낮은 수수료선취(A)형 펀드가 유리하다.

수수료선취(A)형은 가입 시 판매수수료가 일시에 부과되지만 매년 부담하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2. 단기투자 시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수수료미징구(C)형 펀드가 유리하다.

수수료미징구(C)형은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A)형보다 높지만 가입 시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3.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한다.

동일한 펀드라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dis.kofia.or.kr/)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 판매회사를 선택하면 펀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온라인 가입 시 상대적으로 판매보수가 저렴하다.

온라인(e)형 및 온라인슈퍼(S)형은 오프라인 전용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하지만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5.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체크한다.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 10년 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니,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 등을 반드시 비교 확인한다.

6.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일부 추가되므로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4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ETF)는 특정 경제지표의 변동 또는 특정자산의 가격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이다.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일반펀드와 동일하지만, 특정한 경제지표 등에 연동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가입 및 환매절차와 조건이 복잡한 일반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지수나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처럼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아 운용보수가 저렴한 등 편리한 점이 많은 펀드이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ETF를 발행하고 있다(예를 들면 KODEX, TIGER 등). ETF시장 개설 초기에는 KOSPI200과 같은 시장대표지수를 복제하여 추적하는 ETF가 주류였으나, 그 이후 특정 업종의 상장기업 주가 흐름을 추종하는 섹터 ETF, 해외 시장대표지수 등을 추종하는 해외 ETF, 금과 같은 상품 가격 또는 상품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ETF,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ETF, 통화지수를 추종하는 통화 ETF 등의 다양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어 거래되고 있다.

확대보기

ETF의 괴리율과 추적오차

ETF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는 주식, 현금, 배당, 이자소득 등 ETF의 자산에서 부채 및 비용 등을 제외한 값이다. ETF의 시장가격은 ETF의 순자산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ETF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초자산의 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기초자산의 순가치가 1만원임에도 ETF의 시장가격은 1만 2천원에 형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괴리율이 높은 ETF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추적오차는 ETF의 수익률과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령 코스피지수가 5% 상승하였는데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수익률이 4%라면 수익률 1%만큼의 추적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추적오차가 높은 ETF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4 |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상품의 비교**

구분	개별 주식	ETF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
운용목표	인덱스 초과수익	특정 인덱스 추종	특정 인덱스 추종	인덱스 초과 수익
법적 성격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레버리지 기능	가능		불가	
거래비용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분산투자	불가	가능		
증권거래세	매도 시 부과	미적용		

금융꿀팁

ETF 투자 시 유의사항

1.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이다.

ETF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장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위험에 대해 숙지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2. 상품 · 운용회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하다.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되며 장기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자 전에 수수료 및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적오차"가 큰 ETF나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큰 ETF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수익구조가 일반 ETF와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버지리 ETF는 주가지수 등의 움직임의 2배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인버스 ETF는 주가

지수 등이 상승하면 하락하고, 주가지수 등이 하락하면 상승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해외상장지수나 농산물 · 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확대보기

ETF와 ETN

최근에는 ET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s)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이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만들어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공한다. ETF와 ETN은 모두 인덱스 상품이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ETF의 경우는 자금이 외부 자산보관 수탁회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반면에, ETN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ETF는 만기가 없는 반면에, ETN은 1~20년 사이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증권(Note)이다.

5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흔히 리츠(REITs)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이다. 리츠는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펀드와는 달리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리츠는 부동산 등에 총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리

츠를 이용하게 되면 소액 개인투자자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비용 및 세금이 부담되는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❶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펀드 투자 시 자신의 투자목적, 투자성향, 자금용도 등에 적합한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하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펀드 투자판단 시 펀드 핵심정보가 기재된 서류인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특히 1~6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❷ 펀드 투자 시에도 투자대상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섹터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가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의 경우에도 섹터, 투자지역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자대상 분산 외에도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펀드투자를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균화효과(Cost Averaging Effect)에 의해 한 번에 거금을 투자할 때 높은 가격에 매입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❸ 판매보수 ·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적은 펀드를 골라 가입할 필요가 있다.

펀드에 따라 판매보수 · 수수료 부과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선취 · 후취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와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 수준 등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 가입하는 것이 좋다.

❹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

펀드의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를 선택할 때 최근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많은 실증 분석에서도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high risk high return'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❺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자산운용회사, 펀드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 등을 확인한다. 펀드에 가입하면 매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가 발송되는데, 기준가격,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유사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 알아본 후,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펀드 가입 시 꼼꼼한 상품내용과 리스크 확인 등도 중요하지만 가입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성공투자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투자액, 평가액, 평가손익 및 수익률 등을 관리하면 펀드수익률의 추세파악이 용이하여 필요한 경우 자산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펀드를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확대보기

시간분산투자법: 적립식 투자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대상자산 분산뿐만 아니라 투자시점을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시간분산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적절한 투자시점을 잡기 매우 어렵다.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는 시장상황 및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가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태에서 그나마 개인투자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것이다. 즉, 몇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또는 매도시점을 분산함으로써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매입가격 또는 매도가격을 평균화(averaging) 할 수 있는 것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투자는 정액분할투자법의 대표적인 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달 투자하는 금액은 일정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주가가 높은 달에는 주식을 적게, 주가가 낮은 달에는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것이 되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매월 100만원씩 매입하는데 주가가 첫 달은 2만원, 둘째 달은 1만원, 셋째 달은 3만원일 때 매입했다면 평균 매입단가가 2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만원일 때는 50주, 1만원일 때는 100주, 3만원일 때는 33주를 사서 총 183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 299만원을 183주로 나눈 16,339원이 평균 매입단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액분할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균화효과(cost averaging effect)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5.2 파생상품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특정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화 등의 금융상품과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commodity)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많이 거래된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과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선도, 스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본래 목적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헤지(hedge)라고 부른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헤지 이외에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발달로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면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양산하게 되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파생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선물계약

1 선물의 개념

선물(futures)은 거래당사자인 선물매도자와 선물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즉, 미리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에 한 쪽은 자산을 매입하기로, 다른 한쪽은 매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2]

선물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밀을 생산하는 농부는 자기가 가을에 수확하게 될 밀의 가격이 얼마일지 모른다. 만약 농부가 가을에 수확할 밀의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수입

2 선도(forwards)는 선물과 구조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선물과 달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사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밀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의 경우에도 원료가 되는 밀의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면 빵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빵의 가격을 정하고 자신의 수입 또한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물계약은 불확실한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을 확실한 것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욕구가 그 시초가 된 것이다.

2 선물계약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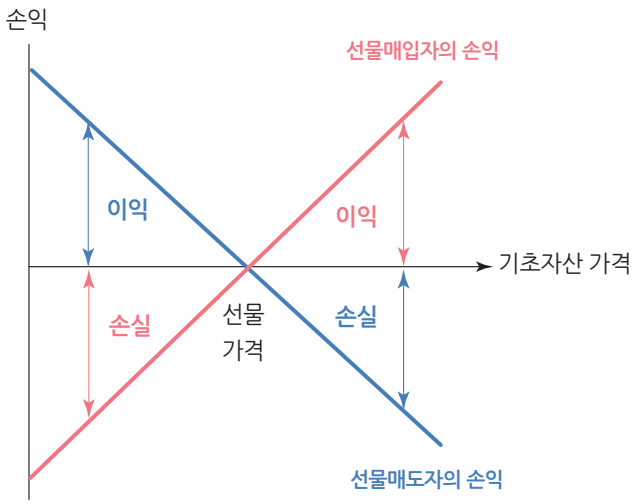
선물계약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구분된다.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선물로서 초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은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인 선물로서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장단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선물(stock-related futures),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currency futures)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200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선물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왔다.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나, 적지 않은 선물이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코스피200선물을 비롯하여 코스피200선물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미니코스피200선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150선물,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산업군별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코스피 · 코스닥시장 통합지수인 KRX300선물 등으로 다양하다. 금리선물로는 각각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있고, 통화선물은 각각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이 있으며, 상품선물로는 금선물, 돈육선물이 있다.

3 선물의 손익구조

선물계약은 선물매입(long position)과 선물매도(short position)로 구분된다. 선물매입은 최

그림 5-2 | 선물의 손익구조



종거래일에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행위, 즉 미래에 정해진 가격만큼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 입장이며, 선물매도는 최종거래일에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행위, 즉 미래에 정해진 가격만큼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입장이다.

선물계약자는 최종거래일에 현물가격에 관계없이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내어주거나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물계약의 손익은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익과 손실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물계약의 손익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선물매입자는 선물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선물매입자는 매입포지션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상승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선물매도자는 선물가격에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따라서 선물매도자는 매도포지션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하락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

4 선물거래의 기능

선물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가격변동리스크를 줄이는 헤징(hedging) 기능을 들 수 있다. 즉, 가격변동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hedger)는 선물시장에서 미래에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수익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밀 농부가 3개월 후에 밀을 100톤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개월 후에 밀을 1톤당 30만원에 100톤 팔기로 미리 선물계약을 체결(선물 매도)했다면 이 농부는 3개월 후 밀의 시장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수익을 3,000만원(=100톤×톤당 30만원)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선물거래를 통해 현물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현물의 투자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여지가 증대되고, 특히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어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선물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한다. 물론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예시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선물거래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선물거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물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은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나 선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스프레드(spread) 거래 등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확대보기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과 선물 투기거래의 위험성

선물 투기거래로 인해 파멸에 이른 개인이나 금융회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베어링스(Barings) 은행의 파산은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1995년 2월 27일 영국왕실인 윈저궁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선물거래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MEX)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통해 1993년 베어링스 그룹 전체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이는 성공을 거두었던 닉 리슨(Nick Leeson)은 1994년 말에 1만 9천까지 떨어진 지수가 2만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Nikkei225주가지수 선물에 상당액의 매입 포지션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인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따라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엔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Nikkei지수 또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새해의 Nikkei지수는1만 8천까지 폭락했고, 이어 1월 17일 고베 대지진으로 다시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리슨은 본사에 10억달러를 긴급 지원 요청하였고 이 돈으로 70억달러의 주가지수선물을 더 사들여 지수의 인위적인 상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곧이어 미국의 금리억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Nikkei지수는 1만 7천대로 다시 폭락하여 13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함께 베어링스 은행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물 등 파생상품은 투자를 잘못 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거대한 은행도 파산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거래금액 한도를 정하고, 거래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독기관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 옵션계약

1 옵션의 개념

옵션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반면, 계약상대방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옵션계약의 경우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인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옵션계약의 종류

옵션계약은 선택권의 종류에 따라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으로, 콜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콜옵션의 매도자는 선택권 행사에 응해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으로, 풋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풋옵션의 매도자는 선택권 행사에 응해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한다. 또한 옵션은 권리행사시기에 따라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은 옵션의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이다. 반면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은 옵션의 만기일이 될 때까지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말한다.

옵션은 기초자산에 따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stock option),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요국의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통화옵션(currency option), 금리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options on futur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으로는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개별주식 옵션, 미국 달러옵션 등이 있다.

확대보기

옵션가격과 행사가격

옵션가격이란 옵션매입자가 옵션이라는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이라고도 한다. 옵션가격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및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배당, 옵션의 만기, 무위험이자율 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다른 개념으로서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은 옵션매입자가 옵션이라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함
-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3 옵션의 손익구조

콜옵션 매입은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활용되고, 콜옵션 매도는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각각 활용되는 포지션이다. 콜옵션 매입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인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콜옵션 매도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림 5-3〉은 콜옵션 매입자 및 매도자의 손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풋옵션 매입은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활용되고, 풋옵션 매도는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각각 활용되는 포지션이다. 풋옵션 매입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

이 행사가격에 풋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한 가격인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풋옵션 매도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림 5-4〉는 풋옵션 매입자 및 매도자의 손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 | 콜옵션의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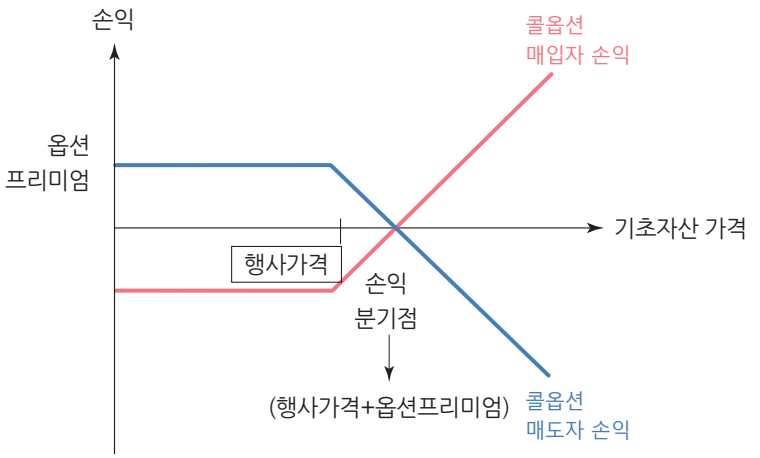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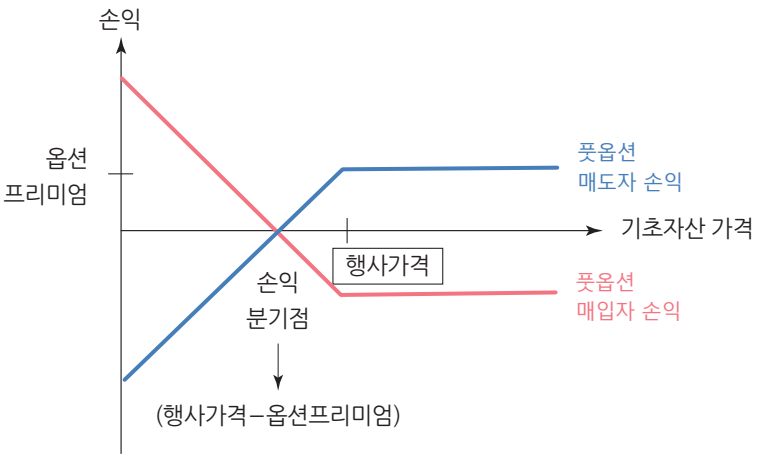


그림 5-4 | 풋옵션의 손익구조



4 옵션거래의 기능

옵션은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등과 결합하거나 옵션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갖는 투자수단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나 향후 가격변화에 대한 예상 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적합한 투자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선물거래의 가장 큰 기능이 헤징이었듯이 옵션도 불확실한 미래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헤징을 위해 선물과 옵션을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선물거래는 헤지로 거래할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반면, 옵션거래는 미래에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며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옵션시장에도 투기거래가 존재한다. 옵션의 거래비용은 옵션매입자의 경우 옵션프리미엄에 한정되기 때문에 옵션투자 시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투자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확대보기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Linked Warrant)

ELW는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ELW의 손익구조는 옵션의 손익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ELW는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행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옵션과 달리, ELW는 증권사가 조건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표 5-5 | ELW와 주가지수옵션의 비교

구분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지수(주식)옵션
판매기관	금융투자업자	옵션매도자(일반투자자 가능)
상품성격	증권(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유통시장	유가증권시장	옵션시장
신용위험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	거래소가 결제이행보증
표준화정도	발행주체에 따라 다양	표준화
투자가능형태	두 가지 (콜ELW 매입, 풋ELW 매입)	네 가지 (콜옵션 매도 · 매입, 풋옵션 매도 · 매입)

3 스왑계약

1 스왑의 개념

스왑(swap)계약이란 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스왑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데, 그 이유는 스왑은 두 당사자가 자신의 자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계약형태가 다양하여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스왑의 종류 및 기능

스왑은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통화스왑(Currency Swap),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주식스왑(Equity Swap), 상품스왑(Commodity Swa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화스왑의 경우 서로 다른 화폐 간에 원금과 이자의 자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화와 원화를 스왑하여 원금과 이자를 서로 교

환하게 되면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또한, 금리스왑을 하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5.3 구조화 상품



1 구조화 상품의 개념과 특징

1 구조화 상품의 개념

구조화 상품이란 예금,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구조화 상품의 예로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혼합하여 만든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예금과 주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주가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 등이 있다.

2 구조화 상품의 특징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법을 이용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입수가 어렵고, 유동성 부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상품구조 및 유동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화 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는 달리 투자

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2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1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기 및 만기 상환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반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만기상환불이행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조기상환되는 조건이 부여되고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매를 요구할 수도 있다. ELS는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상품인데,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ELF(주가연계펀드), 은행 등이 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가 있다.

확대보기

ELS의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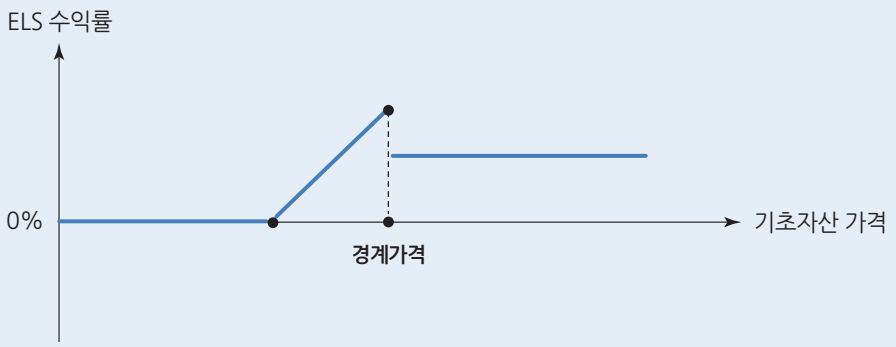
ELS는 다양한 손익구조를 가지는데, ELS의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손익구조는 투자자들이 ELS 투자 시 위험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 원금보장형 ELS

원금보장형 ELS는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일부 자금은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확보하는 수익구조를 갖는다. 원금보장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만기수익이 제한적이다. 원금보장형 ELS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금의 비율인 원금보장률(floor rate)이 사전적으로 제시된다.

〈그림 5-5〉는 원금보장이 되는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미리 정한 경계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률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획득하게 된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경계가격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에 상관없이 사전에 제시한 수익률이 확정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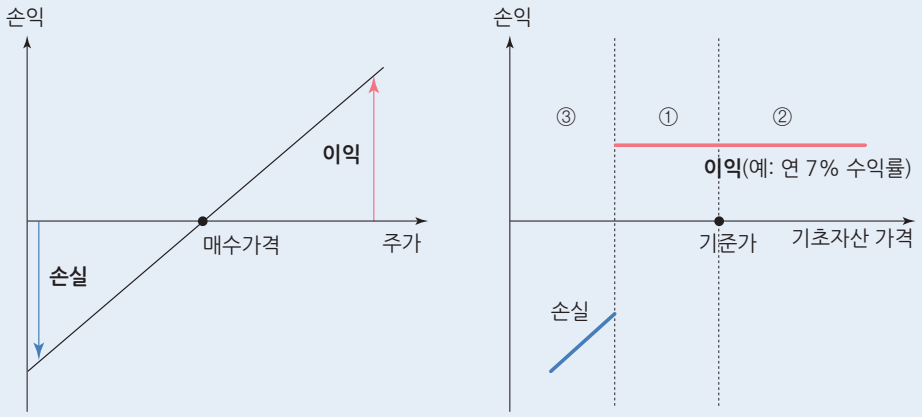
그림 5-5 | **원금보장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



◈ 원금비보장형 ELS

원금비보장형 ELS는 만기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없는 대신에 기대수익률은 높게 제시된다. 〈그림 5-6〉은 주식투자의 손익구조와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를 비교하여 단순화해 나타낸 예시이다. 주식투자 시 주식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발생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ELS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하락과 다른 손익구조를 갖는다. 오른쪽 그림에서 ①의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하락해도 일정 수준(예: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의 90%, 85%, 80%, 75%)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익(예: 연 7%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②의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많이 상승해도 약정된 이익만 얻을 수 있다. ③의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수준보다 더 하락(예: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의 75% 미만)하면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림 5-6 | 주식투자의 손익구조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



◈ 다양한 ELS 유형과 손익구조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ELS의 손익구조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Knock-Out형, Step-Down형, Bull Spread형, Reverse Convertible형, Digital형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표 5-6 | ELS의 유형과 손익구조(예시)

유형	손익구조(예시)
Knock-Out형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단 한번이라도 사전에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미리 정한 수익률로 만기수익률이 결정됨
Step-Down형	정해진 시점(통상 6개월)마다 주가를 평가하여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확정수익률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됨
Bull-Spread형	만기시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례하여 수익률 결정
Reverse Convertible형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하락 폭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해도 수익률 지급
Digital형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익률이 각각 다른 상품

2 기타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주가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ELS와 달리, DLS는 기초자산이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가 아닌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의 변동에 연계되어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예를 들어, 금리 등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약정수익률이 지급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DLS의 법적 형식은 증권이므로 다른 증권처럼 투자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익구조 등 다른 특징은 ELS와 유사하다. 한편,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s Linked Fund)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하는데, DLF의 손익구조는 DLS와 유사하다.

확대보기

유동화와 유동화증권

유동화증권도 구조화 상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대출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증권이다. 유동화란 기초자산의 가치, 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며, 유동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된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종류로는 MBS(주택저당증권), CDO(부채담보부증권),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증권은 MBS라고 할 수 있다. MBS는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다. 은행에서는 개인에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집을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메꿀 수 있는 권리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저당권을 다시 담보로 설정하여 MBS를 발행함으로써, 은행은 소액의 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는 대신 대출원금과 거의 비슷한 큰 돈을 한 순간에 받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MBS를 구매한 투자자는 마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3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

ELS, DLS 등 구조화 상품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위험·중수익 추구상품으로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주가지수, 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ELS, DLS 등 판매회사에 대하여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판매회사로부터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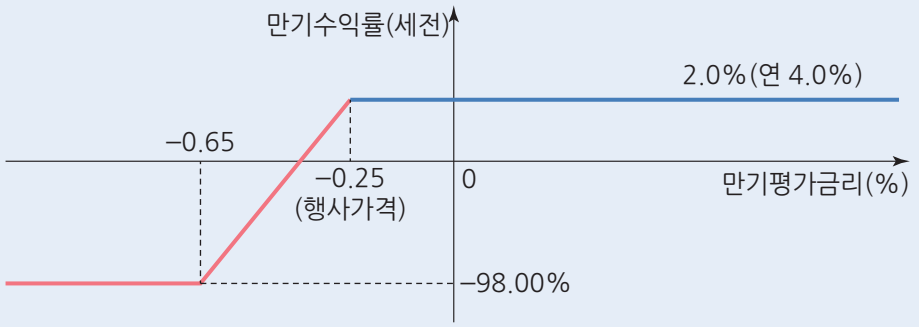
확대보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펀드(DLF) 수익구조

◈ (상품형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하는 펀드

◈ (기초자산) 독일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률

◈ (손익 구조) 만기(6개월) 시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되, 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배수(250배)에 비례하여 손실 발생 가능



① 만기일 독일국채 금리가 -0.25%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 + 2%이자(연 4%) 지급

② 만기일 독일국채 금리가 -0.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하회폭에 손실배수(250)를 곱한 비율로 원금 손실

(예) 하회폭 0.01%당 원금 2.5% 손실(0.01% × 250) → 0.4% 이상 하회 시 원금 100%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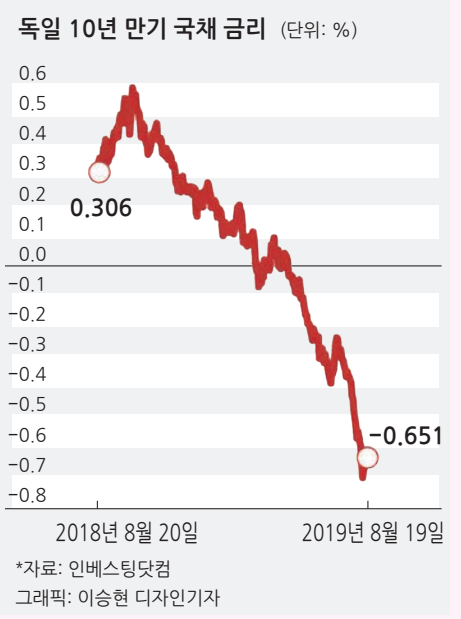
③ 만기일 금리수준과 무관하게 연 4% 쿠폰 지급: 쿠폰 감안 시 최종 수익률은 최소 -98%~최대 2%(6개월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 2019. 8. 20]

기사읽기

'세계의 골칫덩이' 된 獨 국채 … 하반기도 어렵다

독일 국채 시중금리(수익률) 급락으로 이와 연동된 DLS(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독일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물론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데다,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악재도 많기 때문이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 시중금리(수익률)는 19일 전날보다 3.3bp(1bp=0.01%p) 오른 -0.651%를 기록했다. (후략)



[출처: 머니투데이, 2019. 8. 20.]

5.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권·펀드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❶ 상품의 내용을 알고 투자하여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구조화 상품, 파생상품 등 상품별 각기 다른 특징과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수준 등을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ELS, DLS 등 구조화 상품과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선물·옵션 등은 어떤 조건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상품의 특징과 손익구조 등을 잘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또한, 펀드투자 시에는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특징 등을 이해한 후 서명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❷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연금상품이나 적립식 상품과 같이 장기간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차이가 투자성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동일유형의 상품을 비교한 후 투자비용이 적은 상품을 골라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비용이 오프라인보다 약 30~50% 저렴하다.

❸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일부 자산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방법이다. 대상자산을 주식, 채

권, 펀드, 예금 등으로 가능한 다양하게 구성하고, 투자지역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해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❹ 투자 후에도 투자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국내 및 세계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투자지속 여부, 포트폴리오 조정필요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하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태도라고 할 수 있다.

❺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❻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투자상품은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학자금, 치료비, 전세자금 등 단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투자는 내재가치 등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기업 경영환경이나 금융시장 상황 등의 급변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❼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자신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상품가격 하락위험 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투자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⑧ 판매회사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스스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⑨ 투자결과는 수익 ·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확대보기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유의사항

1. 해외주식 투자 시 공시 서류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

특정 미디어 및 SNS 등 간접 정보에만 의존하는 '묻지마식 투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투자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고위험 상품은 상품구조를 충분히 분석하여 접근

해외 레버리지 ETF · ETN 등 고위험 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므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은 투자는 위험하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외 증권시장은 가격 등락폭 제한이 없으므로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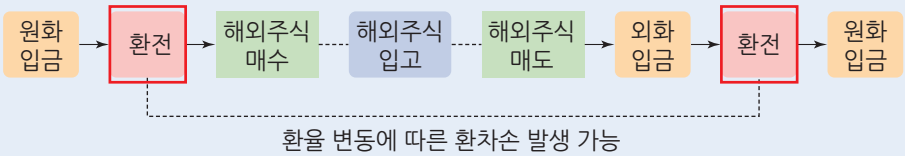
※ 예시 사례: 기초 지수가 하락 후 원래 가격으로 회복하더라도, 2배 레버리지 ETF는 10%, 3배 레버리지 ETF는 30% 손실이 발생

구 분	T	T+1	T+2	최종 수익률
기초자산의 가격	100	80 (20%↓)	100 (25%↑)	0%
레버리지 ETF(2배)	100	60 (40%↓)	90 (50%↑)	△10%
레버리지 ETF(3배)	100	40 (60%↓)	70 (75%↑)	△30%

3. 환율 변동성 리스크에 유의

해외 투자시 매수 전 환전과 매도 후 환전 등 두 차례의 환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해외주식 매매 및 환전 절차 도식



※ 예시 사례 : 주가는 상승했으나 매매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최종 수익률 손실(-)

'22.5.16. 미국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에 매입(환율 $1 = ₩1,286) → '22.6.2. 100주를 주당 $102에 매도(환율 $1 = ₩1,238)

일자	환율	매매대금	매매손익 (A)	환손익 (B)	최종손익 (A+B)
'22.5.16.	₩1,286/$	₩12,860,000	(+)₩257,200	(-)₩489,600	(-)₩232,400
'22.6.2.	₩1,238/$	₩12,627,600			

주) 매매 수수료 미고려

4. 해외 직접투자 시 국가별 거래여건 및 비용 확인 필요

결제일이 국가별 또는 증권시장별로 다를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통상 국내주식 수수료보다 높게 부담한다. 세금 역시 국내 주식과 과세 체계가 다르며, 해외 주식투자 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 의무가 국내와 상이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투자자 보호 환경이 다르므로 투자자보호 절차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 예시 사례: '21.1.1~12.31. 기간 중 해외 상장주식 매도내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단위: 만원)

구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총손익	기본공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22%)
손익	(+)500	(+)300	(-)100	(-)100	(+)600	(-)250	350	77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2022. 8. 22.]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고객 주문정보 이용 및 종목추천 전 매매행위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 시세조종

시세조종은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세를 자의적으로 등락시키고 그 등락된 시세가 타인에게 공정한 시세라고 오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득

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으로는 시장의 시세보다 고가로 주문을 내거나 실제 매매체결 의향이 없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량의 주문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낸 후에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허수주문,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이 있다.

2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내부자가 신제품 개발, 합병, 영업양수도 등 상장회사의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선행매매 등 불건전 거래행위

고객의 주문정보를 처리하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매수·매도 주문정보를 자신의 매매에 먼저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매수하는 선행매매(front running) 등의 불건전 거래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표 5-7 | 불공정 거래의 유형

시세조종 (주가조작)	•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 등이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불건전 거래행위	• 고객의 주문정보 이용, 종목추천 전 매매, 위법일임매매, 과도한 투기적 거래, 고객의 위법주문의 수탁행위 등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기타	• 임원, 주요 주주 및 대량보유자(5%)의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줄어든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투자 피해' 또는 '투자 손해'라고 한다.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두어야 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대보기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

간혹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투자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고 '투자손실보전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회사 직원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투자손실보전약정'은 모두 위법한 약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애초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

학습내용 정리

- 펀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 펀드는 주식과 같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등을 파악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펀드투자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전문가에 의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운용보수 외에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주가, 금리, 환율, 실물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화 등의 금융상품과 금, 은 등의 물품 · 원자재(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과 거래소 밖에서 비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선도, 스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구조화 상품이란 예금,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법을 이용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초자산, 상품구조 및 유동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에는 ELS와 DLS가 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시 보수,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결과는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잊지 말고 투자하여야 하고, 투자 이후에도 투자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펀드의 투자대상에 따른 유형 구분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선물계약의 손익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3. 구조화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4.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펀드투자 시 펀드운용 관련 회사에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을 수수료라고 하며,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 순자산의 일정비율로 지속적 ·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_____ 라고 한다.

2. _____ 는 특정지수의 변동 또는 특정자산의 가격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고 운용보수가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한 펀드이다.

3.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_____ 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

4. _____ 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으로서, 원금비보장형의 경우 주가지수 등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약정 수익률이 지급되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 O·X 문항

1.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되는 펀드에 투자하면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 )

2.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물거래는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 )

3. ELS는 투자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 )

4. 금융투자상품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 )

제6장

신용관리

6.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6.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6.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6.4 신용카드 활용법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과 가계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용정보와 신용평가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과 올바른 신용카드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목표

-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신용평가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신용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신용카드의 기능과 종류 및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쓰는 '소액신용결제' … 연체하면 신용점수 '뚝'

(전략) 주요 카드사들은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는 체크카드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소액의 신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일컬어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통 30만원 정도의 신용한도가 부여된다. 기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따로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소액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사용하다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신용' 서비스인 만큼 이용 대금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신용점수 관리에 익숙지 않은 연령대임을 고려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체 시 이자율도 높다. 신청한 결제일에 통장 잔고가 부족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수준의 연체 이율이 적용된다.

소액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의 할부처럼 카드 대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분할납부는 소액신용 한도 내에서 이용한 금액을 할부처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서비스로, 최소 2개월부터 가능하다. 분할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염두에 둬야 한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개월 수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다르겠지만, 최고 수수료율은 대개 19.9%에 달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층이 신용평가를 많이 받지 않는 고객인 만큼 소액 신용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대학생 등이 많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신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향후 신용 거래 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2023. 10. 25.]

- 연체 발생 시 금융시장은 나의 신용관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 개인의 신용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신용점수)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핵심 용어 정리

신용

금융시장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요구되는 정보로서,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포함

개인신용평가점수

CB(Credit Bureau)라고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

채무조정제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제도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카드로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결제방식

6.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1 신용의 개념

신용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경제생활은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자동차 할부 구입, 해외여행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져 일상적인 소비지출 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담보 없이는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신용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신용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화폐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할 빚 또는 채무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래 시점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증가된 것이므로 신용을 이용하는 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기회비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은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 과도한 빚이나 채무로 인해 심할 경우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가계는 신용을 잘 이용하면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자신의 신용도만큼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대금을 납부하는 휴대전화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또한 신용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금리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인과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상승 시에는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시에는 대출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신용을 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신용을 기초로 돈을 빌리거나, 현금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용에 대한 대가(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이자의 경우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할수록 이자비용이 낮아진다. 또 금융회사는 신용이 낮은 경우 신용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신용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 사용은 이자 또는 수수료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 없이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등 개인적으로는 과소비나 충동구매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계 측면에서는 부채(혹은 채무)가 증가하여 가계건전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신용을 사용한다면 연체, 채무불이행에서 더 나아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6.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1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요구되는 정보로서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평가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돈을 빌려주며,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신용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용거래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가 개인신용정보인 것이다.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뿐만 아니라, 백화점 고객카드 신청, 결혼정보업체 등록, 공공기관의 취업 등 개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표 6-1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종류	내용
식별정보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전자우편주소, SNS주소 등)
신용거래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등에 관한 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직업, 재산, 채무, 소득,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등)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결과 관련 정보,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에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1〉에 정리되어 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개인신용정보는 CB(Credit Bureau)라고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수집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CB는 공공CB와 민간CB로 구분되는데 공공CB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있고, 민간CB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가 있다. 공공CB는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는 데 비해, 민간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개인 대출심사와 같이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 수집과 신용평가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해 오던 신용정보를 안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신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대출 등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하여 이용하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정보에는 채무불이행정보(연체 90일 이상), 대출 및 채무보증정보, 카드개설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체납정보,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산 및 소송정보 등의 공공정보 등이 포함된다.

민간CB인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내역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가공하여 금융회사와 같은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KCB, NICE평가정보와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CB정보라고 한다. 이러한 CB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일반적인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자의 재산 소유, 직업, 소득 등과 같은 현황 정보에서부터 상환 이력, 금융거래 횟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화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보다 상세하다. 예를 들어, 연체정보도 연체기간 90일 이상이 아닌 5일 이상의 연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출, 채무보증, 카드 정보 등도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수집 · 제공된다.

또한 대부업체와 백화점,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연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얻은 신용보고서(credit report)와 신용평점(credit score)을 이용하여 거래 여부 및 금리,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고객의 신용정보는 다시 신용평가회사에 전달되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표 6-2 | 개인신용정보 관리

<table>
<tr><th colspan="2">관리 기관</th><th>등록 신용정보</th><th>신용정보 제공</th><th>신용정보 이용</th></tr>
<tr><td rowspan="4">공공 CB</td><td rowspan="4">한국신용
정보원</td><td>채무불이행 정보(연체 90일 이상)</td><td rowspan="4">금융회사,
국세청, 법원 등 공공기관</td><td rowspan="4">금융회사</td></tr>
<tr><td>대출 및 채무보증 정보</td></tr>
<tr><td>카드개설 정보</td></tr>
<tr><td>세금체납 등 공공정보</td></tr>
<tr><td rowspan="2">민간 CB</td><td rowspan="2">KCB,
NICE평가
정보</td><td>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td><td>한국신용정보원</td><td rowspan="2">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td></tr>
<tr><td>비금융회사에서 받은 정보</td><td>비금융회사: 대부업체, 통신회사,
유통회사, 소매회사 등</td></tr>
</table>

3 개인신용정보의 확인과 정정

개인의 경우 연 3회(4개월에 1회)까지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이나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신용거래에 부정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점검해 볼 수 있다.

2011년 10월 이전까지는 신용정보 조회 횟수 혹은 조회한 기관 등의 정보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작용했으나 지금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관리 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신용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정정요청을 해야 한다. 신용정보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은 신용정보 오류 정정 신청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 및 본인(신용정보 정정신청자)이 요구한 곳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개인신용평가

1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신용평가점수제(1~1,000점)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점수는 CB사가 개인에 대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이다. 기존의 신용등급제(1~10등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출심사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신용등급제는 신용등급 구간별 점수 폭이 너무 커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신용위험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아왔으며 1~2점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5점과 662점은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신용도가 유사하지만 이를 등급제에 적용하면 각각 6등급과 7등급으로 분류되어 대출심사 시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신용평가점수제 시행으로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가능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심사가 거절되었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신용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대학생이나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상세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2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그리고 신용성향이 있다.

먼저 신용행동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채를 빌리고 갚는 신용거래 이력을 뜻하는데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환이력정보란 채무의 기한 내 상환 여부, 즉 과거 연체경험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부채수준은 현재 보유한 대출, 보증 등 상환이 필요한 채무정보를 의미하며, 신용거래기간은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기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형태는 신용거래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따른 채무정보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 수준을 고려한 미래 가처분소득을 의미하는 신용여력과 소비자 개인의 신용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성향도 반영된다.

한편, CB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의 납부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이 직접 CB사에 제출하면,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나 신용정보 등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현금거래

1 예를 들어, 신용등급제하에서 7등급, 신용평점 662점인 사람은 대출이 거절되었으나 신용평가점수제로 전환되면서 A은행은 664점 이상, B은행은 660점 이상 등 은행별로 대출가능 점수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가 많은 자영업자 등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유리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금융회사 대출 여부,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결정, 신용카드사 카드 발급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기부터 꾸준한 신용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6-1 |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 신용조회정보는 신용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확대보기

신용평가에도 이용되는 비금융거래 이력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신용평가 가점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신 · 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초년생처럼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실적, 체크카드 이용 기록 등을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교통법규 미준수 등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나 SNS 등의 온라인 활동과 온라인 쇼핑 내역, 공공요금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금융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 CB가 도입되면서 비금융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6.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1 신용관리방법

신용이 좋다는 것은 좋은 신용기록을 쌓아 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용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관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납입·상환해야 하는 돈을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체정보인데, 결제일을 깜박하거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자신이 상환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한 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❶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언젠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 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CB사와 금융회사도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나 지출 등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❷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므로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를 통해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❸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가 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액연체는 대부분 개인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 소액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❹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개인의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하여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❺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금융회사는 거래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오픈뱅킹[2]이 등장하면서 주거래 은행의 의미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 단골고객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❻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되었는데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

2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 ·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전화번호 등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❼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의 신용은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거의 없는 개인은 평가 근거가 부족해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없는 대출거래, 신용카드 이용 등 건전한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❽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확인하기

본인의 신용정보는 C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1년에 3회(4개월마다 1회)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용하기

'전국민 신용교육' 및 무료 신용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제공되는 '전국민 신용교육'을 활용해보자. 신용평가회사(KCB,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신용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년에 3번, 4개월에 1회씩 무료로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래딧(www.allcredit.co.kr)이나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점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용점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연체정보 등록 및 해제

채무불이행, 즉 연체는 신용평점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체정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도 보유하고 있다.[3]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연체를 하였다면 되도록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연체정보는 연체금 완납 시 해제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정보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이 남아 있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연체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거나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연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그 이외의 연체정보는 상환일로부터 연체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된다.

3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학자금대출의 대출금, 이자 등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단 ,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3 채무조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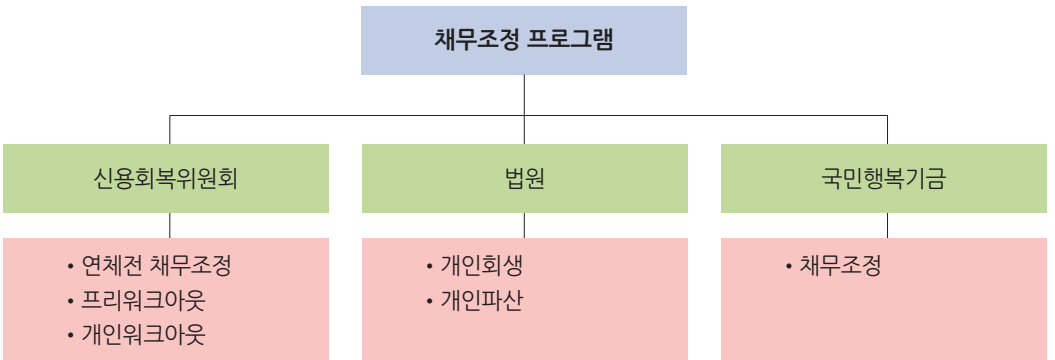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은 경우, 또는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등이 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을 하는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 일반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상환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로 제한된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

그림 6-2 | 채무조정프로그램



로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2 법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채무 이외의 사채가 많은 경우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개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신청가능하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한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며 부채규모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는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 지원제도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표 6-3 | 채무조정제도 종류

구분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90일이상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상환불가자 (소득 재산-無)
채무액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10억 담보15억	제한없음
변제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3~5년	-
채무 조정 내용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 카드1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담보대출	조정불가	조정가능	조정가능	제외(별제권)	
보증인 독촉 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법적효력	당사자 간 계약효력(민사)			판결효력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미등록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면책결정 후 5년간

[출처: 신용회복위원회(2023)]

4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1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서비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장기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서비스에는 분할상환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제도 등이 있다.

❶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제도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4]나 기한이익상실[5]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상환기간의 경우 대출금을 10년까지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이면 20년까지도 허용한다. 또한 분할상환 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해준다. 채무가 1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불가하며,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분할상환서비스가 중지되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❷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6]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중소기업 재직자' 유예를 포함하여 최장 3년간 등록 유예 가능)가 가능하다.

---

4 채무자의 정부보증 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다.

5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를 말한다.

❸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유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농어촌융자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면 초기 대출 조건으로 정상화되어 기한이익이 회복된다.

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서비스

❶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제도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감면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유예는 대학 졸업 시까지,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❷ 소액금융제도

소액금융제도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신청인에게 대출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저소득 저신용자(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해당)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소액금융제도의 예로는 희망사다리론, LH공사 행복론, 미소금융론, 새출발 마중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론, 개인회생론 등이 있다.

6.4 신용카드 활용법



1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

1 신용카드의 기능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점점 더 편리한 지불수단을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credit card)와 각종 체크카드(check card)가 사용되고 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월별로 대금을 나누어 지불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으며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이다.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인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신용카드 고객의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 없더라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신용이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거래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결제 연기, 제휴 할인,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제공, 마일리지 적립 등)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회사는 신용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카드회원에 의한 신용위험을 완화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처럼 신용카드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신용카드회사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구매자(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용서비스와 판매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금회수 위험을 해소하는 일종의 신용카드회사 신용보강 중개거래라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의 장단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신용을 이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소득과 지출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신용을 사용하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만족(또는 효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셋째, 신용 사용으로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올바른 신용 사용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외에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한다. 첫째, 신용사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둘째,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신용을 이용하면 당장의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과소비나 과다부채가 발생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2 신용카드의 종류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즉,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보다 약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한 물품대금을 갚게 된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내에서만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물품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순간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거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시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유사 지불수단으로 선

불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로 구매보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으며, 충전해 놓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

국내전용카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카드이고, 국제카드는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카드를 국내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아메리카익스프레스(아멕스), JCB 등 해외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가 국제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한쪽 귀퉁이에 국제 신용카드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3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1 할부거래

할부거래는 구매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낼 수 있는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다. 할부를 이용하면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 구입이 편리해질 수 있으나,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통 대출이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할부수수료율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결제방식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이용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아도 연체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사실상 단기대출상품으로 이월되는 잔액에 대해 일반대출상품보다 높은 이자(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확대보기

'독이 든 사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대금의 일부를 이월하여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서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다. 약정결제비율은 카드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부터 100%까지의 범위 이내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대금이 100만원이고 약정결제비율이 20%라면 이번 달에 20만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80만원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식이다.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는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연체 기록 없이 카드 대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2022년 2분기 중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금리)이 최저 14.1%에서 최고 18.4%에 달할 정도로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 수수료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소액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채무부담이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첫 달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매월 쓰는 돈의 일부가 계속 이월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 대금 상환일을 계속 미루게 된다면 결국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자체가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나, 제때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관리 이점과 함께 위험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만큼 관리가 어렵다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단기간에 이월 금액과 이자 모두 완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결제비율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완납 이후에는 서비스를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3 단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이란 소액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일컫는다. 단기카드대출의 사용 한도액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는 신용카드회사별로 회원의 신용도,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다르다.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50만원~300만원 정도이며, 우리나라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고금리 대출상품이다.[7] 따라서 단기카드대출은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용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갚는 것이 좋다.

4 장기카드대출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카드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기존의 카드론을 말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출이자율 역시 카드사 평균 10%가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편리하다고 단기카드대출이나 장기카드대출을 자주 사용하면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카드대출이나 장기카드대출은 고금리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므로 연체위험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카드사 단기카드대출의 수수료율은 사실상 대부업의 대출금리 상한(20%)과 비슷한 수준이다.

5 신용카드 포인트와 선포인트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가 있다. 카드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카드이용대금 결제, 물품구입, 연회비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선포인트 서비스는 카드사가 상품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먼저 지급해 주고, 이후 카드회원은 동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나 TV, 가구 등의 고가품을 구매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선포인트 서비스는 할인이 아닌 부채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상환할 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지 못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카드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선지급 받는 것이 좋다.

금융꿀팁

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1. 카드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다.

단 1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잔여 포인트를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다.

2.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 고객은 ATM에서 포인트를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휴대폰 앱으로 ATM 출금을 신청하고, 출금 시 이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받을 수 있다.

3.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한다.

4.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무이자 할부 등의 결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포인트 결제 방침은 카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적용하기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포인트가 적립되게 된다. 이를 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별로 조회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해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제공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point.or.kr)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활용하면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4 신용카드 해외 사용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여행 시 현금 소지의 위험을 없애고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여행 후 외국 잔돈이 남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 발급받는 것이 좋다.

둘째, 출국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매출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사용내역은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사용되는 경우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매출전표 보관은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해외사용 실적의 거래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 국내보다 길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넷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 영업일 이내 새 카드를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꿀팁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 마스터 등)로 청구된다. 이때 한국 카드사에서는 미화(USD)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원화(KRW) → 현지통화 → 미화(USD)'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추가 수수료(3~8%)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결제할 금액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사용 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결제통화를 반드시 확인하며, 가맹점에서 원화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전면 차단(카드 승인거절)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해제(신청취소)도 가능하다.

5 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

1 신용카드 관리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습득자가 유용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 카드 이용방법, 회원의 책임, 도난 및 분실 시 보상제도 등을 확인한다.

② 신용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다.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③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주의하여 관리한다.

④ 신용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서 버리고, 사용 내역 관리는 SMS 서비스를 활용한다.

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바로 해지한다.

⑥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카드 사용과 발급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것이므로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⑧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카드회사에 주소변경을 요청한다.

2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회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회원의 고의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카드분실로 기망하는 경우 등)

②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③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회원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⑥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⑦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

학습내용 정리

-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돈 거래에 있어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금융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

- 개인의 신용평가는 개인신용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개인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이 포함된다. 민간 CB는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평가 및 가공하여 개인의 신용수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개인신용평가점수는 상환이력정보,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인의 연체정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체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금을 완납하면 일반적으로 연체정보는 해제된다. 그러나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거나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된다.

- 연체가 발생하면, 학자금대출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혹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고려한다.

- 신용카드는 당장 필요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불 기능뿐 아니라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 밖에도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거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신용카드는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며, 올바른 신용사용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반면에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신용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계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제3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신용카드의 장점 및 단점을 2개씩 서술하시오.

4.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채무자 구제제도 중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에는 _____ 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2. _____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갚고 미결제된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는 서비스이다.
3. _____ 는 신용평점 하락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3 O·X 문항

1. 민간 CB인 신용평가회사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 신용정보는 수집하지만,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회사의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
2.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3.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다. ( )

제7장

부채관리

7.1 부채의 개념과 영향

7.2 대출의 활용

7.3 부채관리

7.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가계의 부채 발생원인과 영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각종 대출 상품의 종류와 특징 및 대출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또한, 부채관리 방법과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학습한다.

학습목표

- 부채 발생요인과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부채상환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대학생 · 청년을 위한 대출과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대출상환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열기

금융권 연체 우려에 … 가계부채 '질적 관리' 고삐 죈다

(전략)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천122억원으로 전월(677조4천691억원)보다 1천431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다가 통화 긴축 영향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 12월(+3천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09조6천762억원)이 6천935억원 늘었고, 개인 신용대출(잔액 109조6천731억원)은 2천583억원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큰 만큼 경각심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23)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돈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 중이다. 올해(2023) 3월 말 기준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 0.33%(작년 말 대비 +0.08%p), 저축은행 5.07%(+1.66%p), 상호금융 2.42%(+0.90%p), 카드사 1.53%(+0.33%p), 캐피탈 1.79%(+0.54%p) 등이다. (중략)

가계 부채 문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권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3.2%에 그쳤는데, 이는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비율이 높다 보니 한국 주택 시장이 금리 변동 위험에 유독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상승 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급매물 수요 · 집값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후략)

[출처: 연합뉴스 2023. 6. 4.]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가계 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핵심 용어 정리

부채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 등에 갚아야 할 돈, 재화나 서비스의 외상구입 대금 등을 말함

대출

부채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신용대출

금융회사가 담보 없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대출

담보대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담보물의 가치 이내에서 빌려주는 방식의 대출

모기지론

긴 상환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매를 위해 이루어지는 담보대출

대출 기준금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리(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됨.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름)

가산금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
(고객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금융회사 영업비용 등이 반영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부채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부채상환방식

채권추심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

7.1 부채의 개념과 영향

1 부채의 이해

1 부채의 개념

부채란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상당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한다. 개인이나 가계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고, 그 결과로 부채를 지게 된다.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살펴보면, 항상 균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청년기보다 중년기에 많아지며 노년기에는 다시 감소하는데,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그럴 경우 대출 등 부채를 활용하여 지출에 비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은 미래의 시기로부터 소득이 낮은 현재로 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부채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관리 수단이 된다.

특히, 큰 자금이 소요되는 내구재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개인이나 가계는 대출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면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미래를 위해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대출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과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채상환부담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위축된 시기를 보내야 하며, 가족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개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부채는 그 자체로 불행한 일이지만, 나아가 사회 전체와 국가 경제에도 크나큰 위협요인이 된다. 개인이나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금융시장에서 연쇄적 파급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결국 국가의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계의 부채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3.3%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55.7%, 부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 보유가구의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 규모 중앙값은 7,700만원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담보대출의 중앙값이 9,200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의 중앙값이 6,500만원, 신용대출이 2,500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1,000만원, 기타 금융부채가 48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7-1 | 부채 유형별 보유가구 비율 및 보유액 중앙값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기타	
보유가구 비율 (%)	2022년	63.3	57.3	38.8	23.0	4.5	20.3	15.4
	2023년	62.1	55.7	37.9	22.0	3.9	19.1	15.3
	전년차	−1.3	−1.5	−0.9	−1.0	−0.5	−1.2	0.0
보유가구 중앙값 (만원)	2022년	7,463	6,990	9,238	2,500	968	400	6,000
	2023년	7,700	7,000	9,200	2,500	1,000	480	6,500
	증감	237	10	−38	0	32	80	500
	증감률	3.2	0.1	−0.4	0.0	3.3	20.0	8.3

[출처: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12. 7.)]

2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개인의 시간선호

개인이나 가계가 부채를 얼마나 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간선호 요인이 작용한다. 여기서 시간선호란 미래에 소비하는 것에 비해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나 가계가 높은 시간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래 시점으로 소비를 지연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의 소비를 선호하게 되어 부채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소득부진

개인이나 가계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정체되는 추세였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경제지표와 정책

① 이자율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에 따라 수요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쓰는 가격인 이자율(금리)이 부채 수요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금융비용이 낮아져서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저축 의지가 감소하면서 현재의 소비를 촉진하여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❷ 물가상승률

가계부채는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래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계는 화폐자산의 실질가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금 등의 실물자산 형태로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의 실질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물가상승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가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수준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❸ 부동산 정책

부동산관련 세금제도나 대출규제 변화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경우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는 가계가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가계부채 수준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상품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제지역 해당 여부, 보유주택 수, 실수요 여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른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확대보기

LTV와 DSR

정부는 LTV와 DSR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담보가치와 고객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text{LTV 비율} = \frac{\text{대출 취급 가능금액}}{\text{주택의 담보가치}} \times 100$$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고객의 연소득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다.

$$\text{DSR 비율} = \frac{\text{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text{연소득}} \times 100$$

3 과다부채의 결과

1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 저하

가계대출 등 부채가 많아지면 가계의 현금흐름 등 재무상황이 외부의 충격에 쉽게 노출된다. 부채상환단계에서 가계소득이 저하되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소비와 저축에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등 가계의 보유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는 개별 가계의 소득수준, 원리금상환 부담 정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사회초년생, 고령층, 저소득층일 경우 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2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비은행권, 즉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등의 대출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면 가계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회사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

3 거시경제적 위험

가계부채는 소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투자에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가계는 차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증가로 인한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 특히, 빌린 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성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 감소에 이어 투자재원의 감소와 장기적 성장잠재력 약화로 연결된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국가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 즉,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금리인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부의 효과(wealth effect)[1]가 발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나아가 가계부채의 증가는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기사읽기

OECD 가운데 한국만 GDP 대비 총부채비율 커졌다

우리나라 총부채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액의 비율 역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6개월 동안 상

1 부의 효과(wealth effect)란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자산효과'라고도 한다.

승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관리에 비상이 켜진 셈이다. (중략)

국제결제은행(BIS)의 주요국 가계부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면, 한국은 올해(2023) 2분기 말 기준 14.2%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0.1%p, 1년 전과 비교하면 1%p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DSR은 2020년 3분기(12.3%)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2023) 2분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 DSR은 가계가 1년 동안 지출해야 할 빚 원금과 이자 비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백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버는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올해(2023)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DSR은 조사 대상 17개국 평균치(9.9%)를 4.3%p 웃돌았다. 호주(17.9%) · 노르웨이(17.7%) · 캐나다(14.4%)에 이어 네번째다. 미국(7.7%) · 일본(7.4%) · 독일(5.2%) · 프랑스(6.3%)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두 배 안팎으로 높다. 특히 2020년 1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으로 이 비율이 높아진 국가는 한국뿐이다. 같은 기간 덴마크(13.8% → 12.7%), 네덜란드(14.6% → 12.4%), 영국(9.2% → 8.5%), 스페인(5.9%→5.7%) 등은 비율이 낮아져 '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내일신문, 2023. 12. 21.]

7.2 대출의 활용



1 대출 시 고려사항

부채상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대출의 목적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반드시 부채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대출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출상품의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수수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출의 조건 중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과 대출한도이다. 금융회사마다 서로 이자율과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출 상환방식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대출의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이 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나누어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분할상환방식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어떤 대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대출기간 중 납부하는 이자의 총액이 달라지고 기간별로 부담하는 원금상환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셋째, 대출기간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의 대출기간은 보통 1~3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기도 한다.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2]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기간이 길수록 월 상환액은 줄겠지만 대출기간 중 내야 하는 이자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 이처럼 대출기간이 길다고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가계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기간으로 대출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미리 정한 기일보다 더 빨리 상환될 경우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경우에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신용대출의 금리가 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잘 비교

2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년 만기 대출이 최장기간으로 적용되었다가 2023년 50년 만기 대출상품도 판매되었으나, 이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나치게 대출기간이 긴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다시 최장 상환기관을 40년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2023년 9월). 이처럼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결정할 당시의 정책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해 보고 대출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는 결국 대출에 따른 실질적 이자 부담을 높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대출금리 결정 방식

대출금리는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대출금리 = 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1 대출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금리에는 주요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COFIX),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있다.

표 7-2 | 대출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금리 유형

구분	발표기관	내용
코픽스 (COFIX: cost of funds index)	전국은행연합회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산출기준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CD금리	한국금융투자협회	무기명 유가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금융채 수익률	채권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
코리보 (KORIBOR: 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 기준금리

2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르는 위험비용이 반영된다.

3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상품 유형에 따라 우대금리의 수준이 다르거나 우대금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확대보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의 적용수준이 달라지는데,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조정된다. 따라서 금리하락이 예상된다면 향후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기라면 현재의 낮은 금리를 지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꿀팁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1. 대출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개인이 대출을 받은 후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본인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며, 대출 시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상품(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2.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은행별로 제공되는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까지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보도참고자료, 2019. 11. 26.]

3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가 같더라도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갚아야 하는 총 이자액의 규모가 달라진다. 대출 상환방식에는 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이 있으며, 분할상환방식은 다시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시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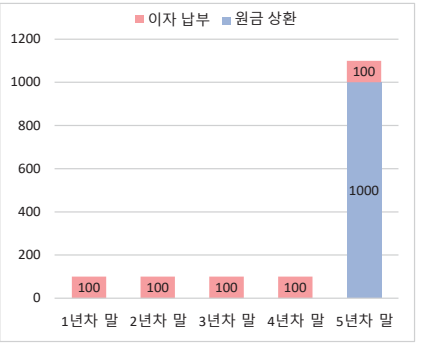
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이다.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므로 만기일시상환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5년 동안 연 10%의 이자율로 대출받아 매년 말에 이자 100만원을 납부하고 대출만기에는 1100만원(원금 1천만원과 마지막 이자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3]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대출기간 중간에는 납부금액이 적지만 만기가 되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3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는 매월 납부하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7-1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현금흐름 예시(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5년 만기)

(단위: 만원)

구분	원금 잔액 (연초)	이자 납부 (연말)	원금 상환 (연말)	납부액 합계 (연말)
1년차	1000	100	0	100
2년차	1000	100	0	100
3년차	1000	100	0	100
4년차	1000	100	0	100
5년차	1000	100	1000	1100
합계		500	100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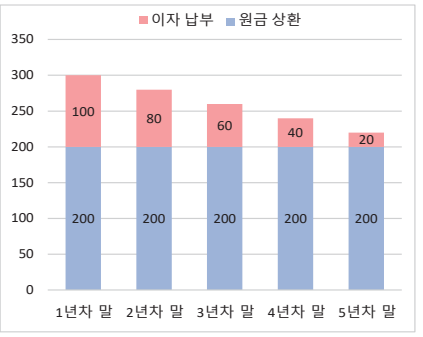
2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만기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5년 동안 연 10%의 이자율로 대출받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년 갚아나가는 경우, 매년 원금 잔액의 10%에 해당되는 이자와 원금 분할상환액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4] 매년 원금 잔액이 200만원씩

그림 7-2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현금흐름 예시(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5년 만기)

(단위: 만원)

구분	원금 잔액 (연초)	이자 납부 (연말)	원금 상환 (연말)	납부액 합계 (연말)
1년차	1000	100	200	300
2년차	800	80	200	280
3년차	600	60	200	260
4년차	400	40	200	240
5년차	200	20	200	220
합계		300	1000	1300



4 일반적으로 대출이자와 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납부하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줄어들면서 이자 납부액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대출기간 초기에 부담이 다소 크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적어지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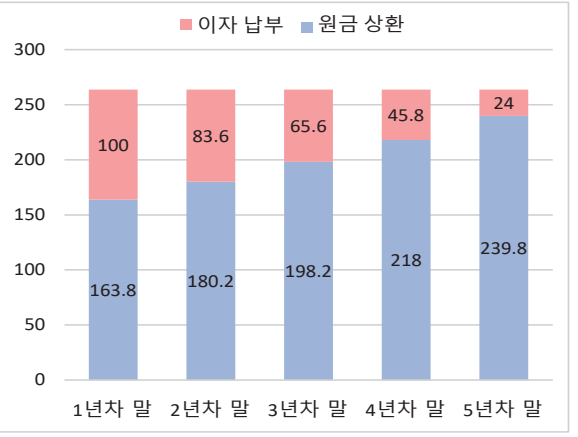
3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만기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5년 동안 연 10%의 이자율로 대출받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년 갚아나가는 경우, 매년 원리금을 263만8천 원씩 5년간 납부하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게 된다.[5]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원리금 납부액이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가계 재무계획 수립과 관리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7-3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현금흐름 예시(대출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5년 만기)

(단위: 만원)

구분	원금 잔액 (연초)	이자 납부 (연말)	원금 상환 (연말)	납부액 합계 (연말)
1년차	1000.0	100.0	163.8	263.8
2년차	836.2	83.6	180.2	263.8
3년차	656.0	65.6	198.2	263.8
4년차	457.8	45.8	218.0	263.8
5년차	239.8	24.0	239.8	263.8
합계		319.0	1000.0	1319.0



5 일반적으로 대출이자와 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납부하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대출상환방식별 이자 총액 비교

앞서 살펴본 예시에서 대출 상환방식별로 대출기간 중 납부한 이자 총액을 살펴보면, 일시상환은 500만원,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300만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3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출원금을 오랫동안 쓸수록 그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가 커지기 때문이다. 즉,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을 빨리 갚아나가기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가 점차 줄어들어 이자총액이 세 방식 중 가장 적게 나타난다. 반면, 일시상환의 경우 만기 전에는 대출원금을 전혀 갚지 않으므로 원금이 만기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자 총액이 가장 세 방식 중 가장 크다.

실제 대출에서는 이자와 원금의 납부 주기를 월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는 보다 현실에 가깝게 이자와 원금의 납부 주기를 월단위로 하여 산출한 이자 총액을 대출상환방식별로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이자 총액이 가장 적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이자 총액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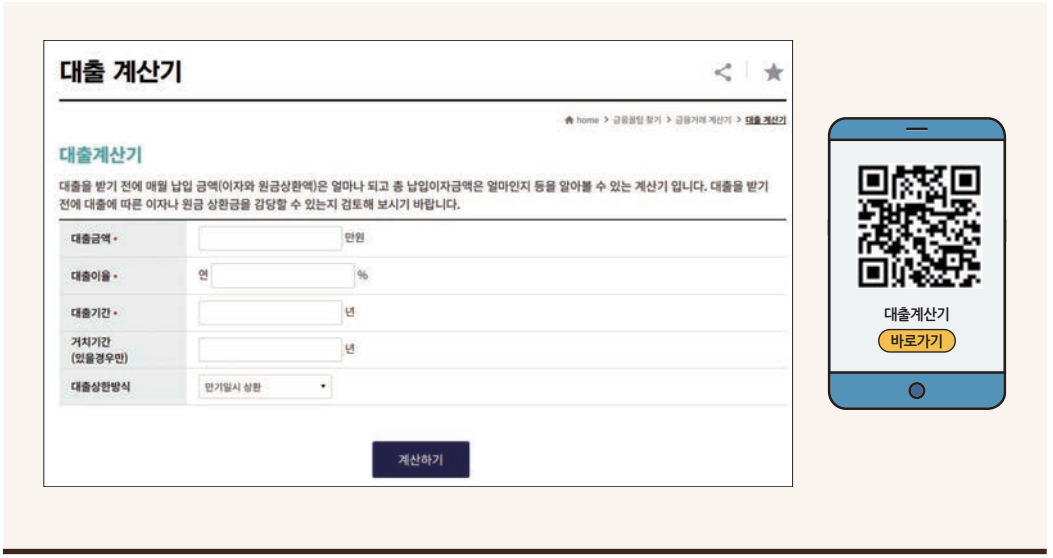
표 7-3 | 대출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 총액의 차이(매월 납부시)

상환방법	대출금액(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이자 합계(원)
원금균등 분할상환	10,000,000	10%	5년	2,541,667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2,748,227
만기 일시상환				5,000,000

적용하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금융거래계산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거래계산기' 메뉴를 활용해보자. '대출계산기'를 선택하여 대출금액, 대출 이자율, 대출기간을 입력하고 대출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을 선택하면, 대출상환방식에 따른 총 이자액, 매월 납부금액 등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4 대출기관의 종류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 이자율이 가장 낮은 편으로 누구나 선호한다. 하지만 대출심사가 까다롭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들을 말하는데, 신협 등 상호금융, 보험회사,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아도 이용할 수 있다.

3 제도권 밖의 대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아닌 대출로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를 이용하는 제도권 밖의 대출이 있다. 이를 '제3금융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미 연체이력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낮아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높은 이자부담을 감수하며 이용하게 된다.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고 있다. 처음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66% 수준으로 높았지만,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면서 계속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된 연 20%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5 대출상품의 종류

1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한도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로부터 개인의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예: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실적 등)을 적용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이때, 개인의 신용도가 신용대출을 이용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기초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 판매신용

판매신용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할부로 지불하거나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이다. 일시불로 구매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할 때 할부신용이 활용되는데, 이는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

회사 등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신용이다. 즉, 판매신용 중 할부신용은 할부금융회사나 신용카드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할부금(분할원금 +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다.

한편, 개인휴대전화 통신비용과 같은 서비스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된다. 서비스신용이란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후지급하는 것으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3 담보대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에는 수억 원의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모두 모은 후 구매하기보다는 일부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장만하게 된다. 모기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40년까지로 매우 길다.

4 포괄계약형대출(마이너스 통장)

포괄계약형대출은 미리 대출한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이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을 미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개별계약형대출이라고 한다. 포괄계약형 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에 1,000만원을 대출한도액(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한도금액 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고, 실제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지 않

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대학생 · 청년과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1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은 대학(원)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한 소득구간 이하에 속하는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이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연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적과 이수학점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 동안 분할상환토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출이 가능한 최장기간은 20년이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농어업인 자녀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하게 된다.

2 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 지원 상품에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전세특례), 창업 · 운영자금, 소액보험 등이 있다. 서민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❶ 생활안정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으로는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이 있다.

햇살론유스는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이는 19~34세이면서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과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이 일반생활자금 또는 특정용도자금(학업 · 취업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상자 특성(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적용금리(대출금리 + 보증료율)가 결정된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를 개선하여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이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나 포인트 등의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여전업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낮추어 주는 상품으로 복권기금과 금융회사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❷ 고금리대안자금 지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인 서민에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햇살론15는 연소득이 일정한도 이하일 경우 단일금리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하며,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이는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취급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앞서 살펴본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경우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서민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만기일시상환하도록 하며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❸ 주거자금(전세특례) 지원

정책서민금융이용자로서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경우 전세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사회적배려 대상자(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를 위한 주거자금지원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에 있는 신용회복지원자를 위한 주거자금 지원도 있다.

❹ 창업 · 운영자금 지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는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 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❺ 소액보험 지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부양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7.3 부채관리



부채로 인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상환계획을 세워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관리는 우선 부채현황을 파악하고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부채현황 파악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유형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음 〈표 7-4〉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해 보면 부채 유형별로 이자율과 만기가 언제인지,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표 7-4 | 대출현황 파악 서식

(단위: 원, %)

대출처		대출일자	대출원금	연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 기간	월 상환액	대출잔액	상환목표 (만기 일자)
					분할	일시				
1	OO은행		20,000,000	7.5			3년	597,220	16,102,500	
2										
3										
합계		-		-	-	-	-			-

2 부채상환을 위한 전략

1 보유자산 현금화

부채상환계획을 세울 때 우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와 매월 나누어 변제할 수 있는 채무로 나누어 본다. 이미 변제기일이 지나 연체이자를 내고 있거나 곧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먼저 일시불로 변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상환을 위한 전략으로 현금화를 고려할 때에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이용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현금화한다. 만약 자동차가 생계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이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세금,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동차 이외에도, 소유자산 가운데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부채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을 정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더 낮고 대출 연장 등에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2 불필요한 소비지출 줄이기

지출감소를 통한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월 지출 항목을 정리해 보고 변동 지출비목 중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한다. 식비는 외식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통신비의 경우, 가족원 각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인터넷서비스 이용비용, 유선전화 이용요금 등을 확인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의류비의 경우, 필수적인 지출 이외에는 줄일 여지가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고려하여 경차 등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체력단련, 오락·유흥비, 경조사비, 개인 용돈 등도 줄일 여지가 큰 항목이다.

3 소득증대 모색

자신이나 가구 구성원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보하여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에는 일정한 고용조건이 따르므로 언제나 원하는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득은 직종, 교육, 연령, 성별, 근무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조건을 단기간에 바꾸어 소득을 높이기는 어렵다. 다만,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업, 파트타임 근로 등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취업에는 비용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구원이 취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한다 해도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모두 가처분소득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우며, 취업으로 인한 가사노동 감소분을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취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비, 외식비, 의복비 등과 같이 취업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3 부채관리의 기본원칙

부채는 합리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상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갚기 쉬운 방식으로 상환방식 변경

부채를 갚기 쉬운 구조로 상환방식을 변경한다. 원금은 그냥 둔 채 이자만 먼저 갚아 나가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부채를 상환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권장되는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처음에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했더라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분할상환은 일정한 주기마다 상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다. 간혹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아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예적금을 통

해 기대할 수 있는 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낮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됨을 고려해야 한다.

2 부채의 수를 줄여 보다 용이하게 관리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기보다 부채의 개수를 줄여 부채관리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부채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보험대출, 신용대출, 직장의 직원대출, 카드대출 등 사정에 따라 여러 대출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불가피하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대출을 받다 보면 대출의 가짓수가 늘어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대출의 수가 많으면 상환일을 놓치는 등 부채관리가 어려우며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의 수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상환을 할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지세 등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능하면 상환을 해도 손실이 적은 유형의 대출을 먼저 상환하도록 한다.

7.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채권추심에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권리로서의 채권추심이라 해도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불법채권추심에는 공갈, 협박, 폭언, 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있는데, 채무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과 함께 대응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법추심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꿀팁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 방문하는 경우

필요 시 증거자료(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기사읽기

거짓 채무 감면에 속지 마세요 … '불법 채권 추심' 2차 경보

(전략) 금융감독원은 그간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인 말만 듣고 감면된 채무금액을 어렵게 상환했지만, 추심인은 착오 등을 이유로 완납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한 채무자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심하는 건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합니다. (중략) 금감원은 "착오 등으로 인해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감면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권 감면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녹취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대부계약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자를 일 단위로 책정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 적용하고, 1회라도 연체한 즉시 남은 대출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한 부당행위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이자율이 최고한도 연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채권추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접수하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 돼야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무시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에 민원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SBSBiz, 2023. 12. 6.]

학습내용 정리

- 부채란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상당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한다.
-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대출금액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담보대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 담보자산의 경제적 가치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 대학생 · 청년을 위한 대출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 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있다.
-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방식을 비교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과 함께 대응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부채가 가계, 금융회사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개인과 가계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대출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을 _____ 라고 한다.
2.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_____ 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3. 대출상환방식은 크게 _____ 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3 O·X 문항

1.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다. ( )
2.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 지불하는 이자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 ( )
3. 부채를 상환할 경우 대출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갚아 나가도록 하며, 연체하고 있다면 연체기간이 짧은 것부터 갚아 나가도록 한다. ( )

제8장

리스크관리와 보험

8.1 리스크의 이해

8.2 리스크의 관리

8.3 보험의 이해

8.4 보험의 주요 요소

8.5 보험의 종류

8.6 보험 가입시 고려사항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리스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보험의 기본 원리와 기능,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와 역할 및 상호 보완관계를 이해한다. 다양한 민영보험 종류에 대해 학습하고 경제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보험 상품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학습목표

-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리스크 중 보험상품으로 관리가능한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험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민영보험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보험상품을 이해한다.
- 보험 가입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전 세계가 펄펄 끓는다 … 동물까지 보상 '폭염 보험' 눈길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시달리는 가운데 각국의 보험사들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보상하는 다양한 폭염 보험 상품을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급속한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 실손의료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이 아닌 날씨에 특화된 보험 상품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8건의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7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폭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해 폭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매켄지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며 2050년에는 4%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중략)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이 출시했다. 이 보험은 1일 100엔(약 900원)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 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말 폭염이 발생하면서 그해 6월 29일부터 사흘간 6천건 이상의 열사병 보험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은 23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던 열사병 입원 및 사망 환자 상해보험 특약을 지난해 7월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 올해(2023) 6월 □□□□은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와 제휴해 열사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 지급과 의료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일본 최초로 출시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록펠러재단이 소액 보험 스타트업인 ◇◇◇◇ 및 인도 여성노동조합과 제휴해 평균 기온보다 높은 폭염 상황이 사흘 이상 지속돼 수입이 줄어들면 이를 보상하는 파라메트릭 보험을 내놨다. 염전, 폐기물 재활용업 등 다양한 직종의 인도 여성 노동조합원 2만1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적용 지역을 인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됐을 때 일당에 해당하는 3달러를 보험 가입자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하며 폭염 시즌에 여러 차례 보상받을 수 있다. (후략)

[출처: 연합뉴스, 2023. 8. 1.]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일상 생활에서 보험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핵심 용어 정리

리스크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
(※ 참고로,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의 가능성이 모두 내포된 중립적 개념임)

손실빈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횟수

손실심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액의 크기

보험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단체를 형성하고 납입된 보험료를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여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손해보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3보험

신체의 상해, 질병이나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보장성보험

사망,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

보험기간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8.1 리스크의 이해



1 보험대상 리스크의 개념

우리의 생활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한 불안함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측 능력이 불완전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불완전한 예측능력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리스크(risk)'라고 하며, '리스크가 있다' 또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

앞서 제4장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었다. 투자에서 의미하는 리스크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upside risk)과 좋지 못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downside risk)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이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미래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이익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이다.

보험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투자에서의 리스크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 손실로 연계되는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투자 관련 리스크는 보험대상 리스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컨대, 보험제도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금융제도로서 보험급여 지급을 통한 손실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자동차 운행 시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는 등 그 사고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동차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보험대상 사건이며 그 경제적 손실가능성은 보험대상 리스크에 해당한다.

확대보기

주관적 리스크와 객관적 리스크

리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지 주체 및 통계에 근거한 측정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주관적 리스크와 객관적 리스크로 구분된다.

주관적 리스크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지된 리스크를 말한다. 따라서 리스크를 인지하는 상황과 인지 주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객관적 리스크는 누적된 경험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리스크, 화재리스크, 자동차사고리스크 등은 모두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손실발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관련 리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대상 리스크에 해당한다.

2 보험대상 리스크의 요건

보험대상 리스크(insurable risk)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화재리스크처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특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리스크의 동질성 및 대량성 요건이라 한다.

둘째,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의 사망사고, 질병사고 등 인적 손실의 정도를 경제적 손실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인적 손실은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양자 간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규모를 추정한다.

셋째,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하여 특정 리스크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집적 및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통계적 신뢰성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넷째, 화재사고처럼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화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대상 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험대상 리스크의 종류

1 인적손실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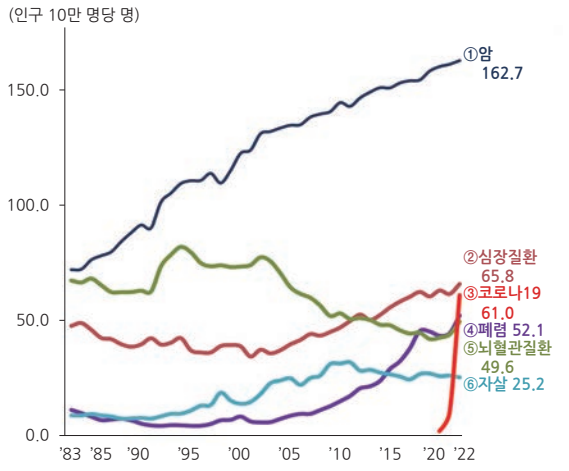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손실 중에 인적손실이 있다. 인적손실 리스크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람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신생물(암)'이다. 암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직, 고액의 의료비 등으로 실제로 높은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가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8-1 | 2022년 10대 사망원인 및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21년 순위 대비
1	악성신생물(암)	162.7	-
2	심장 질환	65.8	-
3	코로나19	61.0	⬆(+9)
4	폐렴	52.1	⬇(-1)
5	뇌혈관 질환	49.6	⬇(-1)
6	고의적 자해(자살)	25.2	⬇(-1)
7	알츠하이머병	22.7	-
8	당뇨병	21.8	⬇(-2)
9	고혈압성 질환	15.1	⬆(+1)
10	간 질환	14.7	⬇(-2)



[출처: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보도자료, 2023. 9. 21)]

인적손실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표적 보험상품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 질병입원치료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질병보험, 치매간병급여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치매간병보험 등이 있으며, 공적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2 장수 리스크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노후생활자금을 더 많이 준비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마련한 은퇴자산의 소진시점이 자신의 사망시점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을 장수 리스크라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약 0.42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한 반면에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약 0.22년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OECD 보고서[1]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2]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약 2.8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과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수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민영상품이 연금보험이고 공적제도는 국민연금보험이다.

3 재산손실 리스크

재산손실리스크는 우발적 사고에 의해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말한다. 대표적인 재산손실 리스크는 주택, 건물, 창고 등에 대한 화재 리스크이다. 주택은 대부분의 개인 재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도난사고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산손실은 직접손실(direct loss)과 간접손실(indirect loss)로 구분된다. 직접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1차적 재산상의 피해를 말하며,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에 부

1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2023. 12. 13, OECD).

2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65세 이상 전체 인구 수)×100' 산식으로 산출된다.

수되는 금전적 손실이다. 가령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류창고 건물과 그 보관물품의 피해액이 직접손실에 해당하고, 창고를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창고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반되는 경영상의 손실이 간접손실에 해당한다.

재산손실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상품이 재산보험이며,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이 있다.

4 배상책임 리스크

아파트 화재로 위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까? 의사가 오진 혹은 수술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임직원의 경영상 과실, 부주의로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3]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손실 혹은 재산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을 배상책임 리스크라고 한다. 실제로 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과실, 회계사의 감사부실 등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부터 공산품 설계 · 제조 하자, 건축물의 설계 · 시공 · 감리 하자, 전시회 물품파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러한 배상책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책임보험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4 보험대상 리스크의 측정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다양한 보험대상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암과 같은

3 과실이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발병 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손실빈도와 한 번 발생 시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나타내는 손실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손실빈도

손실빈도(loss frequency)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가령 소유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손실빈도는 일정기간 동안에 사고가 얼마나 여러 번 발생하는지를 측정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하게 쓰인다.

2 손실심도

손실심도(loss severity)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큰 반면, 볼펜을 잃어버리는 경우의 손실은 볼펜을 다시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소액이므로 손실의 심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3 보험대상 리스크의 크기

보험대상 리스크의 크기는 전술한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발생 시 손실이 클수록 보험대상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

$$\text{보험대상 리스크의 크기} = F(\text{손실빈도}) \times S(\text{손실심도})$$

8.2 리스크의 관리



1 리스크관리 방법

리스크관리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리스크관리 방법은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에 따라 리스크보유, 리스크회피, 리스크감소, 리스크전가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리스크보유

리스크보유(risk retention)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연필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는데, 이는 연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연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리스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리스크보유라고 한다.

리스크보유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리스크보유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무지, 무관심, 태만 등으로 수동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소극적 리스크보유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리스크보유의 대표적 유형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여 합당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자가보험(self insurance)이 있다.

2 리스크회피

리스크회피(risk avoidance)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높아서 그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피하는 것을 말하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표현

표 8-1 | 리스크 속성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법

구분		손실빈도	
		낮은 빈도	높은 빈도
손실심도	낮은 심도	1 리스크보유	3 리스크감소
	높은 심도	4 리스크전가	2 리스크회피

과 잘 맞는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전쟁지역에 가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렇게 인적손실의 리스크빈도와 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리스크회피는 리스크관리 방법 중 가장 소극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리스크감소

리스크감소(risk reduction)는 손실심도가 크지 않으나 손실빈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하기 적절한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손실빈도나 손실심도를 줄이는 일을 손실통제(loss control)라고도 하는데, 세부적으로 손실방지, 손실경감, 리스크분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손실방지

손실방지(loss prevention)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손실빈도를 감소시키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 다중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❷ 손실경감

손실경감(loss reduction)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나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으로 화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실제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소화설비 설치, 자동차의 에어백장치 설치 등 손실경감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❸ 리스크분산

리스크분산(risk diversification)은 분실, 파손, 해킹 등으로부터 관리해야 할 대상을 시간, 장소, 기술 등을 통해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중요 정보를 다수 서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분산 보관함으로써 서버 가동 중단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4 리스크전가

리스크전가(risk transfer)란 개인이나 조직의 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손실심도 또는 손실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전가할 때에는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가입을 꼽을 수 있다. 암으로 진단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암 관련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리스크를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보증계약도 리스크전가의 한 예이며, 보증계약을 보험형태로 전환한 것이 보증보험이다.

2 리스크관리 절차

개인이나 조직 등 경제주체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리스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8-2 | 리스크관리 절차



둘째,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각 리스크의 손실빈도와 손실심도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여 리스크별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리스크관리에는 인적 · 물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산에 따른 제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리스크관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8.3 보험의 이해



1 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이란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

단체를 형성하고 납입된 보험료를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여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를 말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계약이다.

고대사회에서부터 각종 리스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화폐제도와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보험제도가 등장하였다. 이는 보험의 경우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 기반의 원시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에,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4] 등 확률론과 통계학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확대보기

근대적 보험의 탄생, 로이즈(Lloyd's) 커피하우스

근대적 보험의 시작인 해상보험이 탄생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Samuel Lloyd)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가 물려받으면서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발전하였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의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보험사업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slip)에 보상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underwriting)을 했다. '작은 종잇조각'이라는 뜻의 slip은 오늘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리스크 심사 및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리스크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조항 아래(under)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writing)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4 대수의 법칙이란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질의 리스크를 가진 보험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 사고 발생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사 대리인 그룹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Society of Lloyd's)를 결성하였고,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런던로이즈(Lloyd's of London) 보험시장이 되었다. 현재 런던로이즈는 세계 최대의 재보험시장으로 성장하여 바늘부터 인공위성까지 담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인수 종목이 확대되었다.

그림 8-3 | **런던 로이즈 언더라이팅 룸(Lloyd's of London, Underwriting Room)**



[출처: https://www.lloyds.com/about-lloyds/our-home]

2 보험의 기능

보험은 경제적 손실 발생 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기여한다. 경제활동 주체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직면한 리스크를 보험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사고 전 상태로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둘째, 보험료로 구성된 보험기금은 주식, 채권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되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산업자본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 경제주체 간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을 통하여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여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어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보험은 국가 주도 사회보장정책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완재로서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토록 하는 기능을 한다. 즉, 보험가입자가 사고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사고발생 가능성과 손실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 보험은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증대된 비용은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상승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어 사회 전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8.4 보험의 주요 요소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에서 보험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된 금액을 보험료라고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지급액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부르는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위험보험료는 사망, 암 발생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고,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부가보험료는 판매수수료, 보험회사 운영비용 등 보험사가 보험영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거나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흔히 자동차사고 발생률이나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돌려주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한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각종 사업비, 해지 시까지의 사고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된 보험료 합계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 후 단기간 내에 해지

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모두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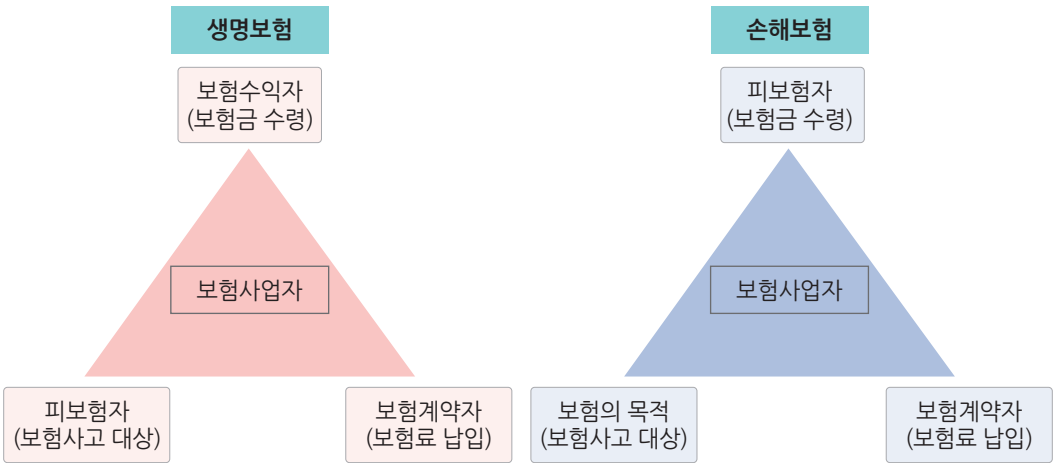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만 존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보험수익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암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였다면, 남편은 보험계약자, 아내는 피보험자, 자녀는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인 남편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인 아내에게 암이 진단되어 수술비 등이 발생하면 보험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한편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of insurance)[5]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은

5 보험의 목적이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피보험자의 법적 재물, 재산을 의미하고,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건강, 신체 등을 말한다.

그림 8-4 |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자**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자동차는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보험사업자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8-4〉와 같다.

4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게 되는 일시금과 분할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보험급여(benefits)를 의미한다. 보험금을 정하는 방법은 정액보상(fixed-sum plan)과 실손보상(indemnity plan)으로 구분된다. 정액보상이란 약정한 보험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생명과 관련된 인적 손실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보험계약은 주로 정액보상을, 손해보험계약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6]

6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제3보험에 해당되며 정액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생명보험상품에 여러 개 가입할 경우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실손보상 방식의 보험상품은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계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많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손보상 보험상품을 여러 건 중복으로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험사업자의 책임은 첫 번째 분할납 보험료 또는 일시납 보험료가 수령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한편,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한데,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은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꿀팁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진단 실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은 청약철회 불가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 가입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기존 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8.5 보험의 종류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이란 노령, 질병, 상해, 실업 또는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생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적보험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 소득수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어 소득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과 보험료 납입이 강제된다.

반면,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민영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리스크 크기와 희망 보장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표 8-2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주요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운영 원리	독점시장 원리	자유경쟁시장 원리
운영 주체	비영리 공단(준정부기관)	보험회사
보험 가입	의무가입	임의가입
운영 목적	• 국가 복지정책의 실현 • 소득 재분배 및 공공성 강조	• 경제주체에 리스크관리 수단 제공 • 보험영업이익(기업가치) 제고
보험료 부과	• 임금 등의 일정비율로 부과 • 보험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 •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경우 있음	• 보험가입자가 부담 • 개별 보험계약의 급여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	관련법률로 규정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
보험종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2 사회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보험은 제9장(노후와 연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사회보험을 다룬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리스크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단일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책정하고 점수당 일정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한편,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독립유공자 등은 특별법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보험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기업),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산재근로자이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된다.

산재근로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와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상책임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에는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직 시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이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2020년부터는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자에 포함되고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신규 및 퇴직 등 고용관계의 변화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가입자이면서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실업 시 받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의 횟수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의 60% 수준으로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누적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270일이다.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민영보험의 종류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민영보험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홈쇼핑, 방카슈랑스(은행, 증권사 등)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7]

1 보험업의 구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으나,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공통 보험영역이다.

2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구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보험은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7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과 우체국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근거법규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8-3 | 보험업별 보험종목 구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정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보험 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노후대비 등을 위한 저축기능이 보다 강조된 보험상품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적용이율(예: 공시이율)로 이자를 적립하는 금리연동형보험이다. 적용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 등의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조정된다. 대표적인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보험차익[8]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4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8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기간이 비교적 긴 장기성계약의 속성을 지닌다.

1 종신보험

종신(終身)이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이란 뜻으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사망으로 가족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장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유가족으로 지정하는 계약구조를 가진다.

2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15년, 20년, 60세, 80세 등으로 확정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만기까지 생존하면 사망보험금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은퇴시점에 축적된 은퇴자금으로 연금을 받아 단절된 소득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연금보험의 보험기간은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된다. 제1보험기간은 근로소득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하고,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수령자가 생존하는 동안(즉, 사망 시까지) 연금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보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기간(예: 10년)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 동안은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고 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을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4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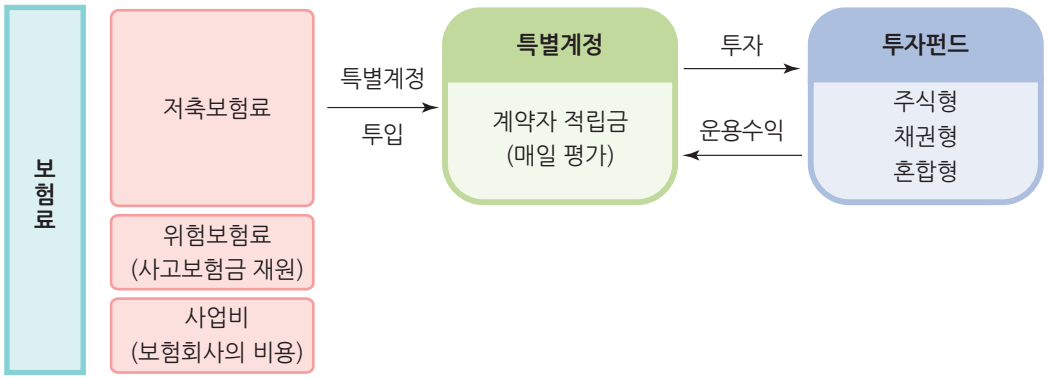
일반적인 생명보험 상품은 미리 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액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성계약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을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그림 8-5〉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투자펀드를 선택하면 그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보험기간 중에 해지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납입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사망보험금,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등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보증하는 최저보증 옵션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즉,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보증을 하는 부분(예: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과 특별약관(rider)[9]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므로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특별약관은 줄여서 '특약'이라고 한다. 기본계약(이를 '주계약'이라고도 함)에 부가하여 기본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발되는 보험상품이다.

그림 8-5 | 변액보험상품의 보험료 흐름



5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10] 대표적인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11]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공장, 주택, 발전소 등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상하는 보험기간이나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손해

10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의 상대적인 의미로 'non-life insurance'라 하고, 영국에서는 보험업이 해상보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험업의 시작이고 표준이라는 의미로 'general insurance'라 한다.

11 보험관련 법규에서는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 화재발생 벌금, 도난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2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보험계약 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직업활동, 경영활동 등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책임보험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통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의료인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항공·선박·원자력발전소 등의 특수한 사고에 대한 환경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3 자동차종합보험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550만대를 넘어섰고 그 중 90% 이상이 개인용 자동차이다. 이러한 자동차생활문화 속에서 자동차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대인배상책임손해과 더불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패키지종합보험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표 8-4〉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

표 8-4 |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내용

보장종목	보장내용
대인배상 I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액을 보상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강제보험) 예시) 사망 · 후유장애(1.5억원), 상해1급(3천만원)
대인배상 II	대인보상 I을 초과하는 대인사고를 보상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비강제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액은 무한대로 설정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자배법에서 정한 2천만원 한도의 대물배상책임보험과 2천만원을 초과한 배상액을 보상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는 임의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는 임의보험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는 임의보험(단,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사고는 보험회사 면책)

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만약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자동차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를 범죄자로 기소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단, 대인배상 II가 무한)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12]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3억 2천만원(대인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5천만원, 대물 사고당 최대 7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12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40% 이상 감액 지급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6 제3보험

제3보험은 신체의 상해, 질병이나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 제3보험은 크게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질병보험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있다.

표 8-5 | 보험업종별 특성 비교

구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보험사고	사망, 생존	금전적(재산, 배상책임) 손해	신체 상해, 질병, 간병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정액보상	실손보상	정액, 실손 모두 존재
중복보험 & 연대비례보상책임	없음	있음	실손보상보험은 있음
보험기간	장기	단기	단기, 장기 모두 존재

1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는 상해사고이며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에서 기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은 사고의 종류나 담보하는 보장항목에 따라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여행보험, 운전자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보기

여행보험과 운전자보험

◈ 여행보험

여행보험은 여행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인적 · 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이다.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으로 한정되지만,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등 후유증상까지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 밖에도 특별약관을 통해 피보험자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실손의료비, 개인배상책임손해, 휴대물품손해 등도 선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여행 중에 호텔의 물품을 훼손, 파손하는 경우에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던 고가의 카메라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기간 동안 휴대품 등 귀중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서 등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운전자보험

운전 중 운전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인적 · 물적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은 물론 운전자나 승객의 입원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해야 할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개로 교통사고에서 파생하는 형사상 책임손해, 행정상 책임손해 및 기타 비용손해를 보상한다.

운전자보험의 보편적 보장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벌금, 형사적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즉, 합의금), 자동차 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표 8-6 |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비교

자동차사고 기준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 및 그 소유자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
의무가입	대인배상 I,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	임의보험
대인 및 대물 민사적 배상책임	보상	무보상
피보험자의 형사적 책임	무보상	보상: 사망/부상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피보험자의 행정적 책임	무보상	보상: 면허취소 위로금 등
피보험자의 기타 비용손해	무보상	보상: 긴급견인비용, 렌트카 비용,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	보상 단, 사고부담금* 부담	무보상

* 대인배상 I: 1인당 1억 5천만원, 대인배상 II: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의무): 사고당 2천만원, 대물배상(임의): 사고당 5천만원

2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13]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된다. 또한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치료,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의 80%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되, 나머지 20%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험이 아니므로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

13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이 포함된다.

표 8-7 |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구 분		보장 기준(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기준)
보상 한도	급여 비급여	• 입 통원 5,000만원(통원 1회당 20만원) * 상해 질병 급여 비급여 각각 한도 적용
	3대 비급여	• 도수, 충격, 증식치료: 350만원, 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50회 한도 • 비급여 MRI: 300만원 한도
자기 부담금	입원	• 급여 부분: 20%(200만원 초과 시 보상) • 비급여 부분: 30%
	통원	• 급여 부분: 의원 병원 MAX(1만원, 20%), 종합병원 MAX(2만원, 20%) • 비급여 부분: MAX(3만원, 30%)
	3대 비급여	• MAX(3만원, 30%)

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 전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s://credi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고 중복가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참고로 가입가능 나이가 50~75세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를 상향 조정한 '유병력자실손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금융꿀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1.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2.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3.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회사별로 상이하나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 2023. 10월, 실손의료보험금 전산청구 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 10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다만, 의원 · 약국은 25. 10월부터 시행)

4.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 외모개선 목적 의료비,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병원 입 · 통원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외품 구입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성형수술과 같은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일반 건강검진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3 암보험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인 만큼 대표적 질병보험이라 할 수 있다.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암보험의 핵심보장 내역은 암진단비이며, 일반적으로 치료비의 경중에 따라 고액암, 소액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진단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암보험은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해당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시작하고, 1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암보험은 다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과 보

표 8-8 | 암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보장내용
암 진단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최초 1회에 한함)
암 입원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3일 초과 입원일수 기준으로 총 120일 한도)
암 수술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수술 1회당)

험기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비갱신형으로 판매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확대보기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사망, 진단 등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위험률(발생빈도)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기간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 적용한다. 이를 비갱신형 보험이라 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이며 위험률 변동이 큰 경우에는 향후 만기까지 위험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단위로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한 위험률과 연령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 보험상품이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가입 당시의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주기마다 위험률의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지속되어 60세 이후의 고령기에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갱신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안내자료에 명시된 가입당시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령기의 보험료도 꼭 비교해보아야 한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초기 '갱신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기간 동안 위험률의 변동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처음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표 8-9 | 갱신형보험상품과 비갱신형보험상품의 비교

구분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일정주기(1년, 3년, 5년 등)로 보험료를 새로이 재산정하여 계약갱신 단,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 시 약정한 보험료가 보험기간 동안 변경 없이 동일 단,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적용요율	갱신시점의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계약시점의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보험사 적용상품	위험률 변동성이 예상범위를 초과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상품 (예: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변동성이 예상범위 이내이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상품 (예: 종신보험)
장점	가입 당시 초기보험료는 저렴	위험률이 상승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료는 동일하게 유지
단점	갱신 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또는 일부 보장내용 축소, 가입거절될 수 있음	가입초기에 갱신형에 비해 높은 보험료 부담

4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ADL)[14]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도달하여 타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상태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분기별 입원진료비 통계에 의하면 치매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20년 10.39%, 2040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15]가 시행되면서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4 ADL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어로서 남의 도움 없이 행하는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식사하기, 옷입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감정 자제하기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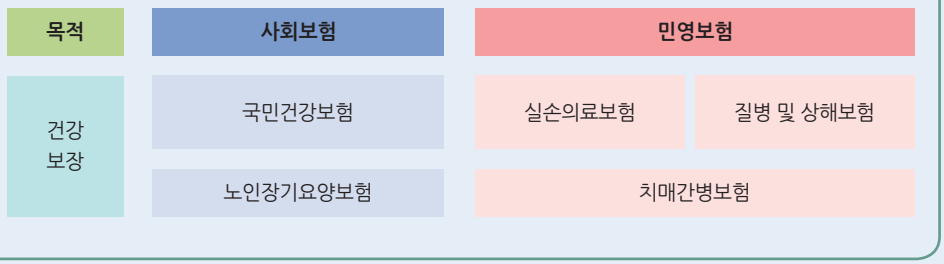
15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지원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확대보기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

제3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적 건강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고, 치매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8-6 |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



8.6 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1 보험가입 채널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흔히 '모집'이라고 부른다. 이 때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16] 그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집종사자들을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보험가입채널[17]이라고 부른다. 보험가입 채널에 따라서 취급하는 상품, 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보험설계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라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은행,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 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Bank'와 보험의 'Assurance'를 합성한 단어로, 법률상의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다.

3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수단을 의미한다. 텔레마케팅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보험회사가 확보한 고객데이터 베이스자료를 토대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장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채널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전화 유입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인바운드(In-bound) 채널로 나누어진다.

4 홈쇼핑채널

TV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홈쇼핑채널을

16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된다.

17 참고로, 보험회사 관점에서는 보험상품의 판매 통로에 해당하므로 보험판매채널이라 한다.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해당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험상품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5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 검색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이다.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비교하여 가입경로를 안내할 목적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하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크게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보험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6 독립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란 보험시장에서 특정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보험대리점(exclusive agency)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수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비전속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최근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전통적인 지점영업소에서 GA 중심으로 보험가입 유형이 변화되고 있다.

2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리스크 인식 및 가입목적 명확화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과 주변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러한 리스크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크고 위협적인 리스크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 가입목적을 명확히 해야 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30~40대 가장의 경우에는 본인 사망 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정기보험 등의 보험상품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보험료 수준 및 변동 여부 확인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월 납입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통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실직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약정된 보험료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갱신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며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 가입 전 보험료가 보험가입 당시는 물론, 향후 납입기간에 걸쳐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방식 확인

많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주요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수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정액인지, 실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손지급 유형의 보험상품이면 2개 이상의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실액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실제 손실액을 한도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분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손상품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하기

'한국신용정보원 보험계약현황'

한국신용정보(https://credit4u.or.kr:2443)이 운영 중인 '보험계약현황' 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조회해보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계약자로 된 전체 보험계약 건수와 그 중 유효한 보험계약 건수, 보험료 납부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납입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모집 등에 사용된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즉, 저축성 보험료 부분)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서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환급률=환급금÷납입보험료 합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험료 할인혜택 확인

보험회사는 비흡연자 등 보험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건강인할인특약, 다자녀가정 우대특약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해지환급금 확인

무(저)해지환급금 상품[18]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보험상품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동일 보장의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7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준수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현재와 과거의 병력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전 알

18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을 말한다.

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함으로써 성실히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8 계약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준수

계약전 알릴 의무와는 별개로, 계약체결 후 사고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라고 한다. 가령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사무직원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사고 확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므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적시에 알려야 한다.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9 보험정보 비교

보험 가입 시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할 경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 메뉴에서는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가격지수 등 주요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단, 비교공시 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이므로 실제 보험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 및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 지급여력비율 등의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꿀팁

보험가입 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다섯 가지 지표

①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이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보험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④ 소송공시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 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학습내용 정리

- 보험에서의 리스크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생명보험업은 인적손실리스크, 손해보험업은 재산손실리스크 그리고 배상책임리스크를 각각 인수하는 것을 주된 영업 목표로 한다.

-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으면 리스크를 보유하고,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크면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 수립이 최선의 리스크관리이다. 그러나 손실의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크면 예산 허용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뉘며,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 민영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업'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업', 그리고 사람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간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업'으로 구분된다.

- 고령화에 따라 은퇴 이후에 생활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과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며,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 자신의 형사상의 책임을 보전한다.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다.

- 보험에 가입할 경우 먼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해 보고 그에 알맞은 보험을 찾아야 한다. 보험의 보장종목과 보장내용, 보험료 갱신 여부, 보험금의 지급방식(정액 또는 실손), 보험기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다모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비교 공시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변액보험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보험대상 리스크의 크기는 손실빈도와 _____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제3보험업은 _____ ,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으로 구성된다.
3. 보험계약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금전적 약속이며, 보험사업자가 약정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지급금을 _____ 이라고 한다.
4. 순보험료를 구성하는 항목 중 _____ 는 사망, 암 발생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3 O·X 문항

1.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 )

2.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개발된 상품은 운전자보험이다. ( )

3. 보험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시에 보험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 )

4.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이율로 부리되어 적립된다. ( )

제9장

노후와 연금

9.1 초고령사회

9.2 노후의 주요 위험

9.3 노후준비와 연금

9.4 은퇴연금설계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인빈곤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알아본다.

학습목표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가 노출되기 쉬운 제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도입취지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합리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제도 활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청년들 노후대비 현실은

"MZ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저출산 ·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연금 ·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해 자산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이유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어피티와 함께 2030 MZ세대 2778명을 대상으로 연금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 퇴직 · 개인연금까지 노후 연금 3층 구조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86%, 30대는 91%가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등 연금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또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가 연금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생활 초기부터 '연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형 은퇴 시장이 본격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노후 재테크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도 2030 투자자들이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하려는 이유로 꼽힌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투자 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세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중략)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쌓이고,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을 통한 운용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연금 3층 구조를 빨리 이해하고 실행하면 할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3. 6. 1.]

-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 경제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핵심 용어 정리

초고령사회

총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노후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층으로 마련한 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금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여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노후대비를 보장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연금제도로서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상품이 포함됨

주택연금제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유동화하는 연금제도

9.1 초고령사회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은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명까지 낮아졌으며,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으나 2022년에는 82.7세로 증가하였다.

출산율과 평균수명은 미래에 그 사회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자산(population asset)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는 다음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총 인구 =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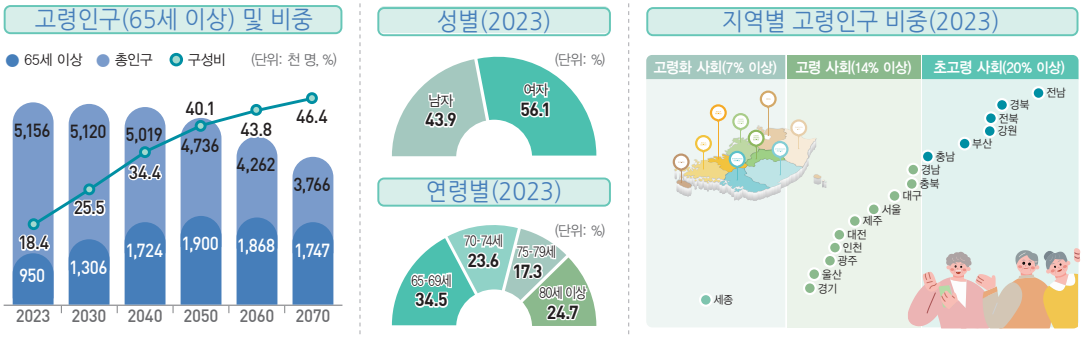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인구 구성비라고 하는데, 고령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거쳐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이다.[2]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에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1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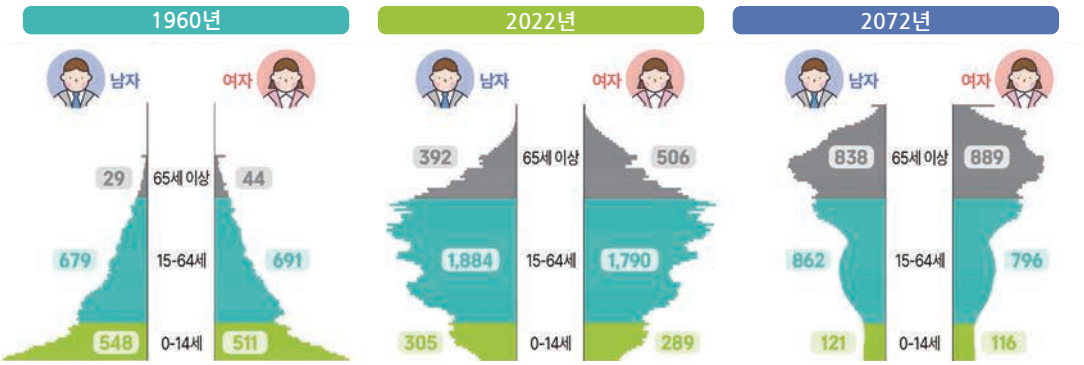
2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 참조.

그림 9-1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계 및 관련 통계**



[출처: 통계청, 2023 고령자통계(보도자료, 2023. 9. 26.)]

그림 9-2 | **인구피라미드 변화(단위: 만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보도자료, 2023. 12. 14.)]

다른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단 8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에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 중위연령(median age)도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0세를 넘어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령화

의 속도로 인하여 2017년에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섰고 2072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7.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65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9-2〉 참조).

2 수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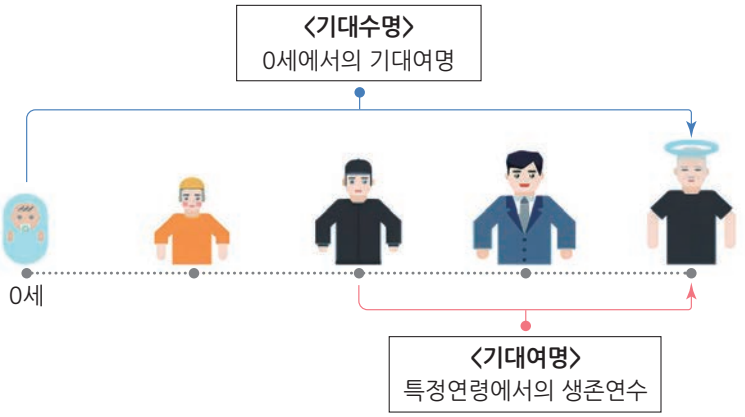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과거 50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낸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수명 또한 빠르게 연장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화 이슈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수명연장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최근에는 단순하게 오래 생존한다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명을 기대수명, 건강수명, 행복수명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대수명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특정 연도에 0세 신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이는 국가별 수명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수명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대수명이 83.5세라면 이는 2023년 출생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83.5세라는 의미이다. 한편,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그림 9-3〉과 같이 기대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으로도 볼 수 있다. 특정집단의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은 특정집단에 대해 작성한 생명표(life tab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명표는 국가 보건 및 의료정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3 생명표란 과거 연령별 사망 경험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사망확률과 생존확률을 산출하여 작성한 통계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제공된다.

그림 9-3 |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 –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통해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이 발표된다. 2023년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6세, 여자 86.4세)이며,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의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청은 장래 기대수명을 격년으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음 〈표 9-1〉은 고위(낙관적 관점), 중위(중간수준 관점), 저위(비관적 관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중에서 중간수준 관점의 값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미래사회의 인구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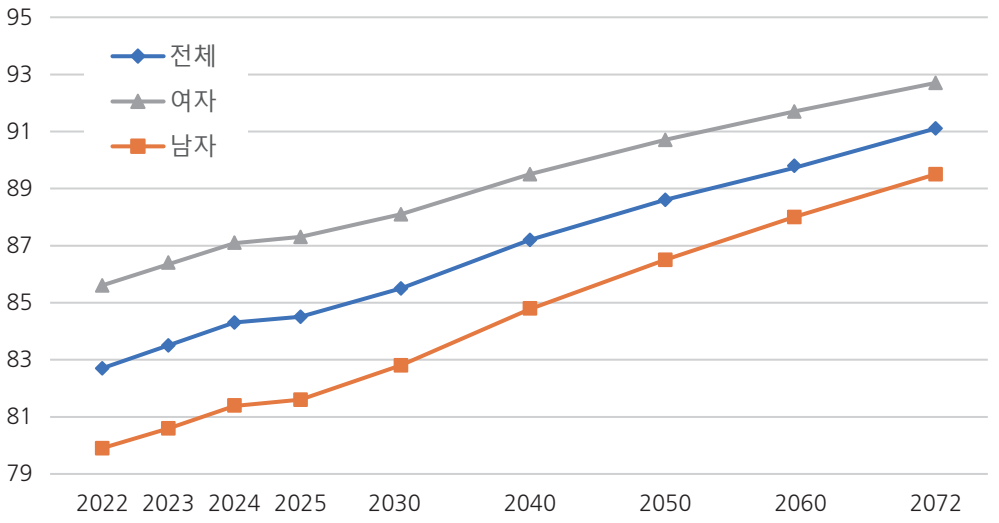
표 9-1 | **성별 중위 기대수명 추계**

(단위: 세)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전체	82.7	83.5	84.3	84.5	85.5	87.2	88.6	89.8	91.1
여성	85.6	86.4	87.1	87.3	88.1	89.5	90.7	91.7	92.7
남성	79.9	80.6	81.4	81.6	82.8	84.8	86.5	88.0	89.5
남녀 차이	5.8	5.9	5.7	5.7	5.3	4.7	4.2	3.7	3.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보도자료, 2023. 12. 14.)]

그림 9-4 | **성별 중위 기대수명 추계(2020~2070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보도자료, 2023. 12. 14.)]

2 건강수명

건강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행복수명

행복수명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한 행복수명지표를 의미한다. 2017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83.1세)보다 8.5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평균 8.5년 정도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읽기

한국인, 노후준비 부족 … 죽기 전 마지막 8.5년 불행하게 살다 갈 수도

한국사람의 '행복수명'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짧아, 죽기 전 8년 반은 불행하게 살다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0일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라고 밝혔다. 기대 수명은 83.1세지만, 행복수명은 이보다 8.5년 짧은 셈이다.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에서 독일의 행복수명이 77.6세로 가장 길었다. 그 뒤로 미국·영국(76.6세), 일본(75.3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조사 대상 5개 국가 중 가장 짧았다.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일본이 9.5년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한국(8.6년), 영국(5.7년), 미국(4.3년), 독일(4.2년) 순이었다. 한국인은 생존기간 중 마지막 8.5년간 ▲아프거나 ▲노후 준비가 안 돼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건전한 관계·활동 등이 결여돼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10명 중 7명 꼴로 행복수명이 기대수명보다 5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노후준비에 취약한 계층이 많아 노후에 삶의 질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표 9-2 | **국가별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기대수명(A)	83.1세	84.8세	81.8세	80.9세	82.3세
행복수명(B)	74.6세	75.3세	77.6세	76.6세	76.6세
격차(A-B)	8.5년	9.5년	4.2년	4.3년	5.7년

[출처: 조선일보, 2017.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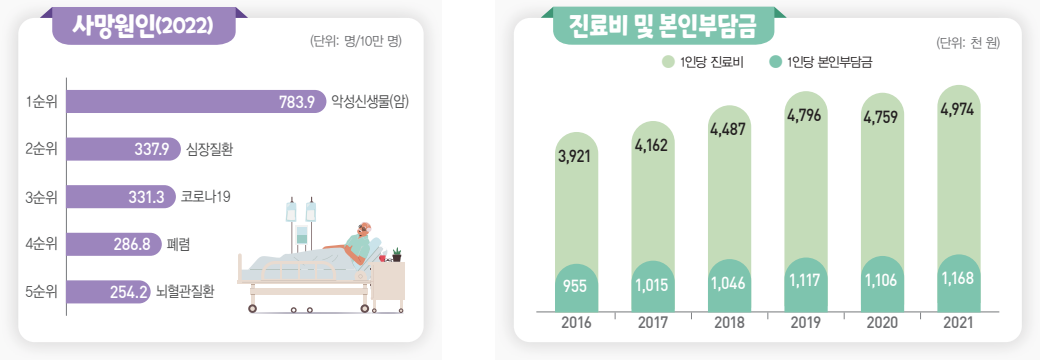
9.2 노후의 주요 위험

1 건강위험

노후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저하되는 건강위험이다. 2022년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783.9명이 사망하였고, 다음으로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4] 또한, 노후 가족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우울증이나 고독감 역시 노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등장하여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은 질병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수반하는 위협이 되지만,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비용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통계청 조사결과 65세 이상

그림 9-5 우리나라 고령층의 주요 사망원인 및 진료비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3 고령자 통계(2023. 9. 26.)]

4 통계청 보도자료(2023 고령자 통계, 2023. 9. 26.) 참조.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4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 186만원에 비해 2.7배 높은 수준이다. 진료비 중 1인당 본인부담금의 경우 고령자는 117만원으로 전체 평균 46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전체 인구 진료비 대비 고령자 진료비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령자 개인별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어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경제적 위험

노년기에는 소득창출에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거주지역의 물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중고령자 대상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2021)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124만원, 부부 기준 199만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177만원, 부부기준 277만원으로 나타났다.[5]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높은 서울은 최소 생활비가 개인기준 137만원, 부부기준 224만원에 달했다.[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7]에 따르면 2023년 연금수령자 비율은 50.3%이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원 수준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의 68.5%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비율이 55.8%였다. 고령자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노후에 직면하는 경제적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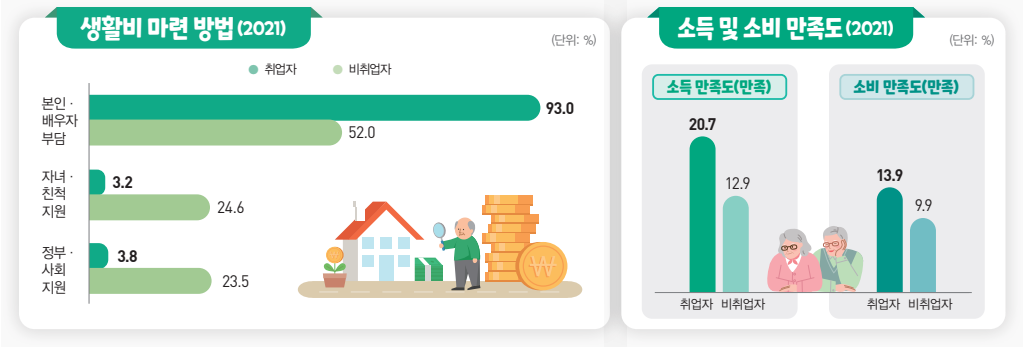
---

5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하며, 최소 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6 참고로,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실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31만원(2022년 대비 11만원 증가), 적정생활비는 324만원(2022년 대비 11만원)으로 나타났다(2023.12.7., 통계청 보도자료).

7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25.) 참조.

그림 9-6 | 우리나라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법과 소득 및 소비 만족도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3 고령자 통계(2023. 9. 26.)]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old-age income poverty ratio)[8]을 비교하면 2023년 보고서[9]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약 2.8배 수준이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사읽기

은퇴자 10명 중 7명 "황혼이혼 등 5대 리스크 경험 … 8,701만원 손실"

50~60대 은퇴자가 겪을 수 있는 '5대 리스크'(위협요인)로 황혼이혼, 금융사기, 창업실패, 중대질병, 성인자녀 등이 꼽혔다. 이중 노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히는 리스크는 창업실패와 황혼이혼이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50~60대 은퇴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2%가 5대 은퇴리스크 중 적어

8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중에서 국민 전체의 중위가처분소득(national median disposable household income)의 50%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있는 고령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9 Pension at a Glance 2023(2023. 12. 13, OECD)

도 한 가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들은 리스크로 인해 평균 8,701만원 손실을 봤으며 이후 생활비를 31.2%나 줄였다. (중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5대 은퇴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발생빈도가 낮지만 충격이 큰 황혼이혼과 금융사기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 무리한 창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대질병 · 성인자녀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장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관리하고, 동거자녀의 생활비 분담 및 결혼자금 계획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7. 3. 9.]

9.3 노후준비와 연금



1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은 은퇴 이전에 미리 연금자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체계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 등 노후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s)와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s)로 나

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100% 조세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제도로는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 등이 있다.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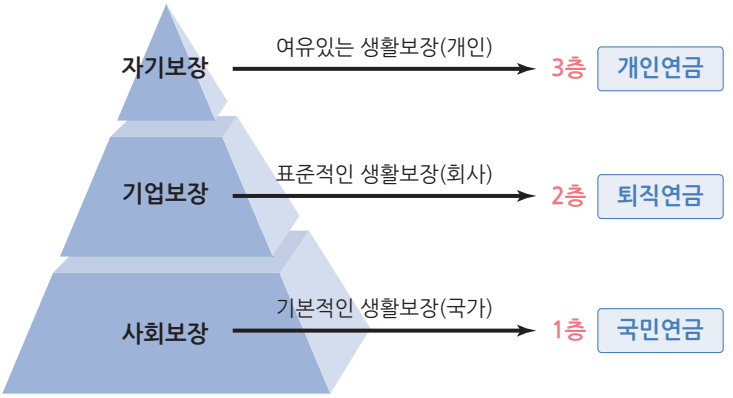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표 9-3〉과 같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1층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 연금제도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이를 통합하여 3층 보장체계(3-pillar system)라고 한다. 이러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층으로 이루어진 연금체계는 정기적으로 약정한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원칙(contribu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한편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노년세대를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0층 연금제도라고 한다.

위와 같은 다층적 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입 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연금제도에 낸 보험료(부담금)를 국가나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표 9-3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근로소득자</th><th>자영업자</th><th>공무원/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직원</th></tr>
<tr><td rowspan="3">사적연금</td><td rowspan="3">3층보장
체계</td><td>3층</td><td colspan="3">개인연금(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td></tr>
<tr><td>2층</td><td>퇴직연금</td><td>-</td><td rowspan="3">특수직역연금</td></tr>
<tr><td rowspan="2">공적연금</td><td>1층</td><td colspan="2">국민연금
(무소득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함)</td></tr>
<tr><td colspan="2">0층
(공적 부조)</td><td colspan="2">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약 70% 국민)</td></tr>
</table>

그림 9-7 | 3층 연금체계



3 연금소득대체율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 수준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은퇴 직전에 받던 급여의 약 70~80% 수준으로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연금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pension replacement rate)이라고 하는데, 주요 선진국은 연금소득대체율이 약 75%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 주요 연금제도

1 제1층 연금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

로 하며, 이는 매년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life annuity)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①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해야 한다.

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이다. 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개별적으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해야 한다.

③ **임의가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 및 지역 등 당연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당연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수준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소득 이상으로 본인이 소득수준을 결정하여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의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차후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표 9-4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3년~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년~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출처: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제도도입 초기 '저(低)기여-고(高)급여' 설계로 인해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급여 지출수준과 보험료 수입수준 등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2층 연금제도: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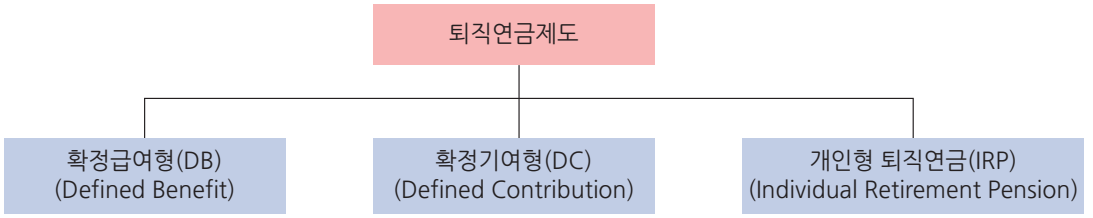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사용자인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시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자는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❶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그림 9-8 | 퇴직연금제도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때, 운용에 따른 투자 손익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 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❷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근퇴법의 확정기여 수준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사용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별로 조성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손익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❸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는 근로자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투자자산의 관리방식을 모두 결정하는 방식으로 펀드, ETF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안정적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10 2023년 기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

3 제3층 연금제도: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앞서 살펴본 1층과 2층의 기본적인 보장을 강조하는 연금제도에 비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형의 연금제도이다. 국가는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이 있으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는 연금보험이 있다.

① 연금저축

연금저축상품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판매할 수 있다. 〈표 9-5〉와 같이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반영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 또한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만 유일하게 종신연금 상품을 판매하며,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는 확정기간형연금만 판매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계좌이므로 예금자보호제

표 9-5 |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구분	은행	자산운용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최대 25년까지)
원금보장	보장*	비보장	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보호

*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형이며, 2018년부터는 신규판매를 중단함.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 ETF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투자대상 간 전환도 비교적 자유로워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시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②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연금보험은 1억 원을 한도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 연금보험은 매월 150만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차익[11]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전업주부는 연금저축보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읽기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 · IRP 활용해야

(전략)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한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에선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적용받는다. 그만큼 부과된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2023)부터는 나이, 소득에 관계 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11 보험차익이란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해지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략)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 한도만큼 납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느정도일까.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2000원~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는 900만원 납입시 최대 환급금이 118만8000원~148만5000원에 이른다. 환급 규모가 더 큰 만큼, 여윳돈이 있는 경우엔 IRP에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최대 납입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경우도 많다. 다만 중도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입액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후략)

표 9-6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도 있음

[출처: 조선일보, 2023. 10. 16.]

금융꿀팁

연금저축 관리방법

1. 연금저축 중도해지 대신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한다.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고 무조건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부담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또는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했다가 원할 때 납입을 재개할 수 있으며,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유예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2. 연금저축 가입 이후 필요 시 연금계좌 간 이체제도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 이후 수익률을 비교하는 등 꾸준히 관리한다. 또 다른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신설하고 연금계좌 간 이체를 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며, 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연금수령 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제0층 연금제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이다.

그림 9-9 | **기초연금 안내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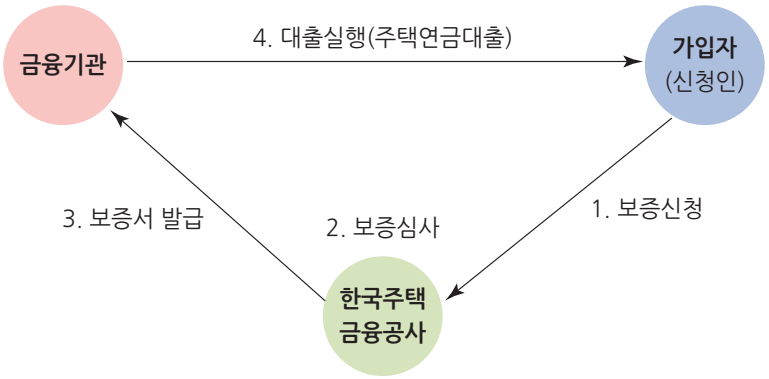
5 주택연금(역모기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이므로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이를 활용하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유동화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기준 소유주택(다주택 포함)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주택연금 운영구조는 〈그림 9-10〉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것을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기존 연금액은 감액 없이 100% 지급된다.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다면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그림 9-10 |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t.go.kr)]

기사읽기

노인 모두 주택연금 가입시 빈곤율 10%p 뚝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을 10%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7.7%다. 그러나 해당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고령층 빈곤율은 27.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에는 빈곤율이 23.5%로 더 낮아졌다.

보고서는 "전 자산을 연금화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순자산 연금화와 실현성이 더 높은 주택 연금화의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인층의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 또한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와 소득 대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농지연금 평균수급액을 약 108만 원으로 추정하고 농지연금 가입률이 100%일 때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0.357로, 가입률이 0%일때(0.418)에 비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주택·농지연금 수령액을 반영한 빈곤 보조지표를 만들어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3. 12. 22.]

9.4 은퇴 연금설계



1 연금설계의 단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에 필요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표 9-7 |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연금설계(예시)

구분	비고
① 목표 연금(은퇴 이후 예상 월 생활비)	은퇴 직전 3년 평균 월 생활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설정 (예: 60~70%)
② 은퇴기간(= 예상사망연령 – 은퇴연령)	개인별 상황 및 생명표의 기대여명 등을 참조
③ 목표 노후생활자금	월 생활비×12개월×은퇴기간(年)
④ 준비된 노후생활자금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가입연금정보조회
⑤ 부족 노후생활자금	목표 노후생활자금 – 준비된 노후생활자금
⑥ 부족 노후생활자금 마련	개인연금 추가 가입, 주택연금 활용 등

것은 매우 중요한 은퇴설계이다. 실제로 은퇴설계의 핵심은 필요한 은퇴자금을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씩 모아야 할지, 언제부터 얼마씩 찾아 쓸지에 관한 연금설계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연금을 산출하려면 우선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조사하고, 은퇴 이후 생존가능기간(평균수명)을 기초로 산출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미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필요자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 상품의 추가가입 등을 통해 보완한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 관련 온라인 원스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보자. '내 연금조회' 메뉴에서 개인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내역, 연금 예상액을 조회하고, '노후 재무설계' 메뉴에서는 나이, 은퇴시기 등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해도 노후 필요자금 및 월 필요 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연금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 ·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다.





2 연금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1 연금가입의 목적

연금을 가입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가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납입한 금액을 단기 또는 장기에 주택자금이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연금이 아닌 적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 세제 혜택 선호유형 고려

다음으로 세제혜택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일정요건 충족 시에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3 투자성향 고려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원금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회피형) 아니면 다소 위험부담은 있더라도 투자수익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선호형)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고 위험회피성향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할 것이다. 반면에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와 함께 투자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적합할 수 있다.

4 연금상품의 실적 비교

마지막으로 선택한 연금상품 유형 중에서 과거 투자수익,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투자성과가 좋고 시장성이 높은 규모가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통합연금포털'의 통합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상품은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실(https://pub.insure.or.kr) 자료를 활용하면 상품별로 유용한 비교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판매접근성이나 전문성,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선택한 다음,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연금수령기간과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적합한 상품을 계약해야 한다.

확대보기

간병보험의 활용

노후가 다가오면 미리 가입한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질병보험상품은 연금자산만큼이나 소중한 은퇴자산임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질병보험을 기존의 질병보험과 비교하여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치료까지 포함하는 '고령자 실손의료보험',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를 상향 조정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간병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노후자

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유병률이 2020년 10.39%에서 2040년 11.9% 그리고 2050년에는 15.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대비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성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기간병보험의 핵심인 치매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노후설계가 요구된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간병보험의 핵심 보장내용은 진단비와 간병비이다.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확정되면(첫 진단 이후 90일간 그 치매상태가 지속되면 확정) 치매 정도(경증치매, 중도치매, 중증치매)에 따라 약정한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고 장기간병이 필요한 중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약정한 치매간병비가 매월 지급된다.

학습내용 정리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 기대수명은 평균수명의 개념이며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고,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서의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 노후에 관리해야 할 위험에는 건강위험과 경제적 위험 등이 있다. 건강위험이 경제적 위험을 가중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다.

- 연금을 설계할 때는 은퇴 후 예상하는 월 생활비를 산출하고 은퇴 후 잔여 생존가능기간을 산출하여 필요한 노후 자금을 우선 산출한다. 연금자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필요한 수준의 연금을 준비한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비교하시오.

3.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_____ 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측정한다.
2.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으로 _____ 연금제도가 있다.
3. 국민연금의 _____ 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와 함께 당연가입자이다.

3 O·X 문항

1. UN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 )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규정한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 )
3.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종신형 연금으로 지급된다. ( )

제10장

재무설계의 기초

10.1 재무설계의 의의
10.2 재무설계의 과정
10.3 20대의 재무설계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무설계의 기본개념과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20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설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목표

-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20대에 필요한 재무설계를 실행할 수 있다.

생각열기

학자금 대출 못 갚은 청년 7배 늘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르자 학자금 대출 이외에도 빚을 낸 청년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가운데 '회수 불능' 처리한 금액은 27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118억6200만원)까지 매년 증가했다. 4년 전보다 5.8배 늘어난 셈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도 4778명으로 2018년(679명)의 7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78억400만원, 64.8% 수준이다. 파산 면책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954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금액은 71억9200만원이다. 한편 차주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000만원이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학자금 대출 금액 자체가 많기보다는 높은 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과 파산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고 집값 상승과 '영끌' 등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 빚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3. 11. 13.]

-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돈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핵심 용어 정리

재무설계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수립하는 재무행동 계획

재테크

재산을 늘려가는 기법과 기술

수입지출표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

자산부채상태표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

사용자산

거주주택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자산

보험자산

보험환급예상액, 연금 등 위험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자산

순자산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값으로, 실제로 순전히 자신의 몫인 자산을 말함

종잣돈

자산관리의 첫 시작이 되는 목돈

선저축 후지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그 나머지로 지출을 하는 것

소모성 대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위한 대출

10.1 재무설계의 의의



1 재무설계의 개념

1 재무설계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란 개인의 삶이나 가계의 생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적 ·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삶의 목표를 토대로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 및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재무설계와 재테크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다르다. 재무설계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족의 연령, 직업, 자금여력, 생활방식,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의미한다. 반면, 재테크는 부(富)를 이루는 수단인 '재(財)'와 기술이라는 뜻의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합성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재산을 늘려나가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2 재무설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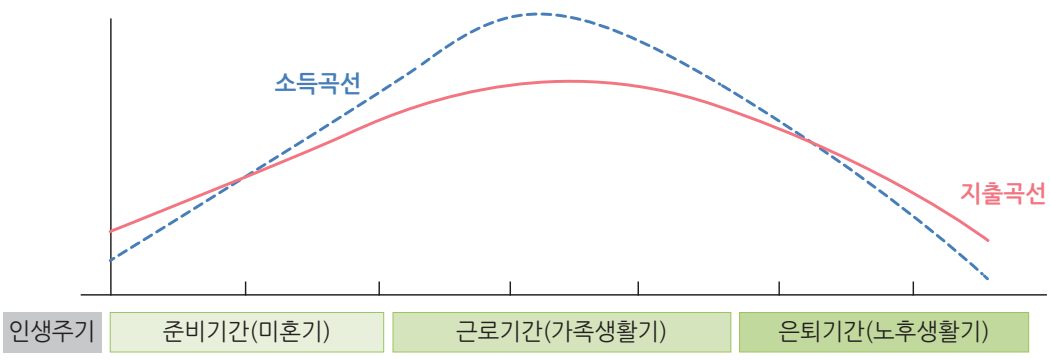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로서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만족을 극대화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며,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해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생애소비만족 극대화, 위험대비,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 관리,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 등의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1 생애소비만족 극대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안정적, 연속적으로 소비지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생애소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10-1〉을 보면 사람의 인생주기는 준비기간(미혼기), 근로기간(가족생활기), 은퇴기간(노후생활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기에 소득과 소비 수준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비 수준보다 소득이 더 높은 시기도 있고,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소비를 해야만 하는 시기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소득과 소비의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준비기간(미혼기)에는 소비가 소득 수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만약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근로기간(가족생활기)에 소득이 소비보다 클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과 투자 등을 한다. 또한 은퇴기간(노후생활기)에는 미리 축적해 둔 자산과 연금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소비 수준의 불일치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을

그림 10-1 |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흐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2 위험 대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1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거나 타인에게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금전적으로 대비하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3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 관리

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재무설계를 하면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교육, 결혼, 자녀양육, 노후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무설계가 큰 도움이 된다.

4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영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경제적 조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과 공적연금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10.2 재무설계의 과정

재무설계는 먼저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재무설계안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재무생활을 평가하여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더욱 완전하고 현실적인 재무설계가 되도록 개선한다.

1 1단계: 재무상태 분석

재무설계의 첫 단계는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재무목표에 반영하고 재무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재무상태는 수입지출표와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하여 파악한다.

그림 10-2 | 재무설계의 과정



1 수입지출표

수입지출표는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이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가계부 앱(app) 등을 활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입은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투자소득 등)과 자산변동유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지출은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과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고정지출은 주거비나 대출상환금처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반면 변동지출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금액조정이 가능한 지출을 말한다. 소득 수준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고정지출보다는 변동지

표 10-1 | 수입지출표의 예시(20○○.1월~20○○.12월 기준)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소득		고정지출	
근로소득	2,300만원	세금	200만원
이자소득	50만원	건강보험료	100만원
투자소득	30만원	연금보험료	100만원
		대출상환금	200만원
		관리비	120만원
		고정지출 합계	720만원
		변동지출	
		식비	500만원
		(외식비)	(200만원)
		피복신발비	150만원
		교양오락비	300만원
		보건의료비	50만원
		기타	300만원
소득합계	2,380만원	변동지출 합계	1,300만원
자산변동유입		저축과 투자	
저축인출	150만원	보통예금(생활비)	56만원
차입금	50만원	정기적금(여행자금마련)	60만원
		정기적금(결혼자금마련)	180만원
		적립식펀드(주택자금마련)	240만원
		청약저축(주택마련)	24만원
자산변동유입 합계	200만원	저축과 투자 합계	560만원
수입 합계	2,580만원	지출 합계	2,580만원

출 항목에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수입지출표를 정리해서 소득에서 고정지출·변동지출을 차감한 값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저축과 투자가 적정한지, 특정 항목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지는 않는지 평가한다.

2 자산부채상태표

자산부채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이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현금성자산, 저축성자산, 투자자산, 사용자산, 보험자산 등으로 자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 현금성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등이 포함되고, 저축성자산에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포함된다. 투자자산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등과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사용자산은 거주주택자산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귀금속 등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보험자산은 보험환급예상액, 연금 등 위험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자산을 말한다. 또한 부채는 단기부채와 장기부채, 고금리 부채와 저금리 부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하면 자산부채의 상태를 평가하기 쉽다.

자산부채상태표를 정리해서 자산과 부채 규모를 비교하고, 자산의 포트폴리오, 부채의 특징 등을 평가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표 10-2 | **자산부채상태표의 예시(20○○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현금성자산		단기부채	
보통예금	56만원	신용카드대금	150만원
합계	56만원	합계	150만원
저축성자산		장기부채	
정기적금	800만원	학자금대출	800만원
청약저축예금	100만원	전세자금대출	3,000만원
정기예금	500만원	합계	3,800만원
합계	1,400만원		
투자자산			
주식	70만원		
펀드	480만원		
합계	550만원		
사용자산			
전세보증금	5000억원		
자동차	500만원		
합계	1억500만원		
보험자산			
개인연금	200만원		
국민연금	600만원		
합계	800만원		
자산합계	8,306만원	부채합계	3,950만원
순자산(= 자산 − 부채) 4,356만원			

2 2단계: 재무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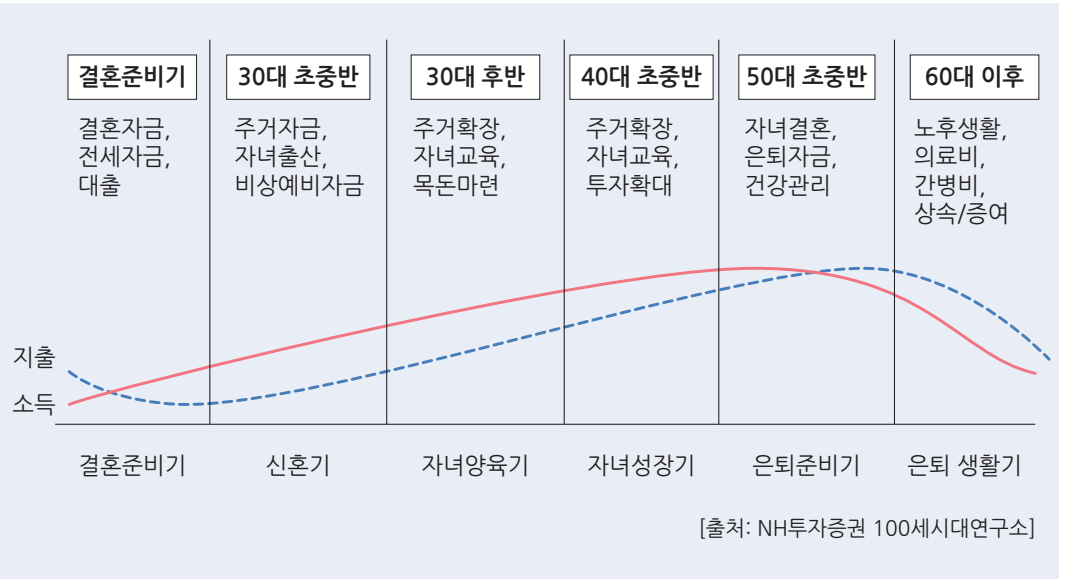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단계로 재무목표를 설정한다. 재무목표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개인이나 가계의 고유한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재무목표는 목표금액과 함께 반드시 달성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재무목표는 단기 · 중기 ·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매년 또는 매월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목표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최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등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표 10-3〉과 같이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단계별 주요 재무목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게 설정한다.

표 10-3 |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생애주기	주요 이슈	주요 재무목표
청년기	학업 / 취직 여행 / 결혼	학자금 마련 / 독립 및 주거자금 마련 여행자금 마련 / 결혼자금 마련
중장년기	자녀출산 및 육아 / 자녀교육 내 집 마련 / 자산형성 자녀결혼 / 은퇴 및 노후대비	자녀양육자금 마련 / 자녀교육자금 마련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채상환 주택확장자금 마련 자녀결혼자금 마련 / 노후자금 마련
노년기	노후생활	은퇴 후 자산관리 / 증여 / 상속

그림 10-3 | 생애주기별 주요 이벤트와 소득-지출 추이(예시)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적용하기

재무목표 설정을 위한 SMART 원칙이란?

- S(Specific): 막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고려해 목표를 세워야 한다.
- M(Measurable): 기간 · 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 A(Action oriented):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명확히 한다.
- R(Realistic): 현재 자산 상태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 T(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출처: 하이럼 W.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에서 발췌]

3 3단계: 행동계획 수립과 실행

재무설계의 세 번째 단계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등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행동계획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가계부 앱을 활용하면 기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소비지출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저축과 투자를 계획대로 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기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재무목표를 정했다면, 현재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매월 모아야 할 금액을 정한다. 이 때 자신의 위험성향, 목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저축상품, 투자상품 등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여러 개의 재무목표를 정할 경우 목표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액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계속해서 등장

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한다.

1 안전성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요인이 안전성이다. 안전성은 미래에 원금 및 수익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금융상품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예금자보호대상인지 등을 확인한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자금은 위험부담이 있는 상품보다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물가상승률, 세금 등 기회비용과 각종 수수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금의 용도와 운용기간, 위험성향에 따라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3 유동성

유동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손실 없이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단기에 필요하거나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은 반드시 유동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예금은 수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약정된 예치기간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은 필요할 때마다 대부분 쉽게 매매할 수 있지만, 급히 처분하려는 상황에서는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한다. 펀드의 경우에도 자금이 필요하면 만기 이전에 환매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매할 때 손실이 발생한 상태일 수도 있고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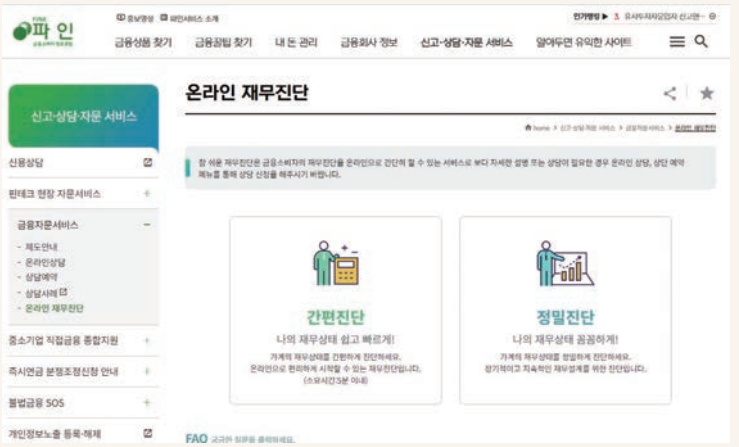
4 4단계: 정기적 검토와 수정

재무설계의 네 번째 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재무설계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평가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나 이직을 하게 되었거나 결혼, 출산 등과 같이 재무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계획을 수시로 검토하고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재무목표의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정한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의 '참 쉬운 재무진단'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무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해보자. 개인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재무정보를 입력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신고 · 상담 · 자문 서비스-금융자문 서비스-온라인 재무진단]

10.3 20대의 재무설계



1 20대의 재무목표

20대는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준비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기계발에 몰두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등 가족생활기를 시작하기 이전의 미혼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재무목표는 주로 학자금 마련, 독립을 위한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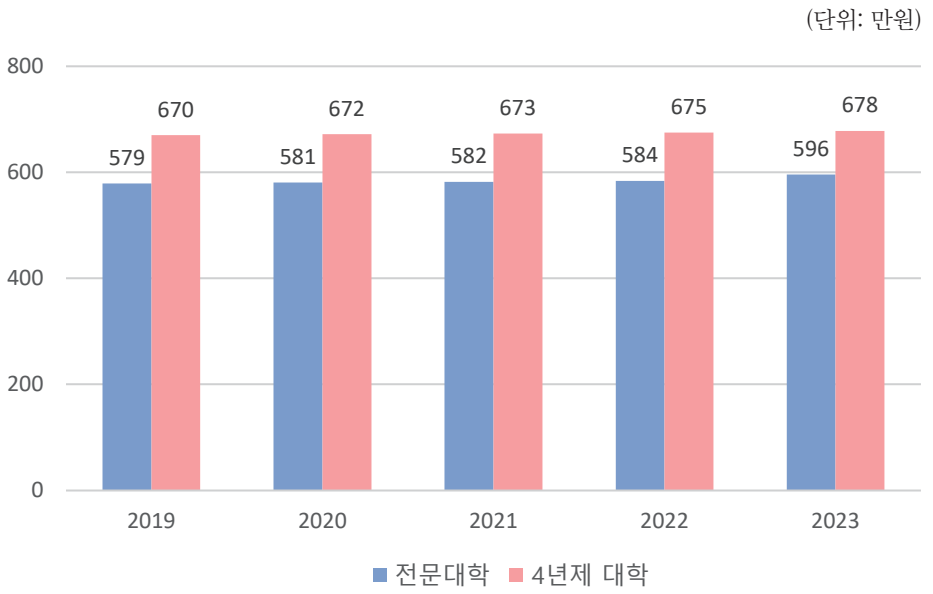
1 학자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년제 대학이 약 678만원, 전문대학이 약 596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을 받거나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준비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만약, 학자금대출로 돈을 마련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일반 상환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업과 병행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여 얼마만큼의 금액을 모을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2 독립을 위한 주거자금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면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형태는 전·월세가 많고,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비중은 낮다. 전·월세의 경우에 목돈인 보증

그림 10-4 | 연도별 평균 대학 등록금 추이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

금이 필요하므로 독립을 위한 일정 규모의 주거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매월 임차료를 내는 월세로 거주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대의 경우 월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독립에 앞서 주거자금을 전액 다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대출조건과 상환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지원하거나 청년층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전월세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3 결혼자금

결혼자금 중 결혼식, 신혼여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자기 상황에 알맞게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특히, 결혼자금에서 신혼집 마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므로 주거자금 마련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자금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자금을 설정하고 자금 마련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4 자기계발자금

20대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양한 학습, 독서, 여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자기계발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여행을 통해 자기계발 자금을 지출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하게 실행하도록 한다.

5 노후자금

청년기에는 노후자금이 아직 먼 미래에나 필요한 자금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매월 적은 금액으로 실행할 수 있고 복리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면 길어진 수명을 고려할 때 은퇴 후 30~40년 동안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기라 해도 장기적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읽기

'전세 사기' 남 일 아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것'

서울 화곡동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등 전세 사기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선 후속 대책 논의에 한창이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구 단위로 발생하면서,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략)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① **집값 시세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계약하려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집값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앞선 거래가 없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②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 ③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건물의 동호수가 건축물 대장상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측에 요구해도 된다.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별다른 오류를 발견할 수 없을 때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이 이미 나보다 우선해 묶여 있는 집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담보가 많은 다세대·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우선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④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세입자들이 있다면 내 보증금은 이들보다 후순위가 된다. 다른 세입자들보다 늦게 입주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더라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보증금'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소액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기준은 지역이나 빚이 생긴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집을 고를 때는 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다. 현재와 같은 집값 하락 국면에선, 안전한 매물이었을지라도 매매가가 떨어져 언제든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전세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집을 고른 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엔 ⑥ **집주인이 직접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도 중요하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⑧ **특약 사항**에 '대출이 불가할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나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담보권 설정, 소유권 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다.

계약을 한 이후엔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단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잔금은 이사 갈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고, 이사 간 날 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주택이 법원경매 등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다. 집주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시사저널, 2023. 4. 19.]

2 20대의 재무관리 전략

1 종잣돈 마련하기

학자금, 독립 및 주거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을 활용하여 꾸준하게 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의 첫 시작이 되는 목돈을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한다. 종잣돈이 마련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확대보기

20대에는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투자는 저축에 비

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100-연령의 법칙'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차감한 만큼의 비중으로 투자하라는 법칙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0세에는 자산의 70%를 투자자산에 배분하고, 30%는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투자손실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종잣돈 마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높을수록 수반되는 리스크도 크다는 점(high return high risk)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회복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기간에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손실 발생 시 꼭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2 좋은 소비지출습관 기르기

❶ 선저축 후지출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돈을 모으는 습관부터 기를 필요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먼저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정한 금액을 먼저 저축한 후에 남은 돈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좋다. 선저축 후지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좌 자동이체 기능을 활용하여 먼저 저축액이 정기적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여 청년기에 건전한 저축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는 평생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기초역량이 된다.

❷ 주거래 은행 정하기와 통장 쪼개기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꾸준히 거래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쪼개기란 자금을 용도별로 나누어 지출통장과 자산관리통장 등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무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통장을 나누어 관

리하는 통장 쪼개기는 자금 용도별 목표달성 여부를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로 통합된 통장을 수수료를 내고 해지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인출액에 해당되는 통장을 이용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쓰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체크카드는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되므로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소비지출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는데,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혜택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기사읽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 법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이다.

구분	내용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연간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의 사용 내역	
결제수단	사용액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	400만원
전체 사용액	2,000만원

직장인 A가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을 때			
결제수단	사용액 (공제율)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여부
현금영수증	400만원 (30%)	120만원	총 270만원 공제
체크카드	400만원 (30%)	120만원	
신용카드	200만원 (15%)	30만원	
1000만원(25%)		소득의 25%	공제 미적용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

그런데 만약 이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모두 소비했다면?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의 사용 내역	
결제수단	사용액
신용카드	2,000만원
전체 사용액	2,000만원

직장인 A가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결제수단	사용액 (공제율)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여부
신용카드	1,000만원 (15%)	150만원	총 150만원 공제
1000만원(25%)		소득의 25%	공제 미적용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 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된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 뱅크샐러드, 2023. 11. 6.]

3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핵심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매기는 신용점수[1]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신용점수는 개인의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의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가능 여부,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 평소에 신용관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받기가 어렵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대출금액이 적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낮게 부여될 수 있다.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 신용카드대금, 휴대폰요금, 공과금 등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정보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므로 한 금융회사에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도 연체정보를 알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4 대출원칙 수립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다보면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위한 대출을 소모성 대출이라 하는데, 자금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대출,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은 이자상환의 부담이 크고, 개인의 신용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5 위험관리

보장성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20대에는 소득이 적으므로 종신보험 등 보험료가 많이 드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적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1 개인의 신용을 1~10등급으로 매기는 신용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신용점수를 1~1000점으로 산정하는 신용점수제가 운영되고 있다.

학습내용 정리

- 재무설계는 재무상태 분석 → 재무목표 설정 → 행동계획 수립과 실행 → 정기적 검토와 수정의 단계를 거쳐 수행한다.
- 재무설계는 먼저 수입지출표와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하여 개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목표를 반영하여 재무목표를 세운다.
- 재무목표가 설정되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때,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 재무설계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
- 20대의 재무설계에서 주요 재무목표로는 학자금 마련, 독립 및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자신의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수입지출표와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를 분석하시오.

2. 향후 1년간의 재무설계안을 작성하시오.

3.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재무설계의 과정은 재무상태 분석 → _____ 설정 → 행동계획 수립과 실행 → 정기적 검토와 수정의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2. 수입지출표를 작성할 때 지출란은 고정지출, _____, 저축과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_____ 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3 O·X 문항

1. 수입지출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산부채상태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

2.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한다.( )

3.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한 금융회사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알 수 없다. ( )

제11장

금융소비자보호

11.1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11.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11.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11.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장치 및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학습목표

-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할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금융피해를 입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생각열기

"코인 프라이빗 세일 믿지 마세요" … 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투자자 A 씨는 B업체의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을 할인 판매한다는 말에 혹해 C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B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A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B업체는 추가로 2개월 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거래를 미뤘고, 그 사이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투자자 D 씨는 E업체로부터 코인을 예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F코인으로 100일 간 총투자액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돼 5천 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곧바로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이 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두 달간 접수된 신고건수만 406건에 달합니다. 신고 사례엔 앞선 사례 외에도 허위지급보증서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본인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투자 손실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했다가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상장 전까지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제한 조건 등이 걸린 저가 매수 권유에서는 제때 매도를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유명인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상자산은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된 사례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출처: SBS Biz, 2023. 8. 3.]

-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까?
-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할까?

핵심 용어 정리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적정성 원칙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목적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당사자에게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피싱(phishing)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돈 등을 빼내는 사기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단어로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전송한 후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

파밍(pharming)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를 합성한 단어로서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

큐싱(Qshing)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대포통장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

유사수신행위

금융감독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또는 사설업체가 원금보장 및 고수익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

보험사기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11.1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소비자는 이를 구매하는 금융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져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IT 기술과 금융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거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은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고령, 자산·소득 부족, 금융지식 부족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금융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 방식과 금융시장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요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1]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크게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고, 투자성 상품은 펀드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며, 대출성 상품은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이하 '금융회사')를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업자, 보험설계사·중개사 등과 같이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자로 분류한다. 이는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히 분류하여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와 관련한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

1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상대방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2 금융소비자의 책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함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3 국가와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국가와 금융회사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조직 운영 및 금융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및 공정한 거래, 금융소비자의 재산피해 예방조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11.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구제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공시의무 부과,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등이 이러한 사전적 예방조치에 해당한다. 사후적 구제장치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금융민원 처리,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각 금융업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들 법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와 금융피해구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이 있다.

1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또는 자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2] 또는 일반금융소비자[3]로 구분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의 경우),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위험성향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이나 변제계획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2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권유 없이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 누락해서는 안 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2 전문금융소비자란 국가나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 전문성이 있고 자산규모가 큰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3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로부터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고 난 후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설명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표 11-1〉과 같다.

표 11-1 |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

금융상품의 종류	중요사항
예금성 상품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투자성 상품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등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위험보장 기간 등
대출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 담보, 대출계약으로 인한 부담총액, 계약해지사항 등
제휴 상품	연계 · 제휴서비스 등의 내용, 연계 · 제휴서비스 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연계 · 제휴서비스 등의 제공기간 등
금융소비자보호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에 관한 사항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추가로 계약하도록 강요하거나[4] 부당한 담보 · 연대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한 대출금 상환방식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 외에 금융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고, 연계 · 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 변경해서도 안 된다.

4 이러한 행위를 구속성 행위 또는 끼워팔기라고 한다.

5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오인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가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도 안 된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5] 이행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는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전화를 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해서도 안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6 광고 규제

금융회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에는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금융회사의 명칭 및 금융상품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금융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 등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야 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과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

5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소비자는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한다.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그리고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조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표 11-2 |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6대 판매원칙)의 주요 내용

1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의 권유가 있는 경우)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 (금융회사의 권유가 없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설명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요구(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인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6 광고 규제	광고 내용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7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판매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즉,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령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해당 금융상품 판매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더불어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확대보기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금전 ·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 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 금전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그리고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불만 접수창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회사의 대응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1단계).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이라는 피해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민원은 주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 각종 소비자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다(2단계).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3단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의 · 과실의 입증책임은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게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금융민원이나 금융분쟁조정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금융민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 또는 전화(1332)를 이용하거나 직접 전국 각지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또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민원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대상인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과 관련된 금융민원을 모두 처리한다. 금융민원은 원칙적으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분쟁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30영업일 이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필요한 민원은 60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이 기간에는 서류 보완, 사실관계 조사 등의 시간과 공휴일 및 일요일이 제외된다.

금융감독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우체국과 관련된 민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관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확대보기

어떤 금융민원이 제기되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023년 상반기에만 4만 8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4만 4천여 건)보다 9.4% 증가하는 등 매년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특히, 은행 및 중소서민 관련 민원이 각각 68.4%와 49.0%씩 증가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보험금 산정·지급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은행은 대출거래 관련 민원(예: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요구 등)이 많았다.

표 11-3 |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접수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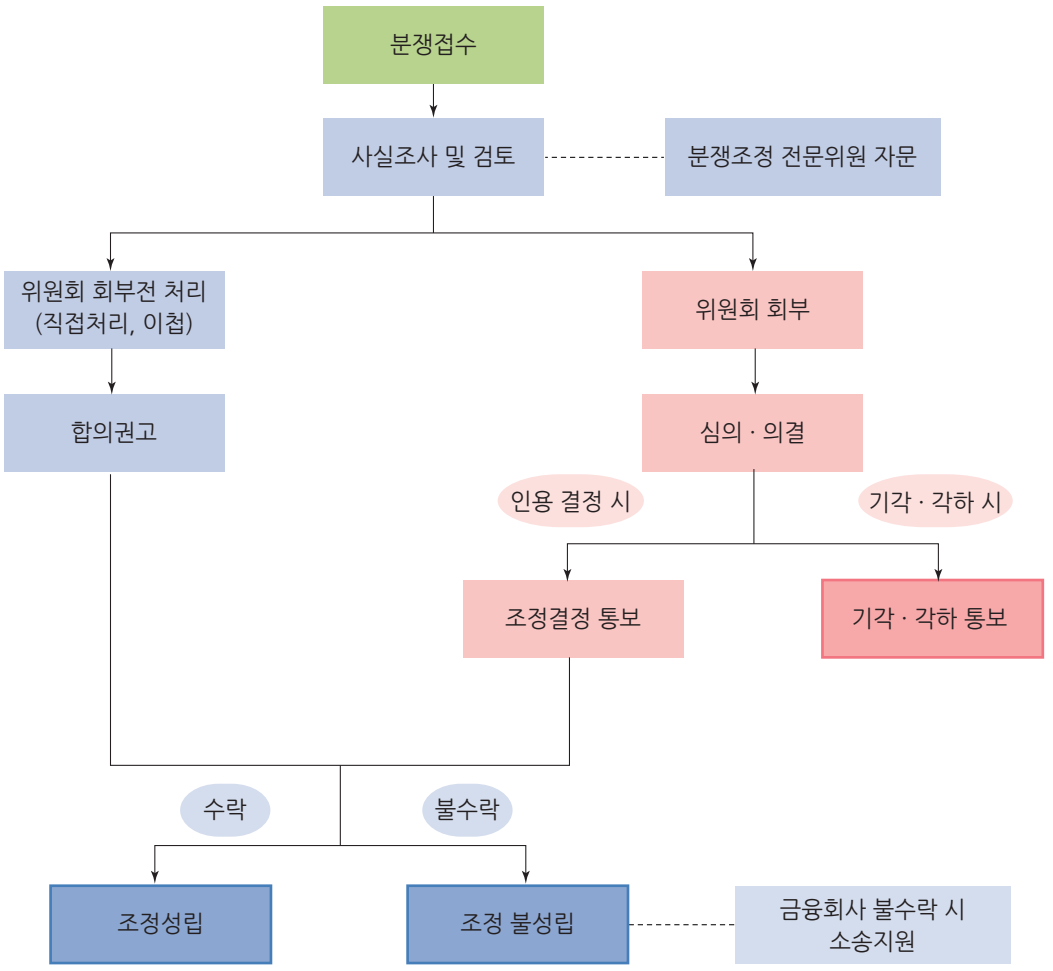
구분	'21년	'22년	'22.상반기 (a)	'23.상반기 (b)	증 감 (b-a)	증감률 (b-a)/a*100
금융민원 (분쟁민원)	87,197 (30,495)	87,113 (36,508)	44,333 (19,292)	48,506 (18,304)	4,173 (-988)	9.4 (-5.1)
은 행	12,382	10,904	5,039	8,486	3,447	68.4
중소서민	15,046	15,704	7,200	10,725	3,525	49.0
카드	5,335	6,720	2,979	5,124	2,145	72.0
저축은행	1,221	1,228	517	939	422	81.6
대부	2,766	2,196	1,083	1,230	147	13.6
기타	5,724	5,560	2,621	3,432	811	30.9
보 험	50,601	51,890	26,482	25,034	-1,448	-5.5
생보	18,401	16,733	8,684	7,168	-1,516	-17.5
손보	32,200	35,157	17,798	17,866	68	0.4
금융투자	9,168	8,615	5,612	4,261	-1,351	-24.1

[출처: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보도자료, 2023. 8. 10.)]

2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당사자에게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이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판·검사·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금융회사와 금융관계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금융전문가, 전문의 등으로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금융분쟁의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그림 11-1 | **금융분쟁조정 절차**



수락하면 재판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고, 그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확대보기

소송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자료열람요구권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는 불리한 조정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 분쟁조정 · 소송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되었다.

-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조정이탈금지제도: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2천만원 이내)은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 소송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 관리하는 자료를 열람하도록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 제한된다.

◈ 소송지원제도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금융분쟁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 의견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의결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21.7월부터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아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1 금융교육

1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고도 하는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금융태도 및 금융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년마다 공동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OECD 산하 금융교육 국제 협의체인 INFE[6]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18세~79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확대보기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2022년 기준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5점(100점 만점 기준)인데, 이는 OECD가 제시한 최소 목표점수(66.7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이해력 차원별로는 금융지식 차원이 75.5점으로 가장 높으며,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차원은 각각 65.8점과 52.4점이다. 연령별로 금융이해력 점수를 살펴보면, 30~5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편이고, 20대 및 60~70대의 금융이해력은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대와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과거부터 다른 연령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6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는 경제 · 금융교육 관련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되었다.

온 것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11-4 |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단위: 점(100점 만점))

	금융이해력			
	전체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OECD/INFE 최소목표점수	66.7	71.4	66.7	60.0
우리나라	66.5	75.5	65.8	52.4
20대	65.8	74.9	66.2	48.9
30대	69.0	78.2	70.0	50.9
40대	68.9	79.3	67.8	53.0
50대	67.0	77.2	65.6	52.6
60대	64.4	72.8	62.5	53.8
70대	61.1	65.5	59.2	57.6

[출처: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보도자료, 2023. 3.)]

2 금융교육 현황

금융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실과(기술 · 가정)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7]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초 · 중 · 고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을 통해 학교에서 체계적 ·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강의 교재 및 강사 등을

7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이 신설되어 2025년부터 교육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은 주로 금융회사와 직장,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을 통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뿐만 아니라 교사, 성인 등을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교육포털(www.kinfa.or.kr/financialSupport/edu.do)을 통해 대출이용자 교육과 미소금융, 햇살론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는 투자판단능력 향상과 재무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경제교육센터에서도 금융교육을 포함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및 사회에서의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와 금융생활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금융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확대보기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가 금융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정부 부처와 금융교육 유관기관들의 협의체 역할을 해왔던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적 기구로 전환되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추진·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fss.or.kr/edu)를 활용해보자. 금융교육교재, 동영상 등 다양한 금융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금융교육과 더불어 범 금융권에서 실시 중인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 금융정보의 제공

1 금융정보의 제공 필요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불확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빠른 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거래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수준과 활용 능력을 감안하여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및 공공성 등을 갖춘 금융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정보 제공 현황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

는 제도를 금융정보 공시라고 한다. 금융정보에 관한 공시는 개별공시와 비교공시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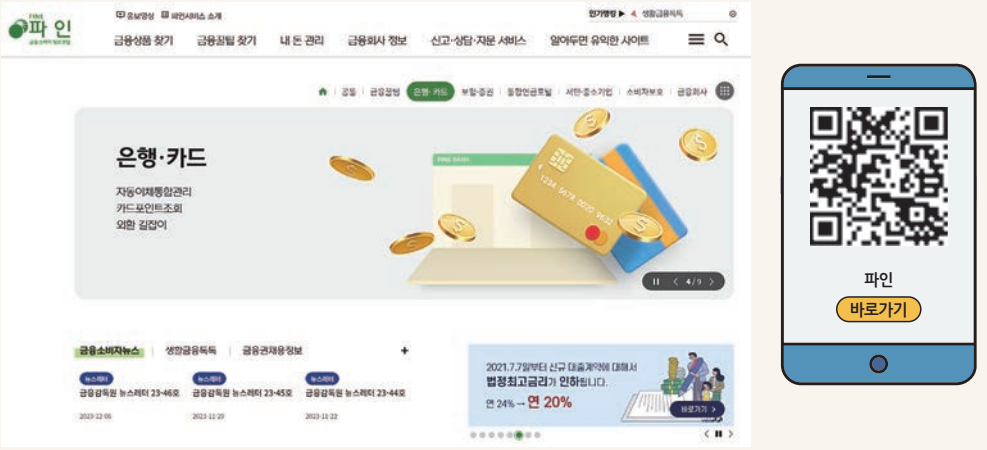
개별공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주체가 되어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비교공시는 해당 금융권역에 속한 전체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정보를 종합·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또는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다. 비교공시의 내용은 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②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되

적용하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해보자. 파인(FINE,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은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와 은행·카드, 보험·증권, 연금, 소비자보호, 금융꿀팁, 서민·중소기업, 금융회사 관련 정보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며, ③ 내용의 정확성 · 중립성 · 적시성을 유지하고, ④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⑤ 일반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11.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1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체계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용한 만큼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거나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출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보장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신용정보법에서도 규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개인정보 누설 시 알 권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기타 권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8]

확대보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① 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가명정보로 별도로 구분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정보, 영업실적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보

8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법 제6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에서는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다섯 가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예: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 · 경제적 지위, 교육, 건강 ·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신용정보법에서의 개인신용정보에는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대출, 담보제공, 금융거래 금액,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신용도판단정보(채무불이행, 연체,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 등), 기타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세금납부실적 등) 등이 포함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금융꿀팁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기

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접수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금융

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할 수 있다.

④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금융소비자는 법령상 보유기간(통상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⑥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 누설 시 알 권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설되었는지 금융소비자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피해 구제절차, 신고접수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다른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자동화 평가에 대응할 권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나 금융거래 관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을 활용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관련 주요 기준,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신용정보법 및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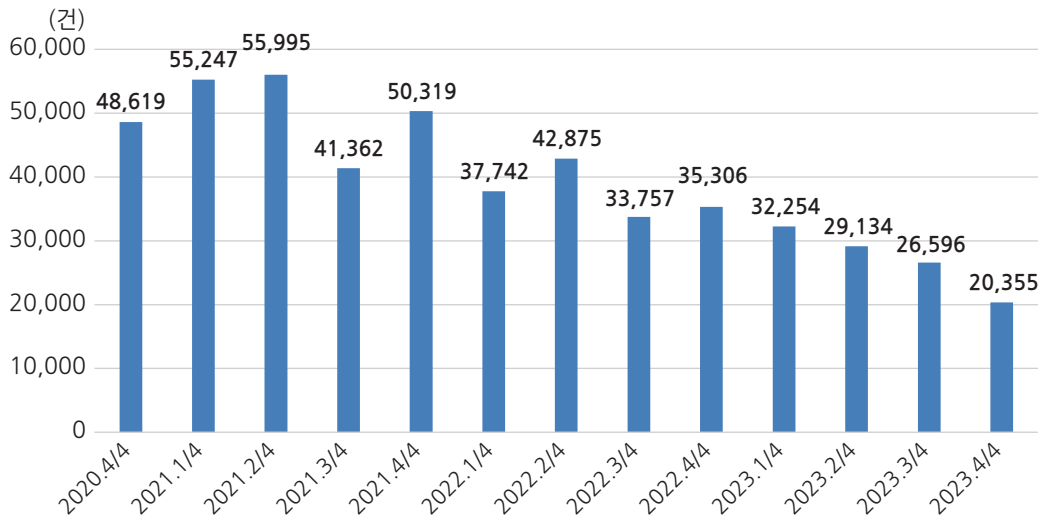
3 개인정보 침해 피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오남용·불법유통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IT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추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기업에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등으로 경영상의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IT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를 유출·오남용·불법유통하는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나 서류에 노출된 채로 허술하게 관리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그림 11-2 |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건수**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한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개인정보 무단수집,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등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9]

4 개인정보 침해피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이 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서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및 비슷한 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단체이며,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사기 피해예방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금융사기에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9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알림마당/개인정보 바로알기, e-나라지표(www.index.go.kr) 개인정보 침해 건수 등 참조.

1 대출사기

대출사기는 대출을 핑계로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해 제공되는 정보나 해당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1332(금융감독원)이나 112(경찰청)로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❶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는 대출을 희망하나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대출을 위해 별도의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점수 상향 조정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A는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의 신용이 낮은데도 대출받게 해준다며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로 먼저 일정 금액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대출금이 승인되었지만 이를 지급하려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고,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서 이를 송금했다. 그러나 전화를 한 사람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A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❷ 대출금 가로채기와 작업대출

대출금 가로채기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대출 전환과정에서 사기범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기법이다. 또한 사기범이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작업대출'도 있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자신을 대리해 자의적으로 문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례

대학생 B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웠다. 사기범은 B의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B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 또한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다.

❸ 개인정보 악용하기

개인정보 악용하기는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수집된 개인정보에 기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의 사기를 말한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

미성년자인 C는 부모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송부하였다. 사기범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앱을 통해 금융회사에 부모 명의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를 입혔다.

2 전기통신 금융사기

❶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피싱(phishing)은 본래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돈 등을 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 등으로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D는 신용카드 해외 결제 안내문자를 받았으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D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라며 전화를 한 다른 사기범은 D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출하여 잠적했다.

금융꿀팁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관련 행동 요령

1.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휴대전화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한다.
2. 상대방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휴대전화 보안 상태 검사를 실시한다.
3.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다.
4.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한다.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6.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보도자료, 2020. 11. 4.)]

❷ 스미싱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단어로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전송한 후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 기법을 말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빙자하거나 쿠폰, 상품권 증정, 지원금 지급 등을 내세워 문자메세지 수신자의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요즘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악성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수신자의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웹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례

E는 '○○○치킨 첫 행사 1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았다. E는 문자 중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했는데 실행되지 않아 그대로 종료하였으나 그 이후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돈이 결제되었다는 청구를 받았다.

❸ 파밍 및 큐싱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를 합성한 단어로서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에게 전달된다.

큐싱(Qshing)은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스캔할 QR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두었다가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이 다운로드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나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PC, 이메일 등에 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F는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인터넷 즐겨찾기에 있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눌렀다. 그러나 가짜 홈페이지 접속이 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F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3 대포통장사기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한다. 사기범은 경찰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사기이용계좌로 활용한다. 온라인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금을 일부러 이체한 뒤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핑계로 업무의 일부라고 속이고 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팔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G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구매대행, 세금감면업무라고 소개하며 G씨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자금이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G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었다.

금융꿀팁

대포통장 관련 행동 요령

1. 통장 대여 · 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은 불법이므로 거절한다.
2.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한다.
3.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주의한다.
4. 구매대행, 환전 아르바이트 등을 제시하며 통장 대여를 유도하면 거절한다.
5.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보도참고자료, 2020. 7. 6.)]

4 투자사기

금융감독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또는 사설업체가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일종의 투자사기로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업체는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일정 시점 후 지급을 멈추고 잠적하는 폰지사기 행태를 보인다. 또한 합법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양한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이러한 유사수신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등 정식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확대보기

폰지사기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안정적인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피라미드 사기이다. 일반적으로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폰지사기는 1920년대에 대형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을 매우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익금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돈은 자신이 낸 돈이거나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일 뿐이다.

이와 같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피라미드 사기가 들키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금융꿀팁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1.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한다.

2.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3.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한다.
   - OO%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회사 지급보증 등 강조
   -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 · 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 정부 등록 또는 인 · 허가 업체임을 강조
-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 · 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4. 미심쩍으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5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로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신체의 상해, 사고 등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잉진료를 받거나 치료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평범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병원, 손해사정사, 전직 보험설계사 등에게 이끌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일시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법자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꿀팁

보험사기 피해예방

◈ 자동차 사고 관련

①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②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합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③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한다.

◈ 자동차 수리 관련

①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한다.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한다.

②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은 거절한다.

③ 허위 또는 과장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 병원 진료 관련

①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한다.

② 진료받은 사실과 내용이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③ 의심스러운 병원은 피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학습내용 정리

-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 · 과장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최신의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금융사기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행위이다. 금융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관련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2 빈칸 채우기

1. _____ 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중 _____ 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_____ 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이다.
4. _____ 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다.

3 O·X 문항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 )
2. 금융회사가 취급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의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
3.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
4. 스미싱은 휴대전화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를 보내고 수신자가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나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이다. ( )

제12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12.1 핀테크의 개념

12.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12.3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12.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학습개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서 간편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핀테크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간편한 결제,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나타나는 핀테크의 사례 및 특성을 파악해보고,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와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학습목표

- 핀테크의 개념과 성장배경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핀테크의 다양한 사례와 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 핀테크의 발전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긍정적인 기대효과 및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돌입, 왕관을 거머쥘 승자는 누구?

최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보편화된 간편결제와 관련해, 국내 시장 및 기업의 동향과 이슈 사항이 제시됐다. 22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왕관을 거머쥘 승자는?)에 따르면, 빅테크,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까지 국내 간편결제 생태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국내 간편결제 이용 실적은 2023년 상반기 중 일평균 2628만 건, 8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6.9%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은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61.3%), 선불금(32.7%), 계좌(6.0%) 순이며, 카드 및 계좌에 연동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략)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제조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뉘며,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중략)

아울러, 빅테크를 중심으로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에게 소액 신용을 부여하는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등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안 신용평가모델을 발전시키며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환대출 서비스까지 확장 중인 모습이다. 충성 고객을 가늠하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후략)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3. 11. 22.]

-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산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핵심 용어 정리

핀테크(FinTech)

금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등장한 금융서비스 및 기술을 말함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블록체인(Blockchain)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이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

클라우드(Cloud)

전산 관련 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소유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말함

간편결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플라스틱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결제방식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군중을 의미하는 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funding을 조합한 말)

웰스테크(WealthTech)

자산관리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wealth와 technology의 합성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 관련 성향, 목표수익률, 자금의 성격 등을 진단한 뒤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서비스(robot과 advisor의 합성어)

인슈어테크(InsurTech)

상품개발,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보험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insur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12.1 핀테크의 개념



1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등장한 금융서비스 및 기술을 통칭한다. 물론 이전에도 인터넷과 컴퓨터기술을 기초로 한 금융산업 구조나 금융서비스의 발달은 지속되어 왔다. 예컨대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적 수단이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와 가치사슬(value chain)을 뿌리부터 뒤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최근의 핀테크 열풍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모바일로 채널이 변화된 데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까지 적용되면서 금융서비스와 금융중개기관의 가치사슬 및 경쟁구도,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구조를 통틀어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분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간편 결제 · 송금, 크라우드펀딩, 웰스테크, 인슈어테크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업무에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것을 전자금융 또는 전통적 핀테크라고 한다. 전자금융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금융서비스채널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입된 기술이 유선인터넷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자금융은 주로 유선인터넷 중심의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핀테크는 신흥 핀테크라고 한다. 이는 무선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유선인터넷 중심의 전자금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신흥 핀테크는 뛰어난 접근성, 저렴한 비용, 빠른 확산 속도 등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금융회사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

델은 기존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해체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확대보기

핀테크의 단계적 성장

기술발달에 따라 핀테크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성장단계를 높여가고 있다. 전자금융(전통적 핀테크)과 구분되던 신흥 핀테크도 초기의 언번들링(Unbundling[1]) 단계에서 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된 리번들링(Rebundling[2])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KPMG의 '2022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는 핀테크의 단계적 성장에 따라 전자금융(전통적 핀테크)을 핀테크1.0, 언번들링 핀테크를 핀테크2.0, 리번들링 핀테크를 핀테크3.0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핀테크1.0인 전자금융(전통적 핀테크)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로서 기존 금융회사의 인프라 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핀테크2.0 이후인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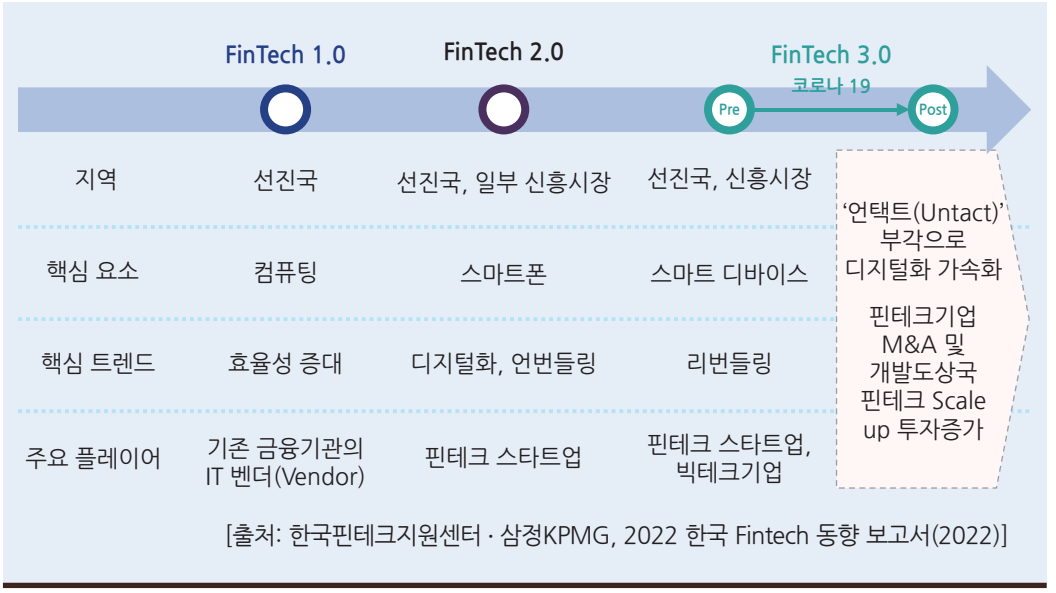
그 중 핀테크2.0은 디지털과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한 개별 언번들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핀테크3.0은 디지털과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융합하여 리번들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핀테크3.0이 발전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디지털과 모바일기술 및 충성도 있는 고객확보를 통한 플랫폼의 형성, 둘째,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고객 빅데이터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핀테크3.0의 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3] 경제의 부각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기존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던 발전이 점점 개발도상국 등에서의 핀테크 투자 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 언번들링이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기능별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리번들링이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재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3 언택트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대면접촉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물건 구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삼정KPMG, 2022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2022)]

2 핀테크의 성장배경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배경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공간, 산업 및 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다. 2016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의장은 앞으로 약 50년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패러다임이라고 단언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반면, 전통산업과 사회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으며, 1 · 2 ·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한 산업의 기계화였다. 이후 전력의 사용 등 에너지 혁명으로도 불리는 2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반 지식 · 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으로 대표되며 인공지능이

그림 12-1 | **산업혁명의 단계적 특징**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15년 ~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IoT/CPS/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산업화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생산보급	인터넷과 스마트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혁신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KBS, 1~4차 산업혁명(2016)]

나 빅데이터 등을 통한 인간 수준 이상의 정보처리능력과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방대한 연결망, 그리고 각종 기술과 산업, 사물과 공간이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요소로는 IT 및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향상되어 기존에는 다룰 수 없었던 수준의 거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컴퓨터의 크기도 작아져 다양한 사물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거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 것 역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핀테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밀레니얼세대의 등장

밀레니얼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한다. 밀레니얼세대는 학습,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세대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가치관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존한 금융서비스보다 모바일 방식의 금융을 선호하면서 핀테크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연결이 확산된 것 역시 핀테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55%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 이용자들만이 아니라 중저소득층 국가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지털 이용에 익숙한 세대의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4 대안금융의 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등장한 대안금융 역시 핀테크의 성장 배경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동력이 약해진 금융시장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해제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성장과 적극적인 금융시장 진출과 맞물리며 제도권 은행 등의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하는 대안금융이 대두되고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비접촉 결제 등의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대안금융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안금융의 장점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과 다르게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인데,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점이 더욱 주목받고 동시에 이를 통한 핀테크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기사읽기

애플 통장 나왔다 … 빅테크의 금융 침공

세계적 빅테크 기업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애플은 17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리 4.15%인 예금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저축예금 평균 이자율(0.37%)의 10배가 넘는다. 미국 전체 은행이 내놓은 예금 상품 중에서도 금리가 열한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개설에 따르는 수수료나 최소 예금 요건도 없다.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상한선인 25만달러로 설정했다.

애플은 2014년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에 이어 2019년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선보였다. 최근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하며 금융 영토를 확장해왔다.

이번 예금 상품 출시는 금융사업에 보폭을 넓히던 애플 행보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특히 은행권 위기가 애플에는 소비자를 흡수할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예금 8000억달러가 인출됐다"며 이자율이 낮은 중소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돼 애플과 골드만삭스 계좌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분기 찰스슈와브, 스테이트스트리트, M&T 등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에서 인출된 예금 규모는 600억달러(약 79조원)에 이른다. 애플이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아이폰과 같은 하드웨어 판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23. 4. 18.]

12.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금융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있는데 핀테크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된다. 대표적인 기술로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는데, 각 기술 명칭의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이를 ABCD기술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1 인공지능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즉,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간과 유사한 학습, 지각, 판단 능력 등을 구현한 것이며, 데이터 분석기술과 컴퓨터 성능이 발달하며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챗봇[4]을 기초로 금융회사의 고객 상담, 금융상품 추천 등 고객 응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및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하거나, 여신심사 관련 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신용평가의 정밀도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또는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권에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4 챗봇이란 고객이 입력한 문자나 말한 음성내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식하고 고객의 응대에 자동적으로 답하는 기능을 말한다.

확대보기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별 구분

인공지능은 발전 단계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Weak AI),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초인공지능(Super AI)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다.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 지능을 흉내내는 정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글 알파고 등과 같은 단순 인공지능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의 발전된 형태를 말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AI와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인간형 AI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초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 진화한 형태로,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이는 효율성, 창의성 등의 원초적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

2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5]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을 활용하는 반면, 분산원장기술은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 발생 시마다 이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

5 원장이란 모든 거래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계정을 전부 기록하는 장부를 말한다.

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이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연결된 모든 개인용 컴퓨터의 블록을 신규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 하므로 조작과 해킹이 어려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통제시스템이 없으므로 거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블록체인 구성원의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블록체인은 본래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사용된 기술이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는 다르게 디지털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거래수단이며, 다수의 참가자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고 관련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며 관리한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관리 및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간소화된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보관앱 등이 있다.

확대보기

가상자산

가상자산 중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은 2008년에 발표된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에 근거하여 2009년에 개발되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닌, 개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일종의 거래수단으로 총 채굴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통화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서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결하였다. 그 이후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등 다양한 코인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사읽기

'코인 투자 손실 보상' 70억원대 사기조직 적발 … 돈 주고 투자자 명단 확보

코인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다른 유망 코인 거래를 통해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고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으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가치가 없는 코인을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후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000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샀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Lock-up)돼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팀 관계자는 "최근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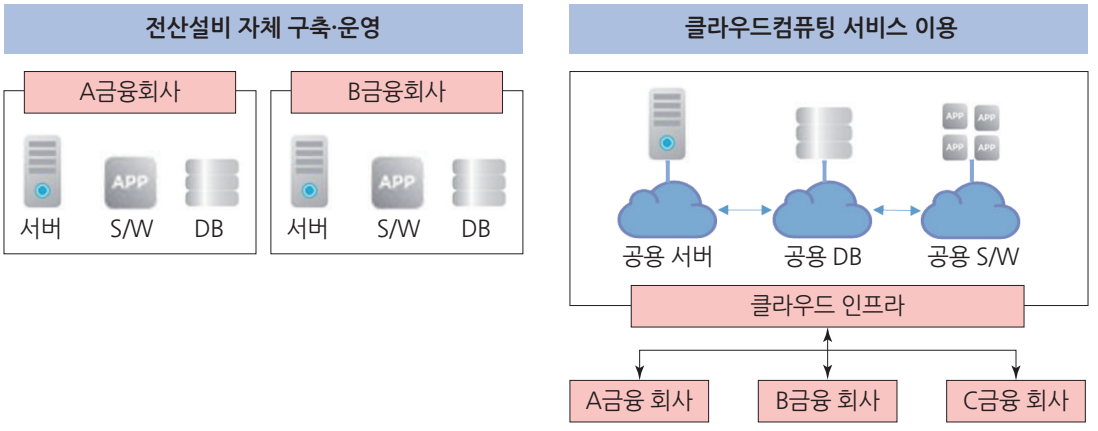
[출처: 2023. 10. 5., 뉴스핌]

3 클라우드

클라우드란 멀리서도 보이는 구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cloud)에서 유래하였으며, 전산 관련 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소유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 · 저장장치 등의 전산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등의 플랫폼,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 자원을 직접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전산 기술, 일시적인 접속 폭주 등 불규칙한 전산 수요 등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산 접속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는 새로운 지능형 기술을 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은 전문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림 12-2 |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보도자료, 2020. 7. 20.)]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금융회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내부 경영 업무, 고객서비스 등 주로 후선 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왔으나, 금융상품 데이터 분석, 인터넷·모바일 뱅킹 관련 전자금융 등 각종 핵심 업무로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해외의 글로벌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국내 업체도 점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4 빅데이터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람과 사물이 다양하게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될 만큼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비교적 높고 통신, 유통, 문화 등 타 산업과의 데이터 연계·결합 가능 범위가 넓어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야에 해당한다.

빅데이터는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 보험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하며,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데이터 3법[6]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바탕으로 관련 빅데이터 개발 및 빅데이터 자문(제공), 유통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기사읽기

금융의 진화 '마이데이터' 시대

종이통장 자체가 흔치 않은 요즘에는 내 자산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개의 은행 앱을 띄우고 열심히 더하기, 빼기를 하여야 할까? 아니다. 하나의 앱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바로 내 자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서 조회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마이데이터 앱에 가입하면 나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 도입되었고, 작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금융위원회에 허가받은 회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핀테크 업체 등 60여 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점점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단순히 정보를 모아서 편하게 보여주는 서비스에 집중하던 회사들이 하나둘씩 모은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정보와 자사의 멤버십 할인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하여 결제 시 멤버십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통신사가 있는가 하면 결제 정보와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청구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도 있다. 개인의 모든 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서 이를 재료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기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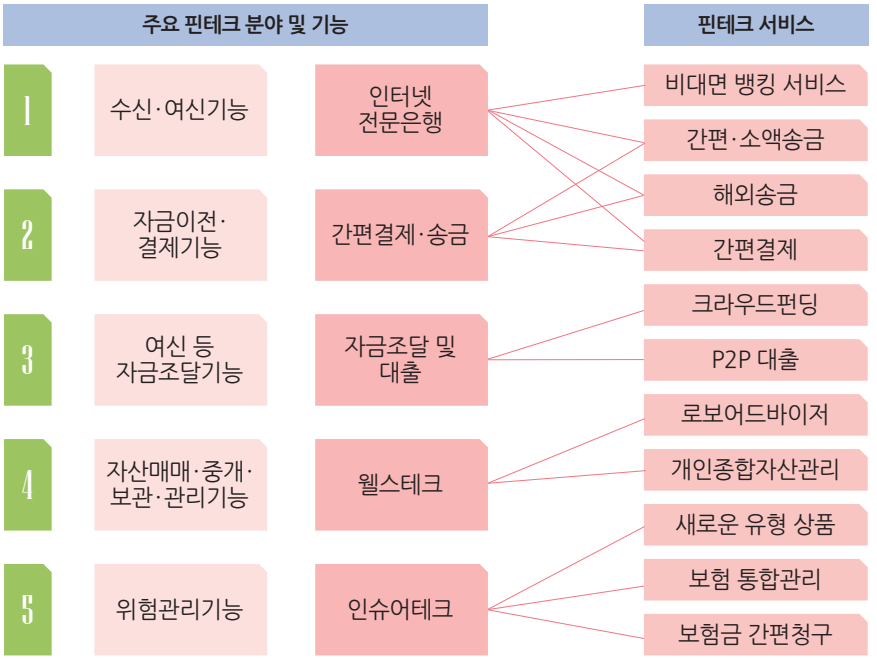
[출처: 동아일보, 2023. 9. 14.]

12.3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앞서 살펴본 여러 핵심기술의 발달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주요 분야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는 〈그림 12-3〉과 같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은

그림 12-3 | 주요 핀테크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삼정KPMG 2020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2020)에서 일부 발췌하여 구성]

행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 및 송금, 자금조달 및 대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웰스테크,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슈어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활용,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오프라

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모회사, 계열회사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이용 시와 비교할 때 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에 따라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며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7년부터, 토스뱅크가 2021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대비 고객 수, 예금 및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업 실적도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읽기

인터넷은행 실적 '훨훨'…연체율 관리는 과제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순익 규모가 지방은행들을 넘어선 곳도 나왔고 흑자 전환이 임박한 곳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역대 최대인 1,8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성장에 힘입어 작년 대비 48% 급증한 건데,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들보다 많았다. 케이뱅크 역시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늘었고, 토스뱅크는 7월 첫 흑자를 기록하며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급성장의 지렛대였던 주택담보대출의 관리에 들어가고, 연체율이 크게 뛰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토스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1.56%로, 전년대비 1.41%포인트나 뛰었고 케이뱅크는 0.86%, 카카오뱅크는 0.52%까지 상승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탓인데, 그러자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상품 다변화와 대손충당금 확대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뛰고 있는 연체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출처: 2023. 9. 5. 연합뉴스TV]

2 간편결제 · 송금

간편결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플라스틱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결제방식이다. 지급 시 활용할 계좌 또는 카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 미리 등록하고, 거래 시 단말기 접촉, QR코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본인인증절차 없이 간단한 거래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을 통해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크게 정보·통신 계열과 유통·제조 계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엘지전자의 엘지페이, NHN페이코의 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페이,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 쿠팡의 쿠페이 서비스 등이 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선불금을 충전한 뒤, 수취인의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간편송금서비스 제공업체는 크게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페이, 케이뱅크의 퀵 송금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사읽기

'○○페이' 결제 267兆 … '카드' 설 자리 잃어 간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간편결제시장을 주도하면서 카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에서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편결제서비스의 업권별 점유율은 ▲전자금융업자 47.9% ▲금융회사 26.8% ▲휴대폰제조사 25.3% 순이다.

문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 방식에서도 카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을 통한 간편결제금액 중 카드이용 비중은 80%에 달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힘입어 카드이용실적도 함께 좋

아지는 상생 관계였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카드 비중은 약 61%로 하락하면서 간편결제서비스를 두고 신용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 발전 및 소비자 구매 성향 변화 등이 간편결제서비스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카드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출처: 뉴데일리경제, 2023. 8. 10.]

3 자금조달 및 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단어로,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다수의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 성향, 집단지성 등을 활용하여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및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등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여 초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벤처투자 등의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로 불리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P2P업체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 때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단순히 중개하는 업무만 수행하면서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대출 관련 이자손익은 투자자의 몫이다.

그림 12-4 | P2P 대출의 구조



3 후원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후원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활용되고 있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대중의 후원으로 이를 달성하면 금액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주로 문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향후 출시될 공연 티켓,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와디즈, 텀블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주로 비영리단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할 때나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2-1 | 유형별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구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주식 · 채권	투자수익(배당금 등)	창업 · 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 · 법인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상환(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기부	무상		

[출처: 금융감독원, 「핀테크 산업 동향」(2020).]

기사읽기

부동산 침체에 일부 온투업체 연체율 20% 넘어 … 금감원 모니터링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관련 대출을 취급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 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인데, 사업모델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거나, 개인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업체 등 특징이 제각각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3. 3. 19. 조선비즈]

4 웰스테크

웰스테크(WealthTech)는 부(wealth)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자산관리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를 지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금융투자 관련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들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 관련 성향, 목표수익률, 자금의 성격 등을 진단한 뒤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서비스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 설계 시 인간의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하므로, 수수료가 낮고 다양한 투자전략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해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7]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의 각종 금융자산 현황과 더불어 지출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관리 등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뱅크샐러드(앱), 카카오페이, 브로콜리 등이 있다.

기사읽기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든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생활

최근 챗GPT의 열풍으로 인공지능(AI)이 아예 고객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자산관리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단기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투자에서 퇴직연금 등 장기상품에도 적용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후에 퇴직연금

7 일임이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앞질렀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2년 가을에 출시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출시한지 3개월만에 가입자 2200명, 1400억원의 가입금액을 달성했고 현재에도 순항중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 조언이며,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조언은 투자자의 반응(질문에 대한 답변)에 기반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정확한 성향에 관한 데이터 입력과 답변이 필요하다. 유의사항 세 번째는 투자자의 금융상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조언이 당초 목표로 하는 투자수익률과 제대로 된 자산배분이나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산배분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출처: 2023. 6. 23. 아시아투데이]

5 인슈어테크

인슈어테크(InsurTech)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상품개발,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보험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슈어테크는 간편결제·송금,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지만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업의 특성과 더불어 사물인터넷[8]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환경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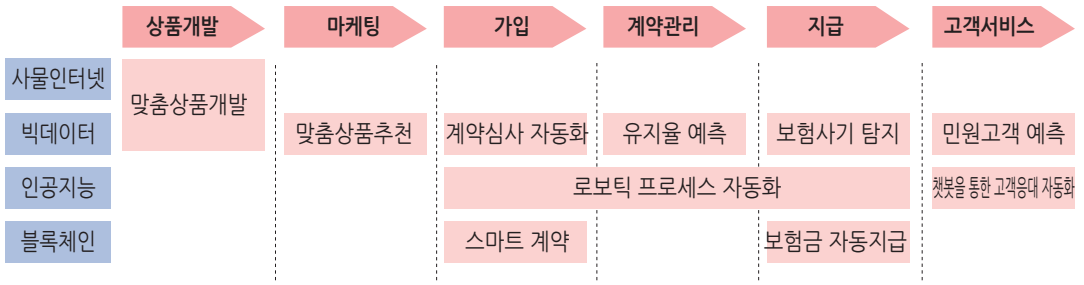
대표적인 예로 보험회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운동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하는 건강증진형 보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운전습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운전습관 연계 자동차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8 사물인터넷이란 전자 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으로 연결된 물건, 기기, 이동수단 등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각의 기기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연결된 서버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을 추천하거나 잠재 고객을 예측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심사를 고도화하고 보험사기를 탐지하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고객상담 및 각종 단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모든 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 과부족 진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통합관리 서비스(앱),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앱) 등도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림 12-5 |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적용분야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활용현황(보도자료, 2019. 5. 22).]

기사읽기

'인슈어테크'가 뜬다 … 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차량 내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면서, 금융산업에 새로운 '인슈어테크(보험+기술)'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2023) 초 열린 2022년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지난해 보험료 수입이 연간 3억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분기 성장률이 자동차 판매보다 높은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성별,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테슬라는 당사의 전기차 보유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주행거리, 보유 차종과 차량 대수, 거주지, 필요한 보험 보장 범위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테슬라는 보험료 책정의 핵심적인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대신, 차내 탑재된 센서를 통해 도출한 '안전 점수'를 활용한다. 개별 운전자의 주행거리 10만 마일(약 16만 km)당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해 0에서 100의 숫자로 표시한다. 급브레이크, 충돌 경고, 앞서가는 차량과의 이상 접근이 많을수록 안전 점수가 내려가며, 심야 운전 또한 안전 점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점수는 매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 평균 점수는 보험료에 반영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료를 기존 대비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2023. 6. 12. 이투데이]

12.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보안문제,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나 쏠림현상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출현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1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

1 금융포용[9](financial inclusion) 확대

전례 없는 디지털 금융의 성장세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적정한 금융역량과 결합된 디지털금융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관련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고객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핀테크 모델이 보다 신속하게 확산되며 금융포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융소외층도 접근이 용이한 기술과 금융기법 등이 개발되면 금융포용이 증진되고 소비자후생[10]도 증가할 수 있다.

2 더욱 좋은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

빅데이터 분석,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이용해 고객의 기대치에 근접한 맞춤형 금융상품, 디지털 경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는 대면채널로 금융거래를 한정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진보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예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효익이 증가할 수 있다.

3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진

종전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9 금융포용이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 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 탈락 계층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후생(welfare)이란 삶이 넉넉하고 윤택한 정도를 표현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시장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파괴적 혁신[11]이 일어나고 경쟁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 기존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나 고객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든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상품경쟁을 하는 것 등이 그 사례이다.

4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영업환경 개선

기존 금융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거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핀테크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고객에게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유지 및 관리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신용평가체계도 향상되고 있는데, 가령 소셜미디어 등과의 제휴로 기존 금융회사가 가지지 못했던 고객의 비재무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확대보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tigal Currency)

중앙은행의 법정화폐 발행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일컫는 용어로, 시중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는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지 못하고 투자수단으로만 인식되는데, 이는 가치 안정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화폐로써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

11 파괴적 혁신이란 기존의 질서나 관례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형태의 혁신을 말한다.

함으로써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부여된다. CBDC는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발행비용이 저렴하며, 기존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사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익명성이 제한되는 만큼 암시장 조성이나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활발하게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스웨덴, 미국이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CBDC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CBDC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자료(2023.11.23.)를 통해 2024년 4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핀테크 발전에 따른 위험요소

1 개인정보유출 피해 가능성 증가

간편결제 등 비대면거래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장점을 악용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적절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나 데이터 탈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인증수단인 생체정보는 일반 패스워드와 달리 자유로운 갱신,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지속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용리스크 증가

P2P대출 플랫폼의 경우 적절하게 감독되더라도 신용 등 관련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최종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이나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P2P대출의 경우 최종 투자자가 돈을 대출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리스크를 직접 부담함에 따라 상환불능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특히, 주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이 P2P대출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보로 금융회사는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경우 모바일 뱅킹 등의 발달로 은행 창구업무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 지점망이 많은 은행보다는 다양하고 편리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은행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지점 수와 고용 인원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25년까지 은행의 소매 지점 수와 고용 인원은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 금융회사의 운영리스크 증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운영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아웃소싱을 늘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외부 서비스제공업체를 많이 이용할수록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투명성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이용이 증가하면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 사이버 범죄 및 고객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IT시스템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그 구현방법이 부적합할 가능성도 있으며, 기술의존도 증가로 인해 핀테크 기업 이외에 연관 금융회사까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사읽기

금감원장 "10월부터 새 감독수단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도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이버범죄의 통로가 되는 다크웹 등 위협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yber Threat Intelligence)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 수단으로, 금융권이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동 기술 실증(Joint PoC),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와의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3. 10. 4.]

학습내용 정리

-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이며, 발전단계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분된다.

-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밀레니얼세대의 등장과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 대안금융의 등장과 발전 등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 핀테크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되며, 대표적인 기술로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다.

- 주요 핀테크 서비스 분야로 비대면 종합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 및 송금, 자금조달 및 대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웰스테크,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슈어테크 등이 있다.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 관련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지리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외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를 포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환경을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 반면, 핀테크는 관련 기업이 적절한 보안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금융범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된 기술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술의 이용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복습 문제

1 서술형

1.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핀테크 관련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서술하시오.

3. 핀테크 발전이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위험요인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2 빈칸 채우기

1.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배경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공간, 산업 및 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_____ 의 등장이다.

2. _____ 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 관련 성향, 목표수익률, 자금의 성격 등을 진단한 뒤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서비스이다.

3. _____ 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며,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O·X 문항

1.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에 해당한다. ( )

2.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21세기의 원유로도 표현되는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 )

3. 핀테크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 )

제13장

부록:
금융관련 기초 이론과 주요 이슈

13.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

13.2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과 수익률

13.3 소비 · 저축의 시점 간 의사결정

13.4 주식 · 채권 가치평가 모형

13.5 선물 · 옵션 가치평가 모형

13.6 신뢰 · 정보 · 신용과 금융의 관계

13.7 신용할당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13.8 간단한 보험수리 모형

13.9 생애주기가설과 노후 대비

13.10 금융 관련 세금

13.11 행동금융학과 투자심리

13.12 창업 관련 금융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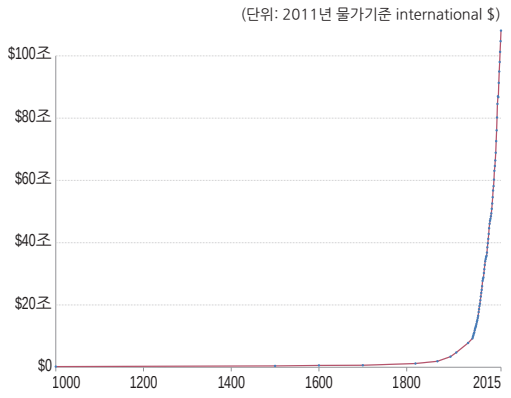
13.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

1 경제성장의 경험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지난 200년 동안 가장 부유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그 이전에 비해 적어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200년 전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생활 수준의 개선을 경험했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가 전 세계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서유럽 지역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했으며, 최근까지 대체로 가장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일본 및 신흥국들이 선발국들을 추격하는 과정을 겪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경제성장의 과정을 경험했다. 반면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림 13-1 | 세계 총 GDP 추이



[출처: World Bank and Maddison (2017)–with major processing by Our World in Data]

그림 13-2 | 경제성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야경



[출처: NASA Earth Observatory]

2 경제성장에 대한 금융의 역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R.Solow)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기업의 생산능력에서 찾았다.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자본은 물적자본으로, 근로자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거나 대신 일을 해주는 물체 혹은 도구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은 이러한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 금융은 경제성장 초기에 저축을 통해 생산요소의 축적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금융이 기술진보를 지원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자체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확대보기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살펴보는 금융의 역할

기업은 생산요소, 즉 노동(L)과 자본(K)을 투입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생산함수(F)로 표현할 수 있다. 생산성이란 생산요소(L, K)가 새로운 생산물(Y)로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의미한다. 이를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Y = F(L, K)$$

위의 수식은 국민총생산을 의미하며, 인구수를 나타내는 L로 양변을 나누어줄 경우 1인당 생산량(y), 1인당 자본(k)을 의미하는 아래 식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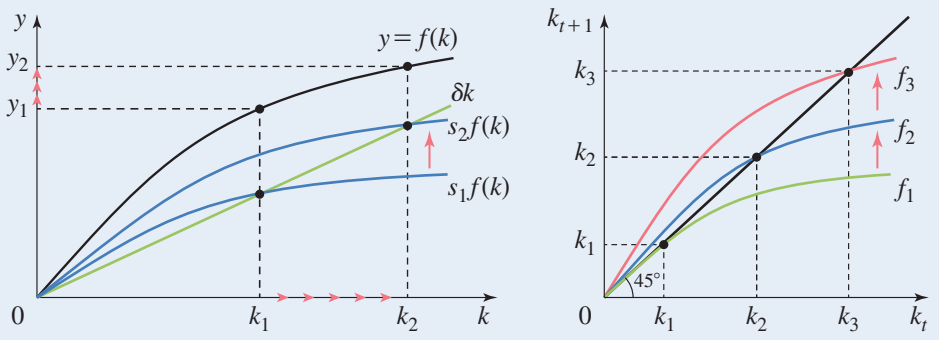
$$y = f(k)$$

① 생산요소 축적을 통한 성장과 금융의 역할

경제성장 초기에는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주는 요소축적을 통해서 성장의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금융은 여기서 저축을 통해 물적자본을 확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축은 최종 생산에서 일부를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생산량에 일정비율(저축률 s)을 곱한 $sf(k)$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 된다. 물적자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양(감가상각)은 물적자본에 감가상각률(δ)을 곱한 δk로 정의할 수 있다. 투자가 자본의 감가상각보다 많을 경우 자본이 축적되고, 반대로 투자가 자본의 감가상각보다 적을 경우 자본이 점점 감소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투자와 자본이 감가상각

그림 13-3 | 저축률, 기술 및 효율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되는 정도는 서로 같아지는 수준에서 자본축적이 멈춘다. 이러한 균형상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sf(k) = \delta k$가 된다.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당 자본량이 늘어야 하고(요소축적) 이를 위해서는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별 소득의 차이는 국가별 저축률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3-3〉의 왼쪽 그림에서처럼 저축률이 높은 국가2가 낮은 국가1($s_2 > s_1$)보다 높은 생산량 ($y_2 > y_1$)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소득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저축을 늘려 자본량, 즉 요소축적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② 기술진보를 통한 성장과 금융의 역할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앞의 수식에서는 생산함수 f의 변화를 의미한다.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요소를 결합하는 새로운 생산기술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생산성 향상이라고 한다. 생산성은 기술과 효율성으로 나뉜다. 기술은 생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고, 효율성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직면하는 유인체계, 그 나라의 경제의 구조, 각종 제도 등과 관련이 있다. 긴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진보시켜야 한다. 〈그림 13-3〉의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 저축률을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현재와 미래의 자본투입량이 정체되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림 13-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술진보는 생산함수를 상향 이동시켜 기존 정체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를 통해 자본투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경제가 지속성장하게 된다($f_1 < f_2 < f_3$). 금융은 기술진보의 역사적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자본에 내재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금융시장 및 제도가 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의 효율성도 높아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3 금융혁신의 역사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서유럽이 중심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중 하나인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 없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공정의 기계화와 산업의 공업화이다. 물론 산업혁명의 씨앗은 그보다 훨씬 앞서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주식회사와 중앙은행의 탄생이라는 금융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1 네덜란드의 금융혁신(주식회사, 증권거래소, 중앙은행의 모태)

현대적 주식회사의 역사적 기원은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떠난 탐험 항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세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경쟁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대항해의 시대가 펼쳐졌다. 그 무렵 네덜란드는 난립하던 항해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여 1602년 동인도회사를 만들었다. 머나먼 탐험 항해에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다. 기존의 단순한 대부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부의 담보로 증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증서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었다. 이 증서를 보유하면 항해의 결과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금을 모으기에 유리했다. 당시 선주들의 투자금을 모아 자본을 형성했고 이에 근거해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1611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였다. 이러한 금융혁신 덕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동인도회사의 성공과 이로 인한 해운업의 발전은 네덜란드를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중개무역의 중심이 되다보니 유통되는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아 매우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다.[1] 화폐 통일의 필요성 때문에 1609년에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되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처음엔 민간은행이었지만 나중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길더화라는 단일 은행권을 발행하여 화폐의 통일을 이루었다. 이것이 근대적 중앙은행의 모

1 당시 암스테르담 자금시장에서는 500종류 이상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태가 되었다.

2 영국의 금융혁신(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의 발전, 현대적 중앙은행의 탄생)

네덜란드의 금융혁신이 영국으로 넘어가 영국을 국제적 금융강국으로 변모시킨 계기는 1688년 명예혁명이었다. 명예혁명은 네덜란드의 왕 빌럼 3세가 영국의 왕위에 올라 윌리엄 3세가 되었고 이후 양국을 동시에 통치하게 된 사건이었다. 네덜란드 금융자본은 왕을 따라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네덜란드 방식 그대로 영국을 변화시켰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도 주식회사 형태로 변화되었고, 1698년에 런던에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만들어 훗날 런던 증권거래소의 탄생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바닥나 있었다. 막대한 전쟁비용과 재정자금조달을 위해서 새로운 금융기법이 고안되었다. 기존의 왕이 필요한 자금을 금융자본이 단순히 대여하던 방식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왕은 막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금융자본은 위험한 거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했다. 이에 왕에게는 대부 자금에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동시에 금융자본에게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부채증서를 담보로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1694년에 영란은행이 설립되었으며, 국채 발행과 화폐의 독점적 발권력이 연동된 현대적 중앙은행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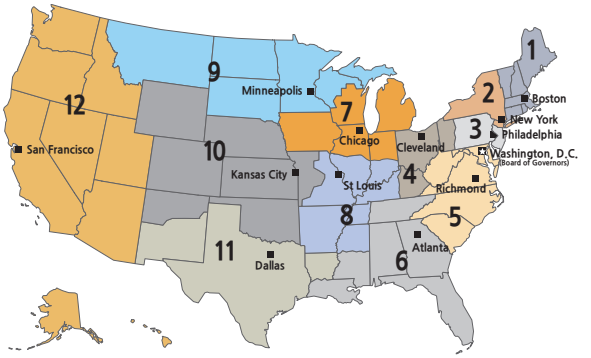
전쟁자금의 원활한 조달 덕분에 영국은 당시 열강들과의 전쟁에서 줄곧 승리하였고 대영제국의 시대를 열었다. 전쟁 승리는 국채 투자의 열풍을 가져와 국채 가격의 급등, 즉 낮은 금리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저금리의 지속은 거대한 자본이 필요했던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3 미국의 금융발전과 확산

18세기 영국의 금융혁신은 미국으로 전해졌고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대륙횡단 철도와 전신 개통, 전기와 관련된 발명 등 수많은 기술혁신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영국에서 넘어온 금융자본

그림 13-4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연방준비은행





[출처: www.federalreservehistory.org, www.federalreserveeducation.org]

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미국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J.P.모건이라는 인물이다. J.P.모건은 영국 자본과 합작하여 설립한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의 철도산업과 철강산업을 주도하였고, 미국의 중앙은행 역시 J.P.모건의 주도 아래에 영란은행을 참고하여 1913년에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의 금융혁신이 영국으로 건너가 산업혁명을 이끌었듯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금융혁신은 산업혁명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4 금융의 명암

앞서 금융혁신은 세계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음을 살펴보았다. 금융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시키는 중개기능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의 성공의 배경에는 성장의 씨앗을 뿌렸던 금융혁신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 뒤에 거품의 형성과 붕괴라는 어두운 측면이 함께 있었음을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자.

1 튤립 거품

역사상 최초의 투기와 거품 현상이 기록된 곳은 금융혁신이 잉태되었던 17세기 네덜란드였다. 폭발적 투기의 대상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튤립이었다. 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희귀한 튤립의 소유와 경작이 사회적 위상의 표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파동의 정점이었던 1637년경에는 숙련된 노동의 연간 소득보다 10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 게다가 거래는 정식 거래소도 아닌 술집 등에서 이루어졌다. 거래 방식도 튤립구근과 현금이 거래되는 현물거래방식이 아닌 선물거래와 유사하게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그 계약서가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구조였다. 투기열풍은 모든 사람들이 소액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투기의 정점이었던 1637년에 튤립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다. 불안해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먼저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락하였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모든 계약을 일괄 무효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되었다. 튤립 광기가 휩쓸고 간 네덜란드는 이후 몇 년 동안 경제불황을 겪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것은 실물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금융자산이 경제주체의 투기심리와 맞물려 어떻게 위기를 발생시키는지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과 영국의 남해 거품

튤립 투기의 열풍이 지나간 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 프랑스에서는 미시시피 거품이 발생하였고 영국에서는 남해 거품이 발생하였다. 튤립거품과 함께 근대 유럽의 3대 거품경제로 일컬어지는 사건들이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유럽의 식민지 개척과 관련이 있었다. 식민지 개척은 전쟁을 수반하였고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아 많은 재정적자를 누적시켰다. 이에 민간의 주식회사가 식민지 개발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상이 결합되어 광적 투기 거품이 만들어졌다. 이 회사들의 주가는 발행가보다 수십배 상승하는 투기 광풍을 일으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파국을 맞이하면서 경제에 불황과 혼란을 초래했다.

3 대공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위기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나타났다. 대공황이라 불리는 세계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건이 1929년에 발생했다.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 192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전후복구 사업으로 미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낙관적 희망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열풍을 가져왔고 그 시작은 1920년대 초반 플로리다 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1926년에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적 열풍은 주식시장으로 옮겨붙어 1929년 대공황이라는 거품붕괴로 막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었다. 1929년 초 주가는 1921년에 비해 무려 4배나 상승한 상태였다. 그러던 주가는 10월 24일 목요일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소멸된 주식가치는 당시 돈으로 무려 300억 달러에 달했다. 그 영향으로 미국은 1939년까지 역사상 가장 길고 처참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실업률은 33%까지 치솟았고, 은행들은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20%가 넘게 도산했다. 이 불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경험은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1933년과 1934에 걸쳐 예금보험 기구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증권시장을 감독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하게 된다.

4 신흥국 위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부터 한동안 자유로운 듯했다.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혁신과 규제 완화의 커다란 흐름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그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효율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부터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빈발하게 되는데, 1980년대 남미의 외환위기,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등 주로 신흥국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금융시장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기사읽기

금감원 20년, YS '금융개혁'에 설립 논의 … IMF 권고로 급물살

금융감독원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며 탄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으로 미흡한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지닌' 금감원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금감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다. 금융산업 개방으로 금융회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권역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는 한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금융감독 업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은행감독원(한국은행),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각각 나눠갖고 있었다.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발을 뗐다. 1997년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 금융개혁위원회는 5개월간 논의를 거쳐 '금융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초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이 연이어 부도 처리되자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밑그림은 '일원화 · 독립화'된 금융감독기구 설립이다. (중략)

그러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발했다. IMF는 미흡한 금융감독체계를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IMF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된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해 부실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1997년 12월 29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 · 증권 ·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됐다. 1998년 4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의 자문을 받아 뼈대가 구체화됐다. 그 결과 1999년 1월 2일 42개 부서, 1262명 규모의 금감원이 출범했다. (중략)

이헌재 초대 원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정책을 독자적 · 독립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제 2의 경제 ·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 금융감독기관 자신부터 구조조정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핌, 2019. 1. 2.]

5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던 중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공황이 되어 전 세계를 덮쳤다. 위기의 시작은 부동산 투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대출상품에서 비롯되었고,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좀 더 긴 흐름으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장기적인 안정 성장 궤도로 들어서면서 위기의 경험을 잊어버린 탓이기도 했다. 특히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잠시 주춤했던 1970년대 후반을 벗어난 이후 2007년 위기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세계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시기를 대완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IT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금융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금융 당국도 규제완화가 가지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들은 서로 촘촘히 얽혀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지지의 부실은 부동산 전반으로, 그리고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전반으로 광범위한 신용경색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회사들이 도산했으며 미국은 심각한 경제불황을 경험하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국가부채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미국과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양적완화[2]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위기를 진화하게 되었다.

확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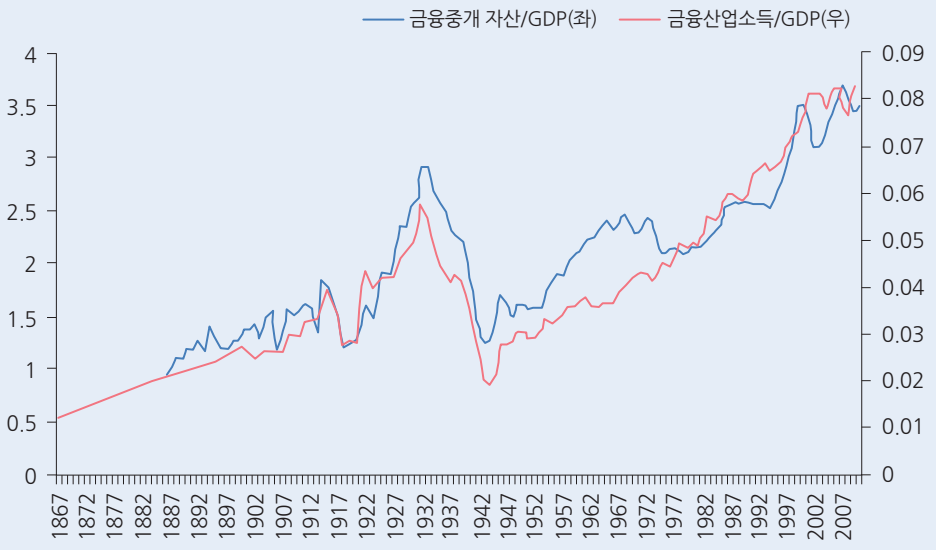
금융과잉(Too much Finance)

금융의 주요 기능이 경제활동이나 대규모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견해였다. 여러 학자들은 『금융발전 →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과잉이 경제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즉, 금융부문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경우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아래 그림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GDP 대비 미국의 금융 중개자산 및 금융산업 이익 등 금융분야의 현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융의 과잉성장이 이뤄진다면, 우수인력이 금융분야에만 집중되는 등 경제자원의 과도한 금융집중이 일어나 다른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의 가격이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3-5 | 금융중개 자산 및 금융산업 소득의 GDP 대비 비율 추이



[출처: Green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4th Edition, Academic Press, 2019.]

13.2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과 수익률



1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일의 100원보다 오늘의 100원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고, 또 현재의 100원을 투자해서 미래에 100원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금 100원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나중에 100원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야 하는데, 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현재의 현금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이자율이다. 따라서 이자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1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그렇다면 오늘의 100원과 내일의 110원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시간 차이에 의해서 가치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시간을 동일하게 보정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 더 가치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미래가치(Future Value: FV)와 현재가치(Present Value: PV)이다. 미래가치란 현재의 일정 금액을 미래의 일정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며, 현재가치란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둘 간의 관계는 다음의 수식과 같다. 여기서 이자율을 r이라고 하고, 기간을 n이라고 한다.

$$FV = PV(1+r)^n$$

$$PV = \frac{FV}{(1+r)^n}$$

예를 들어 현재 100원을 연리 10%로 예금할 경우, 1년 뒤 $100 \times (1+0.1) = 110$원을 받게

되고, 2년 뒤에는 $100\times(1+0.1)^2=121$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1년 뒤에 받을 110원은 현재가치로 $\frac{110}{(1+0.1)}=100$이 되며, 2년 뒤 받을 121원의 현재가치는 $\frac{121}{(1+0.1)^2}=100$으로 계산된다.

2 현재가치와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현재가치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의 기초가 된다. 금융자산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약속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은 현재 시점의 현금을 포기하고 미래에 주식이나 채권이 주는 현금흐름을 선택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금융자산이 발생시킬 미래 현금들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모두 합산하면 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수식이 나온다. 여기서 CF_t는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미래 현금흐름, r는 시간선호율, t는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시점, n은 만기를 나타낸다.

$$PV=\frac{CF_1}{(1+r)^1}+\frac{CF_2}{(1+r)^2}+\cdots+\frac{CF_n}{(1+r)^n}=\sum_{t=1}^{n}\frac{CF_t}{(1+r)^t}$$

주식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은 배당금, 잉여 현금흐름, 잔여 이익 등으로 다양하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채권의 경우 미래 매 시점에 이자와 원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만기도 정해져 있어 미래 현금흐름이 확정적이다.

이러한 현재가치법에 의해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미래 현금흐름과 시간선호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금융자산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래의 예상 현금흐름도 바뀌지만 시간선호율도 변하기 때문이다. 시간선호율이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아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고(거품), 반대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아 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기도 하며(거품붕괴) 가격의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2 기대수익률과 위험

1 기대수익률

투자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금과 미래 현금흐름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지,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제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통계학의 확률과 기댓값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수익률은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 확률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고려해 기댓값을 계산하면 된다. 이를 기대수익률이라고 한다.[3]

예를 들어, 현재 100원에 거래되는 금융자산이 있다고 하자. 이 금융자산은 1년 뒤에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150만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10%이고, 경기가 나빠져서 90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90%로 생각된다고 하자. 이 금융자산은 경기가 좋을 경우 투자수익률이 $(150-100)/100=50\%$이며, 경기가 나쁠 경우 투자수익률이 $(90-100)/100=-10\%$이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0.1, 0.9이기 때문에 확률을 각각의 값에 곱하여 평균을 내면, $0.5\times0.1+(-0.1)\times0.9=-0.04$, 즉 -4%의 기대수익률이 구해진다.

2 위험(Risk)

이렇게 구한 기대수익률은 미래에 예상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므로 미래에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투자수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실제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차이를 편차라고 부르며, 이 편차로 인해서 기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위험(risk)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금융에서는 통계학에서의 표준편차를 위험을 측정하는 단위로 많이 사용한다. 편차(기댓값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곱하여 확률 가중치로 합산하면 분산이 되고, 분산의

3 결국 기대수익률은 미래 기대되는 수익률의 확률분포를 반영한 확률가중 평균이라는 의미가 된다.

양의 제곱근을 계산한 것이 표준편차이다. 이때 위험의 측정단위로 사용되는 표준편차는 기댓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므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포함한다.

3 주사위 예시

기댓값과 위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상금을 지급하는 두 종류의 복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① 복권1: 주사위 눈의 수 만큼 상금을 지급(⚀=1, ⚁=2, ⚂=3, ⚃=4, ⚄=5, ⚅=6)
② 복권2: 주사위 눈이 홀수이면 3, 짝수이면 4 지급(⚀=3, ⚁=4, ⚂=3, ⚃=4, ⚄=3, ⚅=4)

두 복권 상금의 기댓값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복권1 상금의 기댓값 $= [1+2+3+4+5+6]/6 = 21/6 = 3.5$
② 복권2 상금의 기댓값 $= [3+4+3+4+3+4]/6 = 21/6 = 3.5$

두 복권 상금의 분산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복권1 상금의 분산 $= [(1-3.5)^2+(2-3.5)^2+(3-3.5)^2+(4-3.5)^2+(5-3.5)^2+(6-3.5)^2]/6$
$= 17.5/6 = 2.92$
② 복권2 상금의 분산 $= [(3-3.5)^2+(4-3.5)^2+(3-3.5)^2+(4-3.5)^2+(3-3.5)^2+(4-3.5)^2]/6$
$= 1.5/6 = 0.25$

두 복권 상금의 표준편차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복권1 상금의 표준편차 $= \sqrt{2.92} = 1.71$
② 복권2 상금의 표준편차 $= \sqrt{0.25} = 0.50$

정리하자면, 복권1과 복권2는 둘 다 상금의 기댓값이 3.5로 동일하지만, 복권1은 표준편차가 복권2에 비해 커서 복권1이 복권2보다 위험한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복권1은 기

댓값에 비해 크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크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복권2는 기댓값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두 종류의 복권이 주어졌을 때, 복권2를 더 선호하는 사람을 '위험회피적'이라고 하고, 복권1을 더 선호하는 사람을 '위험선호적'이라고 한다.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복권1과 복권2가 무차별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험중립적'이라고 한다.

확대보기

기댓값과 평균, 분산, 표준편차, 상관계수

- 기댓값: 확률변수의 값(x)을 확률(P)을 가중치로 하여 합산한 가중평균을 말함. E[X]로 표기

$$E[X] = x_1P_1 + x_2P_2 + \cdots + x_nP_n$$

- 확률변수의 함수의 기댓값: 평균, 분산, 공분산 및 상관계수

  – 확률변수 X의 평균(mean): $\mu_x = E[X]$

  분산(variance): $Var(X)$ 또는 σ_x^2, $\sigma_x^2 = E[(X-\mu_x)^2]$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qrt{\sigma_x^2}$, 분산의 양의 제곱근

  – 확률변수 X, Y의 공분산(covariance): $\sigma_{xy} = Cov(X, Y) = E[(X-\mu_x)(Y-\mu_y)]$

  – 확률변수 X, Y의 상관계수(correlation): $\rho_{xy} = Corr(X, Y) = \dfrac{Cov(X,Y)}{\sqrt{Var(X)}\sqrt{V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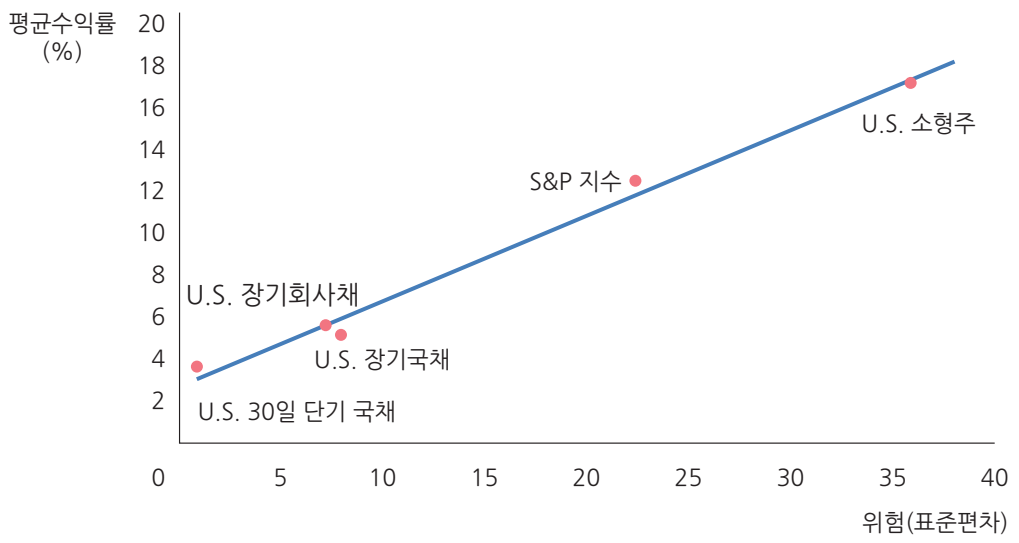
  – X와 Y의 가중합의 기댓값(a는 X의 비중, b는 Y의 비중): $E(aX+bY) = aE(X) + bE(Y)$

  – X와 Y의 가중합의 분산: $Var(aX+bY) = a^2Var(X) + b^2Var(Y) + 2abCov(X, Y)$

4 기대수익률과 위험(Risk)의 상충관계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한다.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의 크기를 줄이고자 한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거의 모두 위험을 수반하고

그림 13-6 | **1926-2011 미국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간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왜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위험을 부담할 것이다. 이것을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주식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자산인데, 이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시 부담하는 위험 대비 충분한 위험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의 대가로 얻고자 하는 위험프리미엄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투자자가 큰 위험을 가진 자산에 투자할 경우 그 대가로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할 경우 낮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더 큰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현상을 위험·수익의 상충관계(risk-return tradeoff)라고 부른다.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의 장기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단기국채에서부터 위험도가 올라가는 장기국채, S&P500 주가지수, 소형주 순으로 평균 수익률도 높아진다.

3 포트폴리오 이론

1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투자자들은 가진 돈을 자산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에 가진 돈을 나누어 투자한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묶음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앞서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에 투자비중(전체 포트폴리오 투자금액 중 해당 자산에 투자한 돈의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E[r_P] = a \cdot E[r_A] + b \cdot E[r_B]$

포트폴리오 위험: $\sqrt{Var[r_p]} = \sqrt{a^2 \cdot Var[r_A] + b^2 \cdot Var[r_B] + 2 \cdot a \cdot b \cdot Cov[r_A, r_B]}$

위의 식에서 r_A는 자산 A의 수익률, r_B는 자산 B의 수익률, r_P는 자산 A와 자산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a는 자산 A에 대한 투자비중, b는 자산 B에 대한 투자비중을 나타낸다. $E[r]$은 수익률의 기댓값, $Var[r]$은 수익률의 분산, $Cov[r_A, r_B]$는 자산 A 수익률과 자산 B 수익률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성 자산 사이의 공분산을 알아야 한다. 공분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신발 회사와 신발끈 제조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발 회사에 대한 투자가 성공할 경우 신발끈 회사에 대한 투자도 성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신발 회사에 한 투자가 실패할 경우 신발끈 회사에 대한 투자도 실패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공분산>0). 반대로 우산 제조 회사와 썬크림 제조 회사에 투자할 경우, 한 곳에서의 투자가 성공했을 경우 다른 곳에서의 투자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공분산<0). 또한, 아이스크림 회사에 투자한 것과 반도체 회사에 투자한 것 사이에는 어느 한 쪽이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서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공분산≒0).

2 상관계수와 위험분산 효과

일반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투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항상 위험이 개별 자산들의 위험보다 줄어들까? 위 식에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자산의 위험과 자산들 사이의 공분산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는데, 이 공분산을 −1~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한 것이 상관계수이다.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선형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는 것은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예시에서 신발 회사와 신발끈 회사의 사례는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것이고, 우산 회사와 썬크림 회사의 사례는 −1에, 그리고 아이스크림 회사와 반도체 회사의 사례는 0에 가까울 것이다. 이 사례 중에서 위험이 가장 작아지는 포트롤리오의 구성은 서로 움직임이 반대인 상관계수가 −1인 우산 회사의 사례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포트폴리오 위험 공식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포트폴리오 위험: } \sqrt{Var[r_p]} = \sqrt{a^2 \cdot \sigma_A^2 + b^2 \cdot \sigma_B^2 + 2 \cdot a \cdot b \cdot \sigma_A \cdot \sigma_B \cdot \rho_{AB}}$$

여기서 a는 자산 A 투자비중, b는 자산 B 투자비중, σ_A는 자산 A 수익률의 표준편차(위험), σ_B는 자산 B 수익률의 표준편차(위험), ρ_{AB}는 자산 A와 자산 B 수익률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결국 상관계수가 낮은 두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개별자산에만 투자했을 경우보다 위험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자가 일정한 기대수익률 아래에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효과라고 부른다.

적용하기

상관계수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위험 산출 예시

① 자산A의 위험(σ_A)이 50, 자산B의 위험(σ_B)이 50이고, 상관계수(ρ_{AB})가 1이라고 할 경우, 두 자산에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sqrt{0.5^2 \times 50^2 + 0.5^2 \times 50^2 + 2 \times 0.5 \times 0.5 \times 50 \times 50 \times 1} = \sqrt{2500} = 50$$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이므로 자산A 가격이 오를 때 자산B도 그만큼 오르고 자산A 가격이 내릴 때 자산B도 그만큼 내리기 때문에 위험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자산A(또는 자산B)에 모든 돈을 투자한 경우와 위험의 크기가 같아서,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두 자산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이라면 , 두 자산에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sqrt{0.5^2 \times 50^2 + 0.5^2 \times 50^2 + 2 \times 0.5 \times 0.5 \times 50 \times 50 \times 0} = \sqrt{1250} = 35.36$$

이 경우 두 자산의 수익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서 자산A 가격의 움직임이 자산B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50:50 분산투자를 한다면 위험을 29.3% 줄일 수 있다 $(=[35.36-50]/50)$.

③ 두 자산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5라면 두 자산에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sqrt{0.5^2 \times 50^2 + 0.5^2 \times 50^2 + 2 \times 0.5 \times 0.5 \times 50 \times 50 \times (-0.5)} = \sqrt{625} = 25$$

이 경우 두 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음$(-)$이어서 자산A 가격이 오를 때 자산B는 일부 내려가고 자산A 가격이 내릴 때 자산B는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 경우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50% 줄일 수 있다$(=[25-50]/50)$.

3 효율적 분산투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효과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투자 시 단순히 자금을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 효율적으로 자산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효율적(efficient) 분산투자라고 한다. 또한, 현실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 수를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구성 자산들은 시장 전체 중 일부분이며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서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전반에 기인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또는 시장위험이라 부르고, 위험분산효과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또는 개별위험이라고 부른다.

13.3 소비 · 저축의 시점 간 의사결정



1 소비와 저축 사이의 선택 문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작게는 전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을지 칼국수를 먹을지, 승용차를 살지 SUV를 살지 등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소비와 저축의 문제도 이러한 선택의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유한한 상황에서 오늘 소비를 많이 하면 오늘의 즐거움은 커지지만 미래의 소비가 줄어들고 미래에는 쓸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2 시점 간 선택 모형

시점 간 선택 모형(intertemporal choice model)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소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에 경제학의 소비자 선택이론을 적용한 모형이다. 현재시점에서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인지, 얼마나 저축하여 미래시점으로 소비를 연기할 것인지를 모형으로 나타냄으로써, 개인의 소비와 저축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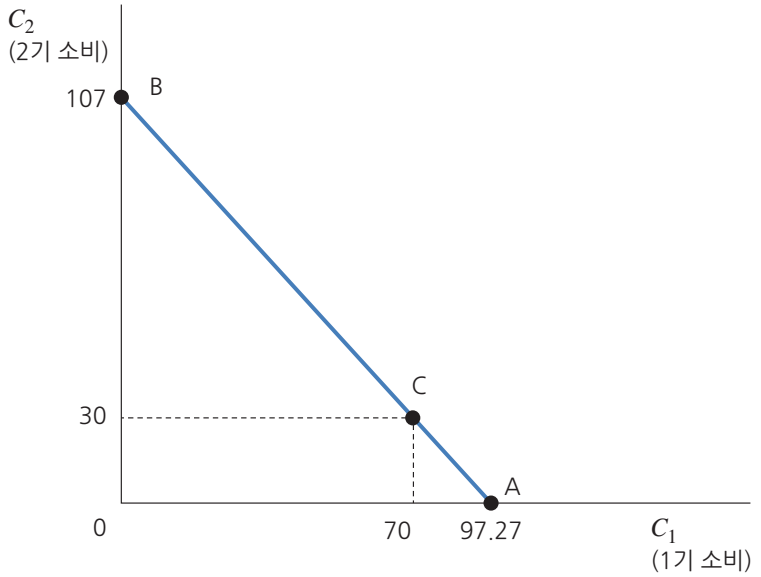
1 예산제약

대체로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더 많은 소비를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일생을 젊은 시절(1기)과 노후(2기)의 두 기간으로 나누고, 1기의 소득과 소비를 I_1과 C_1이라고 하고 2기의 소득과 소비를 I_2과 C_2라고 하자. 만일 젊은 시절의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였다가 노후에 인출한다면 노후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최대 $I_1(1+r)+I_2$가 될 것이다. 여기서 r은 젊은 시절(1기)과 노후(2기) 사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나타낸다. 만일 노후 소득을 담보로 r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모든 소득을 젊은 시절에 소비하고자 한다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I_1+I_2/(1+r)$가 될 것이다. 소비자는 저축을 얼마나 할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에서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모든 조합이 나타난다. 이것을 예산제약선(budget constraint lin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I_1이 70, I_2가 30, r이 10%라면 1기 소비가능 최대치는 $70+30/1.1=70+27.27=97.27$이 되고, 2기 소비가능 최대치는 $70\times(1+0.1)+30=77+30=107$이 된다. 그러면 이 소비자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선은 (C_1, C_2) 평면에서 (97.27, 0), (70. 30),

그림 13-7 | 예산제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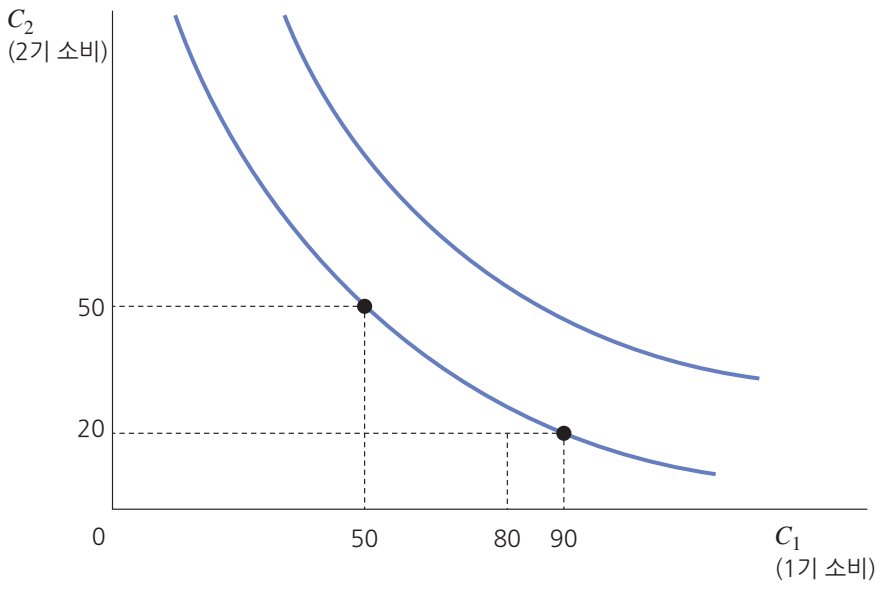


(0,107)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2 무차별곡선

1기의 소비만을 놓고 볼 때 1기의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감이 더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2기의 소비만을 놓고 볼 때 2기의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감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만족감을 주는 1기 소비(C_1)와 2기 소비(C_2)의 조합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C_1이 50이고 C_2도 50일 때 느끼는 만족감이 1000이라고 해 보자. C_2를 20으로 줄이는 대신 C_1을 80으로 늘리면 여전히 1000의 만족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C_1을 90정도까지는 늘려줘야 노후에 소비 감소로 인해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C_1과 C_2의 조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이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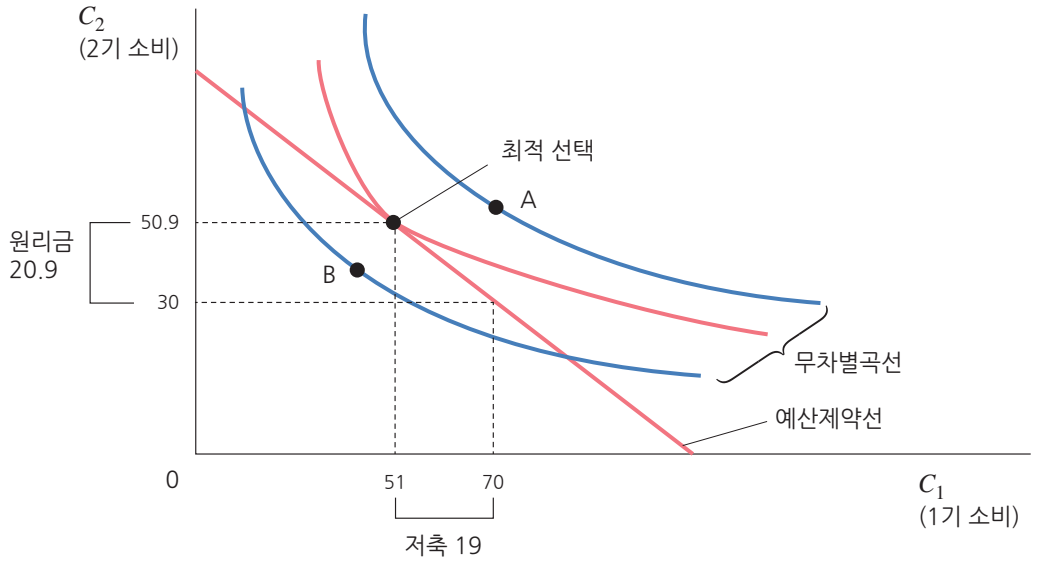
그림 13-8 | 무차별곡선



3 저축과 소비의 최적 의사결정

이제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을 (C_1, C_2) 평면에 한꺼번에 그려보면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C_1, C_2)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3-9〉에서 점A는 예산제약선을 넘어서는 무차별 곡선으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점B는 예산제약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최적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최적의 선택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51, 50.9)의 조합이 예산제약과 접하여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 이 경우 1기의 소득 70에 비해 소비가 19만큼 적으므로 19를 10%의 이자율로 저축하여 2기 소비에 대비하게 된다. 2기가 되면 저축원금 19에 10%의 이자가 붙어서 20.9의 원리금을 받게 되고 2기 소득 30과 합하여 50.9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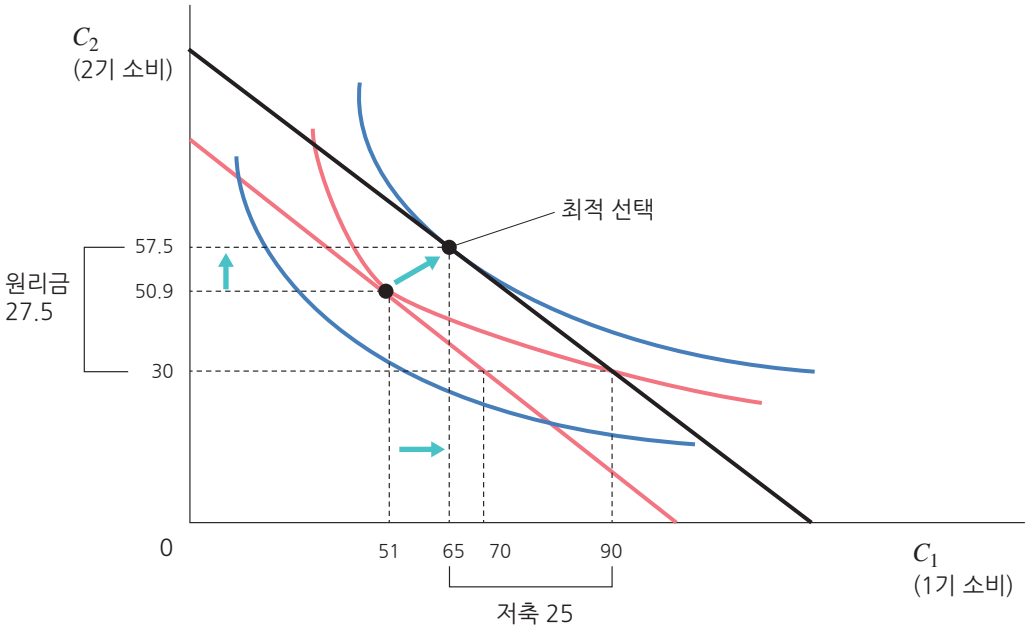
그림 13-9 | 저축과 소비의 최적 의사결정



4 소득 증가의 영향

젊은 시절(1기)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I_1이 70에서 90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예산제약선이 위쪽으로 상승하여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지고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적 소비 조합이 (65, 57.5)로 결정되었다면 1기에 저축이 19에서 25로 증가하고 2기에 받는 원리금도 20.9에서 27.5로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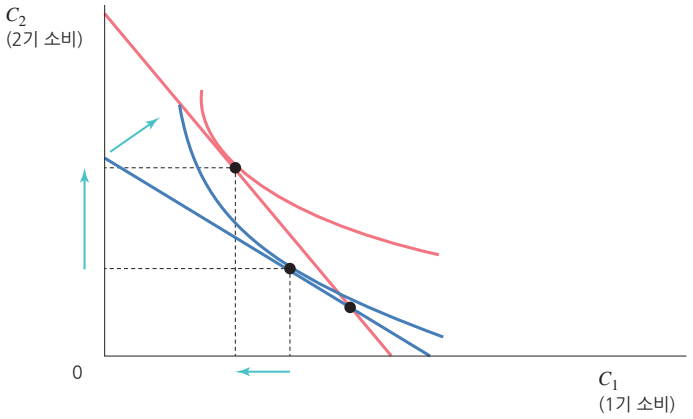
그림 13-10 | 소득 증가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영향



5 이자율 변동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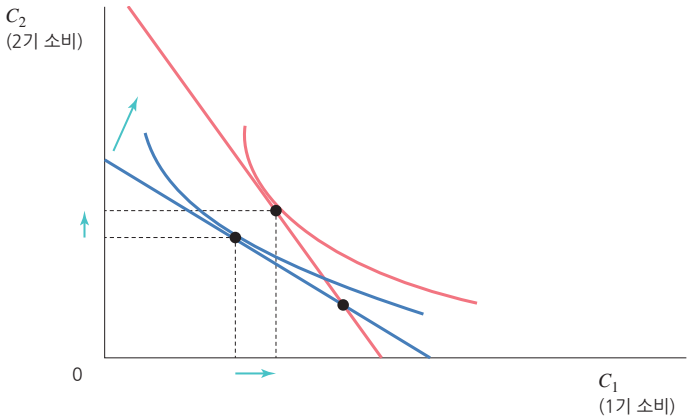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 시 미래에 받게 될 원리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3-11〉과 같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무차별곡선과 접하게 된다. 이 때 1기의 소비가 감소하여 저축이 증가하고, 그 대신 2기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 원리금을 받아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그림 13-11 | 이자율 상승으로 저축이 증가하는 경우



한편, 무차별곡선의 형태와 이자율 상승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저축을 줄이는 것이 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림 13-12〉와 같이 현재의 소비가 주는 만족감을 크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저축을 줄일 수도 있다. 이 경우 1기 소비를 늘리더라도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미래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저축해도 미래에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림 13-12 | 이자율 상승으로 저축이 감소하는 경우



13.4 주식 · 채권 가치평가 모형



1 주식가치 평가모형

주주의 권리를 나타내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가능한 채권과 달리 주주 입장에서 주식 보유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 보유 시 배당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예. 당기순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그러한 이익(배당 재원)을 바탕으로 얼마 만큼의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계나 실무에서 보다 정확한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직접적으로 할인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배당평가모형,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이익평가모형,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초과이익과 자본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초과이익모형, 유사기업 또는 산업평균의 주가배수 등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상대가치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주식 가치 평가 모형에 대해 개괄하도록 한다.

1 배당평가모형

배당평가모형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돌아가는 현금흐름이 궁극적으로는 배당금이

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4] 즉, 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미래 현금흐름으로 배당금만을 고려하기에 직관적이고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❶ 단순 배당할인모형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배당평가모형은 매년 일정한 규모의 배당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매년 지금되는 배당금을 D_t(직전 배당금 D_0, 1년 후 배당금 D_1, 2년 후 배당금 D_2, ...), 할인율(주주의 요구수익률)을 r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의 주식가치 P_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0 = \frac{D_1}{(1+r)} + \frac{D_2}{(1+r)^2} + \frac{D_3}{(1+r)^3} + \frac{D_4}{(1+r)^4} + \cdots$$

만일 미래의 모든 배당금이 D로 일정하다면(즉, $D = D_0 = D_1 = D_2 = \cdots$)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_0 = \frac{D}{(1+r)} + \frac{D}{(1+r)^2} + \frac{D}{(1+r)^3} + \frac{D}{(1+r)^4} + \cdots$$

$$= \frac{D}{r}$$

예를 들어, 할인율(주주 요구수익률)이 연 10%인 투자자가 매년 배당금이 100원으로 일정하게 주어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 가치는 1,000(=100/10%)원으로 계산된다.

❷ 일정률 성장 배당할인모형

현실에서 기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면 이익도 커지고 그에 따라 주주 배당금도 증가하게 된다.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배당금을 매년 일정 비율로 안정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주식을 배당성장주라고 하며, 그 중에서

---

4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식을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주식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의 주가가 미래 예상 배당금의 현재가치로 평가된다면 주식이 중도에 처분되든 그렇지 않든 주식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요컨대, 구주주와 신주주 간의 주식매매 거래는 기업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무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며 그 금액을 꾸준히 증가시켜온 주식을 배당챔피언(Dividend Champion)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배당금을 D_t(직전 배당금 D_0, 1년 후 배당금 D_1, 2년 후 배당금 D_2, ...), 배당증가율을 g(즉, $D_1 = D_0 \times (1+g)$), 할인율(혹은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r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의 주식가치 P_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0 = \frac{D_1}{(1+r)} + \frac{D_2}{(1+r)^2} + \frac{D_3}{(1+r)^3} + \frac{D_4}{(1+r)^4} + \cdots$$

$$= \frac{D_0(1+g)}{(1+r)} + \frac{D_0(1+g)^2}{(1+r)^2} + \frac{D_0(1+g)^3}{(1+r)^3} + \frac{D_0(1+g)^4}{(1+r)^4} + \cdots$$

이를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_0 = \frac{D_0(1+g)}{r-g} = \frac{D_1}{r-g}$$

예를 들어, 요구수익률이 연 10%인 투자자가 직전 배당금(D_0)이 100원이고 매년 배당금이 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 가치는 2,100(=100×(1+5%)/(10%−5%))원으로 계산된다.

2 이익평가모형

이익평가모형은 배당평가모형과 유사하나 배당금 외에 기업내부의 유보이익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즉,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이익을 회사 내부에 남겨두더라도 그러한 유보이익이 결국 미래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청산 시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청산 배분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익평가모형은 배당평가모형에서 배당금 대신 기업이 발생시킬 이익을 기반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1 단순 이익평가모형

매년 발생하는 주당순이익 규모를 E_t(직전 주당순이익 E_0, 1년 후 주당순이익 E_1, 2년 후 주당순이익 E_2, ...), 주주의 요구수익률(혹은 할인율)을 r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의 주식가치 P_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0 = \frac{E_1}{(1+r)} + \frac{E_2}{(1+r)^2} + \frac{E_3}{(1+r)^3} + \frac{E_4}{(1+r)^4} + \cdots$$

만일 미래의 모든 주당순이익이 E로 일정하다면(즉, $E = E_0 = E_1 = E_2 = \cdots$)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_0 = \frac{E}{(1+r)} + \frac{E}{(1+r)^2} + \frac{E}{(1+r)^3} + \frac{E}{(1+r)^4} + \cdots$$

$$= \frac{E}{r}$$

예를 들어, 요구수익률이 연 10%인 투자자가 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유통주식수)이 매년 100원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 가치는 1,000(=100/10%)원으로 계산된다.

② 일정률 성장 이익평가모형

이익평가모형에서도 배당평가모형에서와 같이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매년 일정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주당순이익을 E_t(직전 주당순이익 E_0, 1년 후 주당순이익 E_1, 2년 후 주당순이익 E_2, ...), 이익증가율을 g(즉, $E_1 = E_0 \times (1+g)$), 할인율(혹은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r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의 주식가치 P_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0 = \frac{E_1}{(1+r)} + \frac{E_2}{(1+r)^2} + \frac{E_3}{(1+r)^3} + \frac{E_4}{(1+r)^4} + \cdots$$

$$= \frac{E_0(1+g)}{(1+r)} + \frac{E_0(1+g)^2}{(1+r)^2} + \frac{E_0(1+g)^3}{(1+r)^3} + \frac{E_0(1+g)^4}{(1+r)^4} + \cdots$$

이를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_0 = \frac{E_0(1+g)}{r-g} = \frac{E_1}{r-g}$$

예를 들어, 요구수익률이 연 10%인 투자자가 직전 주당순이익(E_0)이 100원이고 주당순이익이 매년 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 가치는 2,100(=100×(1+5%)/(10%−5%))원으로 계산된다.

확대보기

초과이익모형

기업이 발생시킨 이익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이익평가모형과 달리 초과이익모형은 기업의 자본총액과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모형이다. 초과이익모형은 투자자가 부담할 기회비용 개념을 기업(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 향후 예상되는 초과이익(Residual Income)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의 기대이익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주주의 기대이익은 주주가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초 자본총계에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곱하여 계산된다. 요컨대, 기업가치를 과거 실적에 미래 기대이익을 합산한 것으로 개념화할 때 초과이익모형은 과거 실적에 따른 기업가치는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로, 미래 기대이익은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각각 대리 측정한 모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업가치를 V_0, 자본총계를 B_t, 초과이익 RI_t, 당기순이익 I_t, 주주 기대이익을 E_t,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r이라고 할 때 초과이익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_0 = B_0 + \frac{RI_1}{(1+r)^1} + \frac{RI_2}{(1+r)^2} + \frac{RI_3}{(1+r)^3} + \frac{RI_4}{(1+r)^4} + \cdots = B_0 + \sum_{t=1}^{\infty} \frac{RI_t}{(1+r)^t}$$

이 때 초과이익(RI_t)이 당기순이익(I_t)에서 주주 기대이익(E_t)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_0 = B_0 + \sum_{t=1}^{\infty} \frac{RI_t}{(1+r)^t} = B_0 + \sum_{t=1}^{\infty} \frac{I_t - E_t}{(1+r)^t}$$

또한 주주의 기대이익(E_t)은 기초 자본총계(B_{t-1})에 기대수익률(r)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므로 다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V_0 = B_0 + \sum_{t=1}^{\infty} \frac{I_t - E_t}{(1+r)^t} = B_0 + \sum_{t=1}^{\infty} \frac{I_t - (B_{t-1} \times r)}{(1+r)^t}$$

여기서 초과이익 계산 시 재무성과표상의 당기순이익(I_t) 값을 이용하여 직접 추정하는 대신, 자본총계에 주주의 자기자본대비수익률(Return on Equity, ROE)을 곱한 값으로 추정하게 되면 위 식이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V_0 = B_0 + \sum_{t=1}^{\infty} \frac{I_t - B_0 \times r}{(1+r)^t} = B_0 + \sum_{t=1}^{\infty} \frac{B_0 \times ROE_t - B_0 \times r}{(1+r)^t}$$

그리고 이를 미래 초과이익 현재가치의 합계액을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다.

$$V_0 = B_0 + \sum_{t=1}^{\infty} \frac{B_0 \times ROE - B_0 \times r}{(1+r)^t} = B_0 + \sum_{t=1}^{\infty} \frac{B_0 \times (ROE - r)}{(1+r)^t} = \frac{B_0 \times ROE}{r}$$

이 경우 초과이익모형에 의한 기업가치는 기초 시점의 자본총계(B_0), 자기자본대비수익률(ROE), 주주의 기대수익률 혹은 할인율(r)만 알면 보다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다. 만약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기초 자본총계가 100억원, 자기자본대비수익률이 10%, 주주의 기대수익률이 5%인 경우 기업가치는 200억원(=100억원*10%/5%)이 된다. 그리고 주식 가치는 기업가치를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만약 유통주식수가 100만주인 경우 주식 가격은 20,000원(=200억원/100만주)이 된다.

3 상대가치법

상대가치법은 유사 상장기업 또는 산업평균 등의 특정 지표값을 기준으로 자신이 평가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상대가치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기업의 시가총액(주가)을 당기순이익(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이익비율(Price to Earnings Ratio, PER), 기업의 시가총액(주가)을 순자산(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value Ratio, PBR)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PER이 10인 경우 평가대상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3,000원이라면 동일한 PER 값을 갖기 위한 적정 주가는 30,000원으로 측정되는 식이다.

이처럼 상대가치법은 비교대상의 특정 지표값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 유효한 평가방식이나 해당 지표값이 적정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앞서 소개한 다양한 평가방법과 함께 상대가치법을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채권가치 평가모형

채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과 이자(즉, 원리금)로 구성된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와 발행 시점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채권가치는 사실상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원리금으로 구성된 미래 현금흐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변환하기 위한 할인율이 높아지면 채권가치가 하락하고 할인율이 낮아지면 채권가치가 높아진다. 채권가치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부도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에 적용되는 금리(소위 무위험이자율(risk-free interest rate))에 채권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가산한 값으로 측정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가치를 B_0, 채권의 이자와 원금으로 구성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CF_t, 채권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r, 채권의 만기를 n이라고 할 때, 채권가치는 원리금으로 구성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이 때 CF_n 은 n차 년에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의 합이다.

$$B_0 = \frac{CF_1}{(1+r)} + \frac{CF_2}{(1+r)^2} + \frac{CF_3}{(1+r)^3} + \cdots + \frac{CF_n}{(1+r)^n}$$

이를 다시 합산기호(Σ)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_0 = \sum_{t=1}^{n} \frac{CF_t}{(1+r)^t}$$

이러한 채권가치 평가모형에 따르면 분자의 현금흐름(CF)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분모의 할인율(r)이 높아지면 채권가치(B_0)가 하락하고 할인율이 낮아지면 채권가치가 상승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가치가 할인율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역(逆)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원금)이 100원이고 액면이자 10%를 매년 지급하는 3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하자. 이 채권에 적용되는 할인율(시장이자율)이 10%라면 이 채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_0 = \frac{10}{(1+0.1)} + \frac{10}{(1+0.1)^2} + \frac{10+100}{(1+0.1)^3} = 9.09 + 8.26 + 82.64 = 100.00$$

만일 할인율(시장이자율)이 10%에서 11%로 1%p 상승한다면 이 채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B_0 = \frac{10}{(1+0.11)} + \frac{10}{(1+0.11)^2} + \frac{10+100}{(1+0.11)^3} = 9.01 + 8.12 + 80.43 = 97.56$$

이 채권의 경우 시장이자율이 1%p 상승하면 채권 가치가 2.44% 하락(=(97.56−100)/100)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시장이자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채권 가치가 더 많이 변동한다.

확대보기

◈ 채권가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

채권가치 평가 방법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만기, 액면금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 등과 같은 채권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① 만기(maturity): 만기는 채권 발행자가 채권(증서)에 표시된 액면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한다.

② 액면금액(face value): 액면금액은 채권(증서)의 권면에 인쇄된 금액으로서 채권 발행자가 만기일에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표시이자율(coupon rate): 표면금리, 액면이자율, 액면금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채권 권면에 표시된 액면금액에 곱하여 채권 발행자가 지급하는 현금이자를 계산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④ 시장이자율(market interest rate): 시장금리라고도 불리는데, 발행된 채권에 대한 채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부도 가능성(혹은 신용위험)이 낮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면,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부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채권

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락)하면서 시장이자율이 하락(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자율은 말 그대로 채권 발행자가 아닌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⑤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 시장이자율에 각종 거래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 또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채권 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 중개수수료,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 수수료,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료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비용은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액(혹은 자금조달액)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을 시장이자율보다 증가시키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권 취득에 따른 각종 거래비용은 투자원금을 증가시키므로 채권 투자로 인해 얻게 되는 실질적인 수익률은 시장이자율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시장이자율에 거래비용을 감안한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부르며, 채권 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로 사용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인 만기(투자)수익률은 유효이자율이 된다. 마찬가지로 발행자 입장에서도 만기까지 정해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은 유효이자율이 된다.

◈ 채권가치 평가모형 재구성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 가치 평가모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자의 미래 현금흐름은 액면금액(P_t)과 현금이자(I_t)로 구성되는데, 현금이자(I_t)는 액면금액(P_t)에 액면이자율(r_c)를 곱하여 계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변환하기 위한 할인율은 시장이자율에 거래비용을 반영한 유효이자율(r_e)을 사용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_0 = \sum_{t=1}^{n} \frac{CF_t}{(1+r_e)^t} = \sum_{t=1}^{n} \frac{I_t + P_t}{(1+r_e)^t} = \sum_{t=1}^{n} \frac{P_t \times r_c + P_t}{(1+r_e)^t} = \sum_{t=1}^{n} \frac{P_t \times r_c}{(1+r_e)^t} + \sum_{t=1}^{n} \frac{P_t}{(1+r_e)^t}$$
$$= \sum_{t=1}^{n} \frac{P_t \times r_c}{(1+r_e)^t} + \frac{P_n}{(1+r_e)^n}$$

다만, 앞서 산식에서 마지막 부분은 액면금액을 만기(n)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만기 전 분할상환하는 경우라면 각 시점에서 분할상환 후 남은 잔여액(P_t)을 대상으로 현금이자($P_t \times r_c$)가 계산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채권 발행자가 액면금액과 표시이자율을 확정하여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서 해당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최종 발행가격이 결정된다. 이 때 채권 발행자가 제시한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즉, 시장의 기대수익률보다 발행자가 지급하기로 제시한 이자율이 낮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므로 채권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할인발행(또는 할인취득)이라 부른다. 이에 반해 채권 발행자가 제시한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즉, 시장의 기대수익률보다 발행자가 지급하기로 제시한 이자율이 높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므로 채권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를 할증발행(또는 할증취득)이라 부른다. 끝으로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자가 제시한 이자율이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므로 채권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같아지게 되며, 이를 액면발행(또는 액면취득)이라 부른다.

표 13-1 |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 관계에 따른 채권가치**

상황	채권가치	발행(취득) 유형
액면이자율 < 유효이자율	채권가치(발행금액 또는 투자금액) < 액면금액	할인발행(또는 할인취득)
액면이자율 > 유효이자율	채권가치(발행금액 또는 투자금액) > 액면금액	할증발행(또는 할증취득)
액면이자율 = 유효이자율	채권가치(발행금액 또는 투자금액) = 액면금액	액면발행(또는 액면취득)

13.5 선물 · 옵션 가치평가 모형



1 선물 가치평가 모형

선물은 실제 물건의 거래와 다르게 돈을 지급하는 시점과 물건을 받는 시점이 다르므로, 선물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은 현물(실제 물건)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선물의 가격은 기초자산(현물) 가격과 연결되어 있으며, 선물의 기초자산을 인도하는 선물 만기에는 선물의 가치와 현물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 만약 인도시점에서 선물의 이론가격과 현물가격이 다를 경우,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낮은 쪽의 물건을 사서 가격이 더 비싼 쪽에 파는 차익거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선물의 가격결정이론은 크게 두 가지 보유비용모형과 기대가설로 나눌 수 있다.

1 보유비용모형(cost-of-carry theory)

보유비용은 선물의 기초자산인 현물을 현재 시점에서 선물 만기까지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선물거래를 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무차익 가정을 하면 이 현물가격에 보유비용만큼을 더하면 선물의 이론가격이 된다는 것이 보유비용모형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ext{선물의 이론가격} = \text{현물가격} + \text{보유비용}$$

이때 보유비용에는 보관비용(창고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모손실 등)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현물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현물보유의 기회비용은 현물가격 금액을 무위험자산에 투자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F_0은 현재(0기) 시점에서 만기가 T인 선물의 이론가격을 나타내고, S_0은 현재 시점의 현물가격, r_f는 무위험이자율을 나타낸다.

$$F_0 = S_0(1+r_f)^T + \text{현물보관비용}$$

한편, 선물의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일 경우, 창고비용 등의 보관비용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보관비용이 0이라면 현재(0기) 시점에서 만기가 T인 금융자산의 선물 이론가격 F_0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_0 = S_0(1+r_f)^T$$

예를 들어, 주식 A의 현재 가격은 1주당 40만원이고, 무위험이자율은 1년에 5%이라고 하자. 이 주식을 1년 뒤에 사거나 파는 선물계약을 하려고 할 때, 무차익가정을 할 경우 이 선물계약의 이론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단, 이 주식에서는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F_0 = 40(1+0.05) = 42$$

따라서 이 선물의 이론가격은 42만원이다.

금융선물의 경우 기초자산인 금융자산을 현물로 보유하는 동안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를 보유수익이라 부르며, 현물가격에서 보유수익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화폐를 바탕으로 한 통화선물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론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기대가설(the expectation theory)

미래에 현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면서 미리 정한 가격이 바로 선물가격이므로, 선물가격은 시장참가자들의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만약 거래의 참여자들이 위험중립적(불확실성에 대해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성향)이라면, 선물가격은 미래 현물가격의 기댓값과 같은 값이 된다. 이를 기대가설이라고 부르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_0 = E[S_T]$$

여기서 F_0은 현재(0기) 시점에서 만기가 T인 선물의 이론가격을 나타내고, S_T는 T 시점

의 현물가격, E[·]는 기댓값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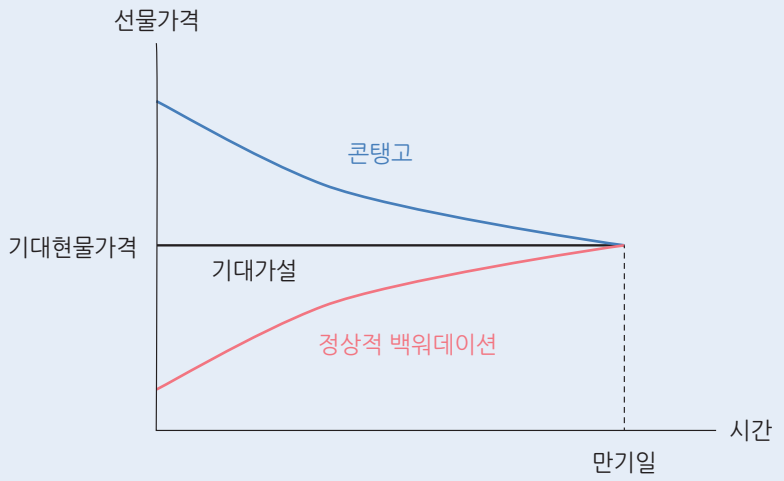
확대보기

백워데이션과 콘탱코

선물거래 참가자들이 위험중립적이지 않고 위험 회피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선물거래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볼 가능성을 자신들이 떠안는 만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선물가격은 기대 현물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선물가격이 기대 현물가격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을 정상적 백워데이션(normal backwardation)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선물가격과 기대 현물가격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다가 선물만기 인도시점이 되는 순간 0이 될 것이다.

한편, 선물거래 참가자들이 대부분 미래에 기초자산 현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미래 기초자산 현물의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물매입 거래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고, 기대되는 현물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선물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물가격이 기대 현물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선물가격이 기대 현물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것을 콘탱고(contango)라고 부른다.

그림 13-13 | 백워데이션과 콘탱고



2 옵션 가치평가 모형과 옵션 거래전략

본문에서 우리는 옵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옵션의 가격이 이론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 부록에서는 유럽형 옵션을 바탕으로 옵션의 만기 가치 계산과 풋-콜 패러티를 설명하고, 옵션들 간의 각종 거래전략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옵션의 만기가치

콜옵션은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에 주가가 높을수록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하다. 만기일의 주가를 S_T, 행사가격을 X, 만기일의 콜옵션의 가치를 C_T라 하면 콜옵션의 만기가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_T = Max[S_T - X,\ 0]$$

반대로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의 풋옵션 가치를 P_T라 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_T = Max[X - S_T,\ 0]$$

예를 들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A주식 1주를 40만원에 살 수 있는 1년 만기 콜옵션을 C, 55만원에 팔 수 있는 1년 만기 풋옵션을 P라고 하자. 현재 A주식의 가격은 50만원이고, 1년간 이자율은 5%이라고 할 때, 1년 전에 C를 10만원에 매수한 사람과 P를 10만원에 매수한 사람의 이익은 각각 얼마일까?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로 인한 이익을 각각 π_C, π_P라고 할 때,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i_C = C_T - C \times (1+r)^T$$
$$\pi_P = P_T - P \times (1+r)^T$$

공식에 조건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pi_C = Max[50-40,0] - 10\times(1+0.05) = 10 - 10\times(1.05) = -0.5$$
$$\pi_P = Max[55-50,0] - 10\times(1+0.05) = 5 - 10\times(1.05) = -5.5$$

즉, 1년 전에 C를 10만원에 매수한 사람은 0.5만원 손실을 보고, 1년 전에 P를 10만원에 매수한 사람은 5.5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옵션거래시에는 옵션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로 인한 손익 뿐만 아니라 옵션가격과 이자율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확대보기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즈가 개발한 블랙-숄즈 모형은 현재 시점의 옵션가격을 추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비록 한계점은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는 모형이다. 블랙-숄즈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본 부록에서는 생략하며, 결론만을 보여주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을 0기로, 옵션 만기 시점을 T기로 표현하는 경우 현재 시점의 옵션가격은 아래 식처럼 나타낼 수 있다.

$$C_0 = S_0 N(d_1) - Xe^{-rT} N(d_2)$$
$$P_0 = Xe^{-rT} N(-d_2) - S_0 N(d_1)$$

이때 각 항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C_0: 유로피언 콜옵션의 가격
P_0: 유로피언 풋옵션의 가격
S_0: 기초자산의 가격
X: 옵션의 행사가격
r : 무위험 이자율
T: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N(\cdots)$: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
d_1: $\dfrac{\ln(S_0 / X) + (r + \sigma^2 / 2)T}{\sigma\sqrt{T}}$
d_2: $d_1 - \sigma\sqrt{T}$
σ: 기초자산 수익률의 표준편차

복잡하게 보이는 식이지만, 그 의미는 옵션의 만기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콜옵션의 만

기가치가 기초자산의 만기 가치에서 행사가격을 뺀 값으로 결정되므로, 콜옵션의 현재가치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치에서 만기 시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만큼을 뺀 값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기초자산 가격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옵션을 행사할지 아닐지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확률적인 부분을 보정해주는 보정치를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옵션의 행사가격의 현재가치에 곱해준다. 그 과정을 거치면 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옵션의 이론적인 가격에 대한 블랙-숄즈 모형을 얻을 수 있다.

블랙-숄즈 모형은 주식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브라운 운동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여러 제한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옵션 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2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

콜옵션 가치와 풋옵션 가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풋-콜 패리티(풋-콜 등가)는 이러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식으로, 아래와 같은 간단하게 도출된다. 같은 기초자산에 대해서 같은 만기를 가지는 풋옵션과 콜옵션의 경우, 만약 행사가격까지 같다면 일종의 균형관계가 형성되며 이 관계를 풋-콜 패리티라고 부른다.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생각해보자.

① 만기가 T이고 행사가격이 X인 콜옵션 1계약을 C_0에 매도($-C_0$)
② 만기가 T이고 행사가격이 X인 풋옵션 1계약을 P_0에 매입($+P_0$)
③ 기초자산인 주식을 가격 S_0에 매입($+S_0$)

위와 같은 전략을 세울 경우 〈표 13-2〉와 같이 만기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옵션 만기 시 주식의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 상관 없이 항상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합계 포트폴리오(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입, 주식 매입)는 만기 시 가치가 X로 확정되므로 X의 현재가치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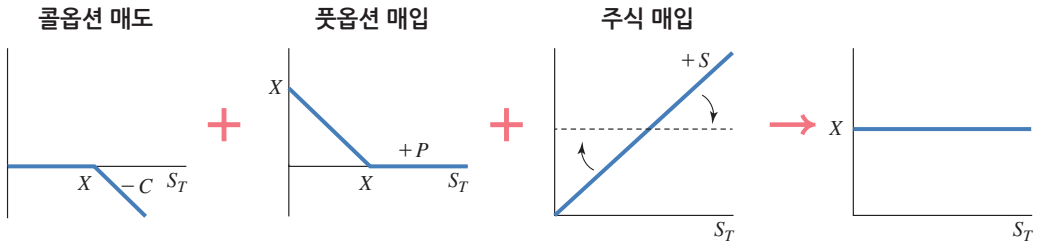
표 13-2 | 풋-콜 패리티의 원리

거래 내용	현재 상태	만기 시 가치	
		$S_T \le X$	$S_T > X$
콜옵션 매도 (①)	$-C_0$	0	$-(S_T - X)$
풋옵션 매입 (②)	P_0	$X - S_T$	0
주식 매입 (③)	S_0	S_T	S_T
합계 포트폴리오	$-C_0 + P_0 + S_0$	X	X

$$-C_0 + P_0 + S_0 = \frac{X}{(1+r)^T}$$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콜옵션 매도($-C_0$)와 풋옵션 매수($+P_0$)를 통해서 주식($+S_0$)의 상승 및 하락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된다. 따라서 콜옵션 매도($-C_0$)와 풋옵션 매수($+P_0$)와 주식($+S_0$)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현금(X)의 현재가치와 같다.

그림 13-14 | 풋-콜 패리티



위의 식을 C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_0 = P_0 + S_0 - \frac{X}{(1+r)^T}$$

또한, 이 관계는 0시점뿐만 아니라 옵션 만기까지 항상 성립하므로 0 대신에 t를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_t = P_t + S_t - \frac{X}{(1+r)^{T-t}}$$

예를 들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A주식 1주를 55만원에 팔 수 있는 1년 만기 풋옵션의 가격이 10만원, A주식의 현재 가격이 50만원, 1년간 이자율은 5%라고 할 때, A주식 1주를 55만원에 살 수 있는 1년 만기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면 적정할까? 풋-콜 패리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_0 = P_0 + S_0 - \frac{X}{(1+r)^T} = 10 + 50 - \frac{55}{(1+0.05)^1} = 10 + 50 - 52.38 = 7.62$$

즉, A주식 1주를 55만원에 팔 수 있는 1년 만기 콜옵션의 가치는 7.62만원이다.

3 옵션거래 전략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에서는 다양한 옵션거래 전략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차익거래 전략, 방어적 풋, 보호적 콜, 그리고 스트래들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차익거래(arbit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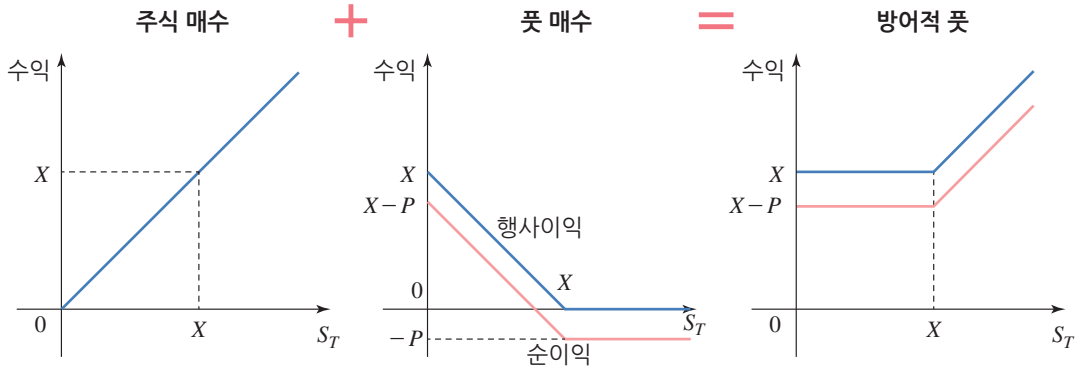
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풋-콜 패리티 등식이 성립하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풋-콜 패리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차익거래 전략은 이를 이용해서 고평가된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매도하여 차익거래를 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C_0 > P_0 + S_0 - \frac{X}{(1+r)^T}$인 경우라면 이론적인 가격보다 시장의 콜옵션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므로 콜옵션이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으로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콜옵션이 저평가된 상황이므로 콜옵션을 매입하는 것으로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❷ 방어적 풋(protective put)

방어적 풋이란 주식 매입과 풋옵션 매입을 결합하여 보유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제한하는 전략이다. 기초자산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의 가치가 행사가격 X보다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할 때, 풋옵션을 매입하여 주가가 X보다 하락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풋옵션 행사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풋옵션의 구매비용 P만큼의 프리미엄을 대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잠재적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주는 보험적인 기능을 하게 되며 포트폴리오 보험의 한 방법으로 꼽힌다.

그림 13-15 | 방어적 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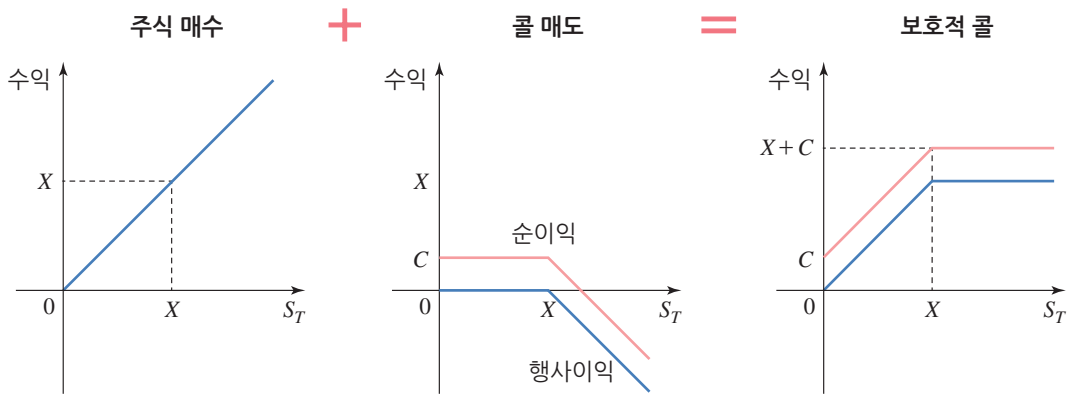


❸ 보호적 콜(covered call)

보호적 콜이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만일 콜옵션 매입자가 만기일에 옵션 행사를 한다면, 콜옵션 매도자는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때 이미 보유한 주식으로 이 의무를 제거할 수 있다. 즉 보호적이란 콜옵션 매도에 따라 부담하는 주식 매도 의무를 보유한 주식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옵션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그다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프리미엄만큼의 추가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보호적 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그림 13-16 | 보호적 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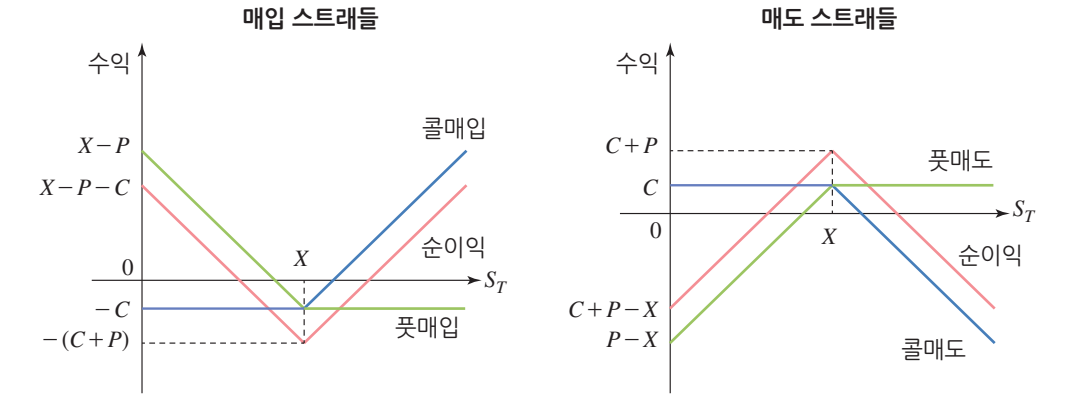


❹ 스트래들(straddle)

스트래들이란 동일한 행사가격 및 만기를 갖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이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하는 전략을 매입 스트래들, 매도하는 전략을 매도 스트래들이라 한다.

매입 스트래들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보유하므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콜옵

그림 13-17 | 스트래들



션 매입으로부터 이익을, 가격이 하락하면 풋옵션 매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사용하는 전략이다. 매도 스트래들은 그 반대로 주식 가격이 행사가격을 중심으로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 옵션 프리미엄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13.6 신뢰 · 정보 · 신용과 금융의 관계

1 본인-대리인 관계와 정보비대칭, 그리고 대리인 문제

경제학에서는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컬어 통상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부른다. 여기서 본인은 의사결정권을 지닌 자를,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각각 의미한다. 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본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리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의사결정권을 넘겨받고 나면 본인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데, 이를 본인과 대리인 간의 목표 불일치(goal incongruence) 현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본인과 대리인 간의 목표 불일치 상황에서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리인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대리인 혹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열위에 있는 본인에게 정보의 우위에 있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비대칭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대보기

대리인 문제와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본인-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가 대리인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대리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① 역선택(adverse selection)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정보'를 지닌 개인(대리인)이 계약상대방(본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역선택은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전적 정보비대칭(ex-ante 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한 대리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본인)이 신입직원(대리인)을 채용함에 있어 특정 지원자의 인성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자를 잘못 채용하는 경우가 역선택의 예라 할 수 있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가 본인에 의해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본인의 부를 자신에게 재분배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역선택은 사후적 정보비대칭(ex-post 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한 대리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신입직원의 채용 예에서 채용된 신입직원이 채용 당시에는 성실히 일할 의도가 있었으나, 막상 자신의 업무행위가 상사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에 의해 적절히 감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만,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지르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 해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대리인 문제 예방 · 완화 방안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본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본인-대리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예방 ·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지원서 양식에 자기소개서, 학업성적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는 것도 바로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지원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채용 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 업무성과평가를 통해 직원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항시적으로 관리 ·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성과평가 정보를 토대로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나쁜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자발적 신의성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신뢰, 정보, 신용과 금융의 관계

금융시장은 특성상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 정보비대칭 현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비대칭 현상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시장참여자 간의 신뢰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작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 제공자가 자금 수요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자본시장 내에서 자금이 자금 공급자에서 자금 수요자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 특히 자금 수요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 수요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 나타나는 기업의 재무정보,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 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 등 모든 정보가 자본시장 참여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금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자금 수요자에 대한 신용 수준을 파악한 후 신용도가 높다면 낮은 기대수익률로 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신용도가 낮다면 자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높은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 자금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시스템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즉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토록 하는 핵심 기재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비대칭 상황 속에서 수요자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자금 제공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각종 처벌과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과징금 부여, 외부자금조달 금지,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 채무를 적시에 상환하지 않은 차입자의 신용도 점수를 낮추어 미래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처럼 금융시장 참여자의 신뢰

를 구축·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에 자금 수요자는 자신의 신용도에 대한 자금 공급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거래를 보다 신의성실하게 하고, 그러한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보화하여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이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함으로써 금융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확대보기

여러 형태의 금융시장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는 금융시장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다. 은행, 투자자 등 금융시장에 자금을 제공하는 공급자(본인)는 정부, 기업, 가계, 개인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대리인)에게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제공받은 자금을 미래에 적정하게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즉 정말 수요자를 신뢰하고 자금을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100%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제공받은 다음 상환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① 주식회사에서의 대리인 문제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주식회사 제도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즉, 유상증자, 사채 발행 가능) 등의 이점으로 인해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흔한 기업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보편적 기업형태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소유(주주)와 경영(경영자)이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 결과 기업의 소유주가 주주(본인)임에도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대리인)보다 부족하여 경영자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기업성과 악화로 투자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 즉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공시된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주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적절히 결정함으로써 역선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주는 경영성과 정보를 토대로 경영자가 기업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 제도에서 대리인인 경영자는 기업에 대한 자신의 정보 우위 상황을 활용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본인인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공시되더라도 해당 정보가 조작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흔히 회계분식 또는 회계부정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제도는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 있으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통해 검증받은 재무제표에 한해 공시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외부감사라고 부른다. 결국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에 상존하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 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에서의 대리인 문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에서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발병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한 정보 부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역선택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활용하여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행위를 사후적으로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기타 금융관련 대리인 문제

금융시장에서는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본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나 정부 등이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등 자금이 오고가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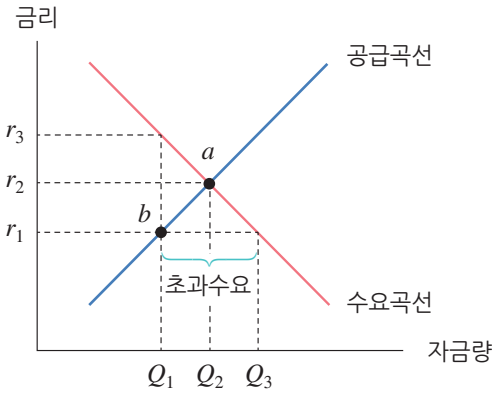
13.7 신용할당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1 신용할당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균형 금리와 균형 자금량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할 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용할당을 들 수 있다.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경우 금리가 균형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3-18〉에서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금리와 자금량은 (r_2, Q_2)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차입자들의 신용위험 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현실의 차입자들은 신용위험이 다른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차입자(대출신청자)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대출금리를 r_2로 정한다면 신용

그림 13-18 | 자금시장의 수요 · 공급과 신용할당



위험이 높은 차입자들이 주로 신청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차입자들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출금리가 r_1으로 낮아지면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들과 신용위험이 낮은 차입자들이 모두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 규모는 Q_3로 늘어난다. 은행은 금리가 r_1이라면 대출을 Q_1만큼만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Q_3 - Q_1$ 크기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아간 차입자들 중에는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와 낮은 차입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r_1, Q_1)은 금리도 낮고 자금량도 작아서 은행의 수익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r_2, Q_2) 규모의 대출보다 신용위험이 낮은 수요자를 선별하여 대출할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관리 측면에서 은행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r_1, Q_1)을 선택하는 현상을 자발적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라고 한다. 신용할당 현상은 실증적으로도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2 신용할당의 발생 원인

1 역선택

역선택이란 거래당사자가 가진 정보가 서로 불균형 상태에 있을 경우, 더 적은 정보를 가진 쪽이 잘못된 상대방을 거래당사자로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나은 거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은 차입자가 빌린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평균적인 차입자의 위험도를 고려한 이자율을 부과하게 되는데, 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위험이 낮은 차입자는 대출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위험이 높은 차입자만 남게 되어 이들의 높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인해 은행의 기대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 안전한 투자기회를 가진 우량한 차입자일수록 대출받기를 포기하는 반면, 위험한 투자기회를 선택한 차입자가 오히려 대출기회를 가지게 되어 은행의 기대수익을 저하시킨다. 이처럼 대출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의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적정 이자율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역선택으로 인해 위험이 높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은행의 기대수익도 낮아진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하여 역선택에 노출되기보다는 신용할당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 도덕적 해이

높은 이자율은 차입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빌린 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안전하고 수익성이 낮은 투자대안 대신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차입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오히려 은행의 기대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차입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고 그보다 적은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다.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져서 대출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높은 이자율과 거액 대출로 인해 도덕적 해이에 노출되기보다는 신용할당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13.8 간단한 보험수리 모형

1 보험과 보험수리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각종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을 꺼릴 수 있어 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업비를 충당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수리적·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보험수리라고 한다.

보험수리는 높은 수준의 수리적·통계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험료 책정을 위한 기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보험료 구성과 보험료 결정요인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 지출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현금유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도 이러한 현금유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순보험료(net premium)라고 하고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료를 부가보험료(loading)라고 한다. 그리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영업보험료(gross premium)라고 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보험금 지급 목적) + 부가보험료(사업비 충당 목적)

다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를 추정해야 한다. 또한 대개 보험계약(특히,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현재가치로 변환하기 위한 이자율(할인율)도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와 같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더불어 이자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를 각각 예정사망률,[5]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이라 부른다.[6] 따라서 보험료는 보험사건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뿐만 아니라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 여러 추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라 할 수 있다.

영업보험료 = f(보험금,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

3 수지상등의 원칙과 보험료 산출

1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현재가치와 보험계약자가 보장서비스를 위해 납입하는 순보험료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모든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형태든 월 또는 연 단위로 나누어 납입하는 분납 형태든 항상 성립해야 한다. 수지상등 원칙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사망보장이 생명보험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유형이기 때문에 보험사건 발생 확률과 관련한 가정을 관행상 예정사망률이라 부른다.

6 보험수리에서는 이처럼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을 총칭하여 보험료계산의 기초라 부른다.

보험금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 일시납 순보험료
= 분할납 순보험료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여기서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보험금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확률과 할인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2 화재보험 예시

매우 간단한 예시를 통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해 보자. 먼저, 보험기간이 1년인 화재보험을 가정해 보자. 순보험료는 보험사건(화재) 발생확률에 보험사건(화재)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화재 시 보상액)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영업보험료는 이러한 순보험료에 보험사가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운영경비)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화재보험 순보험료 = (화재발생 확률) × (화재 시 보상액)
화재보험 영업보험료 = (화재발생 확률) × (화재 시 보상액) + 보험회사 사업비

예를 들어, 보험대상 건물의 화재 시 보상액이 1억원이라고 추산되었고 해당 건물의 화재 발생확률이 0.1%라고 판단된다면 화재보험 순보험료는 10만원(=0.001×1억원)이다. 이 보험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운영경비가 1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이 화재보험의 영업보험료는 11만원이 된다.

3 정기보험 예시

통상 보장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은 화재보험과 같이 단기보장 보험상품과 달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보장기간이 2년인 정기보험(만기환급금 없이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순수보장형 생명보험)을 예로 들면, 보험사건(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I, n차년도에 보험사건(사망)이

발생할 확률을 P_n, n차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Ex_n,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r이라고 할 때 순보험료와 영업보험료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text{2년 만기 정기보험 순보험료} = \frac{P_1 \times I}{(1+r)^1} + \frac{P_2 \times I}{(1+r)^2}$$

$$\text{2년 만기 정기보험 영업보험료} = \frac{P_1 \times I + Ex_1}{(1+r)^1} + \frac{P_2 \times I + Ex_2}{(1+r)^2}$$

예를 들어, 사망 시 보험금이 1만원, 1차년도 사망확률이 5%, 2차년도 사망확률이 10%, 1차년도 예상 사업비가 50원, 2차년도 예상 사업비가 20원, 할인율이 5%라고 하면, 이 2년 만기 정기보험의 일시납 순보험료와 영업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text{2년 만기 정기보험 순보험료} = \frac{0.05 \times 10{,}000}{(1+0.05)^1} + \frac{0.1 \times 10{,}000}{(1+0.05)^2}$$
$$= 476.19 + 907.03 = 1{,}383.22$$

$$\text{2년 만기 정기보험 영업보험료} = \frac{0.05 \times 10{,}000 + 50}{(1+0.05)^1} + \frac{0.1 \times 10{,}000 + 20}{(1+0.05)^2}$$
$$= 1{,}448.98$$

4 종신보험 예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순보험료와 영업보험료도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7]

$$\text{종신보험 순보험료} = \frac{P_1 \times I}{(1+r)^1} + \frac{P_2 \times I}{(1+r)^2} + \cdots = \sum_{t=1}^{n} \frac{P_t \times I}{(1+r)^t}$$

$$\text{종신보험 영업보험료} = \frac{P_1 \times I + Ex_1}{(1+r)^1} + \frac{P_2 \times I + Ex_2}{(1+r)^2} + \cdots = \sum_{t=1}^{n} \frac{P_t \times I + Ex_t}{(1+r)^t}$$

7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에 최대 100세까지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수지상등의 원칙과 보험회사의 이익

보험회사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보험료를 산출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장기에 걸쳐 보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불확실성 속에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아무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상시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보험회사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보험시장 자체가 소멸되어 금융소비자는 보험서비스로 인한 효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정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 추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8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하여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3.9 생애주기가설과 노후 대비



1 생애주기가설

1 소비이론으로서의 생애주기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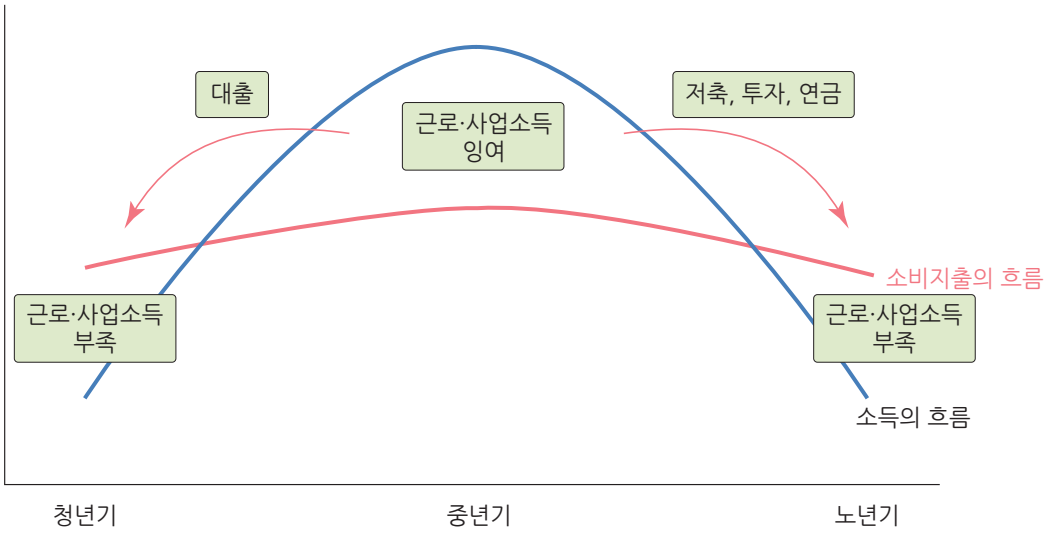
소득수준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준도 함께 증가하다가 50세 전후에 정점에 다다르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시기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필요하고, 오늘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도 행복하길 바라면서 저축·투자·연금 등을 통해서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각 시기별 소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1954년에 주창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소비가 현재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생애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고, 이를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이라고 한다.

2 생애주기가설과 소비 평활화

생애주기가설은 소득이 생애주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평생에 걸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소비 평활화는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소득이 낮은 시기로 자원을 이전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변동해도 생애전반에 걸쳐 소비수준을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무설계를 통해서 연금 등 금융상품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3-19 | 소비 평활화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



2 생애주기가설과 노후 대비

1 생애주기가설과 실제 노후의 소비행동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노년기 가계는 은퇴 이후 감소한 소득으로 인해 평균소비성향[9]이 증가하고, 점차 짧아지는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모아 둔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평활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노년기 가계의 소비행동은 어떨까? 이들은 다른 생애주기에 속한 가계보다 오히려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기대여명이 짧아지고 소득이 감소해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경향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가설만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노년기 가계의 소비행동은 미래의

9 평균소비성향이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을 말한다.

경기변동, 자산가치 변동, 물가변동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노년기에 의료기술의 발달을 기대하고 건강수준에 대한 높아진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미리 더 많이 저축하려는 경향도 있다. 또한, 생애주기가설이 실증적으로 쉽게 입증되지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이나 유동성 제약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적화되지 못하는 문제에도 기인한다. 이외에도, 생애주기가설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노년기에 자신의 소비수준을 낮추더라도 자녀에게 자산을 더 많이 남겨 물려주려는 유산상속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생애주기가설의 의의

생애주기가설이 제시하는 소비평활화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단순화한 가정에 기초하여 수학적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경제학적 결론을 도출해 낸 결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몇 명의 자녀를 갖게 될지, 얼마나 오래 살지 미리 알 수가 없다. 즉, 현실에서는 이론과 다른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론에서와 같은 완벽한 소비평활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소비평활화를 기본으로 삼고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소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대보기

생애주기 모형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 LCM)은 Ando와 Modigliani에 의해 개발되었고 Merton(1969, 1971)에 의해 확장되었다. 생애주기 모형에서는 합리적이고 모든 정보를 가진 대표적 개인이 자신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생애주기 동안에 걸친 소비를 계획한다.

일반적인 생애주기 모형에서는 개인이 여러 기간을 살면서 평생에 걸쳐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효용의 할인된 가치를 극대화(maximize)한다. 이자율은 양수(>0)이고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하자.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은 $t=0, \cdots, \overline{D}$에 대해 다음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

$$\Lambda_t = U(C_t) + \left(\frac{1}{1+\rho}\right)U(C_{t+1}) + \left(\frac{1}{1+\rho}\right)^2 U(C_{t+2}) + \cdots + \left(\frac{1}{1+\rho}\right)^{\overline{D}} U(C_{t+\overline{D}})$$

이 극대화는 생애 소비와 생애 소득을 일치시키는 생애 예산제약(lifetime budget constrain) 또는 시점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하에서 이루어진다.

$$\sum_{s=t}^{\overline{D}} C_s \left(\frac{1}{1+r}\right)^{s-t} = A_t + \sum_{s=t}^{R} W_s \left(\frac{1}{1+r}\right)^{s-t} = A_t + \overline{W}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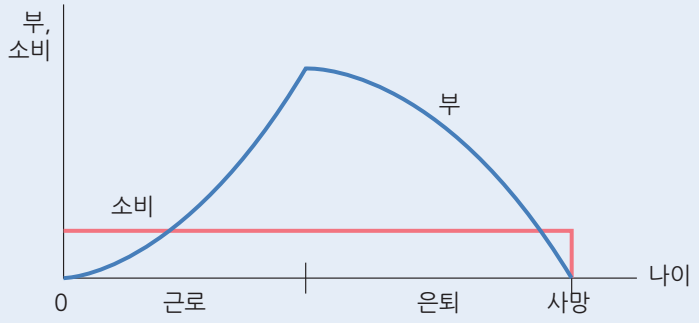
여기서 Λ_t는 생애효용의 할인된 가치, $U(C_t)$는 t기의 소비 C_t로 인한 효용, W_t는 t기의 소득, ρ는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 A_t는 금융자산 등 재산, r은 시장 이자율, $\overline{D}$는 수명, R은 근로기간($<\overline{D}$)을 나타낸다. $\overline{W}_t$는 미래의 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다.

생애주기 모형의 결론은 현재의 소비 C_t가 재산(A_t)과 인적자본(평생 노동소득의 현재가치 $\overline{W}_t$)을 합산한 평생 부(lifetime wealth)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로그 효용함수(즉, $U(C_t) = \ln(C_t)$)를 가정하면 예산제약이 충족할 때 위의 최적화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생애주기 모형 효용극대화 현재소비 함수(C_t)'가 된다.

$$C_t = b(A_t + \overline{W}_t)$$

여기서 b는 평생 부에 대한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을 나타낸다.[10]

그림 13-20 | 부와 소비의 생애주기 프로파일



[출처: Pension Economics, David Blake, 2006, 2.1. Lifecycl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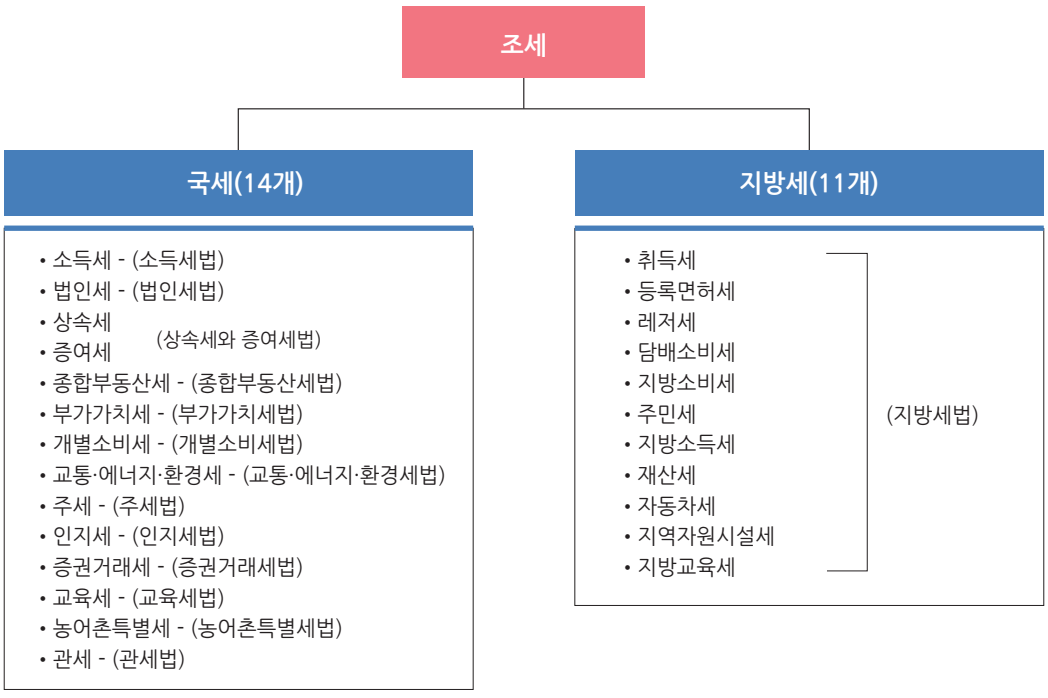
10 평생 부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란 평생 부가 1단위 증가할 때 소비에 사용되는 부의 비율을 의미한다.

13.10 금융 관련 세금

1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그림 13-21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출처: 2018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8. 06]

2 금융 관련 세금의 종류

1 금융소득 유형별로 부과되는 세금

금융소득의 발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으며, 2025년 시행 · 폐지를 논의중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다.

❶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된다. 단,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된다.

❷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국외주식 등, 국외전출 시 양도에 따른 금융거래에서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11]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외주식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

11 여기서 대주주란 특정 주식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에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한 국내주식 등에 대해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지는 않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약 2.4조원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하는 세금납부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므로 이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거래할 때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증권을 살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증권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매겨진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장별로 상이하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는 2024년에는 주식양도가액의 0.03%이고, 2025년부터는 세율이 0%가 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도 주식 양도가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는 2024년에는 양도가액의 0.18%이고, 2025년부터는 0.15%로 인하된다. 코넥스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가액의 0.10% 수준이다.

3 금융소득과 절세

1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국가는 정책적으로 특정 금융상품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상품 가입을 독려하기도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개인연금 저축이자,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조합출자금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비과세에 해당된다.

2 세액공제 상품 활용하기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6.5%를, 초과하면 13.2%를 환급받는데, 이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을 활용하기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데,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액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다음 〈표 13-3〉과 같다.

표 13-3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4 절세를 위한 수익자 분산, 수익시기 분산

절세를 위해서라면 수익자를 분산하거나 수익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있다.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여 만기에 이자를 일시 지급받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중 어느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사읽기

연금에서 떼는 세금 줄이는 묘책? … "年 1200만원까지만"

(전략) 현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공제되는 세액 규모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등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공제받은 금액과 들어온 연금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1년 동안 받는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

라집니다. 해당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3~5.5% 정도로 크게 낮아집니다. (중략)

또한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일 경우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으로 80세가 넘어갈 경우 세율은 3.3%까지 낮아집니다. 매년 500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을 받는 시점이 만 5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52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44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연금 수령을 10년가량 늦추면 82만5천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중략)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운용 수익을 올리기보다 종신 수령이 목적이라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략)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SBS Biz, 2023. 1. 16.]

13.11 행동금융학과 투자심리



1 행동금융학[12]이란?

전통적 금융이론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가격에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13]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 만큼의 합리성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 우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 큰 돈을 투기나 도박에 걸기도 하고, 자산 가격이 끝도 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너무 싼 가격에 모두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인간은 심리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전통적 금융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이 힘을 잃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행동금융학이다. 행동금융학은 기존의 가정과 다르게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과 이러한 비합리적인 개인들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금융시장은 시장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편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투자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동금융학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2 Behavioral Economics(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 Behavioral Finance(행동재무학, 행태재무학) 등으로도 불린다.

13 이를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라고 한다.

2 행동금융학 주요 개념

행동금융학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 투자 등 금융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념으로는 자기과신, 보수성 편향, 대표성 오류, 준거점 효과, 손실 회피, 틀짜기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1 자기과신(Overconfidence)

자기과신은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에 지나치게 확신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뛰어난 운전실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과신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산을 훨씬 빈번하게 사고판다고 한다. 선택적으로 성공한 경험만을 계속 기억하고 성공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착각하는 회상 편향(hindsight bias) 역시 이러한 자기과신의 일종이다.

기사읽기

작년 '주린이' 3명 중 2명, '손실' … 거래 잦을수록 수익 저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주식시장에 대거 입성한 신규 투자자의 3분의 2는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승장에서 투자자 스스로의 '자기과신'이 잦은 거래를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개인투자자 중 46%는 지난해 3~10월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존투자자는 39%가, 신규투자자는 62%가 손실을 입었다. 3명 중 2명꼴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누적 수익률은 5.9%에 그쳤다. 기존 투자자(18.8%)의 3분의 1에 그친다.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1.2%로 손실이다.

신규 투자자의 저조한 투자 성과는 잦은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회전율, 일중거래비중, 종목교체율이 높을수록 일간 초과수익률이 낮았다. 이는 신규 투자자와 20대, 소액투자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2023. 10. 18.]

2 보수성 편향(Conservatism bias)

보수성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 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신념 고수(belief perseverance)가 이에 해당된다. 보수성 편향으로 금융시장에서 모멘텀[14]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 대해 주어진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대표성의 오류(Representativeness error)

대표성의 오류는 주어진 대표적인 정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계학의 '큰 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비틀어 '작은 수의 법칙(law of small numbers)'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예를 들어 보면, 2~3번 연속으로 성공적인 거래를 한 투자자가 다음 번에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이 대표성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전망 이론(Prospect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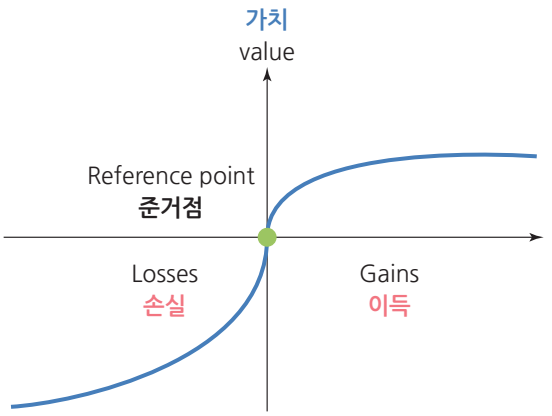
전망 이론은 투자자들의 행동에 대한 기존의 효용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 하나이다. 기존의 효용이론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산이 0인 시점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얻은 재산의 최종값에 따라 효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전망 이론에서 제시하는 소비자의 효용(가치, value)은 〈그림 13-22〉와 같이 표현되는데, 이는 준거점 효과(anchoring effect)와 손실 회피 성향(loss aversion)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❶ 준거점 효과(anchoring effect)

준거점 효과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최종적인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의해 만족감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효

14 모멘텀(momentum)이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이는 경향을 말한다.

그림 13-22 | 전망이론의 소비자 효용



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의 최종적인 크기가 아니라 재산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현재 재산을 준거점으로 놓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만족감(가치)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❷ 손실 회피(loss aversion)

손실 회피는 사람들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이득에 관한 것인지 손실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프에서는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 변화에 대해서도 이득일 경우 늘어나는 효용 정도보다 손실일 경우 감소하는 효용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득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1000만원을 50%의 확률로 받는 것(50%의 확률로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다!)보다 500만원을 100%의 확률로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 반면, 손실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500만원을 100%의 확률로 잃는 것보다 1000만원을 50%의 확률로 잃는 것(50%의 확률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을 더 선호한다. 같은 500만원에 대한 것임에도 그것이 이득일 경우에는 확실히 받는 것을 선호(위험 회피)하고, 손실일 경우에는 도박을 하는 것을 더 선호(위험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득을 좋아하는 것보다 손실을 싫어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손실 회피라고 부른다.

기사읽기

손절을 못하는 이유? … 손실에 민감한 인간본성 때문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한 인간 본성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인간의 심리를 렌즈 삼아 경제를 들여다봤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통하는 그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중략) 카너먼은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 위험 선호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익이 예상될 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쪽을 택하지만, 손실이 예상될 때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이다. 전망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이 이론을 '전망 이론'이라고 한다.

수익 줄이고 손실 키우는 처분 효과

카너먼의 실험 결과는 하락장에서 많은 투자자가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을 키우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실험 참가자들이 더 큰 손실 위험을 감수했듯이 하락장의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미루고 반등을 기다린다. 이런 심리를 '처분 효과'라고 한다.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처분해 손실이 확정됐을 때 느낄 상실감이 두려워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심리다.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것이다. 처분 효과는 주가가 오를 때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주식을 빨리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쪽으로 심리가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조금밖에 못 낸다.

[출처: 한국경제, 2022. 6. 17.]

5 틀짜기 효과(Framing effect)

틀짜기 효과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택지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사람 600명이 사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 A]와 [방안 B]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방안 C]와 [방안 D]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자.

[방안 A] 100% 확률로 사망자가 200명 감소
vs [방안 B] 1/3 확률로 사망자가 600명 감소하고, 2/3 확률로 사망자를 줄일 수 없음.

[방안 C] 100% 확률로 400명이 사망
vs [방안 D] 1/3 확률로 아무도 죽지 않고, 2/3 확률로 600명이 사망.

결과를 놓고 보면 [방안 A]와 [방안 C]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방안 B]와 [방안 D]도 서로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택지를 제시할 때 [방안 A]와 [방안 B] 묶음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방안 A]를 선택하였고, [방안 C]와 [방안 D] 묶음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방안 D]를 선택하였다. 즉 완벽하게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틀짜기 효과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그 금융상품이 투자할 만한 상품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품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적용하기

투자심리와 관련된 행동금융학 개념 10개, 한 줄로 정리하기

① 자기과신: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

② 과도한 낙관주의: 근거 없이 '투자하면 이익을 보게 될거야, 다 잘 될거야'라고 생각함

③ 준거점 효과: 투자 원금이나 과거 고점이 회복되어야 팔겠다고 마음먹는 경향

④ 가용성 편향: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함

⑤ 처분 효과: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매각하면 손실이 확정되므로 적기에 손절매하지 않음

⑥ 후회 회피: 소극적 행동(보유)보다 적극적인 행동(매각)으로 인해 손실 발생 시 후회가 더 크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보유를 선택함

⑦ 소유 효과: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매각보다는 보유를 선택함(예: 자신이 1천 원에 산 복권은 다른 복권에 비해 가치가 높다고 느껴져서 1천 원에 되팔고 싶지 않음)

⑧ 전망이론: 대체로 이익보다 손실에 더 예민함. 그러나 일단 손실이 커지면 둔감해짐(예: 10만원 이익의 기쁨에 비해 10만원 손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짐. 손실이 커지면 3억 원을 잃으나 5억 원을 잃으나 어차피 큰 돈을 잃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투자를 선택함)

⑨ 자기귀인 편향: 투자에 성공한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 판단 능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실패한 경우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거나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⑩ 하우스머니 효과: 쉽게 투자수익을 올린 경우 딴 돈을 함부로 위험하게 투자하는 경향

13.12 창업 관련 금융제도

1 창업 관련 금융제도의 필요성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조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일어나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2차 전지 등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들이 등장하여 관련 시장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거나 기존 경쟁기업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오·남용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창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정 또는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오·남용 억제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기업자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 금융제도

우리나라에서 창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이 있다.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창업 관련 금융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조직의 하나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기반자금 지원 제도와 재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❶ 창업기반자금 지원

창업기반자금 지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총 1조 9,300억원 규모로 사업장 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등 운전자금 목적으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❷ 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자금 지원은 민간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실패 후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제도로서, 저신용자 및 사업실패 이력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창업기반자금지원과 동일하게 사업장 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등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액은 총 750억원 규모이다.

2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창업 각 단계별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❶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도의 경우 650.55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과 관련하여 최대 1억원(평균 0.5억원)을 지원한다.

❷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2023년도 기준 553.0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평균 0.7억원을 지원한다.

❸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도약기에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등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도 기준 59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의 사업화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❹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2023년도 예산은 168억원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재창업 자금 명목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15]

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신용보험, 기술 및 벤처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창업과 관련해서도 '스타트업(start-up)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Start-up NEST' 프로그램, 청년 스타트업에게 입주 공간과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FRONT1 NEST' 프로그램,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U-CONNECT'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U-CONNECT는 오프라인 데모데이(U-CONNECT day)와 전용 홈페이지(U-CONNECT online, https://www.kodit.co.kr/sut/index.do?mi=2186)를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최대 3억원을 한도로 투자유치 금액의 3배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

15 자세한 내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ed.or.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술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기술금융이란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보증연계 투자 제도가 대표적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직접 투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중심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설립 후 5년 이내인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고 기술평가등급이 8등급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개별기업당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16] 그 외에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이전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사전 제시하고, 나아가 창업 후 기술보증을 제공하는 예비창업자 준비자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 기업은행

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IBK)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국책 특수은행이다. 기업은행은 혁신 창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을 위해 IBK기업은행만의 중소기업 육성 노하우와 자원을 활용한 IBK 창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IBK창공 지원대상은 업종 제한이 없고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IBK창공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업모델과 사업화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멘토링 지원 등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 측면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일차적으로 IBK

16 기업평가등급이란 특정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기술평가등급은 T1(기술 및 아이디어 경쟁력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부터 T10(기술 및 아이디어 경쟁력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매우 취약하며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까지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T3부터 T6까지는 +, −를 첨부하여 총 18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금융그룹의 직접 투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및 국내·외 IR 설명회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은행 영업점과 연계한 대출과 함께 프로그램 졸업 후에도 후속적인 투·융자 대상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표 13-4 | 주요 창업 관련 금융제도(2023년 기준)

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자금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등 운전자금
	재창업자금지원	저신용자 및 사업실패 이력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과 관련하여 최대 1억원(평균 0.5억원)을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기업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기업의 사업화 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이내 기업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재창업자금 명목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신용보증기금	U-CONNECT	오프라인 '데모데이' 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	최대 3억원을 한도로 투자유치 금액의 3배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연구개발 중심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설립 후 5년 이내인 기술혁신선도기업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개별기업당 최대 30억원이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고 기술평가등급이 8등급 이상 요구)
	예비창업자 준비자금 서비스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사전 제시하고, 창업 후 기술보증 제공
기업은행	IBK창공	IBK창공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일차적으로 IBK금융그룹의 직접 투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및 국내 외 IR 설명회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은행 영업점과 연계한 대출과 함께 프로그램 졸업 후에도 후속적인 투융자 대상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복습문제 정답

구분	빈칸 채우기				O·X 문항			
	1	2	3	4	1	2	3	4
제 1 장	1.0%	잠재 성장률	유통		X	O	X	
제 2 장	손실	직접금융	시중은행		O	X	O	
제 3 장	72	요구불 예금	예금자 보호제도		X	O	X	
제 4 장	투자	기본적 분석	시장가	신주인수 권부사채	X	O	O	X
제 5 장	보수	상장지수 펀드(ETF)	옵션계약	주가연계 증권(ELS)	O	O	X	X
제 6 장	개인회생 제도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연체정보		X	X	O	
제 7 장	시간선호	가산금리	일시상환		X	O	X	
제 8 장	손실심도	상해보험	보험금	위험 보험료	O	O	O	X
제 9 장	건강	기초	사업장		O	X	O	
제10장	재무목표	변동지출	순자산		X	O	X	
제11장	금융소비 자보호법	적합성 원칙	금융분쟁 조정	파인(FINE)	O	X	O	O
제12장	4차 산업혁명	로보어드 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X	O	X	

참고 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

금융감독원, 「핀테크 산업 동향」, 2020.

기획재정부, 2018 조세개요, 2018.6.

하이럼 W.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김영사, 1998.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삼정KPMG, 2020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 202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삼정KPMG, 2022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 2022.

David Blake, Pension Economics, 2006.

Green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4th Edition, Academic Press, 2019.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산관리 리포트-부부의 신뢰가 부를 창출한다(지진선 수석연구원), 2019.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2023.12.13.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보도자료, 2023.8.10.)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보도자료, 2022.8.22.)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보도참고자료, 2019.11.26.)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보도자료, 2020.7.20.)

금융감독원,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보도참고자료, 2020.7.6.)

금융감독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보도자료, 2020.11.4.)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활용현황(보도자료, 2019.5.22.)

금융감독원,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보도자료, 2019.8.20.)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보도자료, 2023.3.)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보도자료, 2023.9.21.)

통계청, 2023 고령자통계(보도자료, 2023.9.26.)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8.24.)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7.25.)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보도자료, 2023.12.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보도자료, 2023.12.14.)

한국은행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보도자료, 2023.11.23.)

[기사]
경향신문, 2017.3.9, 이성희 기자(은퇴자 10명 중 7명 “황혼이혼 등 5대 리스크 경험 … 8,701만원 손실”)
내일신문, 2023.12.21, 성홍식 기자(OECD 가운데 한국만 GDP 대비 총부채비율 커졌다)
뉴데일리경제, 2023.8.10, 박지수 기자(‘○○페이’ 결제 267兆 … ‘카드’설 자리 잃어 간다)
뉴스핌, 2019.1.2, 최유리 기자(금감원 20년, YS ‘금융개혁’에 설립 논의 … IMF 권고로 급물살)
뉴스핌, 2023.10.5, 홍재경 기자(‘코인 투자 손실 보상’ 70억원대 사기조직 적발 … 돈 주고 투자자 명단 확보)
동아일보, 2023.9.14,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금융의 진화 ‘마이데이터’시대)
매일경제, 2023.4.18, 진영태, 권한울 기자(애플 통장 나왔다 … 빅테크의 금융 침공)
매일경제, 2023.6.1, 김정범 기자(청년들 노후대비 현실은)
매일경제, 2023.11.13, 이유리 기자(학자금 대출 못 갚은 청년 7배 늘어)
매일경제, 2023.12.22, 이윤식 기자(노인 모두 주택연금 가입시 빈곤율 10%p 뚝)
머니투데이, 2019.8.20, 유희석 기자(‘세계의 골칫덩이’ 된 獨 국채 … 하반기도 어렵다)
미디어펜, 2023.6.15., 홍샛별 기자(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큰 폭 증가 … 2경5000조 달해)
뱅크샐러드, 2023.11.6, 박주연 기자(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 법)
서울파이낸스, 2023.10.18, 남궁영진 기자(작년 ‘주린이’ 3명 중 2명, ‘손실’ … 거래 잦을수록 수익 저조)
시사저널, 2023.4.19, 조문희 기자(‘전세 사기’ 남 일 아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것’)
시사저널e, 2023.6.30, 김희진 기자(고금리 장기화에 주목받는 채권 … 투자 전 유의사항은?)
아시아경제, 2023.10.4, 심나영 기자(금감원장 “10월부터 새 감독수단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도입”)
아시아투데이, 2023.6.23, 서기수 교수(소리 소문 없이 스며든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생활)
연합뉴스 2023.6.4, 임수정, 채새롬 기자(금융권 연체 우려에 … 가계부채 ‘질적 관리’ 고삐 죈다)
연합뉴스, 2023.8.1, 채새롬 기자(전 세계가 펄펄 끓는다 … 동물까지 보상 ‘폭염 보험’ 눈길)
연합뉴스, 2022.10.2, 신호경 기자(한국경제 위기인가: 美연준이 최대 뇌관, 가계빚·부동산도 위태)
연합뉴스TV, 2023.3.13, 이봉석 기자(40년 SVB, 파산까지 36시간 … “스마트폰 뱅크런에 광속몰락”)
연합뉴스TV, 2023.9.5, 김동욱 기자(인터넷은행 실적 ‘훨훨’ … 연체율 관리는 과제)
이코노믹리뷰, 2023.10.25, 박혜진 기자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쓰는 ‘소액신용결제’ … 연체하면 신용점수 ‘뚝’)
이투데이, 2023.6.12, 변효선 기자(인슈어테크가 뜬다 … 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조선비즈, 2023.3.19, 김수정 기자(부동산 침체에 일부 온투업체 연체율 20% 넘어 … 금감원 모니터링)
조선일보, 2023.7.3, 최형석 기자(수수료 싸고 위험 분산 … ETF 출시 21년만에 100조 돌파)
조선일보, 2017.10.10, 김은정 기자(한국인, 노후준비 부족 … 죽기 전 마지막 8.5년 불행하게 살다 갈 수도)
조선일보, 2023.10.16, 김은정 기자(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오른 연금저축 · IRP 활용해야)
중앙일보, 2023.3.14, 임성빈 기자(기성세대 코로나에 지갑 닫을 때, 20대 초반 지출 2.8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2023.6.14, 김하슬 기자(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7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3.11.22, 김경아 기자(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돌입, 왕관을 거머쥘 승자는 누구?)
한국경제, 2022.6.17, 유승호 기자(손절을 못하는 이유? … 손실에 민감한 인간본성 때문)

SBS Biz, 2023.1.16, 류정현 기자(연금에서 떼는 세금 줄이는 묘책? … "年 1200만원까지만")
SBS Biz, 2023.8.3, 김동필 기자("코인 프라이빗 세일 믿지 마세요" … 금감원, 소비자 경고 발령)
SBS Biz, 2023.12.6, 김성훈 기자(거짓 채무 감면에 속지 마세요 … '불법 채권 추심' 2차 경보)

[홈페이지, 통계, 자료 등]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Open DART(opendart.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nsmarket.or.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KBS, 1~4차 산업혁명, 2016
통계청(http://kostat.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한국신용정보(credit4u.or.kr:244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한국은행(www.bok.or.rk)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1)
한국주택금융공사(www.ht.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
Federal Reserve Education(www.federalreserveeducation.org)
Federal Reserve History(www.federalreservehistory.org)

FRED Economic Data(fred.stlouisfed.org)
Lloyd's(www.lloyds.com/about-lloyds/our-home)
NASA Earth Observatory(earthobservatory.nasa.gov/)
Our World in Data, Global GDP over the long run(ourworldindata.org/grapher/global-gdp-over-the-long-run)

집필위원

[제4판]
김상수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박경국 박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서지원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한승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제3판]
강경훈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성영애 교수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성주호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정병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정유신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조혜진 교수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제2판]
이충열 교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이희숙 교수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임동섭 교수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임진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주소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홍동현 교수 세종사이버대학교 금융자산관리학과

[제1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진영 교수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박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최 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검토위원

권민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선임교수
김상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
김우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
정병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 입니다

[제4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발 행 일 **2024년 2월**

인 쇄 일 **2025년 2월**

저 작 권 자 **금융감독원**

발 행 인 **이복현**

발 행 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 ☎02-3145-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디자인 · 편집 **(주)피와이메이트**(www.pybook.co.kr ☎02-733-6771)

ISBN 979-11-6519-977-7 (03320)

* 이 책의 내용은 관련법규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ONTENTS

제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제 2장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제 3장 저축의 이해
제 4장 금융투자의 이해
제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제 6장 신용관리
제 7장 부채관리
제 8장 리스크관리와 보험
제 9장 노후와 연금
제10장 재무설계의 기초
제11장 금융소비자보호
제12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제13장 부록: 금융관련 기초 이론과 주요 이슈

비매품
ISBN 979-11-6519-977-7(03320)